

關稅制度의 運營現況과 改善方向

序 言

戰後 世界經濟를 주도해 온 GATT체제가 最近 공식해체되고 WTO가 그 임무를 교대하게 되었다. WTO의 출범으로 세계의 무역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貿易環境이 조성되게 되었다. 즉, UR협상의 타결로 工產品 및 農水畜產品에 대한 關稅가 앞으로 4~9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撤廢 또는 引下되고 통상관련 知的財產權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조달시장 및 서비스시장이 개방되는 등 세계의 경제는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수반되는 새로운 국면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는 開放化·國際化的 거센 새물결에 맞서 產業構造를 先進國型으로 改善·調整해 나아가는 한편, 우리 기업의 競爭力을 높여 상대적으로 유리해진 여건하에서 수출을 획기적으로 신장시켜 우리의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緩和하고 관련 制度를 서둘러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產業構造를 선진국형으로 改善·調整해 나가고 우리 기업의 國際競爭力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關稅分野가 그 일익을 담당하려면 關稅行政에 임하는 발상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稅關을 찾는 고객에게 어떻게 하면 良質의 서비스를 만족스럽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關稅行政을 바꾸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포지티브」體制는 「네가티브」體制로, 對物管理體制는 對企業管理體制로, 免許承認體制는 申告體制로, 通關節次上 事前管理體制는 事後管理體制로, 物流停止 상태에서의 通關體制는 物流흐름 상태로의 通關體制로, 全數管理體制는 標本管理體制로, 복잡한 환급절차는 빠르고 단순한 환급절차로, 產業被害救濟措置는 事後的인 救濟方式에서 事前的 救濟方式으

로, 관례적인 雙務間 稅關協力은 수출지원을 위한 내실 있는 稅關協力으로, 또한 關稅政策側面에서는 產業別·品目別로 높고 차등적인 關稅減免 및 關稅率體系는 낮고 균등한 關稅減免 및 關稅率體系로의 이행 등등 일대전환을 해야만이 진정 고객을 위한 關稅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현재까지의 關稅行政이 이러한 방향으로 이미 이행되어 왔고 1996年 7月 1日부터 새롭게 도입된 制度, 즉 輸出入免許制의 申告制로의 轉換, 물품이 보세장치장에 반입된 후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입항 후부터 허용하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항 전에도 허용, 수출물품에 대한 보세운송을 생략하는 등 보세운송제도의 원칙적 폐지, 관세의 사후 납부제도의 도입, 보세구역반입 및 보세운송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등에 의해 보다 촉진될 것으로 생각되나 이렇게 새로이 도입된 制度 이외의 기타 다른 모든 관세관련 制度까지 총체적으로 개선된다면 우리의 關稅行政이 선진국형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확신한다.

따라서 本書에서는 이상과 같은 기본구상에 입각하여 어떻게 하면 새롭게 도입된 좋은 制度들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주안점을 두면서 輸出入通關制度, 關稅率制度, 彈力關稅制度, 國際協力關稅制度, 關稅評價制度, 關稅減免制度, 關稅分割納付制度, 關稅還給制度, 保稅制度, 產業被害救濟制度, 關稅審判制度, 關稅士制度, 關稅刑罰制度 등 13개 분야에 걸쳐 이들 制度의 運營現況, 運營上 問題點 및 改善方向을 제시하였다.

本 報告書는 關稅廳 소속으로 韓國租稅研究院에 파견근무중인 朴相泰 局長의 노력으로 완성되었다. 파견근무중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짧은 기간에 보고서를 묵묵히 완성해 나가는 朴相泰 局長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는바, 그 동안의 勞苦에 謝意를 표하는 바이다. 著者는 자료 제공을 포함하여 많은 도움을 준 財政經濟院 關稅審議官室 및 關稅廳의 동료

여러분, 특히 전산처리에 수고한 鄭英玉 研究助員, 그리고 교정을 맡아준 출판팀의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이무쪼록 本 報告書가 우리나라 關稅行政의 發展과 政策立案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財政經濟院, 關稅廳이나 本 研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年 8月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崔 洸

目 次

| | |
|---|-----|
| I. 現行 輸出入通關制度의 運營上 問題點, 政策課題 및 改善方向 | 15 |
| 1. 問題의 提起 | 15 |
| 2. 우리나라의 輸出入通關制度 運營現況 | 18 |
| 3. 現行 輸出入通關制度의 運營上 問題點, 政策課題 및 改善 (實踐) 方向 | 34 |
| II. 現行 基本關稅率制度의 運營上 問題點과 改善方向 ... | 54 |
| 1. 問題의 提起 | 54 |
| 2. 우리나라의 基本關稅率制度의 運營現況 | 57 |
| 3. 基本關稅率政策 運營 現況에 대한 評價와 向後 運營方向 ... | 66 |
| III. 現行 彈力關稅制度의 運營上 問題點과 改善方向 | 82 |
| 1. 問題의 提起 | 82 |
| 2. 彈力關稅制度의 運營現況 | 83 |
| 3. 現行 彈力關稅制度의 運營上 問題點과 改善方向 | 93 |
| IV. 現行 國際關稅協力制度의 運營上 問題點과 改善方向 ... | 110 |
| 1. 問題의 提起 | 110 |
| 2. 國際關稅協力 活動의 運營現況 | 111 |
| 3. 現行 國際協力關稅制度의 運營上 問題點과 改善(對應) 方向 | 129 |

| | | |
|-------|----------------------------|-----|
| V. | 現行 關稅評價制度의 運營上 問題點과 改善方向 | 148 |
| 1. | 問題의 提起 | 148 |
| 2. | 新關稅評價制度의 運營現況 | 149 |
| 3. | 現行 關稅評價制度의 運營上 問題點과 改善方向 | 161 |
| VI. | 現行 關稅減免制度의 運營上 問題點과 改善方向 | 199 |
| 1. | 問題의 提起 | 199 |
| 2. | 關稅減免制度의 運營現況 | 200 |
| 3. | 關稅減免制度의 運營上 問題點 | 209 |
| 4. | 向後 關稅減免制度의 改善方向 | 215 |
| VII. | 現行 關稅還給制度의 運營上 問題點과 改善方向 | 222 |
| 1. | 問題의 提起 | 222 |
| 2. | 關稅還給制度의 運營現況 | 223 |
| 3. | 現行 關稅還給制度의 運營上 問題點과 改善方向 | 236 |
| VIII. | 現行 關稅分割納付制度의 運營上 問題點과 改善方向 | 243 |
| 1. | 問題의 提起 | 243 |
| 2. | 關稅分割納付制度의 運營 現況 | 244 |
| 3. | 現行 關稅分割納付制度의 運營上 問題點과 改善方向 | 254 |
| IX. | 現行 保稅制度의 運營上 問題點과 改善方向 | 258 |
| 1. | 問題의 提起 | 258 |
| 2. | 우리나라 保稅制度의 運營現況 | 260 |
| 3. | 現行 保稅制度의 運營上 問題點과 改善方向 | 280 |
| X. | 現行 産業被害救濟制度의 運營上 問題點과 改善方向 | 288 |

| | |
|--|------------|
| 1. 問題의 提起 | 288 |
| 2. 우리나라의 産業被害救濟制度 運營現況 | 289 |
| 3. 現行 産業被害救濟制度의 運營上 問題點과 改善方向 | 302 |
| XI. 現行 關稅審判制度의 運營上 問題點과 改善方向 | 308 |
| 1. 問題의 提起 | 308 |
| 2. 우리나라 關稅審判制度의 現況과 特殊性 | 309 |
| 3. 現行 關稅審判制度의 運營上 問題點과 改善方向 | 314 |
| XII. 現行 關稅士制度의 運營上 問題點과 改善方向 | 326 |
| 1. 問題의 提起 | 326 |
| 2. 關稅士制度의 運營現況 | 327 |
| 3. 現行 關稅士制度의 運營上 問題點과 改善方向 | 338 |
| XIII. 現行 關稅行政罰制度의 運營上 問題點과 改善方向 | 346 |
| 1. 問題의 提起 | 346 |
| 2. 最近 密輸事犯의 實態 및 關稅行政罰制度 現況 | 347 |
| 3. 現行 關稅行政罰制度의 運營上 問題點과 改善方向 | 355 |
| 參考文獻 | 369 |

表 目 次

| | |
|--|----|
| 〈表 I - 1〉 品目分類 事前回示 現況 | 19 |
| 〈表 I - 2〉 輸入通關 所要時間 比較(總括) | 34 |
| 〈表 I - 3〉 輸出入 通關 件數 | 38 |
| 〈表 I - 4〉 輸出入 物量 增加와 國家物流 費用 | 38 |
| 〈表 I - 5〉 輸入物品의 保稅運送 實績 | 40 |
| 〈表 I - 6〉 制度改善 後 輸入通關所要 時間 比較 | 40 |
| 〈表 I - 7〉 關稅行政 與件變化(I) | 44 |
| 〈表 I - 8〉 우리나라의 最近 輸出入 檢査比率 | 44 |
| 〈表 I - 9〉 主要國의 輸入檢査 比率(1993) | 44 |
| 〈表 I - 10〉 輸出入承認 對象物品 中 稅關長이 確認하는 輸出入 物品 | 45 |
| 〈表 I - 11〉 輸出入承認 免除對象 物品 中 稅關長이 確認하는 輸出入 物品 | 49 |
| 〈表 II - 1〉 韓國의 關稅率政策 變遷 推移 要旨 | 58 |
| 〈表 II - 2〉 產業別 價格 競爭力 | 61 |
| 〈表 II - 3〉 產業別 非價格 競爭力 | 61 |
| 〈表 II - 4〉 稅率分布圖 國際比較(1987) | 63 |
| 〈表 II - 5〉 우리나라 產業의 國際競爭力 調查結果 | 64 |
| 〈表 II - 6〉 外國의 豫示制 採擇 事例 | 65 |
| 〈表 II - 7〉 交易財의 業種別 內外價格差 | 72 |
| 〈表 II - 8〉 調查品目의 綜合競爭力 分布 | 73 |
| 〈表 II - 9〉 關稅負擔率 推定 結果 | 74 |
| 〈表 II - 10〉 非競爭 原資材 및 1次 加工品의 輸入實績(1994) | 78 |

| | |
|--|-----|
| 〈表 II - 11〉原資材 關稅引下效果 測定 | 79 |
| 〈表 II - 12〉UR의 無稅化 品目 | 80 |
| 〈表 III - 1〉彈力關稅制度의 概要 | 83 |
| 〈表 III - 2〉彈力關稅制度 運營現況(品目數 基準) | 86 |
| 〈表 III - 3〉年度別 반덤핑關稅 賦課 現況(品目數 基準) | 89 |
| 〈表 III - 4〉緊急關稅 運營實績 | 90 |
| 〈表 III - 5〉1996年(上) 調整關稅 適用 品目現況 | 91 |
| 〈表 III - 6〉特別緊急關稅 品目 現況 | 92 |
| 〈表 III - 7〉輸出國에서 問題를 提起한 調整關稅 品目 | 98 |
| 〈表 IV - 1〉關稅 關聯 主要 國際機構 및 協定現況 | 112 |
| 〈表 IV - 2〉GATT 多者間 關稅協商의 內容 | 114 |
| 〈表 IV - 3〉WTO 工產品 讓許範圍(全世界) | 115 |
| 〈表 IV - 4〉우리나라의 WTO 關稅讓許(單位:HS 10單位 基準)... | 115 |
| 〈表 IV - 5〉農產物 讓許比率의 變化 | 115 |
| 〈表 IV - 6〉WTO 開發途上國間의 讓許關稅(例示) | 116 |
| 〈表 IV - 7〉WTO 協定 附屬書 | 117 |
| 〈表 IV - 8〉關稅 關聯 國際協約 現況 | 118 |
| 〈表 IV - 9〉방콕協定 第1次 關稅協商 終結에 따른 讓許現況 | 120 |
| 〈表 IV - 10〉방콕協定 第2次 關稅協商 結果 | 120 |
| 〈表 IV - 11〉GSTP 讓許品目 現況(例示 1996) | 122 |
| 〈表 IV - 12〉通關節次 簡素化를 위한 共同行動計劃 | 123 |
| 〈表 IV - 13〉雙務關稅 協力 國家別 主要會議 議題 | 127 |
| 〈表 IV - 14〉國際協力關稅 運營現況 | 129 |
| 〈表 IV - 15〉UR 妥結이 우리나라 經濟에 미치는 效果 | 130 |
| 〈表 V - 1〉브뤼셀 評價와 GATT의 新評價協約의 比較 | 151 |
| 〈表 V - 2〉關稅評價方法別 運營現況 | 156 |
| 〈表 V - 3〉事後 評價로 인한 增收實績 | 160 |

| | |
|---|-----|
| 〈表 V - 4〉年度別 不誠實業體 指定現況 | 160 |
| 〈表 V - 5〉協約의 ‘課稅價格’에 대한 定義 例示 | 163 |
| 〈表 VI - 1〉關稅減免關聯 國際協約 現況 | 201 |
| 〈表 VI - 2〉關稅減免支援制度 運營 推移 | 205 |
| 〈表 VI - 3〉關稅上 支援制度 推移 및 比重 | 207 |
| 〈表 VI - 4〉關稅減免額 推移(I) | 208 |
| 〈表 VI - 5〉關稅減免額 推移(II) | 210 |
| 〈表 VI - 6〉分野別 關稅減免率 現況 | 213 |
| 〈表 VII - 1〉經濟發展 段階別 輸出用 原材料에 대한 關稅負擔 免除方法 | 227 |
| 〈表 VII - 2〉個別還給과 定額還給의 比較 | 231 |
| 〈表 VII - 3〉相計制度와 還給制度의 差異 | 232 |
| 〈表 VII - 4〉關稅 還給實績 | 233 |
| 〈表 VII - 5〉輸出物量의 增加, 關稅率引下 및 年度別 還給現況 ... | 234 |
| 〈表 VII - 6〉製品原價 中原材料 費用(1993) | 236 |
| 〈表 VII - 7〉製造業에 대한 關稅還給의 效果 | 236 |
| 〈表 VII - 8〉還給申請 所要日數(1995) | 237 |
| 〈表 VII - 9〉輸出業體가 關稅還給을 받는데 所要되는 費用負擔率 (1995) | 238 |
| 〈表 VII - 10〉年度別 定額還給比率 | 238 |
| 〈表 VII - 11〉電算資料에 의한 還給實績 | 242 |
| 〈表 VIII - 1〉中小製造業體에 대한 關稅分割納付制度 比較 | 248 |
| 〈表 VIII - 2〉關稅分割納付 承認實績 | 255 |
| 〈表 IX - 1〉保稅區域의 種類 | 265 |
| 〈表 IX - 2〉保稅區域 現況(1996年 1月 4日 現在) | 267 |
| 〈表 IX - 3〉年度別 他所藏置 許可現況 | 269 |
| 〈表 IX - 4〉關稅行政 與件變化(II) | 270 |

| | |
|--|-----|
| 〈表 IX - 5〉自律管理 保稅區域 現況(1995年 12月 31日 現在) ... | 271 |
| 〈表 IX - 6〉保稅運送業者 現況 | 275 |
| 〈表 IX - 7〉滯貨發生 및 在庫現況 | 279 |
| 〈表 IX - 8〉外貨稼得率 | 286 |
| 〈表 X - 1〉主要國의 産業被害救濟機關 比較 | 291 |
| 〈表 X - 2〉産業被害 提訴・處理現況 | 302 |
| 〈表 X - 3〉産業被害救濟要請 各 事例別 調查團 構成 現況 | 305 |
| 〈表 X - 4〉公聽會 參席者 現況 | 306 |
| 〈表 XI - 1〉不服請求 提起趨勢 | 308 |
| 〈表 XI - 2〉不服請求 認容率 趨勢 | 309 |
| 〈表 XII - 1〉워드프로세서 및 情報處理分野 資格證 加算比率 | 328 |
| 〈表 XII - 2〉關稅士 資格 取得形態別 開業 現況 | 329 |
| 〈表 XII - 3〉關稅士 年度別 開業現況 | 330 |
| 〈表 XII - 4〉關稅士 年齡別 開業現況 | 330 |
| 〈表 XII - 5〉稅關別 登錄 關稅士 (開業)現況 | 337 |
| 〈表 XII - 6〉關稅士 報酬料率表 | 339 |
| 〈表 XII - 7〉複合運送周旋業 現況 | 342 |
| 〈表 XII - 8〉海上貨物運送周旋業 現況 | 342 |
| 〈表 XIII - 1〉最近 密輸의 類型 | 348 |
| 〈表 XIII - 2〉關稅行政罰의 要旨 | 350 |
| 〈表 XIII - 3〉通告處分 基準 | 353 |
| 〈表 XIII - 4〉密輸檢舉 實績 | 354 |

圖 目 次

| | |
|--|-----|
| [圖 I-1] 輸入通關節次圖(I) | 18 |
| [圖 I-2] 輸出通關節次圖(I) | 30 |
| [圖 I-3] 輸入免許制下에서의 品目別 通關所要時間 | 35 |
| [圖 I-4] 輸入免許制下에서의 用途別 通關所要時間 | 35 |
| [圖 I-5] 輸入通關節次圖(II) | 37 |
| [圖 I-6] 納付節次 比較 | 39 |
| [圖 I-7] 保稅區域 搬入 및 保稅運送 節次 比較 | 39 |
| [圖 II-1] 關稅政策의 目的이 財政收入일 境遇 | 68 |
| [圖 II-2] 關稅政策의 目的이 產業保護일 境遇 | 70 |
| [圖 VII-1] 現行 關稅還給 制度의 利用現況 | 233 |
| [圖 IX-1] 輸入通關節次圖(I) | 259 |
| [圖 IX-2] 輸出通關節次圖(II) | 259 |
| [圖 IX-3] 從前制度: 入港後 保稅運送申告·免許制 → 制約的인 保稅運送制度 | 272 |
| [圖 IX-4] 保稅區域 搬入 및 保稅運送 節次 比較 | 273 |
| [圖 IX-5] 保稅區域 電算網 | 282 |
| [圖 IX-6] 保稅貨物 情報 시스템 | 283 |
| [圖 X-1] 輸入急增으로 인한 產業被害救濟 節次 | 294 |
| [圖 XI-1] 租稅救濟制度의 分流 | 310 |
| [圖 XI-2] 關稅에 관한 爭訟節次 | 311 |
| [圖 XI-3] 租稅救濟制度 比較 | 312 |

I. 現行 輸出入通關制度의 運營上 問題點, 政策課題 및 改善方向

－輸出入申告制를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한 制度 改善 方向을 中心으로－

1. 問題의 提起

物流難은 누구보다도 政府가 나서서 풀어야 한다. 現在 우리의 物流問題를 푸는 가장 절실한 課題는 統合效率을 높이는 일이며 이는 政府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生産코스트의 하나로서만 接近해 왔던 物流問題가 이제는 하나의 서비스상품으로까지 認識해야 할 時代가 왔다. 이는 특히 物流問題의 解決을 社會間接資本(SOC) 확충 같은 하드웨어적 시각에서 보지 않고 陸運, 海運과 航空運輸 등 物流를 함께 처리하는 運營시스템의 開發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시각에서 봤을 때 납득이 가는 얘기다. 빠르고 싸고 편리한 物流서비스가 개발되어 우리의 2차산품과 결합됐을 때 輸出品의 競爭力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의 물류중심기지로써 부수적 이익도 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經濟活動의 重要費用 요소인 物流 및 流通費用의 최소화는 國家競爭力 提高의 최고 관건으로서 그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物流費用의 최소화는 도로·항만 등의 사회자본(Infrastructure)의 확충이라는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改善도 중요하지만 制度的 側面에서 物流의 원활한 흐름을 억제하는 제반요소를 과감히 제거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改善은 큰 費用의 投資없이 物流費用을 최소화시켜 國家競爭力을 強化시킬 수 있는 實效性 있는 方法이다.

그 동안의 關稅行政은 다른 行政分野에 비하여 國際化·先進化의 必要性이 컸고 關稅行政 當局도 이에 적극 대응하여 왔다고 본다.

關稅行政이 國家間에 이동되는 사람과 貨物을 對象으로 하는 業務라는 특성 때문에 국가별로 關稅制度和 通關節次가 다른 경우 貿易沮害要因으로 作用하게 된다. 따라서 通關制度·品目分類·關稅評價 등 諸般 關稅行政制度가 WCO, GATT 등을 통한 國際關稅協力을 통하여 國際적으로 標準化·統一化되고 있다. 이러한 關稅行政의 國際性 때문에 美國·EU 등 主要 交易 相對國은 끊임없이 우리나라 通關節次에 대한 改善要求를 해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그간 많은 改善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通關所要時間 등을 國際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길고 또 관련 비용도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關稅廳에서 표본 조사한 資料에 의하면 輸入通關 所要時間을 入港에서부터 物品搬出까지의 期間으로 보면 1994年 3月 基準時 先進國들보다 4~6배 더 많은 시간이 所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物流費用 側面에서 볼 때 輸出額 대비 우리나라의 物流費가 17%(미국 7%, 일본 11.3%)에 달하는 것으로 調查되었다. 물론 이러한 費用은 運送·保管·荷役·船積 등 모든 費用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모습은 그 동안 汎政府的으로 法令과 制度를 광범위하게 改善하여 企業活動을 가로막는 規制를 緩和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불편 없이 企業活動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政府은 1995年 12月 關稅法을 改正하여 輸出入 免許制를 輸出入申告制로 전면 轉換하고 保稅運送制度를 획기적으로 簡素化(許可制를 申告制로 轉換)하여 輸入物品의 경우에는 入港 즉시 生産現場 투입가능 體制로 轉換되었고 輸出物品의 경우에는 성실한 대부분의 輸出業體는 保稅運送 및 檢査省略으로 원활한 物流흐름을 통한 早期輸出 船積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行政節次 簡素化를 통한 物流흐름의 원활화로 通關所要時間이 從前 平均 15日에서 2~3日로 크게 縮小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制度만 바꾼다고 해서 당초 목표대로 通關節次가 저절로 간소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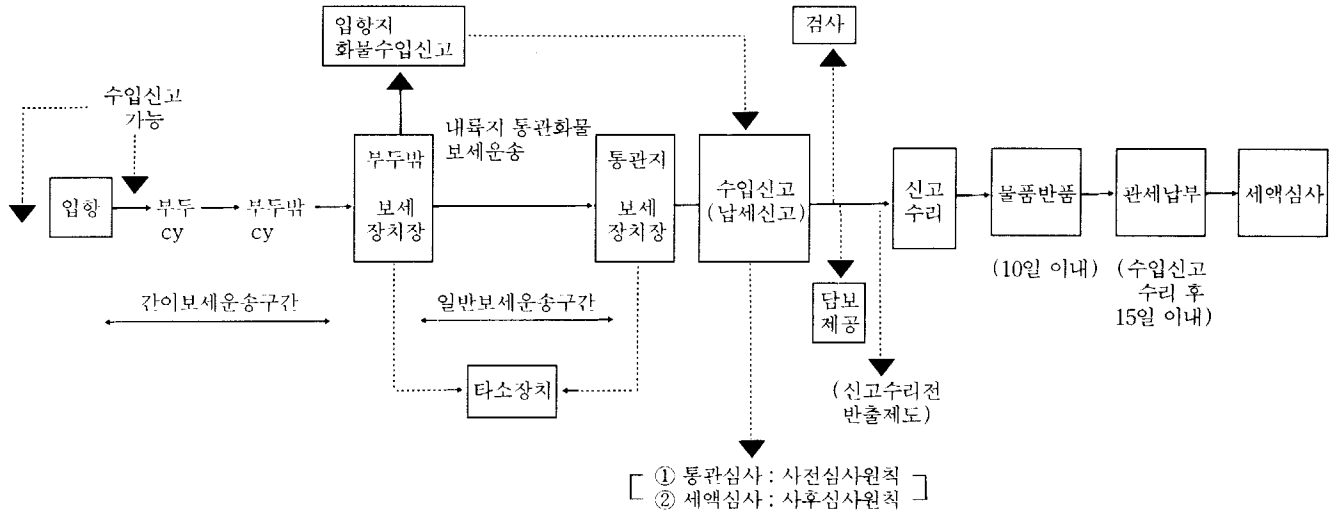
通關節次에 따르는 規制 緩和를 함으로써 輸出入物品의 흐름을 促進하고자 하는 政策目標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하여서는 輸出入을 하는 業體에서도 同 制度 變化를 認識하고 이에 부응하여 通關 관련 會社組織의 再編成이 필요하고 節次 簡素化에 따른 納稅道義의 水準 또한 크게 提高되어야 할 것이며 關稅行政當局에서도 物流흐름의 원활화라는 政策目標를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한 政策實現 意志가 重要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우리나라 通關節次의 現況을 살펴보고 輸出入申告制를 어떻게 하면 가장 效率的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改善方向에 중점을 두어 論議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의 輸出入 通關制度 運營現況

輸入通關制度

가. 輸入通關節次의 一般적 흐름

[圖 I - 1] 輸入通關節次圖(I)



나. 輸入申告 前 稅關便宜制度

1) 品目分類의 事前回示制度

가) 意義

品目分類의 事前回示制度라 함은 輸出入物品이 어떤 品目에 分類되는지, 즉 關稅率表의 어떤 品目番號에 해당되는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자기가 輸出入하고자 하는 物品의 品目分類를 事前에 確實히 하여 稅率과 稅額을 미리 알아두고자 할 경우에 關稅廳長에게 質疑하여 回答을 받는 制度를 말한다.

나) 事前回示書의 效力

稅關長은 輸出入申告된 物品이 事前回示申請人에게 通知한 物品 또는 高시된 物品과 동일한 때에는 그 通知 또는 高시된 內容에 따라 品目分類를 하여야 한다(關稅法 제7조의 2 제4항). 輸出入申告를 할 때에 事前回示 質疑者에게 交付된 事前回示書를 제출하는 경우 稅關長은 輸出入申告人 또는 納稅義務者와 質疑者가 일치하고 輸出入申告된 物品이 事前回示書上의 物品과 同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同一 物品을 輸入하는 모든 者에게도 品目分類를 확대 적용한다.

〈表 I - 1〉 品目分類 事前回示 現況

(單位: 件)

| | 1993 | 1994 | 1995 |
|---------|-------|------|-------|
| 關稅中央分析所 | 1,063 | 906 | 1,004 |
| 關稅廳 鑑定課 | 67 | 68 | 59 |

資料: 關稅中央分析所 및 關稅廳.

2) 課稅價格의 事前審査制度

가) 事前審査要請을 할 수 있는 경우

納稅申告를 하여야 할 者가 課稅價格決定의 基礎가 되는 事項으로서

① 當該 輸入物品의 大가로서 購買者가 실제로 支給하였거나 支給하여야 할 價格을 算定함에 있어서 더하거나 빼야 할 金額 ② 去來價格을 當該 物品의 課稅價格으로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첫째, 當該 物品의 處分 또는 使用에 制限이 있는 경우 둘째, 當該 物品에 대한 去來의 成立 또는 價格의 決定이 金額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影響을 받는 경우 셋째, 當該 物品의 輸入 後에 전매·처분 또는 使用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直接 또는 間接으로 販賣者에게 歸屬되는 경우 넷째, 購買者와 販賣者間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特殊關係가 있어 그 關係가 當該 物品의 價格에 影響을 미친 경우(關稅法 제9조의 3 제3항)에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③ 기타 課稅價格決定의 基礎가 되는 重要事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價格申告 前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書類(關稅法 시행령 제4조)를 갖추어 關稅廳長 또는 稅關長에게 미리 審査하여 줄 것을 申請할 수 있다.

나) 事前審査期間

事前審査要請을 받은 關稅廳長 또는 稅關長은 이를 審査하여 1月 以內에 課稅價格 事前審査書를 申請人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다) 事前審査書의 效力

稅關長은 關稅의 納稅義務者가 事前審査書에 의하여 納稅申告를 한 경우에 當該 納稅義務者와 課稅價格 事前審査 申請人이 일치하고 輸入申告된 物品 및 그 價格申告가 事前審査書上의 內容과 同一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定하는 特別한 사유가 없는 한 事前審査書의 內容에 따라 課稅價格을 決定하여야 한다.

3) 輸入申告 前의 物品確認

輸入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輸入申告를 하고자 하는 物品에 대하여 輸入申告를 하기 전에 當該 物品을 確認하여 課稅標準, 稅率 및 稅額 등을 確定할 수 있다(關稅法 제140조 제3항).

이와 같이 輸入申告를 하기 前에 貨主가 輸入物品의 品目分類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또는 其他의 사유로 保稅區域 등에 藏置되어 있는 現品을 確認하고자 할 때에는 稅關에 申告 前 物品確認 申請을 하여야 하며 貨主의 物品確認은 稅關職員의 入會下에 행하며 同 確認事項을 貨物管理臺帳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輸入申告

1) 輸入申告人

關稅法上 輸入의 申告를 할 수 있는 者는 貨主, 關稅士, 通關法人 및 關稅士法人으로 規定되어 있다(법 제137조의 3).

2) 輸入申告時期

從前에는 輸入申告의 時期는 當該 物品이 藏置場所에 藏置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稅關長에게 申告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5年 12月 關稅法 改正을 통하여 1996年 7月 1日부터 輸入申告는 入港 後부터 할 수 있도록 하였다(關稅法 제138조).

따라서 入港 後 保稅區域 搬入 前에 輸入申告하여 申告受理가 되면 物品을 保稅區域에 藏置하지 않고 부두에서 직접 搬出할 수 있도록 하여 物流積滯를 解消하고 迅速通關이 可能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輸入申告는 入港 後 輸入申告가 원칙이겠으나 輸入하고자

하는 物品의 迅速通關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定하는 바에 따라 當該 物品을 船(機)積한 船舶 또는 航空機가 入港하기 前에 輸入申告를 할 수 있다. 入港 前 輸入申告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는 當該 物品을 船(機)積한 船舶 또는 航空機가 同 物品을 積載한 港口 또는 空港에서 出港한 후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出港부터 入港까지의 期間이 短期間인 경우 등 當該 船舶 등이 出港한 후에 申告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出港부터 入港까지의 期間이 長期間인 경우 등 當該 船舶 등이 出港한 後부터 申告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關稅廳長은 그 申告時期를 合理的으로 調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入港 前 輸入申告된 物品은 우리나라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關稅法 제138조의 2).

그리고 物品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 中 物品을 指定藏置場 또는 保稅藏置場에 搬入하거나 他所 藏置許可를 받아 保稅區域이 아닌 場所에 藏置한 者는 그 搬入日 또는 許可日로부터 30日 以內에 輸入 또는 返送의 申告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① 保稅區域의 物品流通을 원활히 하여 滯貨를 防止하고 ② 輸入物品의 國內流通을 신속히 하여 ③ 市場의 安定 ④ 關稅의 適期 徵收를 目的으로 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輸入物品 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物品을 前述한 期間 內에 輸入 또는 返送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課稅價格의 100분의 2에 相當하는 金額의 範圍 內에서 加算稅를 徵收한다. 이는 일종의 過怠料의 성격을 지닌 것인데 현재 對象物品을 지정한 것은 없다.

또한 稅關長은 入港 前 輸入申告를 한 物品에 대하여 物品檢査의 실시를 決定한 경우에는 輸入申告를 한 者에게 이를 通報하여야 한다. 이 경우 檢査對象으로 決定된 物品은 輸入申告한 稅關의 管轄保稅區域(他所藏置의 許可를 받은 경우를 包含한다)에 搬入되어야 한다. 만약 檢査對象으로 決定되지 아니한 物品에 대하여는 入港 前에 그 輸入申告를 受理

(단위: %)

| 期 間 經 過 | 加 算 稅 率 |
|----------------------|----------------|
| 가. 申告期間經過 後 20日 內 申告 | 課稅價格 5 /1,000 |
| 나. 申告期間經過 後 50日 內 申告 | 課稅價格 10 /1,000 |
| 다. 申告期間經過 後 80日 內 申告 | 課稅價格 15 /1,000 |
| 라. 申告期間經過 後 50日 經過申告 | 課稅價格 20 /1,000 |

註: 加算稅額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한 通關이 필요한 경우에는 物品入港 前에 輸入申告하고 特別한 사유(檢査對象 등)가 없는 경우 輸入申告畢證을 交付받아 荷役 즉시 物品을 搬出할 수 있도록 하여 物流積滯를 解消하고 業界를 支援하도록 하였다.

라. 通關審査

1) 審査內容

輸入申告된 物品에 대하여 輸入審査 擔當稅關公務員은 申告受理 前에 다음 事項 등을 審査하여 申告受理 여부를 決定한다.

- ① 輸入承認事項과 輸入申告事項의 일치 여부(1997年 1月 1日부터는 輸入承認書를 稅關에 提出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審査할 필요가 없음)
- ② 對外貿易法令 및 其他 法令에 의한 條件의 具備 與否
- ③ 課稅價格의 正確 與否
- ④ 稅番, 稅率, 稅額의 正確 與否
- ⑤ 分析依賴 必要性 有無
- ⑥ 기타 輸入物品의 通關을 위하여 필요한 事項

審査 결과 具備書類의 未備·內容 相異 등으로 通關을 許容할 수 없는 경우에는 通關을 保留하고 該當 書類의 訂正 등 補完을 요구하며, 輸入

申告의 主要事項을 虛僞로 申告하였거나 關稅法 및 타법령에서 금지된 物品을 輸入한 경우 등 犯則嫌疑가 있을 때에는 審理依頼를 하게 된다.

2) 輸入承認事項의 變更

輸入物品은 원칙적으로 輸入申告時에 對外貿易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發給받은 輸入承認書を 제출하여 정당하게 承認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때로는 輸入承認書에 기재된 事項이 실제로 輸入되는 物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輸入承認書의 기재사항을 실제의 輸入事項과 부합되도록 수정하여야 通關이 되는데 그 수정은 당초의 輸入承認書 發給機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교적 경미한 事項에 대하여는 稅關長이 그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通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稅關長이 輸入承認事項을 變更할 수 있는 것은 ① 品目分類番號 및 品名(輸出入公告 또는 統合公告에서 輸入이 制限되지 아니하는 品目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는 品目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과 ② 規格 및 重量(輸出入公告 또는 統合公告에서 輸入이 制限되지 아니하는 品目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는 品目으로 변경된 경우로서 변경하여도 관계 법규에 의한 제한조치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單價·金額 및 基本稅率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있다.

한편 稅關長은 輸出入公告 또는 統合公告에서 輸入이 制限되는 品目이거나 輸入이 制限되는 品目으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동 제한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對外貿易法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輸入者로부터 輸入承認事項 中 規格, 重量, 品目分類番號 및 品名에 대한 變更承認申請을 받아 이를 확인한 후 承認할 수 있다.

다만, 輸入物品에 대한 檢査 및 심사결과 輸入承認 事項과 申告事項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稅關長의 承認事項 변경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事項에 대하여는 當該 輸入承認書의 變更承認을 要求하여야

한다.

이러한 輸入承認 事項의 變更은 1997年 1月 1日부터 稅關에 輸入申告 時 輸入承認書 제출이 필요 없도록 1995年 12月 改正 關稅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997年부터는 輸入承認 事項의 변경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마. 物品檢査

物品檢査는 輸入申告物品의 性狀, 數量, 統計分類 및 關稅率表上의 適用稅番·稅率을 확인하는 現物確認 行爲를 의미한다. 物品調査의 目的은 申告物品의 品名, 性狀, 用途 등을 확인하여 關稅率表의 적용을 정확히 하여 關稅 등의 부과를 정확히 하며 각종 법령에 의한 輸入禁止, 許可, 承認 등에 관한 事項을 공정하게 執行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바. 輸入申告 受理 및 物品搬出

1) 輸入申告 受理(畢證交付) 後 貨物搬出 및 擔保提供

特別한 사유가 없는 경우(稅關檢査 省略 對象, 法定要件 具備 등)에 는 輸入申告 즉시 申告畢證을 交付하여 즉시 物品을 搬出할 수 있도록 하여 輸出入物品의 흐름을 促進하도록 하였다.

稅關長이 輸入申告 受理를 하고 申告畢證을 交付함에 있어 關稅를 納付하여야 할 物品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申告受理 前에 納付하여야 할 關稅에 상당하는 擔保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關稅法 제141조의 2 제2항).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擔保 提供 없이 通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① 이 法 其他 法律 또는 條約에 의하여 關稅의 減免·徵收期間 延長 또는 分割納付의 承認을 할 때 擔保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

- ② 關稅廳長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旅行者携帶品을 納稅告知와 동시에 檢査現場에서 搬出承認한 경우
- ③ 納付할 關稅를 이미 納付한 경우
- ④ 擔保提供을 받지 아니하여도 關稅의 納付에 지장이 없다고 認定하여 大統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擔保提供 省略 對象으로 정한 경우

위 ④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關稅廳長이 정하는 경우에는 광범위한 擔保提供 省略이 可能하도록 하였다(關稅法 施行令 제125조의 2).

- ① 政府機關·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
- ② 최근 2年間 關稅法 違反事實이 없는 輸出入者
- ③ 信用評價機關으로부터 關稅 등 債務不履行이 발생할 위험요소가 없는 일정 등급의 信用評價를 받은 者
- ④ 輸出用 原材料 등 輸入物品의 性質·搬入事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關稅債權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認定되는 物品

2) 輸入申告 受理 前 貨物搬出制度

輸入申告를 한 物品을 關稅法 제1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稅關長의 受理 前에 그 藏置場으로부터 搬出하고자 하는 者는 納付하여야 할 關稅에 상당하는 擔保를 提供하고 稅關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輸入申告 受理 前 搬出이 허용될 수 있는 要件은 ① 완성품의 稅番으로 輸入申告 受理될 物品이 미조립 상태로 分割船積 輸入된 경우 ② 事前稅額 審査對象 物品(賦課告知 對象 物品 포함)으로서 稅額審査에 長時間이 소요되는 경우 ③ 調達基金法에 의한 備蓄物資로 申告된 物品으로서 實需要者가 決定되지 아니한 경우 ④ 其他 稅關長이 輸入申告 受理 前 搬出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한편 輸入申告 受理 前 搬出에 따른 擔保를 제공함에 있어 擔保提供이 생략되는 경우는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輸入하거나 擔保提供을 받

지 아니하여도 關稅의 納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擔保提供 省略 對象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輸入申告 受理 前 搬出承認이 있을 때에는 當該 物品은 承認과 동시에 內國物品이 되며 關稅法에 규정된 期間의 計算에 있어서도 輸入申告 受理 前 搬出 承認을 얻은 경우에는 그 承認日을 輸入申告 受理日로 본다.

사. 關稅의 納付

1) 申告納付 方式과 賦課告知 方式

關稅債權의 確定方法에는 申告納付 方式과 賦課告知 方式의 두 가지가 있다. 申告納付 方式은 納稅義務者가 輸入申告를 할 때에 스스로 課稅標準, 稅率 및 稅額을 결정하여 申告함으로써 納付하여야 할 關稅를 확정하는 方式을 말하고, 賦課告知 方式은 納付하여야 할 稅額을 전적으로 稅關長의 처분에 의하여 확정하는 方式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申告納付 方式을 채택하고 있으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賦課告知 方式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賦課告知 方式을 채택하는 이유는 종래 명목적 申告納付制(稅額納付 前 稅關長의 事前審査)에서 納稅義務者가 스스로 申告納付하면 이에 따라 輸入申告 受理를 하고 物品 搬出 後 稅額審査(事後 稅額審査制度)를 하도록 함에 따라 關稅脫漏 防止를 위해 예외적으로 事前에 稅關長의 稅額審査를 받아야 할 物品을 지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지정된 物品으로는 ① 關稅의 減免을 받고자 하는 物品 ② 關稅의 分割納付를 하고자 하는 物品 ③ 關稅의 滯納中에 있는 者가 申告하는 物品 ④ 關稅廳長이 정하는 基準에 해당하는 不誠實申告人이 申告하는 物品 ⑤ 其他 價格變動이 크거나 關稅廳長이 정하는 稅額審査 前에 申告納付書를 交付하는 것이 부적당한 物品 등이 있다.

2) 納付期間

納稅義務者는 輸入申告가 受理된 날로부터 15日 以內에 當該 稅額을 稅關長에게 納付하여야 한다. 이 경우 納稅義務者는 輸入申告 受理 前에도 當該 稅額을 納付할 수 있다.

아. 事後稅額審査

1996年 12월에 개정된 關稅法에서는 納稅義務者가 스스로 納付할 稅額을 計算하여 申告納付하면 그에 따라 輸入申告 受理를 하고 物品 搬出 後에 稅額의 적정성을 審査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완전한 申告納付制度를 실시하는 이유는 從來 納付稅額을 申告하더라도 稅額納付 前에 稅關長이 다시 稅額을 事前審査함으로써 실질적인 申告納付制가 시행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通關要求에 부응치 못하였으며, 또한 關稅의 課稅標準이 되는 「實際去來價格」은 納稅者의 성실한 申告가 없이는 捕捉이 어렵기 때문에 迅速通關 要求에 부응하고 誠實申告 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완전한 申告納付制度를 導入하였다.

완전한 申告納付制度를 실시함으로써 기대되는 政策效果로는 첫째, 貨主는 物品을 適期에 신속히 通關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誠實 申告納付 풍토의 조성을 도모할 수 있고 둘째, 稅關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稅額을 審査하므로 公平課稅와 適正 徵收를 도모할 수 있으며 셋째, 輸入物品에 대한 精確한 稅額申告를 위하여 關稅士의 機能을 活性化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輸入申告를 受理한 後에 納稅者의 輸入申告가 제대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精밀 檢査하게 된다.

1) 原則

稅關長은 關稅法 제17조 제1항에 의한 納稅申告를 받은 때에는 輸入申告書上의 記載事項과 법의 規定에 의한 確認事項을 審査하되, 申告한 稅額에 대하여는 輸入申告를 受理한 후에 이를 審査한다.

2) 例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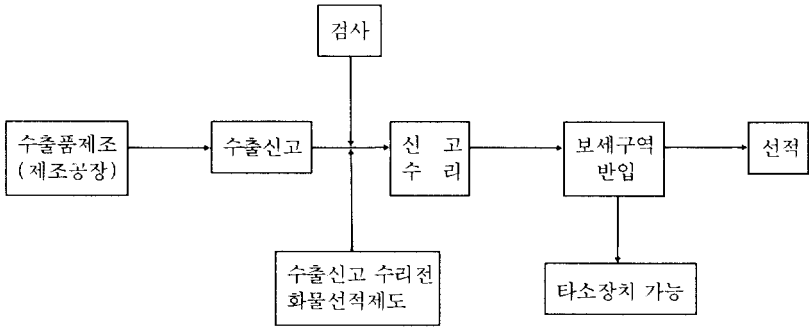
稅關長은 納稅申告한 稅額에 대하여 關稅債權의 확보가 困難하다고 인정되거나 輸入申告를 受理한 後 稅額審査를 하는 것이 不適當하다고 인정되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物品에 대하여는 輸入申告를 受理하기 前에 이를 審査한다. 다만, 아래 ①과 ②의 物品에 대한 課稅價格 審査는 輸入申告 受理 後에 할 수 있다.

- ① 法律 또는 條約에 의하여 關稅 및 內國稅의 減免을 받고자 하는 物品
- ② 關稅法 제36조의 規定에 의하여 關稅의 分割納付를 하고자 하는 物品
- ③ 課稅를 滯納中에 있는 者가 申告하는 物品
- ④ 納稅者의 誠實性 등을 參작하여 關稅廳長이 정하는 基準에 해당하는 不誠實申告人이 申告하는 物品
- ⑤ 物品의 價格變動이 크거나 기타 輸入申告 受理 후에 稅額을 審査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關稅廳長이 정하는 物品

輸出通關制度

가. 輸出通關節次의 一般的 흐름

[圖 I -2] 輸出通關節次圖(I)



나. 輸出申告人

輸出申告人은 輸入申告人과 거의 같으나 1995年 12月 關稅法 改正時에 輸出申告를 할 수 있는 者로 完製品 供給者를 추가하였다. 完製品 供給者는 輸出物品을 船積할 때까지의 業務處理를 조건으로 輸出者에게 物品을 供給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이 직접 輸出申告를 할 수 있게 하였는 바, 주로 中小企業人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다.

다. 通關審査

1) 審査確認

審査者는 申告書類 및 申告畫面을 검토하여 ① 輸出承認事項과 輸出申告事項의 일치여부(1997年 1月 1日부터는 稅關에 輸出申告書を 제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審査할 필요가 없음) ② 對外貿易法令 및 其他 法令에 의한 條件의 具備與否 ③ 輸出物品에 대한 品目分類 番號의 正確性 ④ 其他 輸出物品 通關을 위하여 필요한 事項을 審査한다.

또한 稅關長은 전자서류에 의한 輸出申告書에 대하여는 申告畫面을 검토하여 輸出物品에 대한 品目分類의 正確性 등을 審査하고, 종이서류에 의한 審査 또는 物品檢査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이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이서류 提出對象으로 변경된 사실을 申告人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申告人이 종이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후 製造完了日(檢査 희망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종이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輸出申告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當該 申告資料는 通關시스템에서 自動 削除한다.

2) 輸出承認 事項의 變更

稅關長은 輸出承認事項과 輸出申告事項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項은 輸出物品의 審査 후 이를 正正할 수 있다.

- ① 品目分類 番號 및 品名(輸出入公告 등 또는 統合公告에서 輸出이 제한되는 品目으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② 規格 및 重量(輸出入公告 등 또는 統合公告에서 輸出이 制限되는 品目으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單價 및 金額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稅關長은 輸出入公告 또는 統合公告에서 輸出이 제한되는 品目이거나, 輸出이 제한되는 品目으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同 制限要件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는, 對外貿易法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輸出者로부터 輸出承認 事項 中 規格, 重量, 品目分類番號 및 品名에 대한 變更承認申請을 받아 이를 확인한 후 承認할 수 있다.

이러한 輸出承認事項의 變更은 1997年 1月 1일부터 稅關에 輸出申告

時 輸出承認書 제출이 필요없도록 1995年 12月 改正 關稅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997년부터는 輸出承認事項의 變更問題는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라. 物品檢査

輸出物品에 대한 檢査는 輸出通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事項으로서 輸出檢査의 목적은 輸出物品이 輸出承認書上에 기재된 物品과 同一品名, 同一規格의 物品認可 또는 輸出이 금지된 物品이 아닌가를 확인하고, 當該 輸出物品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을 확인하여 關稅 등 還給額의 산출에 있어서 정확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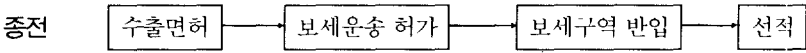
마. 申告受理 및 物品船積

1) 申告受理(申告畢證 交付) 및 保稅區域 搬入義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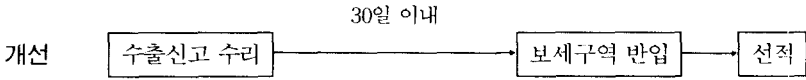
輸出이 申告되면 稅關長은 特別한 사유가 없는 한 申告 즉시 申告畢證을 交付하여 物品을 搬出할 수 있도록 하였다.

從前에 輸出免許를 받은 物品은 外國物品으로 당연히 保稅運送하거나 保稅區域에 藏置되어야 하였으나 輸出保稅運送이 省略(關稅法 제 128조)됨에 따라 輸出申告가 受理된 物品이 保稅區域이 아닌 곳에 藏置되어 稅關統制를 벗어나므로 還給·輸出統計 目的 등으로 輸出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輸出申告日로부터 30日 內에 船積地 保稅區域에 搬入하도록 한 것이다. 이때 保稅區域이 아닌 不開港場에서 직접 船積하는 경우 등에는 他所藏置를 許容할 필요가 있어 輸出申告가 受理된 物品은 他所藏置 許容對象에 신규로 포함시켰다(關稅法 제67조).

※ 輸出物品에 대한 稅關管理



* 輸出免許된 物品은 稅關統制下에 處



* 輸出申告 受理된 物品에 대하여 保稅區域 반입시까지 運送·保管 등을 자유롭게 함.

2) 申告受理 前 貨物船積

輸出하고자 하는 物品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關稅法 제47조 제4항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 稅關長에게 輸出申告의 受理 前 船(機)積承認(申請)書를 提出하고 그 許可를 받아 船舶 또는 航空機에 積載·藏置할 수 있다.

- ① 船積한 후 公認檢定機關의 檢定書(Surveyor Report)에 의하여 輸出物品의 數量을 확인하는 物品(예 : 산물 및 광산물)
- ② 輸出申告의 受理 前 船積이 불가피한 物品으로서 檢査가 생략되거나 船上에서 開場檢査가 가능한 物品
- ③ 物品의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物品 등 輸出申告 受理 前 船積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物品
- ④ 기타 關稅廳長이 별도 定하는 物品

3. 現行 輸出入通關制度의 運營上 問題點, 政策課題 및 改善(實踐) 方向

가. 通關 所要時間 關聯

1) 政策課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物流費는 1995年의 경우 輸出額 대비 17%로서 이는 先進國의 7~1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物流費用이 높은 것은 道路, 港灣 등 SOC 不足에 기인되는 면이 있으나 아직도 매끄럽지 못한 輸出入制度와 節次, 慣行 등에 의해 通關이 遲延됨으로써 발생하는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의 輸出通關은 EDI 실시로 인해 申告 즉시 處理되고 있어 큰 問題가 없으나 輸入通關의 경우에는 그 所要時間을 國際的으로 비교해 보면 1994年 基準時 先進國들보다 4~6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調査되었다.

〈表 I-2〉 輸入通關 所要時間 比較(總括)

| | 韓 國 | 美 國 | 日 本 |
|-------------|---------|-------|---------|
| 入港 → 輸入免許 | 13일 9시간 | 2일 | 4일 20시간 |
| 輸入申告 → 輸入免許 | 8.3시간 | 7.5시간 | 13.1시간 |
| 檢査比率(%) | 30 | 6.7 | 9.7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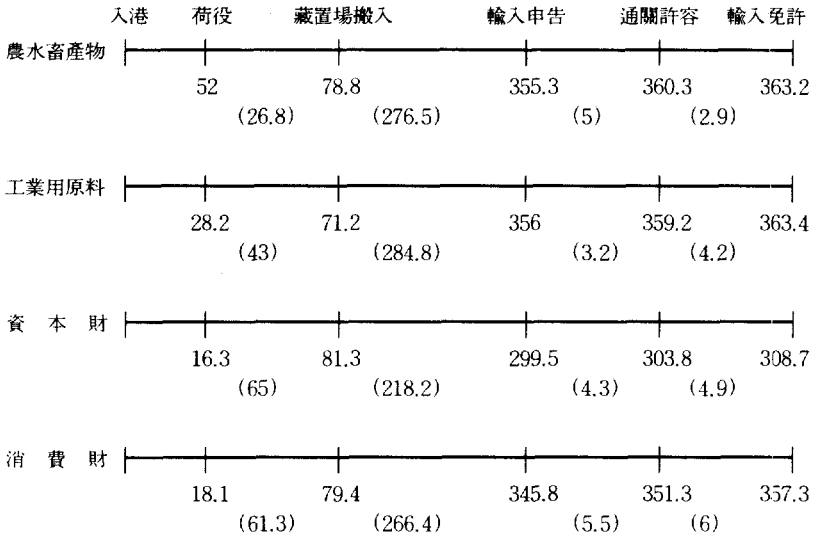
資料：韓國：1994. 3. 14 ~ 3. 19 調査結果

美國：1993年 調査資料(1993. 11 제1차 韓·美 輸入通關 實務委員會에서 미국측이 제공한 자료)

日本：1993年度 調査資料(1993. 11 APEC 회의시 일본측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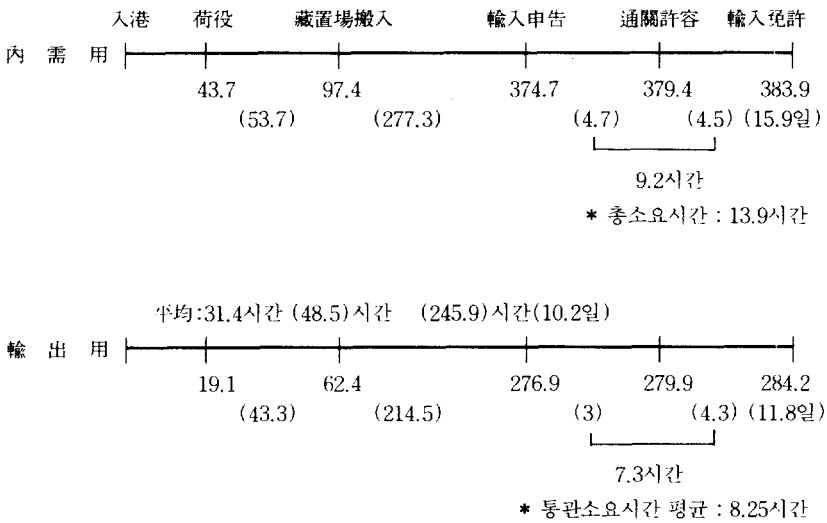
[圖 I - 3] 輸入免許制下에서의 品目別 通關所要時間

(單位: 시간)



[圖 I - 4] 輸入免許制下에서의 用途別 通關所要時間

(單位: 시간)



우리나라의 1995年 交易規模가 2,603億달러에 달해 표면적으로는 2,809億달러를 달성한 中國에 이어 世界 제12위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交易量이 많은 홍콩, 벨기에, 네덜란드 등 3개국은 중계무역항을 지닌 특징으로 總交易의 각각 70%, 25%, 60%가 自國交易量이 아닌 단순 통과물동량인 것으로 밝혀져 실질적인 교역규모로는 우리나라가 世界 제9위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이제 通關制度에 있어서도 우리의 貿易規模에 걸맞게 명실공히 先進國과 견주어 보아 손색없는 制度들을 정비해 나가야 할 시점에 이르렀고, 이에 발맞추어 1996年 7月 1日부터 輸出入免許制를 輸出入申告制로 일대전환하는 등 새로운 通關制度(下記 制度改善 內容 참조)를 도입하였다.

가) 物流促進을 위한 輸出入通關制度 改革內容

(1995年 12月 關稅法 改正, 1996年 7月 1日부터 施行)

① 輸出入免許制를 輸出入申告制로 轉換(關稅法 제137조, 제141조의 2)

- 輸出入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일이 免許하던 制度를 特別한 사유가 없는 경우 申告 즉시 申告畢證을 交付하여 物品을 搬出할 수 있도록 하여 輸出入 흐름을 촉진
- 輸出入을 申告制로 전환하여 關稅制度 전반에 걸쳐 規制緩和 推進

| 從 前 | 改 善 |
|--------------------------------|--|
| 物品을 輸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申告를 하고 免許를 받음 | 物品을 輸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申告를 함(稅關長은 檢査對象 이외에는 즉시 申告受理하여 申告畢證 교부) |

註: 申告制 轉換 및 輸出電算化 등에 따라 申告 즉시 輸出이 가능하므로 제조前 輸出申告制(關稅法 제138조 제2항) 및 一括 輸出申告制(關稅法 제137조의 4) 廢止(現在 同 制度 이용실적 미미)

② 物品이 保稅藏置場에 搬入된 後 輸入申告를 하도록 하던 것을 入港後부터 許容(關稅法 제138조)

—入港 後 保稅區域에 搬入 前에 輸入申告하여 申告受理가 되면 物品을 保稅區域에 藏置하지 않고 부두에서 직접 搬出할 수 있도록 하여 物流積滯 解消 및 迅速通關 가능

| 從 前 | 改 善 |
|--------------------------------------|------------------|
| 輸入申告는 物品이 入港 · 荷役되어 保稅 區域에 藏置된 後 가능 | 輸入申告는 入港 後부터 가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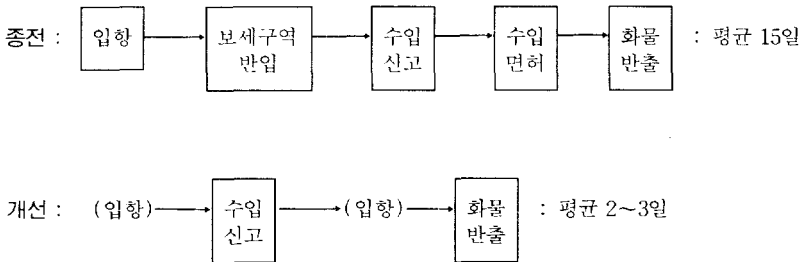
③ 入港 前 輸入申告制 도입 (關稅法 제138조의 3)

—신속한 通關이 필요한 경우 物品入港 前에 輸入申告하고 特別한 사유(檢査對象 등)가 없는 경우 畢證을 交付받아 荷役 즉시 物品을 搬出하도록 하여 物流積滯 解消 및 業界支援

| 從 前 | 改 善 |
|--|-------------------------|
| 物品이 保稅區域에 藏置된 後 申告許容 ○入港 前에 輸入豫定申告를 하고 物品 도착 後 本 申告 및 免許 가능 | 入港 前에도 輸入申告 및 畢證交付 가능 |

註 : 輸入豫定申告制(關稅法 제138조의 2)는 폐지

[圖 I - 5] 輸入通關 節次圖(Ⅱ)



(신고필증교부)

〈表 I - 3〉 輸出入 通關 件數

(單位：千件)

| | 1992 | 1993 | 1994 | 1995 |
|-----|-------|-------|-------|-------|
| 輸 出 | 1,873 | 2,007 | 2,205 | 2,362 |
| 輸 入 | 1,912 | 2,128 | 2,515 | 2,806 |

資料：財政經濟院.

〈表 I - 4〉 輸出入 物量 增加와 國家物流 費用

(單位：千噸, 10億원)

| | 1992 | 1993 | 1994 |
|---------|---------|---------|---------|
| 輸 出 物 量 | 66,885 | 65,773 | 77,275 |
| 輸 入 物 量 | 227,644 | 239,004 | 258,780 |
| 物 流 費 用 | 36,826 | 41,827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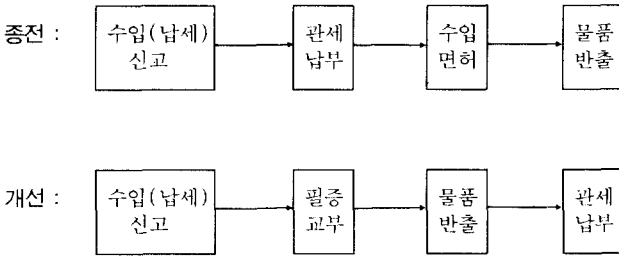
資料：財政經濟院.

④ 關稅의 事後納付制를 導入(關稅法 第17條, 第141條의 2)

- 物品搬出 後 關稅를 納付하게 하여 輸入節次와 納稅節次를 분리함으로써 신속통관 및 納稅者 편의 도모
- 物品搬出 前 擔保제공은 신용도에 따라 대폭 생략하여 擔保제공 없는 완전한 事後 納付制를 지향(關稅法 施行令 및 關稅廳 例規에서 규정)

| 從 前 | 改 善 |
|---|--------------------------------------|
| 輸入申告(納稅申告) 後 15日 內에 關稅를 納付하고 輸入免許를 받아야 物品搬出 | 輸入申告·畢證交付 後 15日 內에 關稅納付(物品搬出 前 擔保제공) |

[圖 I -6] 納付節次 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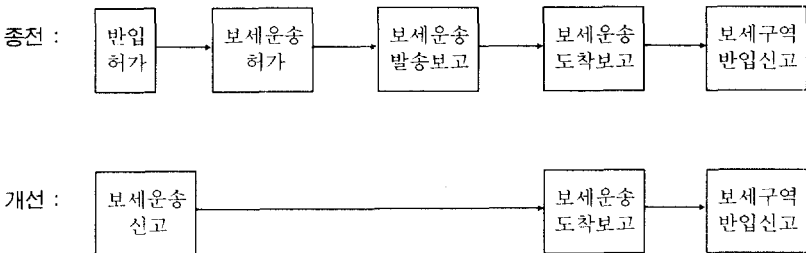
⑤ 保稅區域 搬入 및 保稅運送의 許可制를 申告制로 전환

(關稅法 제96조, 동법 제98조의 2, 제108조, 제113조, 제128조, 제129조)

- 保稅區域 搬入 및 運送節次를 간소화하여 物流를 촉진하고 輸入業者의 편의증진

| 從 前 | 改 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保稅倉庫, 保稅工場, 保稅展示場, 保稅建設場 반입시와 保稅 운송시 稅關長의 許可 필요 · 保稅 운송시 發送報告 및 到着報告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申告만으로 搬入 및 運送 가능 · 保稅運送 發送報告 생략 |

[圖 I -7] 保稅區域 搬入 및 保稅運送 節次 比較



〈表 I-5〉 輸入物品의 保稅運送 實績

(單位: 千件, 千噸)

| | | 1992 | 1993 | 1994 |
|-----|--|--------|--------|--------|
| 건 수 | | 698 | 692 | 762 |
| 중 량 | | 11,030 | 14,106 | 16,143 |

資料: 財政經濟院.

이상과 같은 通關節次의 일대 전환으로 輸入通關 소요시간은 入港에서 輸入申告 受理까지 從前 약 14日 소요되던 것이 2~3日로 短縮될 것으로 豫想된다.

이와 같이 從前 약 14日 소요되던 輸入通關 소요시간이 그 4분의 1인 2~3日로 단축될 경우 대부분의 輸入通關은 輸入申告 즉시 受理되어 輸入貨物 入港 後 荷役과 동시에 工場으로 이송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가 마련되게 된 것이다.

〈表 I-6〉 制度改善 後 輸入通關所要 時間 比較

| 從 前 | | 改 善 | |
|----------------------------------|------------------|--|----------------------------|
| 관 련 제 도 | 소 요 시 간 | 관 련 제 도 | 소 요 시 간 |
| 免許制度 · 入港→輸入免許 · 輸入申告→輸入免許 | 13일 9시간 8.3시간 | 輸出入申告制 · 入港→輸入申告受理 · 輸入申告→輸入申告 受理 | 2~3일 즉시(수입검사 품목은 제외) |
| 檢査比率 | 30% | 檢査比率 ¹⁾ | 10% |

註: 1) 1995年 基準 檢査比率은 20% 수준이나 앞으로 10% 수준으로 인하 전망.

이상과 같이 制度改善에 따른 소요시간 단축효과는 획기적인 것이긴 하지만 과연 輸入通關 소요시간이 당초목표대로 2~3日로 축소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輸入通關節次만을 고쳤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SOC 확충, 陸運, 海運, 航空運輸 등 다른 분야에서도 節次가 改善되고 시설이 확충되는 등 다함께 총체적으로 改善되어야 달성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된다.

關稅分野 이외의 분야는 별도의 문제로 하더라도 輸入通關 소요시간이 목표대로 短縮될 수 있도록 關稅行政 執行當局에서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實踐方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 實踐方案

輸入物品 中 검사생략 물품의 경우에는 부두에서 荷役과 동시에 生産現場 投入可能體制로 전환되도록 하여 檢査物品을 포함한 모든 輸入物品의 平均通關 소요시간을 2~3일로 단축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關稅行政上 實踐方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가) 關稅行政 運營原則의 일대전환

그 동안 대체적으로 關稅行政의 運營原理는 한 건의 違反事項을 적발하기 위해 전체를 규율하는 方式으로 運營되어 迅速通關에 장애요인으로 되어 왔으므로 앞으로는 ① 「포지티브」體系는 「네가티브」體系로 ② 對物管理體系는 對企業管理體系로 ③ 免許承認體系는 申告體系로 ④ 事前管理體系는 事後管理體系로 ⑤ 全數調查體系는 標本調查體系로 ⑥ 물류정지상태에서의 通關體系는 물류흐름상태로의 通關體系로 일대전환을 해야 한다. 이 중 많은 부분이 새로운 방향으로 이미 이행되어 가고 있으나 앞으로 보다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나) 「輸出入通關制度 先進化 企劃團」의 構成 運營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교역규모가 세계 제9위인 것으로 밝혀져 있으므로 이에 걸맞는 輸出入通關制度를 지속적으로 改善·發展시켜 나가기 위하여서는 財政經濟院, 關稅廳, 研究機關 및 貿

易協會 등 관계자로 구성된 輸出業通關 先進化 企劃團을 構成·運營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제안된 改善事項들은 매년 법개정을 통하여 반영해 나갈으로써 우리 通關制度를 보다 더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 制度改善 目標管理制 導入

通關制度和 관련된 분야별 점검지표를 개발하여 규제완화 효과 내지 通關 신속화 효과를 계량화하여야 할 것이다.

계량화를 위하여 생각할 수 있는 기본지표로서는 輸出入申告로부터 受理時까지의 총소요시간, 보조지표로서 수출검사비용, 수입검사비용, 내장통관비용, 부두직통관 이용률 등을 稅關別·月別로 統計 生産하여 상호비교함으로써 稅關間의 이행상황 파악을 쉽게 하고 期間經過에 따라 目標比率를 높이는 등 目標管理體系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輸出入免許制에서 申告制로 전환함에 따라 부두직통관이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도록 처음에는 全體 輸入件數의 80%, 다음 해에는 90% 등의 目標管理制를 도입해서 동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 「入港·搬出」所要時間 定期調査

부산 등 특정 稅關을 標本對象으로 분기별 1회씩 5~10日 期間中의 모든 輸入申告 物品을 대상으로 「入港-荷役-藏置場搬入-輸入申告-檢査-受理」까지의 단계별 소요시간을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분기별 비교를 통하여 전체적인 輸入貨物의 物流를 진단하고 關稅當局의 주도 하에 애로부문에 대한 부문별 改善方向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검역 등 타부처 소관인 경우 關稅廳의 「通關制度 改善協議體」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 關稅公務員 企業派遣 調查 實施

그 동안의 行政規制 緩和作業은 行政서비스의 利用者인 企業者보다는 供給者(公務員) 觀點에서 기획되고 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몇 해 전 商工部 시절에 同 部處는 大企業·協力業體·中小業體를 대상으로 公務員을 派遣·研修·調查를 한 바 있었다. 이의 성과로 輸出入節次에 대한 업계의 애로를 피부에 와닿게 실감하였고 輸出承認制 폐지 등 制度改善도 많이 이루었다.

따라서 關稅分野도 通關·保稅·監視·稅務 등 분야별로 貿易協會, 全經聯의 협조를 받아 기업과견 조사를 시행하고 그 성과가 큰 경우 報告會를 개최하는 方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바) 美國·EU 등 輸出入通關制度 比較

정부측(財政經濟院, 關稅廳)과 全經聯, 貿易協會 등 민간이 합동으로 先進國의 세세한 稅關節次를 정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先進國의 稅關 中心이 아니라 企業 中心인 關稅行政을 제대로 습득하여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 벤치마킹(Benchmarking) 技法의 導入

關稅行政의 質 향상을 위하여 벤치마킹(Benchmarking) 기법을 도입하여 現行의 分野別 業務改善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나. 輸入審査制度 關聯

1) 問題點

우리나라 輸出入通關節次가 先進國에 비해 所要期間이 긴 것은 높은 檢査比率과 통합공고상의 特別法에 의한 輸入管理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① 우선 輸出入 檢査比率을 살펴보면 수출입물동량이 지난

6年間(1990年~1995年) 1.93배, 수출입신고건수는 1.47배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輸出入申告 업무를 담당하는 稅關人力은 1.01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輸出入物品의 檢査比率은 1995年の 2분의 1 수준으로 줄어야 檢査의 효율을 유지할 수 있어 稅關人力에 비해 아직도 너무 높은 檢査比率(輸入: 약 20%선, 輸出: 약 3%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이와 같은 높은 檢査比率은 稅關次元에서 物流의 흐름이 지체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하겠다.

〈表 I - 7〉 關稅行政 與件變化(I)

| | | 1970(A) | 1980 | 1990 | 1995(B) | B/A |
|--------------|-----|---------|-------|-------|---------|------|
| 수출입 (억달러) | 수 출 | 8 | 175 | 650 | 1,251 | 156배 |
| | 수 입 | 20 | 223 | 698 | 1,351 | 68배 |
| | 계 | 28 | 398 | 1,348 | 2,602 | 93배 |
| 관세청 인원(명) | | 1,890 | 3,467 | 4,427 | 4,472 | 2.4배 |

資料: 財政經濟院.

〈表 I - 8〉 우리나라의 最近 輸出入 檢査比率

(單位: %)

|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1~2월) |
|-----------------------|------|------|------|------|------|-------------|
| 수 출 | 11.0 | 9.6 | 8.7 | 4.7 | 2.8 | - |
| 수입(C/S) ¹⁾ | - | - | 30.3 | 31.4 | 21.8 | 17.8 |

註: 1) C/S: Cargo Selectivity

資料: 關稅廳.

〈表 I - 9〉 主要國의 輸入檢査 比率(1993)

(單位: %)

| | 한 국 | 미 국 | 일 본 | EU | 호 주 | 대 만 |
|------|-----|-----|------|------|------|-----|
| 검사비율 | 30 | 20 | 12.5 | 2.10 | 9.75 | 10 |

資料: 財政經濟院.

② 다음으로 關稅法 제145조에 의하여 통합공고상의 特別法에 의한 輸入管理를 살펴보면 稅關長은 輸出入에 있어서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許可, 承認,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物品에 대하여 稅關長이 輸出入申告受理時 그 許可, 承認,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物品에 따라 규제하는 법령이 많아 이를 전부 承認할 수 없으므로 稅關長이 확인하여야 할 物品과 確認方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토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通關時 稅關長이 확인하여야 할 物品은 아래 <表 I-10>과 같다. 稅關에서 이러한 輸入 관련 각종 特別法(44개)上 구비요건을 확인하고 있어 輸入審査 및 通關遲延 요인이 되고 있다.

<表 I-10> 輸出入承認 對象物品 中 稅關長이 確認하는 輸出入 物品

| 물 품 | 구비서류 (확인사항) | 비 고 |
|--|--|---|
| (1) 수출검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품 | ○ 해당 검사관의 장이 발행한 검사합격증(난, 자체검사 허가업체는 자체검사 성적서) | |
| (2) 농산물검사법 제3조에 해당하는 물품 | ○ 국립농산물 검사소장의 검사 합격증 | ○ 수출물품에 한함(수입 물품의 경우에는 부관부 신고수리후 입항지 관할 농산물 검사소, 지소 또는 출장소에 통보) |
| (3) 수산물검사법 제3조에 해당하는 물품 | ○ 국립수산물검사소장의 검사 합격증 | |
| (4) 잠업법 제7조에 해당하는 물품 | ○ 시·도 잠업검사소장의 검사 합격증 | ○ 수출물품에 한함(수입 물품의 경우에는 부관부 신고수리후 입항지 관할 농산물 검사소, 지소 또는 출장소에 통보) |
| (5) 식품위생법 제16조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기구, 용기, 포장류 등 | ○ 국립검역소장의 식품수입 신고필증 | ○ 수입물품에 한함 |
| (6) 검역법 제24조에 해당하는 물품 | ○ 국립검역소장의 검역증 | |

〈表 I - 10〉의 계속

| 물 품 | 구비서류 (확인사항) | 비 고 |
|--|--|------------------------|
| (7) 식물방역법 제8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물품 | ○ 국립식물검역소장의 식물 검사합격 증명서 | |
| (8)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1조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 ○ 국립동물검역소장의 동물 검역증명서 또는 축산물검역증명서 | |
| (9) 계량법 제11조의 2, 제18조 및 제24조에 해당하는 물품 | ○ 국립식물검역소장의 식물 검사합격 증명서 | ○ 부관부 신고수리 후 시·도지사에 통보 |
| (10) 공산품 품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검사를 받아야 할 물품 중 통합공고 제65조에 해당하는 물품 | ○ 해당 검사기관의 장이 발행한 확인검사 신청서 사본 | ○ 수입물품에 한함 |
| (11) 약사법 제64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검사를 받아야 할 물품 중 통합공고 제65조에 해당하는 물품 | | |
| ㉠ 통합공고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물품 | ○ 해당검정기관의 장 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이 발행한 통관예정보고서 접수필증 | |
| ㉡ 통합공고 제16조 제5항에 해당하는 물품 | ○ 통관예정보고서 접수필증 및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 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 | |
| (12)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와 자동차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통합공고 '별표 II 품목별 수입요령'에 계기된 물품 | ○ 환경처장관의 자동차 배출가스와 소음에 관한 인증 또는 최초 검사 확인서와 건설교통부장관의 자동차 형식 승인서 | ○ 수입물품에 한함 |
| (13)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기기구 중 통합공고 '별표 II 품목별 수입요령'에 계기된 물품 | ○ 한국전기전자시험검사소장의 검사결과 통지서(기계식 유기기구와 그 기관의 경우) 또는 한국전자유기공업협회장의 검사결과 통지서(프로그램과 그 기관 및 체련용 유기기구와 그 기관의 경우) | ○ 수입물품에 한함 |

<表 I - 10>의 계속

| 물 품 | 구비서류 (확인사항) | 비 고 |
|---|--|--|
| (1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해당하는 물품 중 통합 공고 별표 II에 계기된 물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청장의 형식승인서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 형식승인 면제대상으로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표시사항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㉓의 기호 및 형식승인번호 ② 수입판매업자명 ③ 전압 ④ 정격소비전력 ⑤ 주의사항을 한글로 표기(전열기구류, 전동력 응용기계류, 광원응용 기계기구류, 전자응용 기계기구류, 기타 교류용 기계기구류에 한함) ⑥ 작동기능의 한글표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물품에 한함 |
| (1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2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통합 공고 별표 I, II에 계기된 물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독물질관리협회장의 유독물 수출신고서 ○ 환경처장관의 유독물 수입 품목 등록신청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물품에 한함 |
| (16)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6조에 해당하는 물품 중 통합공고 제7조 제 10호에 해당하는 물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처장관의 화학물질 심사결과 통보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물품에 한함 |
| (17) 전파법 제29조의 5에 해당하는 물품 중 통합 공고 별표 II에 계기된 물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파연구소장의 수입기기 확인서 및 검정합격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물품에 한함 |
| (18)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해당하는 물품 중 통합공고 별표 V에 계기된 물품 (그 가공품을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도지사(권한 위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 포함)의 수출입허가서 | |
| (19) 사료관리법 제12조에 해당하는 물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도지사의 사료성분 등록증 또는 해당 검정기관의 수입사료검정증명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물품에 한함 |

〈表 I - 10〉의 계속

| 물 품 | 구비서류 (확인사항) | 비 고 |
|---|--|--|
| (2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및 고압 가스 안전관리법에 해당하는 고압가스가 충전된 에어졸 제품 |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전 수입추천서 | ○ 수입물품에 한함 |
| (21) 사행행위 등 규제법 제 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 ○ 경찰청장의 사행기구 판매 업허가서와 한국전기전자 시험검사소장의 검사결과 통지서 | ○ 수입물품에 한함 |
| (22) 담배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가 연초종자 및 잎담배 ㉠ 재조담배 | ○ 수입자는 한국담배인삼공사 또는 동 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에 한함 ○ 수출자는 한국담배인삼공사 또는 동 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에 한함 | ○ 수입물품에 한함 ○ 수출물품에 한함 |
| (23) 인삼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가 홍삼류 ㉠ 인삼종자, 수삼, 백삼, 태극삼, 인삼의 껍질, 줄기, 잎, 꽃 | ○ 수출, 수입자는 한국담배인삼공사 또는 동 공사가 지정한 자에 한함 ○ 한국담배인삼공사 또는 동 공사가 지정한 자의 추천 | |
| (24) 자연환경보전법 제26조 및 제27조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가 통합공고 별표Ⅵ에 계기된 물품(그 가공품을 포함) ㉠ 통합공고 별표Ⅶ에 계기된 물품 ㉡ 통합공고 별표Ⅷ에 계기된 물품(그 가공품을 포함) | ○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서 및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 ○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서 및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 ○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서 ○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서 | ○ 수입물품에 한함 ○ 수출물품에 한함 ○ 수입물품에 한함 ○ 수출물품에 한함 |
| (25) 폐기물관리법 제44조에 해당하는 물품 중 통합공고 별표Ⅱ에 계기된 물품 | ○ 지방환경청장의 수입폐기물 재생·이용승인서 | ○ 수입물품에 한함 |

〈表 I - 10〉의 계속

| 물 품 | 구비서류 (확인사항) | 비 고 |
|---|---|------------|
| (26) 공산품품질관리법 제2조에 해당하는 물품 중 통합공고 별표Ⅱ에 계기된 물품(수출용원소재는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표시사항 확인 또는 수입모직물 실수요분 확인서 ○ 표시사항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직물양면 2m 이내마다 제조(가공)자명 또는 수입자명 ② 직물양면 2m 이내마다 혼용률 | |
| (27) 석유사업법 제18조의 2에 해당하는 물품 중 통합공고 별표Ⅱ에 계기된 물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석유품질검사소장의 품질검토 통과서 | ○ 수입물품에 한함 |
| (28)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해당하는 물품 중 통합공고 별표Ⅱ에 계기된 물품(단,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서 | ○ 수입물품에 한함 |

〈表 I - 11〉 輸出入承認 免除對象 物品 中 稅關長이 確認하는 輸出入 物品

| 물 품 | 구비서류 (확인사항) | 비 고 |
|---|---|-----|
| (1)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의 승인이 면제되는 물품 중 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4-2조에 해당하는 물품 나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4-3조에 해당하는 물품 다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1 및 별표 3-2에서 확인·추천·허가 등을 요하는 물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장이 발급한 확인서·추천서 또는 허가서 | |
| (2)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9조에 해당하는 물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무부장관 또는 시장, 도지사 의 허가서 | |

〈表 I - 11〉의 계속

| 물 품 | 구비서류 (확인사항) | 비 고 |
|---|--|----------|
| (3)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해당하는 물품 중 통합공고 별표 V에 계기된 물품(그 가공품을 포함) | ○ 시장, 도지사(권한 위임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 포함)의 수출입허가서 | |
| (4)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및 제21조에 해당하는 물품 | ○ 국방부장관의 허가서 | |
| (5) 잠업법 제7조에 해당하는 물품 | ○ 잠사관총연연구소 소장의 허가서 | ○ 잠종에 한함 |
| (6) 주요 농작물종자법 제9조에 해당하는 물품 | ○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서 | |
| (7) 식품방역법 제8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물품 | ○ 국립식물검역소장의 식품검사 합격 증명서 | |
| (8) 대외부역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의 승인이 면제되는 물품 중 | ○ 국립식물검역소장의 식물검사 합격 증명서 | |
| (9) 마약법 제20조에 해당하는 물품 |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서 | |
| (10) 대마관리법 제4조에 해당하는 물품 |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서 | |
| (11)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제15조에 해당하는 물품 | ○ 완제품: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서 ○ 원료: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장의 추천서 | |
| (12) 검역법 제24조에 해당하는 물품 | ○ 국립검역소장의 검역증 | |
| (13) 가 문화재보호법 제21조에 해당하는 물품 나 문화재보호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 ○ 문화체육부장관의 국외반출 허가증 ○ 시·도지사의 비문화재 확인증 | |
| (14) (삭제, 1989. 1. 7) | | |
| (15) 측량법 제27조에 규정한 지도, 연안해역 기본도, 측량용 사진 | ○ 건설교통부장관의 반출허가서 | |
| (16) 전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무선설비 | ○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서 또는 수입신고서 | |

〈表 I - 11〉의 계속

| 물 품 | 구비서류 (확인사항) | 비 고 |
|---|--|------------|
| (17) 전과법 제29조의 5에 해당하는 물품 중 통합공고 별표Ⅱ에 계기된 물품 | ○ 전과연구소장의 수입기기 확인서 또는 검정합격증 | ○ 수입물품에 한함 |
| (18)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에 해당하는 물품 | ○ 정보통신부장관의 형식승인서 또는 수입추천서 | |
| (19) 외국환관리규정 제8·2조 및 제8·4조에 해당하는 물품 | ○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서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서 | |
| (20) 수산업법 제79조 및 수산자원보호령 제11조의 2 및 제1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단, 이식승인의 경우 통합공고상 수산청장의 이식승인 대상이 아닌 물품은 제외) | ○ 수산청장의 이식승인서 | |
| (21) 약사법 제64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검사를 받아야 할 물품 중 통합공고 제16조 제5항에 해당하는 물품 | ○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 |
| (22) 자연환경보전법 제26조 및 제27조에 해당하는 물품 중 | ○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서 및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 ○ 수입물품에 한함 |
| 가 통합공고 별표Ⅵ에 계기된 물품(그 가공품을 포함) | ○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서 | ○ 수출물품에 한함 |
| 나 통합공고 별표Ⅶ에 계기된 물품 | ○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서 | ○ 수입물품에 한함 |
| 다 통합공고 별표Ⅷ에 계기된 물품(그 가공품을 포함) | ○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서 | ○ 수출물품에 한함 |
| (23)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해당하는 물품 중 통합공고 별표Ⅱ에 계기된 물품(단,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 ○ 문화체육부 장관의 허가서 | ○ 수입물품에 한함 |
| (24) 양곡관리법 제12조에 해당하는 물품 중 멧쌀, 찰쌀 및 현미(건품은 제외) | ○ 농림수산부 장관의 수입추천서 | ○ 수입물품에 한함 |

2) 改善方向

① 稅關의 輸出入檢査와 관련하여 그 改善方向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먼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앞으로 稅關機能은 國際貿易節次의 한 부분으로서 이해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先進國의 경우 稅關機能은 더 이상 국제무역의 「障壁」이 아니고 貿易促進(Trade Facilitation)이 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入港時부터 생산공정에 사용되기 위하여 포장을 뜯어내는 단계까지 輸入貨物이 지체없이 이동될 수 있도록 稅關節次가 簡素化되고 있다. 稅關이 모든 貨物에 대하여 하나하나 확인 檢査하겠다는 자세에서 特別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 人的 또는 統計的情報를 가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通關節次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先進國의 사례를 본받는 방향에서 稅關의 檢査方向을 잡아 가야 한다고 본다. 어떠한 수준의 檢査比率를 유지하느냐가 신속통관의 핵심적 과제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직도 檢査比率이 높은 것은 輸入業體별로 과거 기록을 기초로 하는 과학적 選別檢査技法(Selectivity)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데에 큰 원인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1996年 下半期부터 輸入通關電算化(EDI)가 도입·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우리도 가까운 장래에 先進國과 같은 選別檢査 기능이 크게 改善될 것으로 보이며 輸入通關 전산화가 완벽히 실시되기 이전이라도 稅關檢査 인력을 감안하여 檢査對象物品에 대한 실질적인 檢査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차적 목표를 정하여 檢査比率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시>

- 輸出 : 원칙생략, 檢査比率 1% 이내로 축소
(원칙적으로 檢査省略, 특별히 虞犯物品 選別基準에 해당하는 物品에 한하여 1% 이내로 최소화하되 檢査制度 폐지를 지향)
- 輸入 : 入港 前 檢査決定, 檢査比率 10% 내로 축소

이상과 같이 輸入檢査 省略이 가속화되다보면 이를 이용한 密輸의 급증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규칙 選別檢査制度를 導入·運營해 나가되 한번 檢査하면 全量檢査 등을 통하여 檢査의 效率性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② 또한 特別法上 구비요건을 審査함에 있어서 관계부처와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동 협의체를 中心으로 特別法上 구비요건 중 非關稅障壁으로 인식되어 통상마찰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 通關 後 해당부처에서의 확인이 효율적인 것은 稅關長 확인대상에서 제외하고 확인방법이 간단하여 稅關職員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稅關에서 위탁받아 처리토록 하는 등 확인대상 및 방법을 전면 재검토하여 간소화하고 효율적인 審査를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輸入通關 審査에 필요한 品名·規格·海外供給者 納稅者·稅率·特別法上 具備要件·輸入先 多變化·中古品 해당여부 등을 HS (Harmonized System; 상품분류체계의 통일을 위한 상품명 및 符號體系에 관한 국제협약) 10단위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세관직원들이 輸入審査時 전산으로 모든 관련 事項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정확한 輸入審査를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II. 現行 基本關稅率制度의 運營上 問題點과 改善方向

1. 問題의 提起

WTO 體制의 出帆, 中國經濟의 急浮上 등 國際貿易環境의 변화와 함께 그 동안 2차례에 걸친 關稅率引下豫示制가 1994년에 완료되고 2년째 접어드는 1996年 현재 우리나라의 平均關稅率이 先進國 수준인 7.9% 수준까지 인하됨으로써 상당히 낮고 公平한 關稅率體系가 正립되어 시 行중에 있다.

최근 정부는 WTO 출범 이후 新貿易秩序에 대응하고 國內産業의 構造調整을 돕기 위해 1996年度에 關稅率 체계의 전면 改編方向을 모색하고 있는바, 關稅率政策의 핵심과제인 關稅率 체계의 改編方向과 관련하여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KIET)이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여 논쟁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가. KDI(案): 産業中立의 均等 關稅率 體系

國家가 特定産業을 保護하기 위하여 關稅를 인상하게 되면 해당 산업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결과 상품을 우리나라에 輸出하는 外國企業이 損害를 보는 것이 아니고 결국 國內使用者 부담으로 歸着하게 된다.

關稅는 일종의 産業保護稅로서 이를 부담하는 使用者는 다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생산자들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關稅率 調整은 국가에 의한 資源配分의 歪曲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 産業支援의 방법으로 正當화

될 수 없는 產業은 構造調整이 되어야 하며 국가가 다른 產業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이들을 다시 일으키게 할 경우 경제적 비효율성이 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關稅를 통한 產業保護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설사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關稅率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도 재정수입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바람직한 關稅率 體系는 초기조건이 균등하다는 전제하에 產業에 대한 國家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고 비교우위적인 產業이 자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均等關稅率이 바람직하다. 즉 關稅率을 차등적용할 경우 그 효과를 事前에 예측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稅率을 가급적 균일하게 유지하여 똑같은 부담을 모든 생산자에게 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지향하여 온 均等한 關稅率 體系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中心關稅率은 가능한한 低稅率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유망 幼稚產業에 대하여 關稅率을 차등 적용하여 保護할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產業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지 의심스럽다.

일부 先進國이 자국의 斜陽產業에 대하여 高率의 關稅를 설정하여 保護하는 政策은 특정지역 배려차원에서 유권자 확보 등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하에 경제적인 효율성이 희생되는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사례를 본받을 경우에는 事前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關稅를 통한 斜陽產業 保護는 특혜시비를 제기할 뿐 아니라 經濟政策의 정치도구로의 전략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나. KIET(案) : 産業別 差等 關稅率 體系

우리는 關稅가 1960年代에는 輕工業, 1970年代에는 重化學工業을 保護함으로써 우리나라의 工業化에 크게 기여하였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關稅는 마땅히 産業保護機能을 수행하여야 하나 우리나라가

2차에 걸친 關稅引下豫示制를 통하여 關稅를 지속적으로 인하시켰기 때문에 현재의 關稅率 수준으로는 産業政策的 기능을 상실할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WTO 출범 등 국제규범이 정립되고 消費者·納稅者의 의식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關稅의 産業保護에 대한 실효성의 평가가 과거보다 저하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現在 關稅率 수준은 수출상품의 國際競爭力 등을 고려해 볼 때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關稅率 인상이 필요하지만 대내외적인 여건 때문에 이를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제까지의 關稅率 체계가 가공도에 따라 稅率格差를 두어 加工貿易型 産業構造下에서 대기업 위주의 완성 조립형 産業이 過保護됨에 따라 完製品이 中間材·部品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中間材·部品産業에 대한 關稅還給, 減免을 縮小·廢止하거나 完製品의 稅率을 中間材 부품의 稅率보다 낮추는 方案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의 關稅率 체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保護해야 할 일부 産業을 위하여 關稅率을 차등적용함이 바람직하며 유망산업에 대해서는 비록 장기적으로 관세인하가 불가피하더라도 그 인하속도를 늦추어야 한다.

아울러 美國·日本·EU 등 先進國이 이미 斜陽化된 輕工業 관련 産業에 대하여 일자리 확보차원에서 섬유 등에 대한 수량제한을 설정하고 高率의 關稅를 책정하여 保護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일부 輕工業 製品이 競爭力을 상실하였다고 성급하게 포기하여서는 안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의 保護를 위하여 상식을 뛰어넘는 政策手段이 강구될 필요도 있다.

돌이켜보면 1980年代 후반부터 채택된 均等低關稅率은 斜陽産業에 대한 포기를 가속화했다는 結論에 도달하고 있다. 다만, 세계적인 무역투자 자유화 추세, 통상마찰 야기 가능성 등 국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불

때 關稅를 인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한다면 반덤핑關稅, 緊急關稅, 調整關稅 등의 彈力的 手段을 活用함이 적절하다고 본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그 동안 關稅率政策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그 沿革적 흐름을 살펴보고 現行 關稅率體系의 運營現況에 대한 평가를 한 후 바람직한 基本關稅率 政策方向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우리나라의 基本關稅率制度의 運營現況

가. 우리나라 基本關稅率 政策 基調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근대적인 關稅制度가 도입되어 실시된 것은 1883年 韓日 通商協定이 체결된 이후이다. 그렇지만 1910年 韓日合邦 이후 자주적인 關稅領域을 상실함으로써 우리나라 關稅行政은 植民經濟의 收奪體制 확립을 위한 보완기능으로서만 존속하게 되었고, 產業政策의 자체이론에 입각한 근대적인 關稅制度로의 발전기회를 일실하고 말았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자주적인 關稅制度의 수립은 1949年 11月 정부수립을 계기로 하여 군정기까지 시행하여 오던 일제의 다원화된 關稅法規를 통합, 전문 252조로 된 단일화된 關稅法을 제정하여 大韓民國 法律 제67호로 公布함으로써 비롯된다.

關稅率은 建國 初期의 팽창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고 산업건설을 위하여 주로 財政政策의 측면에 역점을 두고 產業政策의인 측면에서 보완하는 것이었으며, 부과의 공평과 稅收確保의 彈力性을 유지하도록 全品目을 從價稅로 하였다. 稅率表의 구성은 자연과학적인 分類方式에 의거 15類·756稅番·1,706稅率品目으로 分類하여 당시 우리나라 產業構造와 貿易實務에 적합하도록 分類의 合理化를 기하였다.

이와 같은 關稅率制度는 그 후 社會的·經濟的 변천과정에서 부분적 내지는 전반적인 개정이 불가피하였고 1995年 소폭적인 개편작업에 이

<表 II - 1> 韓國의 關稅率政策 變遷 推移 要旨

| | 1945 | 1950 | 1957 | 1958 | 1961 | | 1963 | 1967 | 1968 | |
|---------|---|-----------------------------------|--|----------|--|------------|-------------------------|-------------|---------------------------|--|
| | | | | | 1차 | 2차 | | | | |
| 조정 방법 | 신규 제정 | 무세품에 대해 임시 관세 부과 (143개) | 전면 개정 | 전면 개정 | 전면 개정 | 품목분류 체계 개편 | 전면 개정 | 전면 개정 | 소폭 개정 | |
| 세번수 | 756개 | - | 726개 | 726개 | 722개 | 1,097개 | 1,097개 | 1,097개 | 1,097개 | |
| 세율수 | 1,706개 | - | 1,229개 | 726개 | 722개 | 1,311개 | 1,982개 | 3,174개 | 3,019개 | |
| 평균세율 변동 | 20.6% | - | 30.3% | 35.1% | 47.7% | 39.4% | 38.9% | 38.8% | 38.7% | |
| 특 징 | ← Tariff Escalation 체계 → | | | | | | | | | |
| | 0~100%간 세율 책정 | 6.25동관 이후 재정 수요에 부응 (관세 임시증정법 제정) | 보호 관세 강화 | 보호 관세 강화 | 보호 관세 강화 | BTN 방식 도입 | 수출 촉진 도모 | 탄력 관세 제도 도입 | 수모 및 모직물 관세율 개선 금지 관세율 인하 | |
| | ← 1973 | | | | 1976 | | 1978 | | 1981 | |
| 조정방법 | ← 전면조정 → | | | | | | | | 부분적·점진적 조정 | |
| 세번수 | 1,097개 | | | | 1,097개 | | 1,010개 | | 1,010개 | |
| 세율수 | 3,985개 | | | | 2,521개 | | 2,209개 | | 2,280개 | |
| 평균세율 변동 | 31.3% | | | | 35.7% | | 24.9% | | 23.7% | |
| 특 징 | Tariff Escalation 체계 잠정세율 제도도입 | | 20% 균일세율 체계 잠정세율 확대 예시제 도입 | | ← Tariff Escalation 체계 → | | | | 고세율의 일률 인하 방식 도입 | |
| | 1983 | | 1988 | | 1990 | | 1995 | | | |
| 조정방법 | 전면조정 | | 전면조정 | | 전면조정 | | 소폭조정(2개품목) | | | |
| 세번수 | 1,241개 | | 1,241개 | | 1,241개 | | 1,241개 | | | |
| 세율수 | 2,604개 | | 2,709개 | | 2,718개 | | 2,718개 | | | |
| 평균세율 변동 | 22.5% | | 18.1% | | 11.4% | | 7.9% | | | |
| 특 징 | Uniform Rate체계 20% 중심 세율로 수렴 (30-30-25-25-20%의 5개년 예시제) | | Uniform Rate체계 8% 중심 세율로 수렴 (15-13-11-9-8%의 5개년 예시제) | | 5개년 예시제의 1년 순연(1989~1993년까지를 1989~1994년까지로 변경) | | 컨테이너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세율 무세화 | | | |

르기까지 무려 15차에 걸친 개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다.

나. 基本關稅率의 中心 體系

우리나라의 基本關稅率 中心 體系를 살펴보면 1983년까지는 Tariff Escalation 체계를 채택하였으나 1983年 以後부터 均等關稅率 체계로 전환하였는바, 우리나라가* 1983年 이전까지 Tariff Escalation System을 유지하여온 것은 輸出産業 및 輸入代替産業을 육성·지원하려는 것이었으나 완제품에 대한 過多保護, 原資材 및 生産財에 대한 過少保護로 組立加工型 産業構造를 발전시켰다는 問題點이 있었다.

따라서 1980年代 初에 이르러 정부주도형의 保護와 支援政策에서 파생된 문제점을 단시일 내에 불식하고 대내외 경쟁체제를 정착시켜 市場經濟原理에 의한 産業間 경쟁촉진과 公正경쟁 기반조성을 토대로 민간 주도형의 經濟體制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1980年代의 産業政策方向에 따라 關稅의 對産業中立化로 産業間 경쟁조건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輸入物品에 원칙적으로 均等關稅率을 책정하는 Uniform Rate System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均等關稅制를 채택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 輸出指向的 産業構造의 확립, 內需産業에 대한 過剩保護 철폐로 내수 위주의 자원배분이 시정됨으로써 輸出指向的 産業基盤이 확립되어 고도성장의 기틀이 강화될 것이고 둘째, 公평하고 능률위주의 경제활동 여건 조성, 産業間·品目間 均等關稅 및 差等支援 철폐로 불평등 여건이 改善됨으로써 公平하고 能率爲主의 경제활동 여건이 조성될 것이며 셋째, 技術集約型 産業構造 확립, 累進稅率構造(Tariff Escalation)의 완화로 組立加工型 産業構造를 탈피하고 技術集約型 高附加價値 産業構造가 확립될 것이고 넷째, 物가안정기반 구축, 工業用 原料에 대한 관세인하로 실질 소득 향상 및 임금인상 압력이 완화되어 物가안정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 中心關稅率 水準

1) 1988年 中心關稅率 : 20% 책정

「中心關稅率」이란 均一關稅率 體系下에서 産業의 平均的인 競爭力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公산품에 책정한 稅率水準이다.

1988年 中心關稅率을 20%로 책정한 것은 1983년에 關稅率 構造 全面 改編 작업 당시 財務部가 실시한 主要 工產品 內外 價格差 平均(22.6%) 과 1982년에 全經聯이 실시한 우리나라 産業의 國際競爭力 評價(20.0% 關稅保護時 全體産業의 85%가 競爭力 보유)를 근거로 하고 있다.

① 主要 工產品 國內價格差 平均(22.6%)

◦ 調查對象 品目數(1982年 재무부 실시)

225개 - AA品目 : 132개

制限品目 : 123개

◦ 調查對象 品目の 선정원칙

㉠ 全産業을 대표하는 主要 輸入品目

㉡ 調查對象 品目の 産業間 균형유지 → 各 産業別로 약 20개 정도의 品目 선정

◦ 조사결과

㉠ 平均 內外 價格差率은 22.6%이고, 産業別 內外 價格差率도 平均 內外價格差를 中心으로 밀집(비철금속, 섬유공업, 제지 고무공업, 석유화학, 기계공업 등)되어 있으므로 中心 關稅率을 20%로 설정하였다.

㉡ 輸入制限品目の 平均 內外 價格差率이 自動承認品目보다 높으므로 海外競爭力 도입 측면, 物價安定 측면을 고려하여 輸入 自由化를 촉진할 필요가 있었다.

② 産業의 國際競爭力 評價(20.0%)

全經聯의 「産業의 성장 우선순위와 國際競爭力 강화」라는 研究報告

書(1982)에 의하면 産業別 非價格 競爭力面에서는 全産業의 95%가 新 興工業國에 比해 優位 또는 對等 關係에 있었으며 産業別 價格競爭力面에서는 全産業의 42%가 國際競爭力을 확보하고 있고, 20% 關稅保護時는 全體産業의 85%가 競爭力을 보유하게 되며, 15%의 競爭力 劣位産業에 대해서는 적정한 關稅保護로 國內産業의 價格競爭力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産業에 대한 影響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表 II - 2〉 産業別 價格 競爭力

(+5% 이상, +5~ -5%, -5~- -20%, -20% 이하)

| | | 최우위 | 우 위 | 중 위 | 열 위 | 최열위 | 계 |
|----------|-------|-----|--------|--------|--------|--------|---------|
| 전 제 조 업 | | 0 | 17(19) | 21(23) | 39(43) | 14(15) | 91(100) |
| 가공 도별 | 소 재 | 0 | 7(22) | 8(26) | 14(41) | 3(11) | 32(100) |
| | 저 가 공 | 0 | 6(25) | 7(29) | 8(33) | 3(13) | 24(100) |
| | 고 가 공 | 0 | 4(11) | 6(17) | 17(49) | 8(23) | 35(100) |
| 요소 집약 | 노동 집약 | 0 | 6(22) | 5(19) | 14(52) | 2(7) | 27(100) |
| | 자본 집약 | 0 | 5(23) | 5(23) | 7(32) | 5(23) | 22(100) |
| | 기술 집약 | 0 | 1(4) | 6(25) | 12(50) | 5(21) | 24(100) |

註：生産別 非價格競爭力面에서 全産業의 95%가 新興工業國에 比해 優位 또는 對等 關係에 있었음.

資料：全國經濟人聯合會.

〈表 II - 3〉 産業別 非價格 競爭力

| | | I 그룹 | II 그룹 | III 그룹 | IV 그룹 | 계 |
|----------------|---------|--------|--------|--------|-------|---------|
| 전 제 조 업 | | 14(16) | 25(28) | 45(51) | 4(5) | 88(100) |
| 가공 도별 | 소 재 형 | 9(31) | 3(10) | 17(59) | 0(0) | 29(100) |
| | 저 가 공 형 | 3(13) | 11(46) | 8(33) | 2(8) | 24(100) |
| | 고 가 공 형 | 2(6) | 22(31) | 20(57) | 2(6) | 35(100) |
| 요소 집약 도별 | 노동 집약형 | 1(4) | 10(40) | 11(44) | 2(6) | 25(100) |
| | 자본 집약형 | 7(32) | 5(23) | 10(45) | 0(0) | 22(100) |
| | 자원 집약형 | 2(11) | 6(33) | 10(56) | 0(0) | 18(100) |
| | 기술 집약형 | 4(17) | 4(17) | 14(61) | 1(4) | 23(100) |

資料：全國經濟人聯合會.

2) 1989年 中心稅率 : 15% 책정

1989年 1月 1日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던 基本關稅率 改編에 있어서 中心稅率 수준을 결정하는 데는 1983年度 關稅率 개편 이후의 經濟 與件의 급격한 變化, 國內產業의 競爭力 水準, 外國關稅率 水準, 財政需要 등의 요인들이 고려되었다.

1983年度の 關稅率 改編 初期年度인 1989년에는 흑자 수준의 적정한 調整을 위하여 상당폭의 關稅率 引下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였다.

國內產業의 競爭力面에서 볼 때도 1987年 韓國產業銀行에서 실시한 우리나라 產業의 國際競爭力 조사 결과 工產品 平均 內外價格 차이가 13%로 나타나 1987年 工產品 平均關稅率 18.2%는 5% 포인트 정도 過剩關稅(Tariff Redundancy)가 있어 中心稅率을 5% 포인트 인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外國의 關稅率 수준과 비교해 보면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대만의 경우 全品目の 平均關稅率이 11.7%, 工產品의 平均關稅率이 9.5%로 우리나라보다 6~7%포인트 낮은 수준이며, 美國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대만수준과 비교하면서 關稅率 引下, 輸入開放, 원화 평가절상 등 각종 통상압력을 가하여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87~88年間 이미 2차에 걸쳐 제재목·공구류 등 210개 品目の 關稅率을 讓許關稅制度를 활용하여 15%로 인하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상당한 品目에 대하여 15%로 조기 인하하였음에도 관련 國內產業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 15% 稅率로 수렴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1987年中 交易面에서 세계 제10위, 國際收支 黑字面에서 세계 제4위의 세계 대교역국으로 대두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국제 경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 줄 것을 국제적으로 요구받고 있었고 關稅率 수준면에서 우리와 유사한 대만·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과 보조를 맞추어야 할 입장이었다.

이들 國家들은 1987年 基準으로 全 品目の 50~70%가 關稅率이 15% 이하인 品目으로서 우리나라에 비하여(30% : 1988基準) 훨씬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1988年 中心關稅率 20%(총 세목 중 61.8%)를 1989년에는 15% 수준 이하로 인하할 필요가 있었다.

〈表 II - 4〉 稅率分布圖 國際比較(1987)

(單位: %)

| 관 세 율 | 한 국 | 대 만 |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
|---------------|-------|-------|-------|-------|
| 0 | 3.7 | 6.7 | 11.9 | 28.4 |
| 5% 이하 | 5.6 | 8.2 | 37.3 | 2.8 |
| 5% 초과~10% 이하 | 16.6 | 15.4 | 1.5 | 0 |
| 10% 초과~15% 이하 | 3.9 | 20.2 | 3.6 | 41.9 |
| 15% 초과 | 70.4 | 49.5 | 45.7 | 26.9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註: 韓國은 1988年 基準.

資料: 財政經濟院.

한편 財政需要面에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關稅의 財政 寄與率(관세/총세입)은 1983年 이후 계속해서 13%를 훨씬 상회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다른 先進國에서와 마찬가지로 關稅의 재정기능을 대폭 축소시켜 關稅의 產業政策的 기능을 대폭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재정 기여율을 줄여나가야 하였지만 내국세 증수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일정수준의 유지는 불가피하였다.

1989年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關稅收入은 1988年 2조 2천억원 규모(예산)에서 크게 감소(13.6%)하기는 하였으나 2조 1천억원 규모(예산)로 책정하고 있어 예상 輸入額을 고려할 때 中心關稅率을 15%선은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3) 1993年 中心關稅率 : 8% 책정

1989年 1月 1日부터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이었던 關稅率 개편작업에 있어서 5年 예시제 最終年度인 1993年の 目標稅率 수준을 8%로 정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1987년에 貿易規模面에서 세계 제10위, 국제수지 흑자면에서 세계 제4위의 대교역국으로 부상하였는바, 이에 따라 國際經濟社會에서 이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것을 국제적으로 강력히 요청받고 있었다. 특히 이 당시 OECD 수준에 준하는 시장개방 및 관세인하를 요구받고 있었다. 따라서 1988년에 1989년부터 시행할 關稅率 개편작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대내외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國內産業이 적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능동적으로 關稅率 수준을 인하해 나가되 5年 예시제 최종 목표연도인 1993년까지 中心關稅率 수준을 OECD 수준인 8%(1988年 基準)에 接近시킴으로써 對外通商 壓力을 事前에 최대한 완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表 II - 5〉 우리나라 産業의 國際競爭力 調查結果

(單位 : 個, %)

| 경쟁력수준 (가격차) | 가격 경쟁력 | | 비가격 경쟁력 | | 종합 경쟁력 | |
|-----------------------|--------|--------------|---------|-------------|----------|--------------|
| | 품목수 | 품목가격차 평 균 | 품목수 | 비가격차 평 균 | 품목수 | 실질가격차 평 균 |
| 絶對優位品目 (0% 미만) | 131 | △24.4 | 7 | △25.2 | 36 | △11.4 |
| 相對優位品目 (0~10% 미만) | 27 | 5.2 | 110 | 0.3 | 56 (75%) | 6.0 |
| 競争品目 (10~20% 미만) | 27 | 15.9 | 17 | 15.0 | 77 | 15.3 |
| 相對劣位品目 (20~30% 미만) | 18 | 25.8 | 16 | 23.7 | 37 | 25.4 |
| 絶對劣位品目 (30% 이상) | 20 | 48.8 | 73 | 49.1 | 17 | 49.6 |
| 計 | 223 | △5.3 | 223 | 18.3 | 223 | 13.0 |

資料 : 韓國産業銀行(1987).

또한 1987年 하반기 韓國産業銀行에서 실시한 우리나라 産業의 國際 競爭力 조사에 따르면 公산품 平均 內外價格差가 13%였는바, 과거 1983년에 22%에 달하던 內外價格差가 지난 5年 동안 40% 인하되어 온 점을 감안한다면 5個年 동안에도 동일한 추세를 유지할 경우 1993년에는 內外價格差가 8%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推定되었다는 점이다.

4) 關稅率引下豫示制의 채택

① 第1次 關稅率引下(1984~1988) 豫示制 採擇 理由

關稅率引下豫示制는 關稅率 인하 수준을 미리 알려 政策方向을 뚜렷이 제시하고 國內産業이 이에 미리 대비토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3年 關稅率 全面改編時 豫示制를 처음 채택하였는바, 同 豫示制는 대내적으로 國內 대부분 업계로부터 기업의 사전적 대응력 강화 및 장기계획에 입각한 투자를 가능케 한 좋은 制度로 평가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關稅率引下 계획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外國의 關稅率引下 壓力을 비교적 완화시킬 수 있는 長點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② 外國의 豫示制 採擇 事例

〈表 II - 6〉 外國의 豫示制 採擇 事例

| | 예 시 기 간 | 비고(평균관세를 인하 내용 등) |
|----------------------------|-----------------------|--|
| 필 리 핀 | 1981. 1~1985. 12(5년) | 35.0% → 27.9% |
| 아 일 랜 드 | 1965. 1~1974. 12(10년) | 15.0% 이상 → 15%, 기타 → 10% |
| 호 주 | 1988. 7~1992. 6(4년) | 40% 이상 → 16% |
| 뉴 질 랜 드 | 1988. 7~1992. 6(4년) | |
| GATT (T·R) | 1980. 1~1987. 12(8년) | * 일부 국가는 5년에 걸쳐 인하 (1983. 1 ~ 1987. 12) |
| 동남부아프리카 호혜무역지역 (PTA) | 1988. 10~2000(7단계) | 관세를 7단계에 걸쳐 무세로 인하 하고 공동시장 형성 |
| 한 국 (1차) | 1984~1988. 12(5년) | 23.7% → 18.1% |
| 한 국 (2차) | 1989. 1~1993. 12(5년) | 12.7% → 7.9% |

③ 第2次의 關稅率 引下 豫示期間을 5年으로 한 이유

1988年 關稅率 개편에서는 첫째, 기업의 중장기 계획이 통상 향후 5~10年 후의 기대수익률을 기초로 설정되고 있으므로 이에 부응하여 기업에 대한 뚜렷한 關稅政策 方向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외국에서도 일반적으로 5年 豫示制를 채택하고 있는 점 셋째, 政府의 經濟社會發展計劃도 5年 단위로 運營되고 있는 점 넷째, 지난 1983年 關稅率 개편시에도 5年 豫示制를 채택하였는바, 동 예시제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유지를 통하여 국민의 신뢰도를 계속 높여야 한다는 점과 대외적으로 홍보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關稅率을 現在의 先進國 수준으로 인하하는 데는 최소한 5年의 國內産業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豫示期間을 5年으로 정하였다.

3. 基本關稅率政策 運營 現況에 대한 評價와 向後 運營方向

基本關稅率政策 運營現況에 대한 평가와 향후 基本關稅率政策 運營方向은 金珍洙·安鍾錫(1994)의 『經濟構造의 變化와 關稅率 構造의 改編方向』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필자의 의견이 같고 더 이상의 새로운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음을 밝혀 둔다¹⁾.

가. 基本 關稅率政策 運營 現況에 대한 評價

1) 均等關稅率 制度에 대한 評價

均等關稅率制度의 基本趣旨는 關稅를 産業間·品目間에 均等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保護率을 均等化하고, 이를 통해 자원배분의 왜곡을 제

1) 金珍洙·安鍾錫, 『經濟與件의 變化와 關稅率構造의 改編方向』, 韓國租稅研究院, 1994, pp. 141~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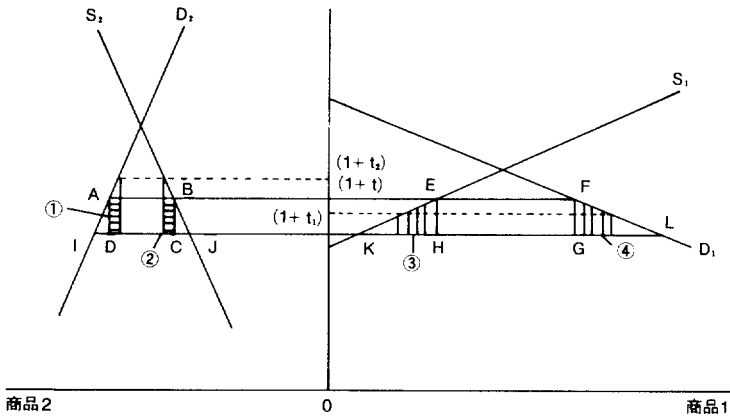
거함으로써 경제의 效率性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實效保護率理論의 입장에서 본다면 均等關稅率制度가 差等關稅率制度보다 우월한 制度로 간주될 수 있으나 均等關稅率制度에 대한 비판 또한 만만치가 않다. 이러한 비판은 주로 均等關稅率制度의 현실적인 한계에 관한 것으로 均等關稅率制度가 추구하는 實效保護率의 均等化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原料 및 中間材에 부과되는 關稅率이 품목간 균일하지 않으며 各 產業의 輸入原料 및 輸入中間材의 投入比率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완제품에 均等한 關稅率을 적용하더라도 實效保護率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둘째, 換率이나 內國稅制上の 保護 등 모든 保護構造가 동일하지 않는 한 各 產業에 均等한 稅率을 적용하더라도 반드시 實效保護率이 均等하게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를 고려하여 均等關稅率制度에 대한 경제이론상의 비판을 자세히 논의해 보기로 한다.

均等關稅는 保護의 비용을 최소화하기도, 부문간 實效保護率을 반드시 같게 하지도 않는다는 주장이 이미 30年 前부터 여러 學者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이를 關稅의 부과목적에 따라 財政收入과 產業保護의 두 경우로 나누어 검토해 보자. 먼저 關稅를 부과하는 목적이 財政收入에 있다고 가정할 때 均等關稅率制度는 最適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일반적으로 Ramsey(1927)理論이 最適租稅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理論이 最適關稅를 결정하는 데에도 역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Ramsey 理論을 따른다면 最適關稅收入은 각 부문의 關稅率이 需要의 價格彈力性에 반비례하여 부과될 때 얻어지는 것이다. 즉 輸入需要의 價格彈力性이 높으면 關稅率은 낮아야 하고, 輸入需要의 價格彈力性이 낮으면 關稅率은 높아야 한다. 이를 Panagariya(1990)의 도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기로 한다.

[圖 II-1]의 일사분면에는 商品 1에 대한 需要와 供給曲線이 그려져 있고, 2사분면에는 商品 2에 대한 需要와 供給曲線이 原點에서부터 왼쪽으로 그려져 있다. 각 商品의 價格이 1이 되도록 했기 때문에, 수평축은

각 商品의 數量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商品의 價値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自由貿易下에서 각 商品의 消費量과 生産量은 國內需要 및 國內供給曲線과 無限大의 供給彈力性을 가지는 世界供給曲線 IL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商品 1의 需要 및 供給曲線은 商品 2의 그것들보다 더 彈力的이다. 財政收入은 사각형 ABCD와 EFGH의 합이 되는데, 關稅政策이 財政收入을 목적으로 할 때 이 목적은 두 商品에 t의 均等關稅率을 적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商品에 高率의 關稅를 부과하고 다른 商品에 低率의 關稅를 부과함으로써 같은 수준의 財政收入을 유지하면서도 厚生을 증대할 수 있을까? 需要의 彈力性이 높은 商品 1에 低率의 關稅를 부과하고 需要의 彈力性이 낮은 商品 2에 高率의 關稅를 부과함으로써 같은 수준의 財政收入을 유지하면서도 厚生을 증대할 수 있다. 均等關稅率下에서 厚生損失은 삼각형 AID, BJC, EKH, FLG의 합이다. 商品 1에 關稅率 t_1 만큼 부과하면 t의 關稅率을 적용할 때보다 ③과 ④의 합만큼 厚生損失이 줄어들게 되고, 商品 2에 關稅率 t_2 만큼 부과하면 t의 關稅率을 적용할 때보다 ①과 ②의 합만큼 厚生損失이 늘어나게 된다. ③과 ④를 합친 면적이 ①과 ②를 합친 면적보다 넓기 때문에 關稅率에 差等を 둬으로써 均等關稅率下에서 보다 厚生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된다.

[圖 II - 1] 關稅政策의 目的이 財政收入일 境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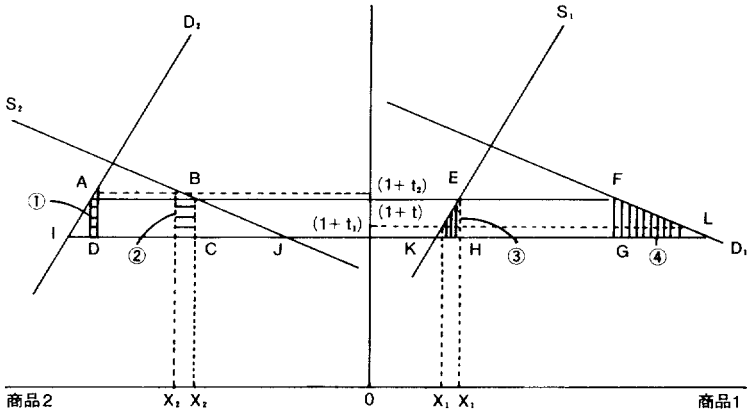


關稅를 부과하는 목적이 産業保護에 있다고 할 때 關稅만을 부과하는 것은 最善의 政策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理論이다. 關稅의 부과는 厚生의 損失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産業保護를 위해서는 産業에 대해 補助金을 지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政策이다. 補助金을 지급하지 않고 關稅만을 부과하는 경우에 均等關稅率制度가 差等關稅率制度보다 반드시 效率的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圖 II-2]에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는 商品 1에 대한 需要가 商品 2에 대한 需要보다 더 彈力的인 반면 商品 1에 대한 供給이 商品 2에 대한 供給보다 덜 彈力的인 경우를 가정한다([圖 II-1]의 경우와 같이 商品 1의 需要 및 供給曲線이 商品 2의 그것들보다 더 彈力的이면 均等關稅率制度가 差等關稅率制度보다 더 효율적인 制度이다). 두 商品의 生産額은 OX_1 과 OX_2 의 합이 되는데, 關稅政策이 産業保護를 목적으로 할 때 이 목적은 두 商品에 t 의 均等關稅를 부과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商品에 高率의 關稅를 부과하고 다른 商品에 低率의 關稅를 부과함으로써 OX_1 과 OX_2 의 합만큼의 生産額을 유지하면서도 厚生을 증대할 수 있을까? 需要의 彈力性이 높은 商品 1에 低率의 關稅를 부과하고 需要의 彈力性이 낮은 商品 2에 高率의 關稅를 부과함으로써 厚生을 증대시킬 수 있다. 均等關稅率下에서 厚生損失은 삼각형 AID, BJC, EKH, FLG의 합이다. 商品 1에 t 보다 낮은 t_1 만큼의 關稅率을 적용하면 ③과 ④의 합만큼 厚生損失이 줄어들게 되고, 商品 2에 t 보다 높은 t_2 만큼의 關稅率을 적용하면 ①과 ②의 합만큼 厚生損失이 늘어나게 된다. ③과 ④를 합친 면적이 ①과 ②를 합친 면적보다 넓기 때문에 차등적인 關稅率의 설정이 均等關稅率下에서보다 厚生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상에서 經濟理論上으로 均等關稅率制度가 반드시 差等關稅率制度보다 效率的인 制度라고 말할 수 없다는 論議를 하였다. 이 모델도 어디까지나 部分均衡(Partial Equilibrium)이고 一般均衡(General Equilibrium) 접근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한 모델로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均等關稅率制度를 택할 것인가

差等關稅率制度를 택할 것인가는 政策決定者의 선택의 문제라 하겠다.

[圖 II - 2] 關稅政策의 目的이 産業保護일 境遇



2) 關稅引下豫示制度에 대한 評價

關稅引下豫示制는 그 동안 關稅率을 급격히 인하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급작스런 關稅率의 변동으로 인한 충격을 줄이고 산업계의 사전대비를 촉진시켰다. 둘째,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국민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 주었다. 셋째, 豫示制에 의해 단계적으로 關稅를 인하함으로써 일시적인 관세인하에 대한 저항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 넷째, 정부는 단기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關稅率을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또한 關稅引下豫示制에 의한 관세인하의 속도가 적절했는가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있는바, 우리나라의 關稅率은 다음 항인 우리나라 平均 關稅率의 적정성 여부 평가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우리의 競爭力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인하되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

가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關稅率을 현행 關稅引下豫示制보다 훨씬 느리게 인하해 왔다면 1986年의 關稅率을 基準으로 輸入額 加重平均의 33%를 인하해야 하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에 의해 일시적인 關稅率의 인하가 불가피하였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나라의 産業界는 급작스런 關稅率의 변동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關稅引下豫示制를 긍정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관세인하의 속도면에서 關稅引下豫示制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國際化·開放化時代를 맞이하여 독자적으로 關稅政策을 運營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關稅引下豫示制에 의한 관세인하 속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3) 中心關稅率의 適正性 여부 평가

1988年에 마련된 우리나라의 현행 關稅率 構造는 1987年 韓國産業銀行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産業의 國際競爭力 分析을 근거로 한 것이다. 동 분석에 의하면 당시 우리나라 교역재의 內外價格差는 平均 13%였다. 이는 5年 前인 1983年의 22%에서 40% 정도 하락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제2차 關稅引下豫示制가 끝나는 시점인 1993年 교역재의 內外價格差는 平均 8%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전망을 근거로 하여 1993年의 中心稅率이 8%로 책정되었으나, 1990年 방위세 폐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의 시행을 1年씩 순연함으로써 1994年의 中心稅率이 8%가 되었다.

이와 같이 現行 中心稅率은 1988年 당시의 비교적 단순한 예측에 기초한 것으로서 5年의 세월이 지난 지금,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國內外的 국제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1992年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實質價格差 平均은 1982~1987年의

期間에 40% 하락한 데 반하여 1988년부터 1991년까지 4年 동안에는 오히려 40% 악화되어 18.8%로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非價格差가 同 期間中에 대폭적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12.4%의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名目價格差는 1987年の -5.3%에서 1991年 6.4%로 11.7%포인트나 상승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名目價格差가 크게 악화된 이유는 1987年 이후 임금 및 원료비의 상승 등으로 인해 제조원가가 크게 상승한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産業銀行이 内外價格差를 조사한 1991年 이후 무역수지가 점차 改善되어가다가 1995年에 더욱 악화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최근의 교역재 内外價格差平均은 1991年の 그것보다 오히려 높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행 中心稅率은 이러한 最近의 경제환경 變化를 고려하지 않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하에서 채택된 것으로 현재 교역재의 内外價格差를 충분히 보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表 II - 7〉 交易財의 業種別 内外價格差

(單位: 個, %)

| | 調査品目數 | | 實質價格差 | | | | | |
|----------|-------|------|-------|------|-------|------|------|------|
| | | | 平均 | | 名目價格差 | | 非價格差 | |
| | 1987 | 1991 | 1987 | 1991 | 1987 | 1991 | 1987 | 1991 |
| 織 維 | 21 | 29 | 4.5 | 6.9 | -1.8 | 3.2 | 6.3 | 3.7 |
| 製紙·木材 | 9 | 15 | 9.3 | 16.3 | -2.9 | 19.6 | 12.2 | -3.2 |
| 고무·가죽·신발 | 7 | 5 | 5.2 | 9.5 | -8.8 | 2.5 | 14.0 | 7.0 |
| 窯業 | 9 | 8 | 12.1 | 11.5 | -6.0 | 1.5 | 18.1 | 10.0 |
| 石油化學 | 26 | 37 | 15.6 | 21.4 | 7.2 | 18.4 | 8.4 | 3.0 |
| 精密化學 | 7 | 13 | 21.4 | 38.1 | 8.4 | 29.9 | 13.0 | 8.2 |
| 鐵鋼 | 19 | 19 | 13.3 | 5.9 | 4.5 | 6.3 | 8.8 | -0.4 |
| 非鐵金屬 | 11 | 15 | 25.4 | 13.9 | 20.2 | 2.8 | 5.2 | 11.1 |
| 機械 | 37 | 65 | 14.7 | 14.4 | -12.9 | -6.8 | 27.6 | 21.2 |
| 電氣·電子 | 49 | 65 | 12.7 | 26.5 | -9.4 | 9.0 | 22.1 | 17.6 |
| 輸送用機械 | 14 | 15 | 13.3 | 16.1 | -26.2 | -5.0 | 39.5 | 21.1 |
| 雜製品 | 14 | 8 | 8.8 | 46.1 | -18.5 | 18.3 | 27.3 | 27.9 |
| 交易財全體 | 223 | 294 | 13.0 | 18.8 | -5.3 | 6.4 | 18.3 | 12.4 |

註: 1. 名目價格差(價格競爭力) = (國內價格 - 輸入價格) / 輸入價格 × 100

2. 非價格差(非價格競爭力) = (輸入價格 - 輸出價格) / 輸入價格 × 100

3. 實質價格差(綜合競爭力) = 名目價格差 + 非價格差

4. 輸出價格 및 輸入價格은 FOB價格 基準임.

資料: 韓國産業銀行, 『國內産業의 國際競爭力 分析』, 1992.

〈表 II-8〉 調查品目的 綜合競爭力 分布

(單位: 個, %)

| 실질가격차 | 품목수 | | 실질가격차평균 | | | 실질가격차평균 | | |
|-----------|--------------|--------------|---------|------------|------|---------|------------|------|
| | 1987 | 1991 | 1987 | 명 목 가격차 | 비가격차 | 1991 | 명 목 가격차 | 비가격차 |
| 0% 미만 | 36 (16.1) | 37 (12.6) | △11.4 | △17.2 | 5.8 | △7.1 | △17.7 | 10.5 |
| 0~10% 미만 | 56 (25.1) | 99 (33.7) | 6.0 | △16.8 | 22.8 | 2.9 | △9.4 | 12.3 |
| 10~20% 미만 | 77 (34.5) | 62 (21.1) | 15.3 | △8.7 | 24.0 | 14.4 | △0.3 | 14.7 |
| 20~30% 미만 | 37 (16.6) | 36 (12.2) | 25.4 | 6.4 | 19.0 | 24.8 | 12.1 | 12.7 |
| 30% 이상 | 17 (7.6) | 60 (20.4) | 49.6 | 47.4 | 2.2 | 62.1 | 50.8 | 11.3 |
| 합 계 | 223 (100) | 294 (100) | 13.0 | △5.3 | 18.3 | 18.8 | 6.4 | 12.4 |

- 註: 1. 名目價格差(價格競爭力) = (國內價格 - 輸入價格) / 輸入價格 × 100
 2. 非價格差(非價格競爭力) = (輸入價格 - 輸出價格) / 輸入價格 × 100
 3. 實質價格差(綜合競爭力) = 名目價格差 + 非價格差
 4. 輸出價格 및 輸入價格은 FOB價格 基準임

資料: 韓國產業銀行, 『國內產業의 國際競爭力 分析』, 1992.

4) 現行 關稅率 수준의 財政收入 확보 측면에서의 適正性 여부

우리나라의 現行 關稅率 수준이 財政收入 확보의 측면에서 적절한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본다. 만약 정부가 내국세를 부과함으로써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조달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財政收入 확보를 위해서 關稅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후진국일 수록 내국세 체계 및 유통 구조의 후진성 등으로 인해 財政收入의 일부를 비교적 사회적 저항이 적고 과세가 용이한 關稅收入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財政收入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現行 關稅率 수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關稅負擔 能力을 추정

하였다. 먼저 각국의 關稅負擔率이 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에 대해 回歸分析을 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關稅負擔能力을 추정(김진수·안종석, 『經濟與件의 變化와 關稅率 構造의 改編方向』, 1994. 5)하였다.

추정모형은 다음과 같다.

$$R = f(X_1, X_2, X_3)$$

R = 關稅負擔率

X₁ = 內國稅 賦課에 대한 制約條件

X₂ = 關稅 賦課에 대한 制約條件

X₃ = 收入 規模

〈表 II - 9〉 關稅負擔率 推定 結果

| | 孫光洛(1993) | | 金珍洙·安鍾錫(1994) | |
|----------------|-----------|--------|---------------|--------|
| | 係數 | t 값 | 係數 | t 값 |
| 常數項 | 0.031288 | 4.641 | 2.86143 | 5.302 |
| GDPPC | -0.001885 | -4.442 | -0.09051 | -3.042 |
| TAXG | | | -0.02929 | -4.519 |
| DOMTR | -0.127124 | -2.154 | | |
| EXPG | | | -0.08396 | -3.391 |
| IMPG | 0.040868 | 2.444 | 0.09656 | 1.581 |
| R ₂ | 0.4215 | | 0.48688 | |
| F | 11.901 | | 13.04733 | |
| 標本數 | 53 | | 60 | |

註: TARIFFG=關稅收入/GNP(從屬變數)

GDPPC=1人當 GDP

TAXG=內國稅 收入/GDP(%)

DOMTR=內國消費稅 收入/GDP(%)

EXPG=輸出/GDP(%)

IMPG=輸入/GDP(%)

이렇게 하여 추정한 우리나라의 關稅收入 對 GDP比重的 적절한 수준은 1990年 基準으로 2.39%로 나타났으나 同年 우리나라의 실제 관세부

답률은 2.13%였다. 이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부담능력에 비해 關稅依存率이 낮다고 할 수 있다.

經濟發展 水準, 輸入 및 輸出 比重, 內國稅 負擔率이 類似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關稅負擔率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로 쌀을 비롯한 農產物 部門의 非關稅 障壁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交易財의 關稅率을 비교적 낮게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우리나라가 그 동안 輸出을 中心으로 하는 工業發展 戰略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주로 價格競爭力을 바탕으로 한 輸出 增大에 주력해 왔기 때문에 輸出市場에서의 마찰이 비교적 심하였고 따라서 관세 인하에 대한 外部의 壓力이 類似한 다른 나라에 비해 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론적으로 볼 때 內國稅 賦課에 대한 制約이 없다면 關稅負擔率은 낮을수록 좋은 것이지만, 이러한 제약이 상기 推定式에 잘 반영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나라는 關稅賦課에 대한 內部的 및 外部의 制約條件에 비추어 지나치게 內國稅에 의존하고 있거나 아니면 필요한 財源을 충분히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關稅率 調整을 통해 關稅負擔率을 더 낮추는 것은 우리나라의 능력에 비해 지나친 內國稅負擔을 초래하거나 財政收入의 부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5) 關稅率의 產業政策 機能 側面 評價

우리나라 現行 產業構造의 問題點으로 加工·組立產業과 機械·部品·素材產業間의 不均衡과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의 不均衡을 들 수 있는바, 이 중 첫번째의 문제점은 관련산업 이외에도 이에 의거한 關稅政策의 영향이 컸다고 평가되고 있다. 1960~70年代에 채택된 差等關稅率 體系下에서는 單純組立型產業이 생산의 우회도가 큰 產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보호되고 이에 따라 單純組立型產業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問題點을 해결하기 위해 1984년부터 비록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均等關稅率制度를 채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關稅率 체계의 전환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關稅의 財政輸入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產業政策으로서의 기능도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그 이유는 첫째, 國際化·開放化에 따라 과거와 같은 직접적인 輸入規制나 우리나라의 독단적인 關稅政策의 수립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우리나라의 平均關稅率은 제1차 關稅引下豫示制가 시작된 1984년에 21.9%였으나 제2차 關稅引下豫示制가 끝난 1994년에는 7.9%(1995년도 동일)에 불과하며 과세가 產業政策으로서 기능하기에는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셋째, 產業政策의 방향이 특정산업을 선별 지원하는 政策에서 기능별 지원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關稅政策에서도 대산업중립성이 강조되고 있다.

나. 向後 基本關稅率 政策運營 方向

1) 基本方向

基本關稅率 政策運營 方向을 논의함에 있어 우선 關稅率體系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均等關稅率制度가 差等關稅率制度에 비해 반드시 효과적인 制度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關稅率을 책정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均等關稅率制度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렇다고 하여 과거 11년 동안 유지하여 온 均等關稅率體系를 유지하지 않고 差等關稅率體系로 전환한다는 것도 또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의 關稅率體系에 있어서는 그 동안의 均等關稅率體系를 지향하는 關稅政策의 기초를 장기적으로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幼稚產業의 保護와 유망산업의 경쟁력 배양 등 產業政策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약간의 차등적인 關稅率의 설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차등적인 관세부과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關稅引下豫示制度에 대한 평가에서 同 豫示制의 시행이 두 가지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였지만, 이의 계속적인 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첫째, 우리나라의 現行 關稅率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더 이상 인하할 여지가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만일 매년 일정비율로 인하하면 그 인하폭은 지나치게 소규모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산업계에 대한 충격완화라는 당초 예시제의 본래의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일선 關稅行政만 번거롭게 할 것이다. 둘째, 앞으로 多者間協商에 대처하기 위한 關稅協商力(Bargaining Power)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現行 關稅率 수준의 평가에서는 현재의 수준이 적정 수준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平均關稅率 水準을 높이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세계는 UR, APEC 등 國際經濟協力を 통하여 關稅率 引下 등 貿易障壁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關稅率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세계로부터의 비난을 감수하여야 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輸出市場인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역반응을 초래하여 輸出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둘째, 關稅率은 한번 공표하고 나면 국제적인 약속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쉽게, 자주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제발전 및 실명제 실시가 내국세 부과능력을 증대시킬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中心稅率을 인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品目에서 현행 關稅率에 큰 문제를 느끼고 있다면 平均 關稅率 수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關稅率 調整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최근 國際化·開放化가 진전됨에 따라 關稅政策은 점차 產業構造 형성정책으로서의 기능측면에서 효과적인 手段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關稅의 產業政策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과거와 같이 직접적인 輸入規制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關稅政策의 産業構造 維持政策으로서의 기능은 오히려 더 중요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非競爭 原資材와 中間材의 無稅化 論議

최근 非競爭 原資材 및 中間材에 부과되는 關稅를 제거함으로써 國內 産業의 價格競爭力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非競爭 原資材 및 1차 加工品 中 關稅歲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부 품목의 無稅化는 고려할 수 있으나 전면적인 무세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 품목의 輸入이 우리나라의 總輸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 이들 품목에 대한 關稅率을 引下하면 關稅收入이 크게 減少할 것으로 豫想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關稅收入이 國民所得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의 經濟發展 水準 등의 여건에 비추어 낮은 상태이다. 따라서 교체재원을 마련하지 않은 채 關稅收入을 크게 減少시키는 政策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表 II - 10〉 非競爭 原資材 및 1次 加工品の 輸入實績(1994)

| | 輸 入 | | 內需用 輸入 | | 關稅收入 ¹⁾ | |
|----------------------|-------------------|----------------------|-------------------|----------------------|--------------------|------------------------|
| | 輸入額 (百萬 달러) | 總輸入에 대한 比重 (%) | 總輸入 (百萬 달러) | 總輸入에 대한 比重 (%) | 金 額 (百萬원) | 總關稅 收入에 대한 比重(%) |
| 非競爭 原資材 | | | | | | |
| 關稅率 1% | 7,952 | 7.77 | 3,855 | 3.75 | 63,969 | 1.44 |
| 關稅率 2% ²⁾ | 17,098 | 16.70 | 5,275 | 5.05 | 286,638 | 6.46 |
| 非競爭 1次加工品 | 6,477 | 6.33 | 1,802 | 1.76 | 228,112 | 5.14 |
| 關稅率 5% | | | | | | |
| 合 計 | 31,519 | 30.80 | 10,932 | 10.68 | 518,719 | 13.04 |

註: 1) 추정치임.

2) 關稅率이 2.5%인 品目도 포함됨.

資料: 關稅廳.

둘째, 뿐만 아니라 賦存資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앞으로 資源節約的인 産業構造로 이행해 나가야 하는데 關稅(生産과 消費의 歪曲을 동시 초래)보다는 生産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消費稅가 우월한 稅制이나 10%의 單一 稅率을 적용하는 附加價值稅制을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消費稅制를 통해서 原資材 및 中間材의 사용에 대한 세부담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도 석유류에 부과하는 特別 消費稅가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긴 하지만 이를 非競爭 原資材 및 中間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附加價值稅制度의 原則과 상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長期的으로는 확대를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상당기간 동안은 關稅에 依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들 品目の 關稅率 인하시 기대되는 國內産業의 價格競爭力 증대효과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다. 먼저 非競爭 原資材 및 中間材의 無稅化에 따른 國內産業의 價格競爭力 提高效果를 韓國銀行에서 발간한 「1990年 産業 聯關表」(1993)에 나타난 輸入中間材 投入係數를 활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 II - 11〉 原資材 關稅引下效果 測定

| | 수입중간재 투입계수 | 수입중간재에 대한 관세 1% 인하가 미치는 가격인하 효과 |
|--|------------|---------------------------------|
| 석유·석탄제품 | 10% 이상 | 0.62% |
| 섬유·가죽, 종이·나무제품, 화학제품, 제1차금속,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계, 수송기계, 정밀기계 | | 0.1~0.26% |
| 음·식료품, 요업·토석제품, 금속제품, 기타제조업제품 | 5~10% | 0.1% |
| 농림수산업, 광업, 서비스업 | 5% 이하 | |

3) UR의 無稅化 協商의 結果로 나타난 逆關稅 現象의 時政

UR 무세화 협상의 타결로 우리나라도 총 13개 분야 128個 品目을 無稅化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들 무세화 품목 중에는 철강, 비철금속과 같은 原資材도 있으나 건설장비, 농업기계, 완구, 가구 등 완제품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완제품의 關稅를 무세화하는 경우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輸入原資材에 대해 關稅를 부과하면 完製品의 實效保護率 이 負(-)가 되는 逆關稅의 現象이 나타난다. 세부 品目別로 逆關稅의 존재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表 II - 12> UR의 無稅化 品目

(單位: 個)

| | 主要國 合議品目 | 韓國 參與品目 | 備 考 | |
|-------------|----------|---------|------------------------------|------------------------------------|
| 鐵 鋼 | 35 | 35 | 미국, EU, 일본, 캐나다 합의(93. 7) | |
| 建 設 裝 備 | 10 | 10(4) | | |
| 農 業 機 械 | 4 | 4(3) | | |
| 醫 療 機 器 | 13 | 11(7) | | |
| 家 具 | 2 | 2(1) | | |
| 醫 藥 品 | 10 | 6(2) | | |
| 麥 酒 | 1 | - | | |
| 蒸 溜 酒 | 1 | - | | |
| 電 子 | 15 | 9(1) | | APEC합의(93. 11) 미국, EU합의(93. 12) |
| 宗 依 | 41 | 41(41) | | |
| 玩 具 | 5 | 4(4) | | |
| 非 鐵 金 屬 材 | 34 | 3(3) | | |
| 木 材 | 21 | - | | |
| 合計 (13個 分野) | 192 | 125(63) | | |

註: () 안은 履行期間을 8~15年으로 長期間 확보한 品目임.
資料: 財政經濟院.

4) 從量稅制 導入 論議

최근 일부 產業에서는 後發開途國으로부터 들어오는 低價輸入品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거나 앞으로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에

부응하여 國內産業을 保護하기 위하여서는 低價品의 輸入急增이 예상되는 일부 品目에 대해 現行 從價稅 대신 從量稅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바, 從量稅制 도입여부는 다음 事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從量稅制를 도입할 경우 이는 低價品 生産業體를 保護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高價品 生産業體에 대해서는 불리한 대우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생산요소는 高價品 製造業體에서 低價品 製造業體로 이동하게 될 것인데 과연 이러한 이동이 장기적인 産業構造調整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輸入品에 부과하는 從量稅는 換率이 인상됨에 따라 그리고 輸入製品의 價格이 상승됨에 따라 稅負擔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從量稅를 부과한 소기의 目的을 달성할 수 없다.

셋째, 우리나라가 농산물 관련 政策을 완전한 比較優位論에 따르는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保護는 필요하며 이러한 農業部門의 保護는 低價輸入品으로부터의 保護를 의미한다. 따라서 農業部門에는 從量稅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나 다음과 같은 問題點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① 현재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非讓許農産物에 대한 基本關稅率을 從量稅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稅率을 높게 책정할 경우 GATT의 standstill 條項 違反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② 從量稅 制度는 從價稅에 비해 低價品에 상대적으로 많은 關稅를 부과하므로 低價品의 輸入抑制에는 기여하나 동시에 低價 輸入品의 價格인상을 초래함으로써 國內 物價上昇 要因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③ 從量稅가 효율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輸入品의 品種, 品質, 加工度 등에 따라 品目分類를 세분화하고 從量稅率을 결정해야 하는 등 기술적인 문제가 따른다.

Ⅲ. 現行 彈力關稅制度的 運營上 問題點과 改善方向

1. 問題의 提起

우리나라는 1983年以後 두 번에 걸친 關稅引下 豫示 5個年 계획에 따라 平均關稅率을 先進國들의 關稅率 수준과 비슷한 수준인 7.9%로 인하하였고 WTO 출범에 따라 우리나라의 平均讓許關稅率은 우리나라의 平均關稅率 7.9%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8.1%가 되었다. 우리나라가 讓許한 品目の 比率이 전체의 90% 수준을 상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基本關稅率의 調整을 통한 產業保護 및 支援은 매우 어려워지고 國內產業 保護를 목적으로 한 彈力關稅制度的 運營에도 점차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關稅讓許品目이 많아 설사 彈力關稅制度 運營이 많은 제약을 받는다 고 하더라도 대부분 輸入이 자유화된 상태하의 國內產業의 適正保護 및 物價安定 등을 위한 有效한 수단인 彈力關稅制度的 功能이 강화될 수 있는 方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彈力關稅制度的 運營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同 制度의 運營이 基本關稅率의 調整보다 까다로운 條件과 節次를 요구하는 國際規範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구체적 通商摩擦과 對外的 壓力을 받게 되므로 우리의 彈力關稅制度가 이러한 國際規範 등에 부합하는지 재점검하여 關稅 制度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한편 彈力關稅 대상품목의 선정이나 發動期間 등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基準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반상황을 감안, 現行 우리나라의 彈力關稅制度가 對內外的인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여 國內產業保護, 物價安定 등의 기능을 제

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現行 彈力關稅制度의 運營上 問題點 및 改善方向 등을 모색해 본다.

2. 彈力關稅制度의 運營現況

가. 彈力關稅制度 現況

우리나라 關稅法上의 彈力關稅 種類로서는 덤핑防止關稅(Anti-Dumping Duty), 報復關稅(Retaliatory Duty), 緊急關稅(Emergency Duty), 特別緊急關稅(Special Safeguard Duty), 調整關稅(Adjustment Duty), 相計關稅(Countervailing Duty), 便益關稅(Beneficiary Duty), 物價平衡關稅(Price Stabilization Duty), 季節關稅(Seasonal Duty) 및 割當關稅(Tariff Quota)가 있는바, 그 주요 發動要件, 關稅率 變更範圍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 Ⅲ - 1〉 彈力關稅制度의 概要

| | 발 동 요 건 | 관세율 변경범위 | 근거규정 | 발동근거 |
|--------|---|---------------------------|--------|------|
| 덤핑방지관세 | ○ 정상가격이하로 판매되는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 ○ 관세+(정상가격-덤핑가격) | 법 제10조 | 총리령 |
| 보복관세 | ○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불리한 취급을 하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 | ○ 우리나라의 무역이익 침해 상당액의 범위 내 | 법 제11조 | 대통령령 |
| 긴급관세 | ○ 특정물품의 수입으로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국내생산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어 당해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비율의 범위 내 | 법 제12조 | 총리령 |

〈表 Ⅲ-1〉의 계속

| | 발 동 요 건 | 관세율 변경범위 | 근거규정 | 발동근거 |
|------------------|--|---|------------|------|
| 조정 관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산개발 물품의 보호 ◦ 농산물 등 국제경쟁력 취약물품의 국내시장 및 산업기반 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관세율+10인 상세율≤100% ◦ 농림축산물인 경우에는 국내의 가격차 상당률 | 법 제12조의 2 | 대통령령 |
| 특별긴급세 (농림축산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량기준특별긴급관세: 당해연도 수입물량이 급증하여 정해진 기준발동 물량을 초과할 경우 ◦ 가격기준특별긴급관세: 수입가격(1988~1990년 평균수입가격)의 90%에 미달할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상 당치 (Tariff Equivalent: TE)의 1/3범위 내에서 추가로 관세를 부과 ◦ 수입가격과 기준발동가격과의 가격차에 따라 구간별로 합산하여 누진적으로 부과 | 법 제12조의 3 | 총리령 |
| 상계 관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장려금을 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을 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보조금(장려금) 이하 금액 | 법 제13조 | |
| 편의 관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에 관한 조약에 의한 편의를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수입되는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가격-과세가격 = 관세 | 법 제15조 제1항 | 대통령령 |
| 물가평형 관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가격유지를 요하는 특정 물품의 수급조절 (차액관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가격 미만 → 기본관세율 | 법 제15조 제2항 | 대통령령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가격 급등으로 국내가격 안정 저해(활척관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가격 미만 → 기본관세율 ◦ 기준가-상한가 → 기본관세율의 단계적 인하 | 법 제15조 제2항 | |
| 계절 관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에 따라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는 물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릴 경우: 국내의 가격차 상당률 ◦ 내릴 경우: 기본관세율-40% 포인트 | 법 제15조의 2 | 총리령 |

〈表 Ⅲ-1〉의 계속

| | 발 동 요 건 | 관세율 변경범위 | 근거규정 | 발동근거 |
|-----------------|---|---|--------|------|
| 할 당 관 세 (인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자수급 원활 ○ 수입가격급등 관련 품목의 국내 가격 안정 ○ 세율불균형 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수량 범위 내 → 기본관세율 - 40% 포인트 | 법 제16조 | 대통령령 |
| 할 당 관 세 (인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물품 수입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품: 일정수량 초과분 → 기본관세율+40% 포인트 ○ 농산품: 농림축수산물의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응하는 관세율 인상 | | |

나. 彈力關稅制度 運營實績

우리나라의 彈力關稅 運營은 1990年을 분기점으로 하여 1990年 이전에는 물가안정을 위해 關稅率을 내리는 割當關稅制度和 國內產業 保護를 위한 緊急關稅制度를 中心으로 運營하였으며 그 외에 關稅率을 올리는 調整關稅制度는 1980年代 初에 우리 產業의 對外 개방화 노력의 일환으로 貿易去來關係法令 등에 의하여 새로이 輸入自動承認品目으로 지정된 물품 중에 輸入 增大로 인하여 야기되는 國內產業 被害를 防止하기 위하여 일부 運營된 바 있으며 物價平衡關稅制度는 1984年 1회에 한하여 運營된 바 있다.

1990年 以後에는 物價安定을 위해 關稅率을 내리는 割當關稅制度和 공정 및 불공정무역거래로 인한 產業被害救濟를 위해 마련된 덤핑防止 關稅制度, 調整關稅 및 關稅率을 올리는 割當關稅를 中心으로 運營되어 왔으며 그 외에 UR 협상 결과 새로이 자유화된 농산물에 대하여는 1995年부터 特別緊急關稅制度를 광범위하게 運營하고 있다.

〈表 Ⅲ-2〉彈力關稅制度 運營現況(品目數 基準)

| | | 할당관세 | 물가평형 관세 | 덤핑방지 관세 | 긴급관세 | 조정관세 | 특 별 긴급관세 |
|------|---|------|------------|------------|------|------|----------------|
| 1978 | 上 | 52 | - | - | 1 | - | - |
| | 下 | 9 | - | - | - | - | - |
| 1979 | 上 | 72 | - | - | 3 | - | - |
| | 下 | 20 | - | - | 1 | - | - |
| 1980 | 上 | 69 | - | - | 2 | - | - |
| | 下 | 66 | - | - | 2 | - | - |
| 1981 | 上 | 64 | - | - | 88 | - | - |
| | 下 | 62 | - | - | 7 | - | - |
| 1982 | 上 | 32 | - | - | 7 | - | - |
| | 下 | 29 | - | - | 13 | - | - |
| 1983 | 上 | 32 | - | - | 11 | - | - |
| | 下 | 30 | - | - | 104 | - | - |
| 1984 | 上 | 9 | 1 | - | 38 | 14 | - |
| | 下 | 1 | - | - | 10 | 10 | - |
| 1985 | 上 | 19 | - | - | 8 | 8 | - |
| | 下 | 2 | - | - | 6 | 2 | - |
| 1986 | 上 | 28 | - | - | 5 | 5 | - |
| | 下 | 23 | - | - | 2 | 5 | - |
| 1987 | 上 | 91 | - | - | 8 | - | - |
| | 下 | 23 | - | - | 2 | - | - |
| 1988 | 上 | 203 | - | - | 3 | - | - |
| | 下 | 446 | - | - | 3 | - | - |
| 1989 | 上 | 212 | - | - | - | - | - |
| | 下 | 28 | - | - | - | - | - |
| 1990 | | 109 | - | - | 2 | - | - |
| 1991 | | 108 | - | - | 2 | 1 | - |
| 1992 | | 79 | - | - | 2 | 39 | - |
| 1993 | | 40 | - | 4 | 2 | 45 | - |
| 1994 | | 39 | - | 5 | - | 42 | - |
| 1995 | 上 | 46 | - | 5 | - | 38 | 76 |
| | 下 | 47 | - | 4 | - | 34 | |
| 1996 | | 43 | - | 4 | - | 35 | 61 |

資料：財政經濟院.

1) 關稅率을 내리는 割當關稅 運營

關稅率을 내리는 割當關稅制度는 國內供給物量이 절대 부족하거나 최근(割當關稅 運營 당시) 國際價格이 크게 상승하여 수급차질이 우려되는 物品으로서 기초산업 投入 原資材(원유, 슬랩 등), 零細企業 및 中小企業支援 物品(염료, 면사 등), 農畜水産物の 競爭力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物品(옥수수 등 사료원료, 농약원제 등)과 생필품 등 물가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物品(조주정 등) 및 類似物品間 稅率이 현저히 불균형한 物品(오산화바나듐 등) 등 대부분 基礎原資材를 中心으로 運營해 왔으나 완제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소비재 등 완제품에 대하여서도 運營한 바 있다. 割當關稅를 적용하는 일반적인 패턴은 중동사태 등 國際原資材 價格이 급등할 때 그 적용대상 品目を 많이 확대하였다가 이후 차츰 그 품목수를 줄이다가 또 다시 國內外 경기 변동에 따라 필요시 그 대상품목을 늘렸다가 줄여 나가는 노력을 반복하는 방향으로 運營하여 왔다.

2) 關稅率을 올리는 割當關稅 運營

立法技術上 調整關稅로 부과하기 곤란한 品目 中 바나나(예시: 1991년의 경우 5만톤까지 輸入時에는 基本關稅率 50%를 적용하고 5만톤을 넘어서는 物量에 대해서는 割當關稅 90%를 적용)와 대두유(예시: 1993년의 경우 2만톤까지 輸入時에는 基本關稅率 9%를 적용하고, 2만톤을 넘어서는 物量에 대해서는 割當關稅 20%를 적용)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運營한 바 있다.

3) 物價平衡關稅 運營

우리나라에서 物價平衡關稅가 關稅法에 도입된 것은 1978年 12月 關稅法 개정시이며 1984년에 양과에 대해서 差額關稅를 運營한 이후 더이

상 運營된 바 없었다. 양파에 대해 差額關稅를 조치하게 된 배경은 1983年 國內 양파 생산이 격감하여 공급량 부족으로 양파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國內 양파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양파의 輸入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양파의 수입으로 國內 양파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은 가능하나 國內 양파 재배농가 보호와 차년도 양파생산과의 연계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國內 양파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는 선에서 양파의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物價平衡關稅를 運營하기로 한 것이다.

關稅率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그 당시 關稅가 課稅價格의 50퍼센트이던 것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基準價格에서 課稅價格(C.I.F 輸入價格)을 공제한 금액으로 변경하고, 기준가격은 수입 양파의 國內供給이 1킬로그램당 450원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입에 따른 제반 부대비용 등을 고려하여 1킬로그램당 311원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1킬로그램당 311원 이하로 輸入되는 양파에 대해서는 그 差額의 전부를 關稅로 흡수하게 되었다.

4) 덤핑防止關稅 運營

우리나라는 1986年 2月 GATT 반덤핑협약에 가입하여 1967년에 關稅法에 도입된 덤핑防止關稅制度를 改正·補完하여 그 동안 실제 運營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으나 1986年 4월에 일본산 아세트알데히드와 홍콩산 및 중국산 알긴산나트륨에 대해 貿易委員會에 반덤핑 제소를 한 이후 品目數 基準으로는 5개, 件數基準으로는 6개 品目に 대하여 반덤핑關稅가 부과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부과건수는 同 制度의 짧은 施行期間과 專門人力의 不足, 經驗의 미비 등을 勘案하면 결코 작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輸入自由化의 확대 이후 저가 外國製品의 輸入急增을 감안하면 아직 同 制度의 활용이 상당히 未洽한 것으로 評價된다.

〈表 Ⅲ-3〉 年度別 반덤핑關稅 賦課 現況(品目數 基準)

| | 1993 | 1994 | 1995(상) | 1995(하) | 1996(상) |
|------------------|-------------------------|--------|-------------------|---------|---------|
| 品目數 | 4 | 5 | 4 | 4 | 4 |
| 대 상 품 목 | 정제인산 (1993. 3. 20) | 정제인산 | 정제인산 | 정제인산 | 정제인산 |
| | 불베어링 (1993. 1. 28) | 불베어링 | 불베어링 (1995. 2) | - | - |
| | 합성소다회 (1993. 12. 31) | 합성소다회 | 합성소다회 | 합성소다회 | 합성소다회 |
| | PS 인쇄판 (1993. 11. 8) | PS 인쇄판 | PS 인쇄판 | PS 인쇄판 | PS 인쇄판 |
| | 유리장섬유 (1994. 4) | 유리장섬유 | 유리장섬유 | 유리장섬유 | 유리장섬유 |

資料 : 財政經濟院.

5) 緊急關稅 運營

우리나라가 1989年 11月 GATT 제18조국에서 졸업함에 따라 미국·EU 등 先進國으로부터 우리나라의 緊急關稅制度를 GATT 제19조와 일치시킬 것을 계속 요구받아 왔고 이를 수용하여 1989年 12月 및 1990年 12月に 對外貿易法 제32조와 關稅法 제12조를 각각 개정하여 緊急關稅 發動基準 및 節次 등에 있어 GATT 제19조와 상당히 일치시키게 되었다. 또한 1993年 12月 關稅法 改正을 통하여 緊急 關稅率 인상폭을 基本關稅率 +40%포인트에서 國內外價格差 상당률로 調整하였으며 同 關稅의 신속한 부과를 위해 부과권자를 대통령령에서 재무부령(지금은 총리령)으로 調整하였다. 아울러 1995年 12月 關稅法 改正을 통하여 우리의 緊急關稅制度를 WTO의 緊急輸入制限措置(Safeguards) 협정내용에 맞게 關稅賦課水準, 賦課期間, 暫定關稅賦課·中斷 및 還給, 再審査, 委任規定 등을 고쳤다.

이러한 緊急關稅制度는 1988年 이전까지의 發動要件이었던 ㉠ 국민경제상 중요한 國內産業을 緊急히 保護할 필요가 있을 때 ㉡ 特定物品의 輸入을 緊急히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 産業構造의 변동으로 物品間의 稅率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을 때 關稅率을 인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1980年代 初 輸入自由化 확대에 따른 外國상품의 급격한 輸入增加로 인한 國內産業被害를 막기 위하여 緊急關稅를 광범위하게 부과하였으나 이제는 同 緊急關稅制度가 WTO의 緊急輸入制限措置 (Safeguards) 협정내용과 간게 運營되어야 하므로 貿易委員會에서 産業被害 판정이 있어 關稅率 인상 건의가 있는 品目에 한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運營되고 있으며 최근 조치된 品目の 現況은 다음과 같다.

〈表 Ⅲ-4〉 緊急關稅 運營實績

(單位: %)

| | 관 세 율 | | 적 용 기 간 |
|------------|---------------|----------|--|
| | 기 본 | 긴 급 | |
| 돼지고기 통조림 | 30 (양허 60) | 50 40 | 1991. 7 ~ 1991. 6 1991. 7 ~ 1993. 6 |
| 포장용 L-LDPE | 15 | 25 | 1990. 10. 20 ~ 1992. 9. 30 |
| 활 석 분 | 10 (양허 10) | 30 | 1991. 7. 4 ~ 1993. 6. 30 |

資料: 財政經濟院.

6) 調整關稅의 運營

調整關稅는 1990年代 이전에는 신규로 輸入自由化되는 品目 중에서 輸入自由化 後 輸入이 급증되는 品目으로 인해 國內産業의 피해가 있어 그 保護가 필요한 경우에 부과되었고 1990年代 以後에는 後發開途國의 추격과 先進國의 통상압력으로 인해 競爭力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農畜 水産物과 中小企業 生産品인 輕工業 제품을 中心으로 運營되고 있다.

〈表 Ⅲ-5〉 1996年(上) 調整關稅 適用 品目現況

| | 品 目 名 | | 품목수 |
|---------------------|--|------------------------|-----|
| | 기 | 신 규 | |
| ○ 農 · 林 · 水産業 보호 | 돔(활어), 농어(활어), 미꾸라지, 돔(냉동), 복어(냉동), 명란(냉동), 새우(냉동), 낙지(냉동), 미역, 굴뱅이, 표고버섯, 고사리, 무우말랭이, 당면, 매주, 혼합조미료, 생사 | 노래미(활어), 명태(냉동), 명태피레트 | 20 |
| ○ 경쟁력 취약 산업 보호 | 합판, 설탕, 모직물, 볼베어링, 일차전지, 전기저항기, 폴리아미드필름 | | 7 |
| ○ 중소기업 보호 | 이쑤시개(환봉), 나무젓가락, 매트류, 면직물, 면거어즈, 면장갑, 면타올, 우산류, 안경렌즈 | | 8 |
| 합 계 | 32 | 3 | 35 |

資料 : 財政經濟院.

7) 特別緊急關稅의 運營

UR 협상 결과에 따라 그 동안 輸入制限되었던 농산물도 예외없이 자유화되, 이들 농산물에 대하여는 國內外 價格差만큼 關稅相當值(Tariff Equivalent : TE)로 關稅를 인상할 수 있도록 양허가 이루어졌다. 特別緊急關稅는 이로 인하여 특정 농산물의 輸入이 급증하거나 價格이 현저히 낮게 輸入됨으로써 國內 농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보완책으로 고율의 關稅를 부과할 수 있는 制度인바, 농산물 讓許表上에 SSG(Special Safeguard)로 표시한 品目으로 우리나라가 關稅化(TE)로 讓許한 111개 品目 中 농림수산부에서 요청한 76개 品目(物量基準 74개, 價格基準 13개, 兩者基準 11개)에 대하여 1995年 1月 1日부터 特別緊急關稅를 부과하였으며 主要品目으로는 감자, 옥수수, 팥, 고구마, 보리, 전분, 땅콩, 인삼 및 홍삼(홍삼제품 포함), 보조사료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76개 品目에 대해 1995年 1月 1日부터 시행한 후 이 중

일부 품목을 2차에 걸쳐 제외했는데 1차로 사료용 옥수수, 사료용 길보리, 대두, 맥주맥은 國內 畜産農家 및 加工産業 지원을 위해 割當關稅를 적용하는 품목으로 特別緊急關稅가 부과될 경우 오히려 사료가격을 상승시켜 國內 畜産農家가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特別緊急關稅 대상에서 제외했다. 2차로는 고구마전분, 변성전분, 감자분, 메니옥전분 등 전분 관련 품목에 대해 국내수급 안정을 위해 低率關稅 輸入物量을 증량하는 품목 中 特別緊急關稅 품목이 산정되어 있는바, 이들 품목도 特別緊急關稅가 부과되면 오히려 國內價格 상승을 초래하여 영세중소 가공기업들의 원가부담을 가중시키고 물가불안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特別緊急關稅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1996年 1月 1日부터는 農林水産部가 財政經濟院에 요청한 61개 품목에 대해 農民保護라는 制度 취지를 감안, 主務部處의 요청을 모두 수용해서 特別緊急關稅制度를 運營하고 있다.

〈表 Ⅲ-6〉 特別緊急關稅 品目 現況

(單位: 個)

| | C/S 내용 | 1995년 품목 | | | | 1996년 품목 |
|------|-----------|---------------|----------------------|----------------------|---------|----------|
| | | 1995. 1 시행 | 1차(1995.3) (할당관련) | 2차(1995.7) (증량관련) | 1995. 말 | |
| 물량기준 | - | 74 | △4 | △12 | 58 | 61 |
| 가격기준 | - | 13 | △1 | - | 12 | 12 |
| 양자기준 | - | 11 | △1 | - | 10 | 12 |
| 계 | 111 | 76 | △4 | △12 | 60 | 61 |

資料: 財政經濟院.

3. 現行 彈力關稅制度的 運營上 問題點과 改善方向

가. 彈力關稅運營 細則 制定 關聯

1) 問題點

앞에서 彈力關稅制度的 運營實績을 살펴보았는데 運營基準 측면에서 보면 어떤 세부적인 運營方案을 세워 놓고 일관성 있게 運營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

어떤 品目은 6個月間만 적용하고 어떤 品目은 3~4年 동안 계속 적용하고 또 어떤 品目은 그 品目으로 제조된 완제품이 국민의 생필품이기 때문에 同 完製品 價格의 安定을 위하여 그 原料에 대해 割當關稅로 關稅를 引下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고 斜陽 産業 제품이건 有望産業 제품이건 어떤 구분기준 없이 모두 保護對象으로 하고 있고, 어떤 品目은 緊急關稅 대상으로 하고 또 어떤 品目은 調整關稅 대상으로 하는 등 구분이 모호한 점 등 彈力關稅 運營을 위한 細部基準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 적용 가능성이 큰 점이 문제점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彈力關稅 運營의 明瞭性(Transparency)과 客觀性을 부여하기 위하여 그러한 運營細則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2) 改善方向

彈力關稅의 활용은 교역 상대국과의 통상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基準 설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對象品目の 選定, 發動 期間, 구체적 産業被害 調査 節次 및 투명하고 명료한 判定基準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구체조치의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運營 細則을 마련함으로써 대외적인 公正性과 客觀性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彈力關稅 賦課時 事前豫告制 導入 關聯

1) 問題點

일반적으로 基本關稅率을 彈力關稅制度로 인상할 경우에 예고없이 부과함으로써 對象物品을 輸入하는 輸入者가 의외의 손해를 입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1995年 1月 1日字로 목재류의 關稅率이 5%에서 15%로 인상되었다는 가정하에서 輸入業者가 1994年 12月 20日에 船積하여 1995年 1月 1日 이후 輸入申告하게 되면 輸入者는 본의 아니게 10%의 追加稅率을 부담하게 되고 당초 輸入 당시 세웠던 계획과는 상이하여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 앞으로는 이로 인해 예상되는 民願摩擦을 최소화하는 方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2) 改善方向

彈力關稅 賦課의 事前豫告制가 시행되게 되면 彈力關稅 부과 시점 이전에 輸入者가 필요로 하는 物量 全量에 대해 輸入을 포기하거나 또는 物量 全量을 조기수입하는 등의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당초 彈力關稅 發動의 基本目的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국민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彈力關稅 賦課 豫告制는 그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1995年 12月 關稅法 改正時에 도입한 바 있는 ‘品目分類 변경으로 인한 善意的 輸入者 被害救濟’의 경우와 같이 輸入者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品目分類 변경일 이전에 이미 船積된 物品에 대하여 변경 전 稅率을 적용하는 方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 덤핑防止關稅制度 運營 關聯

1) 問題點

가) 덤핑防止關稅制度의 활용 미흡

덤핑防止關稅制度의 활용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로는 우선 우리나라 기업 의 技術 및 부품에 대한 높은 對外依存度로 인해 재소시 關聯 業體間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또한 中小企業의 경우 반 덤핑制度에 대한 專門人力과 經驗의 부족으로 인해 同 制度를 활용하 기가 사실상 곤란하였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國內法規 上 提訴節次가 복잡하고 調查期間이 장기화되는 등 제소에 따른 비용 과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同 制度의 활용을 어렵게 한 요인으로 지적 할 수 있다.

현재까지 덤핑提訴物品 및 提訴業體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先進國 과는 달리 高附加價値의 新開發品과 關聯된 제소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提訴業體가 주로 中小業體라는 점이 특징이다.

둘째, 國內業體가 技術導入이나 自體研究 등으로 개발한 新規産業, 尖端産業製品이 대부분으로 이는 주로 斜陽産業에 대한 덤핑제소가 많은 先進國과 구별된다.

셋째, 國內업체수가 한 두개인 獨寡占 品目으로서 덤핑제소에 따른 關 련 業體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도 있어 덤핑輸入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가 곤란하였다.

넷째, 精密化學, 尖端素材 등 固定費用이 큰 裝置産業으로 기존 生産 業體가 후발 生産業體보다 價格競爭力이 劣等한 경우가 많았다.

다섯째, 상대적으로 競爭力이 약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연합에 의한 제소가 많은데, 이는 輸入開放에 따른 被害의 대상이 주로 中小業 體라는 것을 의미한다.

나) 低價 輸入品에 대한 적용의 한계

덤핑防止關稅制度는 덤핑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덤핑이 아닌 低價 輸入品에 대해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 改善方向

가) 經濟理論 및 統計技法의 活用

덤핑으로 인한 産業被害를 판정하는 데에 있어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基準을 정립하고 輸入增加와 産業被害間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經濟學 理論 및 高度의 統計技法을 활용한 분석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나) 강력한 通商政策 樹立

WTO 協定文에는 비록 덤핑마진 산정 및 被害判定의 基準이 명료화 및 강화되었고 反덤핑關稅의 부과에도 일정한 基準을 두고 있어 反덤핑關稅의 남용으로 인한 輸出企業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그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국의 國內法 및 制度의 運營現況에 대한 정보수집 및 연구수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특정국가의 國內法이나 制度運營이 협정상의 규정을 위배했을 경우에는 강화된 紛爭解決節次를 통해 輸入國의 불합리한 調查方法 및 措置適用을 是正하도록 하는 강력한 通商政策이 요구된다.

다) 反덤핑 關稅制度의 效果的 活用方案 마련

영세한 中小企業들이 反덤핑關稅制度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方案이 마련되어야 한다.

① 提訴業體들의 자료제출에 따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원요건을 簡素·明瞭化할 뿐만 아니라, 調查過程에서 필요한 各種 資料는 調査當局이 자체적으로 수집·분석해 나갈 수 있도록 電算資料 銀行化를

실시해야 한다.

② 提訴準備에 따른 막대한 경비에 대한 中小企業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辯護士 및 會計士 등의 전문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거대한 투자로 新技術 開發에 성공한 中小企業이 외국의 덤핑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다 신속한 節次를 통하여 구제할 수 있는 方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産業被害救濟制度에 관한 홍보를 強化하여야 한다.

라. 緊急關稅 및 調整關稅制度 運營 關聯

1) 問題點

現在 調整關稅는 주로 WTO 非讓許 品目에 대해 發動되고 있으며 緊急關稅 發動은 産業被害를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GATT 讓許品目を 주로 그 發動對象으로 하고 있으나 貿易委員會의 産業被害 조사 판정을 받고 同 委員會로부터 關稅率 引上 등의 구제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緊急關稅로 조치하여 왔고 同 委員會의 産業被害 판정없이 관계부처로부터 關稅率 引上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調整關稅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같이 緊急關稅로 關稅率을 인상한 品目 中에서도 關稅讓許對象인 品目도 있고 讓許品目이 아닌 경우도 있다. 産業被害가 있다고 판정이 난 品目에 대해 緊急關稅로 稅率을 올리든, 調整關稅로 稅率을 올리든 WTO 讓許稅率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국제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되나 어떤 品目は 엄격한 産業被害 調査 節次를 거쳐 關稅率을 인상하고 또 어떤 品目は 그와 같은 産業被害 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關稅率을 인상하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있어야 할 基準이 없다.

또한 緊急關稅나 調整關稅 中の 하나로 조치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期間 동안 保護해 주어야 그 産業이 國際競爭力을 확보할 수 있으나 하는 기준 역시 調整關稅의 경우 1983年 12月 29日 관련 규정 신설시 그 適用

期間은 3年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 또한 1990年 12月 31日 關稅法 改正時 삭제되어 緊急關稅이건 調整關稅이건 그 適用期間에 있어 어떤 原則이 없다.

아울러 緊急關稅나 調整關稅를 활용하여 關稅率을 인상하게 되면 輸出國에서는 자기 나라 輸出品의 輸出 減少가 예상되므로 통상 關稅 引上의 부당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상례인바, 그 동안 調整關稅의 부과에 따라 輸出國에서 우리의 關稅引上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통상마찰이 발생한 것도 큰 문제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緊急關稅 및 調整關稅 發動時 예상되는 분쟁의 소지를 事前에 예방하는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 동안 輸出國에서 문제를 제기한 調整關稅 品目現況은 다음과 같다.

〈表 Ⅲ-7〉 輸出國에서 問題를 提起한 調整關稅 品目

| | 기본세율 | 단력세율 | 부 과 기 간 | 수입비중 (1994년도) |
|-----------|------|-------|-------------------------|-------------------------|
| 〈중 국〉 | | | | |
| 고 사 리 | 30 | 50 | 1994. 1. 1 ~ 1995.12.31 | 99.2 |
| 당 면 | 8 | 59 | 1994. 1. 1 ~ 1995.12.31 | 100 |
| 나 무 젓 가 락 | 8 | 30 | 1990. 1. 1 ~ 1995.12.31 | 58.5 |
| 매 트 류 | 8 | 26 | 1992.12.14 ~ 1995.12.31 | 76.7 |
| 생 사 | 8 | 43 | 1995. 1. 1 ~ 1995.12.31 | 100 |
| 면 직 물 | 8 | 26 | 1995. 1. 1 ~ 1995.12.31 | 73.2 |
| 면 장 갑 | 8 | 30 | 1995. 1. 1 ~ 1995.12.31 | 98.8 |
| 면 타 올 | 8 | 30 | 1995. 1. 1 ~ 1995.12.31 | 93.4 |
| 〈E U〉 | | | | |
| 글 뱅 이 | 20 | 50 | 1995. 1. 1 ~ 1995.12.31 | 아일랜드 : 56 영국 : 41 |
| 모 직 물 | 8 | 13~17 | 1995. 1. 1 ~ 1995.12.31 | 이탈리아 : 63.4 영국 : 6.9 |

資料 : 財政經濟院.

2) 改善方向

緊急關稅나 調整關稅를 활용하여 國內産業을 保護하고자 할 경우 두 조문별로 그 對象産業과 保護의 程度 및 期間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일정한 基準을 彈力關稅 運營細則에 明기하여 同 運營細則에 맞게 運營함으로써 對外的인 公正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交易상대국과의 通商 마찰을 事前에 防止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緊急關稅 및 調整關稅의 發動期間은 피해 등의 再발을 防止하기 위해 緊急關稅를 調整關稅보다 다소 길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통상 2년 내외) 피해 原因이 제거되었는지 여부를 연계재심을 통해 판정함으로써 적절한 期間만 運營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 相計關稅制度 運營 關聯

1) 問題點

우리나라의 경우 産業被害救濟手段으로서 相計關稅制度의 활용 可能性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첫째, 相計關稅制度는 外國정부의 政策(補助金)을 문제삼고 있으므로 通商摩擦 可能性이 아주 크고 둘째, 企業의 立場에서 外國政府의 補助金支給慣行에 대한 精確한 資料 입수가 어려워 提訴가 곤란하며 셋째, 補助金을 지급받은 物品의 수출시 補助金에 상응하는 率만큼 商品價格의 인하가 가능해지는데, 이 경우 相計關稅提訴 대신 덤핑提訴를 통해 産業被害救濟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고 넷째, 現行 關稅法 規定上 相計關稅制度 運營의 核審事項이라 할 수 있는 ‘補助金의 定義’ 및 ‘補助金率의 計算方法’에 대한 구체적 규정 미비로 실제 同 制度 적용시 어려움이 있다.

2) 改善方向

相計關稅制度의 실제 적용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産業被害救濟手段으로서 相計關稅制度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制度的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政府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 補助金制度에 대한 情報蒐集 強化

相計關稅 賦課가 交易相對國의 보조금 지급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先進國 및 최근 輸入이 급증하고 있는 開途國들의 補助金制度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첫째, 補助金率 산정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貿易委員會가 각국의 補助金制度 運營을 직접 수집·분석하도록 하되 현지공관, KOTRA, 貿易協會 및 研究機關 등 有關機關의 협조를 얻도록 하고 둘째, 각국의 補助金政策 전반에 관한 情報蒐集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감안, 우선 각국의 輸出補助金 지급 실태에 관한 정보수집에 주력하도록 해야 한다. 輸出補助金에 관한 정보수집은 輸出補助金 유형별로 國內 關聯機關이 수집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예컨대 輸出信用 및 輸出保險에 대해서는 輸出入銀行이 각국의 실태를 調查·分析하고 조세상의 지원에 대해서는 財政經濟院이 각국의 租稅制度를 분석하여 수집하도록 하며 産業別 지원실태에 대해서는 國內 관련 産業別 協會나 團體에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다).

나) 法規 整備

相計關稅制度 運營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가장 큰 問題點인 규제 대상 補助金의 定義 및 補助金率 및 計算方法에 관한 基準이 법규상 구체적으로 정비되거나 相關기관 내부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國際的 救濟節次와 關稅法上的 相計關稅措置와의 관계가 國內法規上에 명확하게 규정됨으로써 外國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國內産業

의 被害나 우리나라의 이익 침해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GATT 補助金·相計關稅 협정에 의하면 外國의 補助金으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입은 국가는 國內法에 의해 相計關稅措置뿐만 아니라 GATT 補助金委員會에의 提訴를 통해서도 相計措置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國內法規는 협의를 비롯한 GATT에의 提訴節次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 덤핑防止 提訴 병행 유도

相計關稅 提訴가 輸出國 輸出補助金 지급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內需價格에 비해 輸出品의 價格이 인하된 경우가 많으므로 덤핑防止提訴를 병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덤핑防止調查는 輸出國의 企業을 대상으로 하므로 相計關稅調查보다 그 調查가 더 용이할 뿐만 아니라 通商摩擦의 가능성도 더 적어 國內產業被害救濟가 더 용이할 수 있다.

바. 滑尺關稅 및 差額關稅制度 運營 關聯

1) 問題點

이들 두 制度의 運營時 문제는 基準價格 및 課稅價格의 精確한 산정이고 이렇게 산정된 基準價格 및 課稅價格을 基準으로 세분하여 關稅額의 차등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基準價格에 있어서는 정부가 과거에 물가 안정을 위하여 직접 統制政策을 취할 때에는 주기적·분기별·부분적으로 완제품 내지는 투입재의 基準價格 또는 課稅價格의 구분은 용이하다 하겠으나 최근에는 市場機能을 보다 활성화해 나간다는 經濟運營 基本方向에 따라 직접 價格 統制方式이 間接的·事後管理的 管理方式으로 전환되어감에 따라 基準價格의 산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설

사 價格算定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流動性이 극심한 價格變動에 법령이 뒤쫓아갈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基準價格 및 課稅價格의 정확하고 합리적인 산정이 전제되지 아니한 가운데 사후약방문식으로 이들 制度를 運營할 경우 納稅者와 關稅廳, 財政經濟院 등 관계부처와의 마찰의 소지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하겠다.

2) 改善方向

특정제품의 價格을 基準으로 關稅率을 높거나 낮게 調整하는 滑尺關稅制度和 差額關稅制度는 그 運營에 한계가 있으므로 同 制度의 運營이 가능한 특정한 品目(돼지고기, 돼지고기 조제품 등)들을 발굴해서 과연 그러한 品目들에 국한하여 한시적으로 運營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도있게 연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사. 季節關稅制度 運營 關聯

1) 問題點

이론적으로는 同 制度가 그럴듯해 보이고 앞으로 GATT/BOP 협의 결과에 의거 1997년까지 農水產物 開放計劃이 진행됨에 따라 季節關稅의 運營 필요성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번도 運營해 본 경험이 없어 앞으로 同 制度의 運營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때 경험미숙으로 인한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2) 改善方向

주지하는 바와 같이 季節關稅는 輸入되는 시기에 따라 稅率을 달리 적

용하는 關稅로서 國內生産品이 출하되는 시기에 輸入되는 物品에 대해 높은 關稅를 부과함으로써 國産品을 保護하고, 非出荷期에는 關稅를 낮춰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서 바나나와 오렌지 등의 農産物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림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國內産業保護手段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方案을 모색하여 경험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 割當關稅制度 運營 關聯

1) 問題點

資源의 원활한 물자수급을 기하기 위해서는 國民經濟에 어떠한 物品이 가장 긴요한 것인지를 예의 파악하고 각 品目別 수요공급상 일시적으로 해외공급이 필요한 때 동 物品의 輸入時에 關稅가 장애요인이 되는 品目を 中心으로 運營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同 制度를 運營함에 있어서 일시적인 수급 애로 品目이 아닌 品目 등에 대하여도 運營하였고, 한번 割當關稅 運營對象이 되면 만성화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왜냐하면 호황기에는 國際價格 상승추세로 관계부처로부터 割當關稅 적용 대상품목의 확대 적용이 강력하게 요청되는 한편, 불황기에는 국제 原資材 價格이 하락안정세를 견지하게 됨에 따라 割當稅率 적용을 정지하고 基本關稅率로 환원하여 關稅率의 彈力性을 회복하고자 하면 불황기에는 직면하고 있는 相關 産業의 어려움 때문에 基本稅率로의 환원이 어려워 彈力性 회복이 어렵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와 같이 同一 物品에 대한 割當稅率의 만성적인 적용이 불가피하였으며, 이로 인해 割當關稅 運營의 경직성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割當關稅制度를 運營할 경우 原資材의 輸入價를 낮추어 企業의 製造原價 부담을 줄이고 物價를 安定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있는 반면 세수가 감소되고 相關 品目間의 稅率 不均衡을 초래하는 등의 問題點이 있

는 것도 사실이다.

2) 改善方向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는 割當關稅制度를 改善하기 위하여서는 그 基本運營方向, 對象品目, 稅率政策基準, 適用期間, 만성적인 割當關稅 對象品目的 基本關稅率로 흡수여부 등에 대하여 彈力關稅 運營 세칙 속에 포함시켜 同 基準에 따라 엄격하게 運營되면 문제점은 상당히 해소되리라고 본다.

자. 特別緊急關稅制度 運營 關聯

1) 問題點

1995年 1月 1日부터 特別緊急關稅制度가 실시된 이후 다소의 시행착오가 없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무난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 特別緊急關稅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가) 物量確認의 問題

讓許稅率이 적용되는 市場接近物量, TE 稅率이 적용되는 輸入物量, SSG稅率이 적용되는 輸入物量이 그 구간별로 해당 물량만큼 다 들어왔는지 각 稅關에 확인해야 하고 마지막 순간에 輸入 러시(rish)가 일어날 경우에 실무적으로 어디에 속하는 物量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은 점이 있다.

나) 物量 超過時 關稅賦課 問題

市場接近物量으로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농림수산부장관 등의 추천(예: 양곡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糧穀管理法 제12조, 제13조 등 관계 법률에 의거)을 받아야 낮은 讓許關稅率이 적용되는데, 옥수수 등의 경

우에는 실제 추천량보다 많이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 市場接近 物量에 대하여는 讓許稅率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TE 稅率을, 特別緊急關稅 發動基準 物量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特別緊急關稅를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다) 稅率 差等適用에 대한 法規 미흡

市場接近物量의 關稅率이 物量 이내의 稅率과 초과시의 稅率로 차등이원화되어 있는바, 同 市場接近 物量과 관련된 糧穀法 제12조 등 관련 8개 법률에 근거하여 “同 物量으로 輸入하고자 하는 경우 農林水産部長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同 推薦書가 없는 경우에 “市場接近物量의 超過稅率로 關稅를 부과하여야 한다”라는 直接根據가 되는 關稅法上 법규가 없어 앞으로 同 稅率適用(높은 稅率)에 대하여 納稅義務者들이 審査請求提起 등 불복이 있을 경우 대처방안이 미약한 실정이다.

라) 稅率適用의 혼돈

一線稅關에서 내리는 割當關稅를 적용받는 物品으로서 한계수량이 전량 輸入物品인 경우 市場接近 物量超過 前後와 特別緊急關稅의 發動基準인 限界物量을 초과할 경우 구간별로 어떤 稅率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몰라 다소 혼돈이 있었다.

마) 增量된 市場接近物量에 대한 解釋의 差異 發生

世界貿易機構協定 등에 의한 讓許關稅規定 제7조에 의한 市場接近物量 增量과 관련하여 증량된 市場接近物量도 WTO에서 讓許된 市場接近物量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입장과 증량된 市場接近物量은 WTO에서 讓許된 市場接近物量과 다르게 보는 입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바) 基準 發動 物量算定時 除外된 品目の 算入 與否

關稅法 제12조의 3에 의한 규칙(별표 1) 중 品目別 特別緊急關稅 부

과 대상품목군 중 일부 품목이 삭제되고, 市場接近物量이 증량된 경우 基準發動物量 산정에 있어 제외된 品目の 物量을 산입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았다.

사) 推薦書 有效期間의 適用問題 등

農林水産部の 市場接近 物量の 推薦書の 발급시 同 推薦書の 有效期間은 當該 年度 12月 31日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컨대 1995年 12月中旬에 輸入申告를 하였으나 檢疫節次 所要로 1995年 12月 31日까지 輸入免許를 받지 못한 경우 適用稅率에 있어 市場接近 物量에 관한 稅率을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와 物量集計基準에 있어 1995年度 輸入量으로 계산할 것인지 1996年度 輸入量으로 계산할 것인지 등 一線稅關에서 실무적으로 特別緊急關稅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일부 있었으나 이러한 실무적인 問題點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政策的인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改善方向

시행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제도숙지 미비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一線稅關 등에는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매체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特別緊急關稅制度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가) 市場接近物量 算定 基準 마련

市場接近物量, TE 稅率이 적용되는 輸入物量, 特別緊急關稅가 적용되는 基準發動物量에 각각 도달했는지 여부 확인은 마지막 순간에 또는 특정 순간에 輸入러시(rush)가 일어나더라도 면허시점을 기준으로 전산처리하여 해결해 나가야 하고 아울러 特別緊急關稅 해당 品目에 대하여는 週間·月間 輸入實績을 재정경제원과 농림수산부에 報告하여 사후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나) 關聯業界에 대한 教育·弘報의 강화

市場接近物量으로 실제 추천된 物量보다 많이 들어와 구간별로 여러 가지 상이한 稅率이 적용되는 문제는 관련 업계에 대한 教育·弘報가 잘 되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아무리 農林水産部 長官의 輸入 추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市場接近物量으로 讓許된 物量範圍 內에서 低率關稅를 부과받고 그 이상은 TE 稅率을, 特別緊急關稅 부과 發動基準 物量을 초과하면 特別緊急關稅가 부과된다는 사실이 관계 업계에 널리 홍보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稅關과 業界間의 마찰의 소지를 事前에 除去할 수 있다고 본다.

다) 關稅法의 改正·補完

WTO에 讓許된 市場接近物量에 대하여는 양곡법 등 관련 8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낮은 關稅率이 적용되고 있으나 關稅法上 TE 稅率 이전의 낮은 關稅率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는바, 이는 입법상 불비로 보아지므로 차기 關稅法 개정시 보완해야 할 事項이다.

라) 關稅法에 따른 稅率 우선 순위 적용

割當關稅 適用 物量에 대하여 市場接近物量 以內와 以後 그리고 特別緊急關稅 부과 發動基準 物量을 초과할 경우 어떤 稅率 곧 割當關稅, TE 稅率, 特別緊急關稅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선순위 문제는 關稅法 제7조 關稅率 적용 우선순위에 따르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는 덤핑·報復·特別緊急·相計關稅이고 2순위는 便益·國際協力關稅이나(이 경우는 3, 5, 6순위 稅率보다 낮은 경우에만 적용되고) 3순위는 調整·物價平衡·季節, 割當關稅이며 4순위는 農林畜産物 讓許關稅(TE, CB稅率)이고 5순위는 暫定關稅, 6순위는 基本關稅 順에 맞추어 적용하면 될 것이다.

마) 증량된 市場接近物量은 讓許된 物量과 다름

증량된 市場接近物量을 讓許된 市場接近物量과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特別緊急關稅의 부과시점 및 基準發動物量計算과 관련하여 증량된 市場接近物量은 讓許된 것과 다르며, 따라서 이미 수입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財政經濟院의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증량된 시장 접근물량은 TE 稅率 또는 特別緊急關稅 부과 發動物量 基準 物量 산정시 제외되는 物量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증량된 市場接近物量에 대해서는 TE 稅率보다 낮은 市場接近物量에 적용되는 稅率을 적용하되 同 物量은 TE 稅率 적용 物量에 합산처리되며, 만약에 TE 稅率 適用 物量이 다 차버린 경우에는 증량된 市場接近物量에 대해 特別緊急關稅가 적용되도록 실무적으로 運營하고 있다. 이와 같이 特別緊急關稅 적용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市場接近物量을 증량할 계획을 미리 잡고 동 계획에 맞추어 特別緊急關稅 부과일 이전에 계약되고, 우리나라에 輸出하기 위해서 船積되도록 하여 特別緊急關稅가 부과되지 않도록 政策的으로 배려하고 있다.

바) 基準發動物量 산정시 삭제된 物品은 제외

特別緊急關稅 부과 대상품목군 중 일부 품목이 삭제되고, 市場接近物量이 증량된 경우 基準發動物量 산정에 있어 제외된 품목의 輸入量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特別緊急關稅 대상품목군에서 한 품목이 삭제되었으므로 삭제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輸入量만을 누계하여 基準發動物量이 초과되는 경우 特別緊急關稅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特別緊急關稅의 運營은 합법적인 關稅國境(Legitimatory tariff barrier)을 통해 輸入開放 初期에 나타날 수 있는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고 民·官이 합심하여 실시하고 있는 農漁村構造改善事業 등 각종의 農業競爭力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여유를 제고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앞으로도 外國의 事例 및 實際 施行過程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改善 余地 등을 파악하여 輸入開放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政策에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制度의 취지가 달성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려면 실제 이를 집행하는 稅關公務員, 關稅士 등의 제도 내용 숙지 등의 노력도 요청된다고 하겠다.

Ⅳ. 現行 國際關稅協力制度의 運營上 問題點과 改善方向

1. 問題의 提起

UR의 타결로 세계는 국경 없는 無限競爭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關稅 行政도 貿易의 최일선에서 國際競爭에 노출되게 되었다.

그 동안 우리의 對外關稅協力は GATT/WTO와 WCO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韓美, 韓日 등 양자간 關稅協력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 國際競爭力 있는 關稅行政을 이끌어 가기 위하여서는 兩者間(Bilateral)協력과 多者間(Multilateral)協력을 보다 강화하여 先進制度를 우리 關稅制度에 수용하는 등의 노력이 가일층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GNP 규모나 총교역량에서 세계 10위권에 육박하고 있으며 造船, 半導體, 自動車 등 일부 산업에서는 이미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상태이므로 이에 따라 美國 및 EU는 韓國을 開途國으로 간주하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수년 안에 한국은 객관적으로 開途國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그동안 우리나라가 開途國 입장에서 關稅協力 활동을 전개해 왔던 분야에 대한 우리의 향후 입장이 시급히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WTO 關稅協商 결과가 시행 초기에 있는 상태에서 APEC 내에서는 UR協商 결과의 자발적인 조기시행 등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 또한 전향적으로 정해야 할 입장에 있다.

아울러 수출지향적인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 기업들이 수많은 나라로 수출시 직면하는 關稅上의 障壁 내지는 隘路를 찾아서 支援해 주는 보다 능동적인 雙務間 關稅協力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 동안 우리의 關稅協力 활동을 分野別로 재조명해 보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2. 國際關稅協力 活動의 運營現況

가. 制度現況

關稅法 제43조의 8의 규정(國際關稅協力)에 의하면 정부는 우리나라의 對外貿易 增進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特定 國家 또는 國際機構와 關稅에 관한 協商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協商을 遂行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稅를 讓許할 수 있다. 다만, 特定 國家와의 協商을 遂行함에 있어서는 基本關稅率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關稅를 讓許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960年代부터 활발히 추진된 바 있는 우리나라의 國際關稅協力 활동은 國際機構 등을 중심으로 한 多者間 協力和 두 나라간 關稅協力を 增進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兩者間 協力方式으로 추진되었는바,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多者間 關稅協力 活動

1) 關稅 關聯 主要 國際機構 및 協定現況

〈表 IV - 1〉 關稅 關聯 主要 國際機構 및 協定現況

| 기구 및 협정 | 기능/목적 | 설립/체결일 | 가입국 | 아국가입일 |
|--|---------------------------------------|------------|----------------------|---|
| 1.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협정>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TRIPs(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r-lectual Property Rights) TPRM(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장벽제거로 자유무역 실현 | 1995. 1. 1 | 110 | 1995. 1. 1 |
| 2.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 | 각국 관세제도의 조화와 통일 및 관세기술의 발전과 증진도모 | 1952.11. 4 | 138 | 1968. 7. 2 |
| 3.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방콕협정〉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PNG, 한국 | 아·태지역의 경제재건, 개발 촉진, 경제활동 증대 및 경제협력 강화 | 1947. 3 | 58 (정:48 준:10) | 1949. 3 (준회원국) 1954. 10 (정회원국) |
| 4.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 〈UNCTAD 관련 협정〉 GSTP(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 범 개도국간 무역특혜 협정 | 무역을 통한 개도국의 경제개방 및 남북협력도모 | 1964. 3 | 186 | 1964. 3 |

〈表 IV - 1〉의 계속

| 기구 및 협정 | 기능/목적 | 설립/체결일 | 가입국 | 아국가가입일 |
|---|--------------------|--------------------|--------------------|---------|
| 5.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 아·태지역 국가간 경제협력 강화 | 1989 | 18 | 1989 |
| 6. Asia EDIFACT(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 Board | EDI Message의 국제표준화 | 1990. 11 | 7 | 1992. 6 |
| 7. 아·태지역 마약법 집행기관장회의(Heads of National Drug Law Enforcement Agency: HONLEA) | 불법마약거래 단속 | 1976 (아·태지역 회의) | 25 | 1993 |
| 8. 환태평양지역 세관행정 최고 책임자회의 (Conference of Customs Administrators in the Pacific Basin: CCAP) | 세관행정 발전 방안 논의 | 1989. 5 | 14 (고정되어 있지 않음) | 1989. 5 |

2) GATT/WTO와의 關稅協力

가) 關稅讓許

WTO 설립 이전의 GATT 주관하의 다자간 關稅協商을 통한 關稅引下와 讓許品目的 확대는 주로 先進國의 公産品 關稅에 집중되었으며 이는 세계적인 工産品 交易의 自由化는 물론 開途國의 對先進國 公産品 수출 및 이를 통한 開途國의 工業化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評價하고 있는 바, 그 동안 7차에 걸친 GATT 다자간 關稅協商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 表와 같다.

GATT 주관하에 치루어진 제8차 다자간 協商인 우루과이라운드協商은 1994年 4月 15日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UR 終了를 선언하는 最終 議定書에 서명절차를 마침으로써 7年 동안 계속된 우루과이라운드 協商

〈表 IV-2〉 GATT 多者間 關稅協商의 內容

| | 협상기간 | 참가국 | 양허품목수 | 총양허액 | 평균인하율 | 2국간협정수 |
|-------------|-----------|-----|---------|--------|-------|--------|
| 1차(Geneva) | 1947 | 23 | 46,000 | 100억달러 | - | 123 |
| 2차(Annecy) | 1949 | 32 | 5,000 | - | - | 147 |
| 3차(Torquay) | 1950/1951 | 34 | 8,700 | - | - | 147 |
| 4차(Geneva) | 1956 | 22 | 3,000 | 25억달러 | - | 59 |
| 5차(Geneva) | 1961/1962 | 23 | 4,000 | 49억달러 | 7% | 90 |
| 6차(Geneva) | 1964/1967 | 46 | 30,300 | 400억달러 | 35% | - |
| 7차(Geneva) | 1973/1979 | 99 | 250,000 | - | 33% | - |

資料：對外經濟政策研究院, 『WTO 出帆과 新交易 秩序』 1994.

을 마무리짓게 되었다. WTO 協定文의 일부인 GATT 1994년에 부속되는 讓許表에 담긴 UR 關稅 協商의 결과를 살펴보면 工產品·水産物의 경우 WTO 출범 후 5年 內에 關稅率을 1986年 9月 대비 3분의 1 이상의 폭으로 引下하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① 無稅化 ② 關稅調和 등의 方式을 통한 대폭적인 關稅引下와, 農産物의 경우 ① 關稅引下와 ② 원칙적으로 기존의 모든 非關稅措置를 關稅로 전환하여 關稅만을 유일한 國경조치로 한다는 이른바 예외 없는 關稅化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工產品의 關稅引下는 UR協商 초기에는 가중평균 3분의 1 (33%) 이상의 감축을 目標로 추진하였으나 주요 先進國들의 주도로 無稅化 및 關稅調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많은 국가들이 참여함으로써 關稅引下幅은 이보다 훨씬 큰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農産物분야에 있어서는 ‘예외 없는 關稅化’가 기본원칙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모든 국가의 非關稅障壁이 사라지고 讓許比率이 100%로 높아지게 되었는데 특히, 開途國의 讓許比率 변화는 先進國이나 市場經濟轉換國에 비해 대폭적이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關稅化 예외조치를 주장하던 일본, 스위스, 북구 등의 입장이 일부 반영되어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s)이 부분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特別條項을 신설, 關稅化 猶豫期間을 10年 동안 부여받

음으로써 당분간 쌀의 完全開放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表 IV-3〉 WTO 工產品 讓許範圍(全世界)

(單位: 개, 10億달러, %)

| | 관세품목수 | 총수입액 | 양허비율 (품목기준) | | 양허비율 (수입액기준) | |
|-------------------|---------|---------|----------------|-----|-----------------|-----|
| | | | UR 전 | WTO | UR 전 | WTO |
| 선진국 | 86,968 | 737.2 | 78 | 99 | 94 | 99 |
| 개도국 ¹⁾ | 157,805 | 306.2 | 22 | 72 | 14 | 59 |
| 전환국 | 18,962 | 34.7 | 73 | 98 | 74 | 96 |
| 계 ²⁾ | 263,735 | 1,078.1 | 44 | 88 | 70 | 88 |

註: 1) 開途國은 26개국 기준(93개 開途國 수출액의 89% 차지, 品目數의 30% 차지)

2) 총 43개국 기준(EU는 하나의 協商體로 참여함. UR 協商에 참여한 121개 개별국가 貿易額의 98% 차지)

資料: GATT, *New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Marrakesh 94*, April 1994.

〈表 IV-4〉 우리나라의 WTO 關稅讓許(單位: HS 10單位 基準)

(單位: 個, %)

| | 총품목수 | 양허품목수 | 양허비율 |
|-----|-------|-------|------|
| 공산품 | 8,705 | 7,990 | 91.8 |
| 수산물 | 338 | 144 | 42.6 |
| 계 | 9,043 | 8,134 | 90.0 |

資料: 對外經濟政策研究院, 「WTO 출범과 新交易 秩序」, 1994.

〈表 IV-5〉 農産物 讓許比率의 變化

(單位: 개, 10億달러, %)

| | 관세품목수 | 총수입액 | 양허비율 (품목기준) | | 양허비율 (수입액기준) | |
|-------------------|--------|------|----------------|-----|-----------------|-----|
| | | | UR 전 | WTO | UR 전 | WTO |
| 선진국 | 14,976 | 84.2 | 58 | 100 | 81 | 100 |
| 개도국 ¹⁾ | 23,615 | 30.4 | 18 | 100 | 25 | 100 |
| 전환국 | 2,841 | 4.8 | 51 | 100 | 54 | 100 |

註: 1) 開途國은 26개국 기준(93개 開途國 수출액의 89% 차지, 品目數의 30% 차지)

資料: GATT, *New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Marrakesh 94*, April 1994.

이상은 WTO 體制下의 先進國과 後進國 모두를 포함한 다자간 關稅 協商의 결과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것이나 종전 GATT 體制下에서 이루어진 7차례의 다자간 貿易協商의 성과가 開發國의 貿易增進보다는 先進 諸國間의 國際貿易秩序 再編에 불과했다는 반성하에 開發國間에 이루어진 최초의 關稅引下 協商이 WTO/開發途上國間의 貿易協商에 관한 議定書(Protocol Relating to Trade Negotiations among Developing Countries : TNDC)인바, 우리나라를 비롯한 브라질, 칠레, 인도 등 15개국이 모두 470여 개 품목을 讓許 施行(우리나라는 15개 品目讓許)하고 있다.

〈表 IV - 6〉 WTO 開發途上國間의 讓許關稅(例示)

(單位: %)

| 품목번호 | 품명 | 세율 | |
|------|-----------|----|-----|
| | | 기본 | 양허 |
| 2401 | 오리엔트종 잎담배 | 20 | 18 |
| 2523 | 시멘트 클링커 | 5 | 4.5 |
| 2523 | 알루미나 시멘트 | 8 | 9.9 |
| 3208 | 필렛센스 | 8 | 9.9 |

나) 公正한 貿易秩序 維持를 위한 制度改善

우회덤핑의 방지, 보조금의 차별화 및 相計關稅 발동절차의 명료화, 과거 GATT 체제의 분쟁해결 절차가 30여개 조문에 산재해 있고 기간, 절차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WTO에서는 통합된 분쟁해결 절차와 이를 관할하는 紛爭解決機構(Dispute Settlement Body)를 두어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增進한 바 있으며 또한 과거 GATT 體制下의 貿易政策檢討制度(Trade Policy Review Mechanism)를 계속 살려 주기적으로 會員國의 貿易政策을 評價함으로써 貿易紛爭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 발동요건을 까다롭게 한 UR 緊急輸入制限措置規定과 知的財産權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

한 기준·절차를 마련하는 등 공정한 貿易秩序 維持를 위한 광범위한 制度 改善이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은 WTO 協定 附屬書를 총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表 IV-7〉 WTO 協定 附屬書

| | 협정 부속서의 내용 | | 비 고 |
|--------------------|------------|---|-----------------------------------|
| 다 자 간 무 역 협 정 | I | I (A) UR 의정서와 농산물, 반덤핑, 투자 등 관련 12개 협정 ¹⁾ I (B) 서비스 무역협정(GATS) I (C) 지적재산권 협정(TRIPs) | 금번 UR협상 결과에 따른 협정 |
| | II |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 | |
| | III | 무역정책 검토제도 | |
| 복 수 국 간 무 역 협 정 | IV | 민간항공, 정부조달, 낙농제품, 우육에 관한 4개의 협정 | 기존 GATT 다자간 무역 협정 중 UR협상에 미포함된 협정 |

註: 1) Safeguard, 반덤핑, 보조금 상계관세, 투자, 수입허가절차, 평가, 선적전검사, 원산지, 기술장벽, 위생 및 식물검역조치, 농산물, 섬유 및 의류

3) WCO와의 關稅協力

世界關稅機構(WCO)의 전신인 關稅協力理事會(Customs Cooperation Council)는 歐洲關稅同盟研究團(제1회 GATT 교섭이 제네바에서 행하여 지고 있던 1947年, 브뤼셀에서 歐洲經濟協力委員會의 일부 국가는 歐洲關稅同盟의 설립을 위하여 歐洲關稅同盟研究團을 설립하였음)에 참가한 13개국이 1950年 12月 15日 브뤼셀에서 關稅協力理事會를 설립하는 조약(이하 설립조약이라 약칭함)을 체결하여 1952年 11月 4日 부터 발효되게 되었으며 그후 1953年 1月 26日 최초의 CCC 總會를 개최한 바 있다. 제1차 총회 이후 CCC는 설립조약과 함께 CCC의 3대 基本協約에 속하는 品目分類協約(關稅率表에 있어서 物品의 분류를 위한

품목표에 관한 協約, 1959年 9月 1日 발효)과 評價協約(稅關에서의 物品의 評價에 관한 條約, 1953年 7月 28日 발효)을 채택하였다. 그 동안 CCC는 關稅分野에서 國家間 關稅行政의 간소화 및 조화를 위한 수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앞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하여 1994年 9月 CCC를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111개국의 會員國, 17개의 國際協約 및 稅關 관련 사항을 다룬 52개의 권고안을 制定·運營하고 있다.

國際關稅機構(WCO)는 關稅行政의 조화·간소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직된 범세계적인 協力機構로서 각국의 通關節次, 監視活動, 關稅評價, 品目分類 등 技術的인 사항을 國際的인 협의를 통하여 標準化를 촉진하고 關稅制度를 개선함으로써 世界貿易의 원활화에 기여하고 있다.

날로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량은 필연적으로 關稅行政의 發展과 그 制度的인 國際化를 요구하게 되었고, 여기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는 國際關稅制度의 조화와 통일화를 그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는 關稅協力理事會 設立 協約(CCC: Customs Cooperation Council)에 1968年 가입한 이후 WCO에 이르기까지 同 機構에서 제정한 각종 國際制度를 도입함으로써 關稅行政의 國際化를 기해 오고 있다.

〈表 IV-8〉 關稅 關聯 國際協約 現況

| | 총협약수 | 한국가입현황 | 비 고 |
|--------------------|------|--------|---|
| WCO | 17 | 10 | · 탈퇴 2 (구평가 협약, CCCN협약) · 미가입 2 (나이로비 협약 등) · 미발효 3 |
| WTO | 6 | 6 | |
| UN | 10 | 9 | · 마약에 관한 UN 실험약 미가입 |
| WIPO ¹⁾ | 2 | 2 | |
| ICAO ²⁾ | 1 | 1 | |
| 계 | 36 | 28 | 미가입 5, 미발효 3 |

註 : 1) WIPO(世界知的 所有權 機構)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2) ICAO(國際民間 航空機構)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4) ESCAP과의 關稅協力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 아시아·太平洋 經濟社會委員會)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關稅와 관하여서는 방콕協定이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1970年 12월에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열린 ESCAFE 지역 經濟協力에 관한 각료 理事會에서는 「카불」 宣言을 채택하여 아세아 태평양지역의 開發途上國 상호간에 貿易을 확대시킬 方案을 강구할 것에 합의하고 1971年 11月 以後 방콕에서 地域貿易 확대를 위한 정부간 委員會를 개최하고 開發途上國 상호간에 關稅障壁의 緩和를 위한 協商을 전개하여 1976年 7月 2日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이 방콕協定(원명 : ESCAP 開發途上國間的 貿易協商 : The Agreement on Trade Negotiations among Developing Member Counties of the ESCAP)이다.

당초 방콕協定 탄생을 위해 1972~1975年間 역내 17개국에 協商에 참여했으나 1975年 7개국에 關稅協商에 참가하고 1976年 한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등 5개국만의 批准書 기탁으로 출범하였으며 동 제1라운드 協商에 의거 5개국간에 讓許한 品目數는 183개 품목(HS 10단위 또는 CCCN 4단위)이었으며, 그 중 27개 품목은 最貧開發途上國에게만 특별히 讓許한 품목이었다.

제1차 關稅協商 종결에 따른 讓許現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對象品目數가 200여 품목 이하이고 전체 교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어 그 協商의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評價되었다.

따라서 1984年 방콕協定 제13차 常任委員會에서 擴大協商(Second Round)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논의대상을 特惠關稅뿐만 아니라 합작투자, 장기계약, 산업협력 등 기타 형태의 貿易協力도 확대키로 하였다.

그 후 1985年 6月과 1986年 10월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서울에서 제 1·2차 회의를 개최, 확대협상 기본방향에 대하여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어서 1987년에는 각 참가국이 Request List 와 Offer List를 교환

하고 동 품목들을 가지고 協商한 끝에 1988年 5月과 9月에는 讓許品目과 讓許稅率을 잠정적으로 합의하였으나 인도와 스리랑카의 국내사정 또는 방글라데시의 홍수 등으로 회의가 2年여 연기되다가 1990年 5月 1~4일간 방콕에서 속개된 회의에서 제2라운드 關稅引下協商的 종결 및 다자화에 성공하였다.

〈表 IV - 9〉 방콕協定 第1次 關稅協商 終結에 따른 讓許現況

(單位: 個, %)

| | 양허품목수 ³⁾ | | | 양 허 품 (현행세율-양허세율 /양허세율) | 세율 종류별 | | 기준연도 |
|---------|---------------------|------------------|-----|-------------------------------|--------|-----|---------|
| | 일반 ¹⁾ | 특별 ²⁾ | 계 | | 증가세 | 종량세 | |
| 한 국 | 16 | 7 | 23 | 34.4 | 23 | - | 1986 |
| 인 도 | 16 | 6 | 22 | 41.8 | 19 | 3 | 1983 |
| 방글라데시 | 15 | 8 | 23 | 27.0 | 17 | 6 | 1986/87 |
| 스 리 랑 카 | 81 | 6 | 87 | 16.3 | 77 | 10 | 1985 |
| 라 오 스 | 28 | - | 28 | 31.7 | 24 | 4 | 1983 |
| 계 | 156 | 27 | 183 | 25.6 | 160 | 23 | |

註: 1) 一般讓許는 協商 참가국간에 일반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國別 讓許를 말함.

2) 特別讓許는 ESCAP 역내 開途國 중 최후진국으로 인정된 라오스 및 방글라데시에 대해서만 특별히 적용되는 讓許를 말함.

3) 主要品目은 기계류, 수송장비, 화약품, 주류 담배류, 유지제품류 등이다.

〈表 IV - 10〉 방콕協定 第2次 關稅協商 結果

| | 한국 → 타참가국에 양허 | | | | 타참가국 → 한국에 양허 | | | |
|----------------------|---------------|----------|------------|-----|---------------|----------|------------|------|
| | 인도 | 스리 랑카 | 방글라 데 시 | 계 | 인도 | 스리 랑카 | 방글라 데 시 | 계 |
| 품목수 (HS 6단위) | 64 | 32 | 94 | 190 | 51 | 22 | 62 | 135 |
| 무역액 (백만달러, 1989년) | 7.3 | 0.8 | 0.6 | 8.7 | 8.5 | 37.2 | 3.7 | 49.4 |
| 양허폭(%) | 23.8 | 28.7 | 34.4 | - | 21.0 | 12.0 | 11.1 | - |

資料: 財政經濟院.

5) UNCTAD와의 關稅協力

UNCTAD와의 關稅協力は 汎開途國間 特惠貿易協商(GSTP)을 들 수 있는데 同 汎開途國間 特惠貿易制度(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 GSTP)는 南南協力の 일환으로 非同盟 77그룹 開途國間 相互貿易障壁 완화 및 철폐를 통한 貿易·生産 및 雇傭 增進을 목적으로 한 國際聯合 貿易開發會議(UNCTAD) 主管하의 貿易協定이다.

전후 GATT를 중심으로 世界貿易 增進을 위한 다자간 協력이 전개되었지만 개도국의 발전을 위한 집단적 자조와 상호협력 증진의 또 다른 필요성이 대두되어 1976年 6月 UNCTAD 제4차 總會에서 처음 거론된 이후, 1986年 5月부터 各國간에 協商이 개시되어 1988年 4月에 종결된 GSTP 제1라운드 是 1989年 4月에 정식 발효되었다.

1996年 2月 현재 會員國數는 40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89年 5月에 批准書를 기탁하여 1986年 6月부터 協定이 발효·시행중에 있다.

GSTP 協定文은 전문과 7장 34조로 구성되어 있다. 同 協定의 중요한 基本원칙으로는 會員國을 77그룹 가맹국만으로 제한한다는 點, 互惠主義原則 및 最貧開途國에 대한 예외 인정, 正當한 Safeguard 및 國際收支 弱化를 이유로 하는 방어조치를 인정한다는 點 등을 들 수 있다.

GSTP는 開途國間 經濟協力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對象品目의 광범성, 開途國들의 다양한 貿易體制 등을 감안하여 關稅, 關稅 이외의 類似關稅(Para-Tariffs), 非關稅措置(Non-Tariff Measures), 中長期契約을 포함한 直接貿易措置(Direct Trade Measures), 分野別協定(Sectoral Agreement)을 구성요소로 포괄하고 있으나 제1라운드에서 是 關稅協商만을 종결지었다.

즉, GSTP 제1라운드가 발효됨으로써 나타난 가시적인 효과는 참여 國간의 關稅 引下인바, 우리나라는 大淸민국 特別讓許 4개 품목을 포함하여 모두 26개의 품목에 대하여 平均 10%를 인하 讓許하였으며, 우리

나라가 受惠를 받은 품목은 참여국간 雙務協商이 다자화된 결과 총 1,550개 품목 중 최빈국에 대한 特別讓許品目 135개를 제외한 1,415개 품목이다.

〈表 IV - 11〉 GSTP 讓許品目 現況(例示 1996)

(單位: %)

| 품 명 | 관 세 율 | | 품 명 | 관 세 율 | |
|------------------------|-------|----------|--------|-------|---------|
| | 기 본 | GSTP 양허 | | 기 본 | GSTP 양허 |
| 샤프란 | 8 | 7.2 | 초산 | 8 | 7.2 |
| 조 유 | 5 | 4.5 | 초산나트륨 | 8 | 7.2 |
| 밀 납 | 8 | 7.2 | 초산칼슘 | 8 | 7.2 |
| 사탕수수당 (당도 98.5도 이하) | 5 | 4.5 | 초산에틸 | 8 | 7.2 |
| 당밀(주정 제조용) | 8 | 7.2(2.7) | 초산비닐 | 8 | 7.2 |
| 무수암모니아 | 5 | 4.5 | 초산이소부닐 | 8 | 7.2 |
| 탄화칼슘 | 8 | 7.2 | PVC | 8 | 7.2 |
| | | | 불류트럼프 | 8 | 7.2 |

資料: 財政經濟院.

6) APEC와의 關稅協力

APEC와의 關稅協力は 關稅率 데이터베이스 構築, 通關節次 簡素化, 關稅率 引下, 初期 可視化 조치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關稅率 데이터베이스 構築

會員國의 貿易業者 및 通關會社 등이 신속·정확한 최신 關稅率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APEC 역내국가들의 相互交易을 增進시키려는 목적으로 처음에는 뉴질랜드가 맡아 추진하였으나 會員國들의 관심부족과 예산문제 등으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이미 TAPIN(Trade and Precedents Information Net-

work)이라는 關稅情報網을 運營하고 있는 호주가 동 정보망을 이용하여 시험모델을 개발하고 需要調査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에 Tariff Data Base Task Force를 가동시켜 시험사업의 일환으로 關稅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CD롬으로 완성한 바 있고 各 會員國에 보내어져 그 유용성에 대한 調査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關稅 관련 데이터를 계속 수정·보완이 용이하도록 CD롬보다는 인터넷에 올려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향후 이 사업의 장래는 막대한 구축비용을 보전할 수 있을 만한 수요가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會員國의 關稅率制度를 설명하는 메뉴얼을 발간한 바 있다.

나) 通關節次 簡素化

APEC Bogor 선언을 통관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역내 통관절차의 조화 및 간소화를 위한 공동행동계획(Common Action Plan)을 작성하기로 1995년 2월 후쿠오카회의에서 決定하였고 이에 따라 각국의

〈表 IV - 12〉 通關節次 簡素化를 위한 共同行動計劃

| 공 동 계 획 | 이행기한 |
|--|------|
| ○ 품목분류(HS) 협약 원칙의 채택(준수) | 1996 |
| ○ 관세법, 규정, 행정지침, 절차, 예규 등에 관한 정보 공표 | 1998 |
| ○ 교토협약원칙의 채택(준수) | 1998 |
| · 회원국으로 하여금 WCO의 교토협약 개정작업에 능동적으로 참여 | |
| ○ 통관절차 표준인 EDIFACT 채택 및 지원 | 1999 |
| ○ WTO 평가협정원칙의 채택(준수) | 2000 |
| ○ WTO 지적재산권 협정(TRIPs) 원칙의 채택(준수) | 2000 |
| · 국경통제 관련 부분 | |
| ○ 명확한 불복규정의 도입 | 2000 |
| ○ 품목분류 사전회시제도 도입 | 2000 |
| ○ 일시 통관시 편의제공: ATA ¹⁾ 협약 가입 | 2000 |

註: 1) ATA (상품견본을 위한 카르네에 관한 關稅協約): Customs Convention Regarding E.C.S Carnet for Commercial Samples Carnet=E.C.S 카르네協約

자발적인 행동계획을 기초로 공동행동계획(案)을 작성하여 1995年 11月 오사카 정상회담시 이를 정식으로 채택하였는바, 동 계획은 다음과 같다.

다) 關稅率 引下

APEC의 18개 會員國 정상들은 1994年 11月 보고르선언을 통하여 先進國은 2010年, 開途國은 2020年까지 域內 貿易·投資 自由化를 이룩할 것임을 천명하였고 이를 위하여 關稅, 서비스, 投資, 通關節次, 規制緩和 등의 분야에서 貿易·投資自由化를 위한 行動計劃 도출에 합의하였다. 다만, 그 동안 APEC의 貿易 投資自由化를 위한 실천 방안 논의는 UR協商 결과에 따른 關稅 引下가 시행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關稅率 引下보다는 주로 非關稅障壁의 완화 내지는 철폐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1995年 7월 싱가포르의 會員國의 關稅率을 貿易·投資 自由化 이행연도(2010/2020)까지는 5% 이내로 引下할 것을 전격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日本·中國과 공조, 農業 등 민감분야에 대한 특별취급 등 신축성 부여를 주장하여 1995年 11月 오사카 정상회의시 이를 관철함으로써 싱가포르의 제안은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1995年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각국은 점진적으로 關稅率을 引下하기로 決定함에 따라 1996年 末까지 각국은 개별적인 關稅率 引下 Action Program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다.

라) 初期 可視化 措置(Downpayment)

1995年 11月 19日 APEC 貿易·投資自由化의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각국의 초기 가시화 조치(Initial Action)를 공동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문민정부 출범 이후 세계화 전략에 따라 추진하여 온 개혁성과를 바탕으로 그간의 주요한 추진사항들을 제시하여 우리의 貿易·投資自由化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관세분야는 자동차 59개 품목에 대한 關稅率을 10%→8%로 引下한 實績(1995年 1月

1日 施行)을 제출하였다. 참고로 다른 나라가 제시한 초기 가시화 조치를 살펴보면 일본은 697개 품목에 대해 UR 계획보다 조기 인하하고 55개 농수산물에 대한 特惠關稅를 인하(1995年 4月)하였고, 캐나다는 1,500여 개 품목에 대하여 UR 讓許稅率 以下로 關稅를 인하(1995年 6月 以後 4~9年間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3천여 품목에 대한 一般特惠關稅를 인하(1995年 3月)하였다. 또한 호주는 2,800여개 품목에 대하여 UR 계획보다 1年 조기 이행하고 중국은 1996年中에 4천여개 품목에 대하여 30% 이상 關稅率을 인하하기로 하였으며 대만은 758개 품목에 대한 關稅를 인하(1995年 7월)하였고, 1996年中에 關稅率을 추가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7) UN 傘下 國際機構 등과의 關稅協力

가) Asia EDIFACT Board

EDI 메시지의 國際的 표준인 EDIFACT(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의 제정관리를 논의하는 회의로서 UN 총회에서 유럽經濟委員會(ECE)에 위임해서 작업중이며 同 委員會가 주관이 되어 전세계를 범미, 서유럽, 동유럽, 대양주, 아시아, 아프리카의 6개 지역으로 나누고 Asia Board에는 한국·일본·싱가포르·중국·대만·인도·말레이시아 등 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Asia EDIFACT Board 전체로는 기능별로 현재 9개 분야로 나누어져 토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關稅分野의 EDI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會員國間 技術, 經驗情報交換을 통해 會員國間에 선진정보 처리의 표준화를 위해 稅關部分 그룹(Customs Joint Working Group)이 구성되어 상호 협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EDIFACT의 제정·관리는 주로 미국과 유럽의 이해관계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圈의 입장 반

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나) 亞太地域 麻藥法 執行機關長 會議(Heads of National Drug Law Enforcement Agency : HONLEA)

HONLEA는 UNDCP(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rug Control Program)의 아시아 태평양지역회의로서 세계 전체로서는 아태, 라틴, 아프리카, 유럽, 중동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동 회의의 성격은 아태지역 마약단속실무책임자회의로서 지역 내 국가간 정보교환 및 國際協力을 논의하는 회의이며 현재 한국을 포함한 25개국의 會員國 ICPO(國際刑事警察機構 :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등 5개 國際機構가 참여하고 있다. HONLEA 최근 회의에서는 不法麻藥去來 現況 및 추세, 아태지역에서의 마약단속 훈련 등이 논의되고 있다.

다) 環太平洋地域 稅關行政 最高責任者會議(Conference of Customs Administrators in the Pacific Basin : CCAP)

역내 국가간 相互貿易依存度 심화에 따라 國際的인 物品 및 여행자의 이동을 關稅線에서 管理 統制하는 업무를 遂行하고 있는 關稅當局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므로 稅關 次元에서의 通商摩擦解消 및 關稅行政의 標準化·國際化를 도모하기 위하여 1989年 5月 동경, 1990年 9月 서울, 1992年 3月 뉴질랜드, 1994年 10月 캐나다에서 환태평양 地域 內 關稅廳長會議를 개최한 바 있다. 會員國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나 미국, 캐나다(미주지역), 한국, 중국, 일본, 홍콩,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아시아지역), 호주, 뉴질랜드, 피지(대양주지역) 등이다. 회의는 격년마다 열리며 회의마다 3~4가지의 의제를 선정 논의하게 되며 주로 貿易 增大를 위한 迅速通關, 不法輸出入 團束, 電算化 등이 논의되었다.

다. 雙務間 關稅協力 活動

1) 國家間 稅關協力 會議

關稅廳에서는 稅關相互支援協定, 합의의사록, 양해각서 등에 따라 일본, 중국, 홍콩, 미국, 캐나다, 러시아, 뉴질랜드, 몽골 등 9개국과 雙務的인 稅關協力會議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상대국별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바, 會議別 主要議題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 IV - 13〉 雙務關稅 協力 國家別 主要會議 議題

| 회 의 명 | 주 요 의 제 |
|----------------|---|
| ① 한·일세관 실무자 회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수정보교환의 활성화 · 마약류 단속에 관한 사항 · 세관직원 상호교환 방문 · 통관마찰 해소방안 |
| ② 한·홍콩세관 협력회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적인 마약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보교환 및 검색강화 방안 · 상호교환 교육의 실시 |
| ③ 한·미세관 협력회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제품의 대미수출 쿼터비자문제 ·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 · 대미수출통관상의 애로사항 타개 · 양국 무역 통계 차이로 인한 통상마찰 해소방안 · 밀수 등 부정무역방지를 위한 협조방안 · 통관행정의 전산화 등 |
| ④ 한·캐나다세관 협력회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밀수 등 부정무역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교환 · 양국 세관 당국간 기술지원 · 양국 세관 직원의 연수훈련 · 통관절차 전산화에 관한 협조 · 양국 무역 통계자료의 교환 |
| ⑤ 한·호주세관 협력회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제도 각 분야에 대한 정보교환 · 우리 수출업계의 대외영업 환경개선 · APEC 등 국제기구에서의 상호협조 · 마약밀수 등 부정무역방지대책 |

〈表 IV - 13〉의 계속

| 회 의 명 | 주 요 의 제 |
|-----------------|---|
| ⑥ 한·러시아세관 협력회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통관제도의 실행범위 · 마약밀수 등 부정수출입 단속을 위한 협조 강화 · 신속한 수출입 통관을 위한 협조 · 양국 세관 직원의 교류 |
| ⑦ 한·뉴질랜드세관 협력회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세관 당국에 필요한 정보교환 · 마약 등 밀수방지를 위한 협력 · 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협력 · 전략 물자 통관관리 · 원산지제도 운영실태 · 전자자료교환에 의한 통관관리(EDI) |
| ⑧ 한·몽고세관 협력회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기업의 현지 통관지원 방안 · 양국세관간 교육훈련 지원 · 마약 등 밀수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강화 방안 |
| ⑨ 한·중세관 협력회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 및 농·수산물 밀수동향 및 단속을 위한 협력강화 · 양국간 수출입 물품의 통관 애로사항 토의 · 수출입 통관 관련 정보교환 방법 논의 · 우리측의 관세감면 및 환급제도 등에 관한 소개 |

2) 兩者間 關稅讓許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對外貿易의 增進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特定 國家와 關稅에 관한 協商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協商을 遂行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稅法 제43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基本關稅率의 50%의 범위 안에서 關稅讓許를 할 수 있다.

이상의 규정에 따라 미국, 자유중국, 헝가리, 말레이시아 및 영국 등과 雙務關稅協商을 벌여 1996年 1月 1日 현재까지 총 248개 품목의 關稅率을 引下하기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자간 關稅引下 協商의 결과는 양국간에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最惠國待遇原則에 따라 다른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996年 1月 1日 현재 國際協力關稅 運營 現況은 〈表 IV - 14〉와 같다.

〈表 IV - 14〉 國際協力關稅 運營現況

| 시행일 | 구 분 | 품목수 | 주 요 품 목 | 내 용 |
|------------|------------------|-----|---|----------------------------|
| 1987. 7. 1 | 한·미 농산물협상 | 9 | 레몬, 아보카도, 버찌 | 농산물 관세인하 |
| 1990. 7. 1 | 한·미 통신협상 | 51 | 텔레프린터, 교환기 등 | 관세인하계획 1년 조기 시행 |
| 1991. 1. 1 | 한·미 포도주 관세 협상 | 20 | 포도주 및 관련 제품 | 1991년 25%, 1992년 20% |
| | 한·헝가리 관세 협상 | 31 | 필름, 철강, 알루미늄 제품 | 평균관세율 15.2~10.2% |
| | 한·영 위스키 협상 | 4 | 위스키류 | 1991~1993년중 40-40-30% |
| |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 | 2 | 팜핵유(조유·정제유) | 야자유 관세율 수준으로 인하 |
| 1995. 1. | 한·미 | 129 | 농산물 | UR 협상시 미국측과 쌍무 협상 결과 양허 |
| 1995. 1. | 한·미 | 59 | 자동차 | 10% → 8%로 인하 |
| 1996. 1. | 한·EU | 11 | 위스키, 럼, 진, 보드 카, 리큐르 및 포도증 류주 이외의 브랜드 | 30% → 20%로 인하 |

3. 現行 國際協力關稅制度의 運營上 問題點과 改善(對應)方向

가. UR 妥結이 우리 經濟에 미치는 效果 및 對應方向

1) UR 妥結이 우리 經濟에 미치는 效果

GATT 사무국의 전망에 의하면 UR 타결의 결과로 1995年度부터 향후 10年間에 걸쳐 세계 소득은 每年 전체 GNP의 1%를 상회하는 2천억 달러 내지 3천억달러 가량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미국 상무성은 關稅引下 등으로 세계 생산액은 1천억달러 이상 증가하고 미국의 입장에서 이익은 약 2천억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對外經濟政策研究院의 전망에 의하

면 향후 10年間 수출은 225억달러, 수입은 80억달러가 늘어나며 韓國開發研究院의 전망에 의하면 앞으로 5年間 연평균 5% 정도의 수출증대와 0.3~0.6%의 수입증가로 每年 0.4~0.7%의 貿易收支 改善效果가 기대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UR 協商은 분야별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

〈表 IV - 15〉 UR 妥結이 우리나라 經濟에 미치는 效果

| | 긍 정 적 효 과 | 부 정 적 효 과 |
|-------------------|--|---|
| 공 산 품 판 세 인 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상품의 수출증가 · 40~50억달러 정도 무역수지 개선 효과 -수입상품과의 경쟁→국내산업 경쟁력 강화/수입가격하락→소비자 잉여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증가로 일부산업의 피해 발생 -관세수입 감소 가능성 -저질·저가상품의 유입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
| 농 산 물 시 장 개 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구조의 개선 촉진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소비자 잉여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가피해, 이농현상 등 발생 -저가농산물 수입급증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
| 농 산 물 시 장 개 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질·유해농산물 유입으로 국민 보건 위협 -저가신고 등 농산물 합법가장 밀수 증가 |
| 서 비 스 시 장 개 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간접자본적 성격을 가진 서비스 산업의 효율화→산업경쟁력 향상 · 운송산업 발전시 물류흐름 촉진 등 -통관업의 대형화·전문화 등 경쟁력 향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서비스산업의 기반형성 전도산우려 -외화 밀반입·불법유출 증가 -로열티 등 관세포탈, 저작권 등 침해물품 밀수 증가 |
| 반 덤 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상품의 수출증가 -국내 반덤핑제도의 국제화·활성화 | |
| 보 조 금/ 상 계 관 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진 수입국의 각종 지원조치 철폐 등 수출여건 개선→수출증가 -국내 탄력관세제도의 국제규범 일치 등 국제화 촉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 각종 지원제도 축소→일부 산업 경쟁력 약화 |

〈表 IV - 15〉의 계속

| | 긍 정 적 효 과 | 부 정 적 효 과 |
|----------------------------------|--|---|
| 긴 급 수 입 제 한 | - 각종 회색조치 철폐 등 수출여건 개선으로 우리 상품의 수출증가 - 국내 탄력관세제도의 국제규범 일 치 등 국제화 촉진 | - 국내 각종 수입제한조치의 철폐→ 일부 산업 경쟁력 약화 |
| 지 적 재 산 권 | - 기술개발·외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 촉진으로 기술수준 향상 | - 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요청 증가 - 국내기업의 로열티 등 지급증가 |
| 섬유협정/ 통 일 원 산 지 규 정 제 정 | - MFA 철폐시 섬유류 수출 물량 증대 - 통일 원산지 규정 제정으로 아국 수출 증대 효과 | - 개도국 섬유류와의 국내외 경쟁 심화 |

註: 김기영, 「UR 협상 타결에 따른 관세행정상 대응방안」, 『關稅』, 1994. 3, p. 31.

에 미칠 것인바, 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表 IV - 15〉와 같다.

2) 對應方向

UR 타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부정적 효과를 제거해 나가는 데 총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가) 關稅上 輸出支援의 極大化

① WTO 출범과 그에 따른 關稅讓許로 國際的인 關稅率 구조가 대폭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각국의 關稅讓許 내용을 産業別·品目別로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의 국별 關稅 協商資料로 활용하고 동 분석내용을 국내 기업에 제공하여 輸出·直接投資 등 해외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우리 수출기업이 品目分類 등으로 인한 마찰로 外國稅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입국 稅關과 品目分類 Contact Point를 運營하여

애매한 品目分類는 사전에 연락하여 확정하도록 해서 적기에 수출이 이루어지도록 支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③ 關稅還給制度의 간소화로 UR 이후 國際貿易上 인정된 輸出支援制度인 關稅還給制度의 效率性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制度改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④ WTO 補助金·相計關稅 協定上 各 會員國은 특정성 있는 모든 보조금을 WTO에 통보하고 1996年中 그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는 1996年 4月 25日 현재 국내보조금 98개 중 특정성 있는 보조금으로 금지보조금 5개, 相計可能補助金 17개 및 연구보조금 4개 등 총 26개를 선정하여 對外經濟調整委員會를 거쳐 1996年 4月 25日 WTO에 통보하였다. 앞으로 WTO의 심사에 대비하여 외국으로부터 相計關稅가 부과될 우려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 相計可能補助金에 대하여는 허용보조금으로의 전환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WTO는 補助金·相計關稅協定에 의해 보조금 관련 국제분쟁시 관련 보조금을 검토하고 會員國의 補助金制度에 관한 자문에 응할 상설전문가 그룹 회의를 구성중에 있는바, 동 구성원으로 우리나라의 저명한 학자를 추천한 적이 있는데 외무부 및 제네바 대표부와 협의하여 우리나라 전문가가 선임되도록 추진하여 향후 補助金·相計關稅 분야에서 우리의 입장이 대변될 수 있도록 支援하여야 할 것이다.

나) 關稅上 農業·産業 및 消費者 被害 救濟措置의 적극 活用

① WTO의 출범과 그에 따른 대폭적인 關稅讓許가 이루어졌으므로 앞으로 基本關稅率 調整을 통한 産業保護 및 支援은 어려워지게 되었다. 수입금지 등에 따른 國內産業 被害에 대해서는 반덤핑關稅와 相計關稅制度 및 緊急關稅制度 등을 통한 구제조치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關稅上 産業被害救濟制度는 基本關稅率의 조정보다 까다로운 조건과 절차를 요구하는 國際規範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단점을 지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國際的 通商摩擦과 對外的

壓力を 받게 되므로 國際規範에 맞게 運營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② 原產地制度 · 緊急輸入制限制度 · 品質表示制度, 衛生 · 檢疫制度 등이 國際規範에 일치되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수입과 관련된 특별법령의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③ 低關稅率體制下에서 開途國의 低價輸入品 急增에 대비하기 위하여 農産物과 일부 工産品에 대한 從量稅制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④ 農産物 시장개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입급증, 불량농산물의 유입 등을 방지하고 세계농산물의 가격변화로부터 농민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特別緊急關稅制度를 보다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農水畜産物에 대한 정밀한 검사, 감정을 실시하고 食品檢査合格證 등 特別法上의 구비요건의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수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밀수방지 및 시중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는 한편 수입면허시 의무조건이 부가되는 경우 등에는 주무부처에 통보하고, 통관 후라도 國民保健 危害憂慮物品에 대하여는 保稅區域 반입 명령제를 시행하는 등 事後管理를 철저히 해야 한다.

다) 關稅行政 國際化의 積極 推進

① 關稅行政의 國際化 추진을 위해서는 WCO 등의 關稅 관련 國際協約 中 미가입 協約의 가입을 적극 추진하여 稅關節次 등의 國際的 통일 을 기해야 할 것이다.

② 各國의 原產地, 通關節次 등 非關稅障壁 규제 해소를 위한 稅關協力 활동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사항 발생시 당해국 關稅廳과 실무적으로 해결하는 등 外國稅關과의 協力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海外通關情報센터 설치, 海外通關法人 設立 추진 등으로 民間業體의 輸出入通關 등을 적극 支援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③ 通關業 國際競爭力 강화 등 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을 마련 ·

시행하여야 할 것인바, 關稅士의 大型化·專門化 유도를 통한 通關業의 國際競爭力을 제고하고 金融市場 開放에 따른 不法外貨 流出入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창고업 개방에 대비, 保稅區域의 大型化 및 保管料率의 自律化, 保稅貨物管理 電算化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④ 知的財産權 보호 강화, UR 統一原產地規定 제정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知的財産權 侵害物品 교역방지를 위한 효율적 통관관리를 실시하고 UR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에 불리한 원산지규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선진제국의 품목 원산지 인정기준 등을 연구 검토하여 국내원산지규정을 정비·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 LSS(Loose-Leaf-Schedule) 修正協商

國際品目分類 統一 協約, 일명 HS協約(Harmonized System)이 수정되어 1996年 1월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UR 이행계획서상의 品目分類 변경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WTO에 기제출한 UR 이행계획서에 양허 가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品目分類 協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 동 이행계획서 수정본(LLS)을 1995年 11月 3日 WTO에 제출하였는바, 우리나라는 總 讓許品目 5,018개 중(HS 6단위) 593개 품목(11.8%)을 수정하였다. 앞으로 각 會員國의 LLS에 대한 정밀검토를 하여 필요시 이견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LLS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양자협의 또는 외교경로 등을 통해 상대국을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開途國 地位 關聯

1) 問題點

韓國은 1인당 국민소득면에서 1994년에 이미 世界銀行 高所得國家 분

기점에 근접했고 1995년에는 1만달러를 넘었다. 또한 GNP 규모나 총 교역량에서 한국은 세계 10위권 내에 진입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이미 미국 및 EU는 한국을 開途國으로 간주하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수년 안에 한국은 객관적으로 開途國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동안 開途國으로서 누려왔던 각종 혜택에 대해 언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2) 對應方向

WTO에 開途國 지위는 해당국가 스스로가 정하는 것이며 OECD 開發援助委員會 開途國 명단에서도 한국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아직 開途國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問題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섬에 따라 우리가 서서히 開途國 지위를 벗어나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開途國 지위를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농산물, 환경, 서비스 및 공산품 중 한국이 취약한 일부 분야에 한해서만 開途國에 해당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모든 분야에서 開途國地位를 유지하려 할 경우 이는 특히 미국 및 EU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증대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각 부처 및 담당자 차원에서는 해당분야에서 최대한 開途國 지위를 유지하려 할 것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극복하여 꼭 필요한 분야만을 선정하고 이들 분야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開途國에서 先進國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開途國 지위를 포기한다고 선언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단, OECD DAC 開途國 名單은 援助對象國 名單이라는 점에서 OECD 가입 후 우리나라의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과 분야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開途國 지위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신축성 있게 대응하되 政策의 一貫性을 잃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選別的 政策에 대해 對外的으로 信賴性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경우 분야별로 開途國 지위 졸업시기를 豫示하는 방안도 강구될 수 있을 것이며, 대내적으로는 우리 경제 위상의 변화로 앞으로 開途國 지위의 유지가 어렵다는 냉혹한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은 계속 일부 特惠條項에 의지하려 하지 말고 産業構造調整 및 競爭 力強化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다. CCC/WCO와의 關稅協力 關聯

1) 問題點

國際化·開放化는 바로 國際關稅協力の 강화로 나타난다. 이제 세계는 하나로 되어 가고 있으며 關稅行政도 國際的으로 標準化·簡素化되어 전 세계가 하나의 통일된 關稅制度를 지향하고 있다.

稅關節次를 간소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은 제2차대전 후 유럽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CCC가 탄생하였다. 그간 CCC는 關稅問題와 관련하여 정부간의 協力を 촉진시키고 關稅制度의 국가간 조화와 통일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協約 내지는 권고사항을 제정하여 會員國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도 1967年 CCC에 가입한 이후 우리나라의 關稅制度의 많은 발전 및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關稅制度는 미국·일본·호주 등 先進國보다는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CCC가 제정한 모든 協約/勸告事項을 수용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까지 이스탄불協約(일시수입에 관한 協約)·나이로비 協約(關稅事犯의 예방, 수사 및 억제를 위한 상호 行政支援에 관한 國際協約) 등 2개의 協約과 교토協約 31개 부속서 중 16개 미가입 부속서가 있어 國際化·世界化의 노력이 미진하다는 생각이 든다.

2) 對應方向

우선 國際關稅 관련 協約을 전체적으로 入수하여 우리가 入한 協約과 入하지 入한 協約으로 나누어 入한 協約도 그 내용이 關稅法에 반영된 것인지 아닌지, 關稅法에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協約 내용대로 반영된 것인지 아닌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關稅法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면 언제 반영할 것인지 등의 入 國際關稅協約의 關稅法 수용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우리가 入하지 入한 協約도 어느 한 두 조문에 문제가 있다면 協約加入은 하되 그 한 두 조문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方法으로 해서 入급적 모든 協約에 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入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Task Force Team을 구성해서 同 構成員으로 하여금 WCO 등 國際會議의 入가를 入원화하고 연속적으로 入여하게 하는 등의 노력이 入청되며 특히 이러한 國際關稅分野에 대한 入문가의 入성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入員 및 豫算의 入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WCO와의 協力 入동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WCO, APEC 및 WTO 상호간의 入관사업에 대하여는 APEC 및 WTO는 入策決定을, WCO는 이를 入체화하는 기능을 주로 入行하므로 APEC 및 WTO 단계에서 우리의 入장을 반영하는 것이 入과적이다. 따라서 入관절차 개선 등을 위한 入국제관세범(Kyoto Convention) 개정작업 등 APEC 入관사업 및 入原產地規定 入制定作業, 入新評價協約 入施行, 入知的財產權 入保護分野 등 APEC 및 WTO 入관사업과 入관한 각종 회의에 入극 入여하여 우리나라의 入장을 정리 또는 入강화하는 기회로 入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WCO를 入關稅行政의 入改善 및 入國際的 入창구로의 入활용을 入극대화하기 위하여서는 WCO 내에서 入역할을 증대할 수 있는 장치를 단계적으로 入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바, WCO 入政策委員會 入멤버로의 入진출추진, 아시아·태평양지역을 入대표하는 Regional Intelligence Liasion Office의 入유치검토, WCO의 入주요행사 入유치 入확대, WCO 사무국 내 入간부직으로의 入진출추진 등이 그 入方法이 될 수 있겠다.

라. 방콕協定 運營 關聯

1) 問題點

방콕協定은 ESCAP 역내 貿易自由化 및 확대를 통한 참가국간의 경제발전 및 국민생활수준 향상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출범한 지 어언 20여년이 지났으나 참가국수와 참가국간 讓許品目數 및 참가국간 讓許品目の 교역면에서 지지부진한 實績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콕協定の 확대 장애요인은 다음과 같은데 이를 타개하여 ESCAP 開途國間 貿易과 投資의 擴大를 위한 방안강구가 절실히 요청된다.

① 일부 국가들이 關稅特惠의 貿易增進 효과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GSTP가 開途國間 貿易擴大에 기여하지 못하고, 방콕協定下의 關稅特惠가 특혜 품목의 貿易擴大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關稅特惠가 貿易增進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非關稅特惠와 결부하여 제공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關稅特惠는 부여하면서 非關稅措置로 수입을 제한함을 의미한다.

② 일부 국가들이 GSTP와 UR 協商의 경험에 비추어 지지부진한 協商에 염증을 느낀다는 점이다.

③ 일부 國家는 協定加入으로 인한 또다른 關稅救助를 關稅行政上 부담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2) 改善方向

한 가지 대안으로 모든 ESCAP 開途國을 방콕協定에 가입시키는 것이다. 會員國 확대는 貿易과 投資의 相互補完性이 적은 會員國과 제한된 보완성 때문에 부진을 면치 못했던 協定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協定이 확대되려면 제3차라운드가 시작되어 ESCAP 開途國間 거래된

주요 교역품목이 이러한 協商의 기초인 關稅引下 要請品目(Request list)과 關稅引下提示品目(Offer list)의 기저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방콕協定은 가입관망국이 표명한 憂慮와 投資協力 요구를 감안하여 제3차라운드 개시 이전에 同 協定의 목적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

① 방콕協定은 근본적으로 特惠貿易協定이므로 貿易 이외 분야의 協力에 대비하는 데는 미흡하다. 따라서 「經濟協力」또는 「貿易 및 投資協力」을 協定의 목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② 방콕協定은 ASEAN과 같은 貿易과 경제그룹이 會員國이 될 가능성을 상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경제그룹 곧 ASEAN과 같은 경제블록이 協商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도록 同 協定은 적절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방콕協定 제11조는 원칙적으로 참여국이 향유하는 모든 貿易特惠를 모든 參與國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만, 經濟統合 內에서 참여국이 기타국에 제공하는 特惠는 동 의무로부터 면제되고 있다.

同 免除規定에도 불구하고 동 조항의 마지막 문단은 참여국이 가능한 방콕協定 규정과 제3국과 체결한 協定의 규정과 조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ASEAN과 같은 무역 또는 경제그룹 내에서의 현행 또는 장래의 특혜는 방콕協定의 최혜국 규정하의 기타 참여국에게 제공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¹⁾.

④ 産業協力協定 또는 合作投資下에서 상호 주어지는 貿易特惠는 MFN 규정에 따라 기타 참여국에게 제공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 해석상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명백하게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 朴載豪, 「GSP의 주요내용과 공여문제 검토」, 『관세』 제238호, 1990. 7, p. 65.

다. GSP制度 關聯

1) 問題點

先進國들은 최근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를 GSP 受惠對象에서 제외시키려고 선발개도국에 대한 開途國 卒業論을 주장하여 왔다. 이와 같이 先進國들은 開途國 卒業論을 들고 나오는 한편으로 1995年 10月 23~27日間 개최된 UNCTAD 特惠特別委員會 제22차 회의에서 미국 등 일부 GSP 공여국들은 한국 등 先發開途國의 GSP制度 도입을 통한 開途國 支援分擔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는 동 회의에서 GSP制度는 供與國의 自律的 制度이므로 GSP 공여여부는 당해국이 독자적으로 決定할 사항이라는 논리를 유지했으나 앞으로 각종 國際會議에서 우리나라의 GSP 도입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비하여 도입시기, 特惠供與方法 등을 연구 검토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2) 對應方向

先進國의 우리나라에 대한 GSP制度 조기 도입 압력에 대비한 대응논리를 개발해 나가면서 특히 도입여부 및 시기와 폭에 관한 우리나라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되 다만, 내부적으로는 GSP制度 導入의 最適時期, 特惠供與方法 (受惠國, 受惠對象品目, 特惠幅) 및 國內産業保護 등에 대한 研究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가) 供與對象國

공여시 그 對象國은 역시 國際的 원칙인 자기선정 (Self Election) 원칙에 입각하여 경제가 개발도상에 있는 UNCTAD 가맹국으로서, 關稅上의 特惠를 부여받기를 희망하는 국가 중 해당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지정된 국가들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그 선택기준으로는 우리

나라의 經濟·外交的 必要性和 國際競爭力의 정도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나) 供與對象品目 및 幅

供與對象品目은 手혜예정국이 사전 신청한 요청품목 리스트(Request List)를 중심으로 농수산물·공산품으로 구분하여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수감수예상액, 공여시 얻게 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나 공여 초기에는 공여품목 리스트(Positive List), 한도(Ceiling) 方式을 사용하여 국내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만, GSP 운영에 있어 탄력성과 수혜국간의 형평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Ceiling 한도를 초과하였을지라도 우리나라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고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품목에 대하여는 계속 特惠輸入을 허용하고, 1개국에 대한 GSP 공여의 범위를 셀링(Ceiling) 한도의 일정범위로 하는 問題點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 供與의 法的根據 마련

공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關稅法 제2장의 2 「國際協力關稅」편에 「一般特惠關稅」를 신설, 법률에서는 GSP의 근거와 폭(예: 基本關稅率의 50% 이내)을 규정하고 공여대상국가, 품목, 구체적인 공여의 폭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의 장점은 行政府가 國際貿易環境에 적시 대응하는데 편리하기는 하지만 단점으로는 공여제공이 역으로 압력으로 작용할 경우 회피할 수 있는 완충장치가 미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關稅還給特例法과 같이 「開發途上國支援 및 交易增進을 위한 特惠關稅制度에 관한 法律」을 특별법으로 제정, 공여대상국가의 자격·

선정기준·품목의 구성 및 공여의 기본적인 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국가의 선정, 품목의 지정 및 공여의 세부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시행토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의 장점은 기본적인 틀(frame)을 법률화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하고 우리나라의 行政府가 공여를 희망하지 않는 국가들의 불만(Complain)이 있을 경우 이의 회피가 비교적 용이할 것이나, 國際貿易 및 經濟環境 변화시 신속 대응하는 기민성은 부족한 것이 단점이다.

바. TNDC/GSTP 運營 關聯

1) 問題點

TNDC는 WTO 내에서도 극히 소수의 開途國만이 참여하고 讓許品目數도 적을 뿐더러 15개국 중 8개국이 讓許稅率을 고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讓許價値가 보존되지 못하고 있으며 각국의 관심도 또한 낮기 때문에 協定 자체가 이미 유명무실화된 상태이다.

한편 GSTP와 관련하여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GSTP 協定의 會員國으로 남을 수 있을지에 관한 검토가 요구된다. 協定 제3조(a)에는 77그룹 開途國만이 GSTP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따른 國際的 評價의 변화 및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이라는 형태로 공식화될 경우 77그룹 會員國의 자격이 계속 유지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가 GSTP에 계속 對象國으로 남아 있기 또한 어려울 것이다.

2) 對應方向

TNDC GSTP는 開途國間의 特惠貿易 協商이다. 우리나라가 先進國의 문턱에 서서 OECD 會員國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나라가 만약 OECD 會員國이 되면 멕시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77그룹에서 탈퇴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77그룹 회원국만이 GSTP 會員國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언젠가는 同 協定을 떠나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77그룹의 會員國으로서 GSTP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GSTP의 내실화와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對開途國間 經濟協力 차원의 관계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TNDC의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開途國으로 남을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와 직결되고 동 문제는 이러한 國際關稅協力만의 문제만이 아닌 환경분야의 開途國 지위문제 등 더 큰 문제들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분야별로 開途國 지위를 떠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결정하여 대응해 나갈 문제라고 본다.

사. APEC 關聯

1) 問題點

APEC 貿易·投資自由化 논의가 보다 구체화 됨에 따라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공동행동계획을 이행해 나가고 貿易·投資自由化 이행연도까지의 중장기 관리방안을 정립하고 있는데,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공동행동계획 대부분은 우리나라가 이미 시행중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통관분야 행동계획에 따라 輸入通關 EDI 開發, 輸出入貨物管理 시스템 構築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만 하면 된다. 그러나 APEC 體制下에서 關稅率引下 문제는 UR 協商 결과에 따른 關稅引下가 시행 초기 단계에 있고 우리의 關稅率이 1996年 현재 7.9%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로 關稅率을 讓許할 만큼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의문스럽고 분석결과 추가로 讓許할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關稅引下의 方式과 時期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요청된다.

2) 對應方向

앞으로 關稅引下方式은 특별히 정하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국이 자발적으로 제출하면 되지만 UR 協商 結果의 시행 초기라는 점과 우리나라 産業의 國際競爭力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案을 준비하기 위해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업계, 학계,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로 委員會를 구성하여 同 委員會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案을 성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 國際經濟法 專門家 養成 關聯

1) 問題點

우리의 통상규모는 유럽共同體 會員國들을 하나로 보았을 때 세계 10위권 안에 들기 때문에 양적 측면에서는 통상국가라 자부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통상규모에서 10위권 안에 있는 우리가 질적인 측면에서도 10위권 안에 있는지 검혀하게 반성해 보아야 한다. 또한 우리가 통상관계에서 우리의 규모에 걸맞는 지위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통상규모 10위권 안의 통상국가인 우리가 그저 다른 국가들의 決定을 따라가고 그들의 눈치를 살피는 수동적인 입장에 있어 왔다는 비판이 많다.

2) 改善方向

통상 10위권에 위치한 우리가 나름대로 큰 역할을 遂行할 수 있기 위하여는 통상분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많은 인재가 필요하다. WTO와 같이 國際經濟規範으로 무장된 현재의 통상관계에서는 WTO法과 같은 통상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인재가 많이 요구된다. 이 점에서 통상국가의

질적인 수준은 통상법의 연구·교육수준이라고 생각된다.

우리가 국가차원이든 개인차원이든 통상관계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려면 무엇보다도 통상관계에서의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올바르게 이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통상국가로서 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서는 법과대학에서 통상법에 관한 연구와 교육이 더욱 충실해져야 한다.

자. 雙務間 關稅協力 關聯

1) 問題點

UR 타결로 인한 세계 각국의 自由貿易主義 標榜에도 불구하고 NA-FTA 협정발효, EU의 결속강화 등 일련의 지역블록주의적 성향이 國際貿易 環境變化에 따라 야기될 소지가 있는 稅關의 非關稅障壁 등 貿易規制의 심화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國際稅關間 協力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그 동안 稅關協力에 있어서는 주로 密輸情報 交換의 活性化와 痲藥類 團束에 관한 사항, 稅關公務員 자질향상을 위한 직원 상호교환 방문, 양국 통계차이로 인한 통상마찰 해소방안 및 수출업계의 현지 輸出通關 애로해결 방안 등이 협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輸出業界의 輸出通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發掘·解決하는 協力の 場으로의 활용은 크게 미흡하였고 雙務間 關稅讓許의 문제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關稅率을 引下해 달라는 일방적인 요청을 받고 있다.

1993年 UR 협상시 미국과의 양자간 협상에서 미국 관심품목인 일부 농산물에 대하여는 UR 양허계획서(C/S)상의 세율보다 낮은 별도의 세율로 양허하기로 하였고 1994年 12月 대통령령인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國際協力關稅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의거 현재 시행중에 있는바, 동 양자간 합의사항에 대하여 처음에는 정부가 대외에 공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WTO에 양허한 관세율 수준은 더 이상 고칠 수 없다고

발표한 이후에 한·미간 합의에 의해 미국의 주 관심품목에 대해 UR 양허계획서상의 양허관세율보다 더욱 관세가 낮추어진 것을 국회가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었다.

2) 對應方向

國際化·開放化에 따라 우리 關稅制度는 물론 수출상대국의 關稅·通關制度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분석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海外關稅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해외통관정보센타가 현재 關稅廳에 1994年 4月 11日부터 運營되고 있다. 동 센타가 運營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나라 전 수출업계에 널리 알려지고 그래서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수출시 직면하는 애로사항들이 동 해외통관정보센타에 모두 모이고 關稅廳에서는 동 센타에 모인 정보를 分析·整理하여 貿易業界에 신속히 전파하는 한편 다음 雙務間 稅關協力 회의시에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수출업계가 關稅廳에 수출시 통관상 애로사항을 제기했는데 그 해결이 지부진하면 어떤 수출기업이 정부를 믿고 시간과 돈을 없애 가면서 문제제기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동 센타의 철저한 활용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① 특히, 雙務間 關稅讓許 協商時에 우리의 수출 관심 품목의 상대국 關稅讓許도 반드시 받아 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외국과의 협상시 우리가 가장 먼저 불식시켜야 하는 것은 ‘韓國은 壓力을 가하면 물러서는 國家’라는 인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國際的으로 통용되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아울러 外國稅關의 稅關專門家를 초청하여 關稅制度 說明會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關稅制度에 관한 홍보를 능동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외국기업의 韓國稅關에 대한 이미지 제고 노력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③ 또한 國際化·開放化에 따라 급증이 예상되는 수출입거래를 통한 외화밀반출 등 돈세탁(Money Laundering) 방지를 위하여 國際稅關間 정보채널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늘어나는 여행자 통관을 신속히 하면서 완벽한 監視對象者 조회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전산망과 關稅廳 전산망을 리얼타임(Real Time)으로 연결시키는 한편 外國稅關과의 전산망 또는 FAX를 통한 정보교환은 상호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한 만큼 外國稅關 조직 내의 연락관(Contact Point)를 정확히 지적하여 정보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農產物 협상과정에서 우리와 미국간에 합의한 ROU(Record of Understanding)에 대하여서는 關稅法 제43조의 8(국제협력관세)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특정국가와 관세협상에 의해 基本關稅率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관세를 양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基本關稅率과 國際協力關稅 中 낮은 세율이 우선 적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問題點에서 밝힌 사항들은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讓許關稅率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미국의 주요관심 농산물에 대하여 1993年 UR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하에서 양국간에 협상에 의해 관세가 추가로 인하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시의적으로 좋지 못하여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V. 現行 關稅評價制度의 運營上 問題點과 改善方向

1. 問題의 提起

1948년에 설립된 GATT 주관하에 중세 이후 가장 중요한 産業保護手段으로 활용되어 온 關稅率의 전반적인 引下가 꾸준히 이루어졌는바, 1950年代 鄧론라운드, 1960年代 케네디라운드, 1970年代 동경라운드 1980~1990年代 初의 우루과이라운드 등 8차례의 關稅引下 協商이 다자간에 이루어져 先進國·中進國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公産品 關稅率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GATT/WTO 協定에 바인딩(binding) 되어 있다.

아울러 WTO 體制의 出帆 등 國際環境의 변화는 關稅行政制度 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 종전의 무조건적인 國內産業 保護 및 財政收入 중심의 체계에서 벗어나 국가간 통상마찰을 완화하고 국내외 업체간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모색하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수출입을 관리하는 關稅行政에 徵收權者 中心에서 納稅者 中心으로의 방향 전환이 차근차근히 진행되어 가고 있다.

특히 이러한 방향 전환에 따라 關稅賦課를 위한 關稅評價 中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納稅者의 自律申告體制를 의무화하는 新評價制度를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同 新評價制度의 전면적 시행에 앞서 1984年 7月부터 新評價制度의 기본내용을 미리 시행하여 오다가 1986年 2月 5日부터 「算定價格에 의한 評價方法」을 제외한 協約 규정을 시행하였으며 1989年 2月 5日부터는 예외 없이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本書에서는 新評價制度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지 어언 10여

년이 가까워 오는 지금 先進國 위주로 제정된 同 新評價制度가 우리나라에 뿌리 내리는 데 어떠한 問題點이 제기되었는지, 그리고 同 制度運營의 주체인 人力과 機構의 體制 측면에서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또한 關稅評價技法은 전산장비 활용 등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運營되어 왔는지 등 여러 측면에서 살펴본 現行 關稅評價制度의 運營上 제기되는 問題點과 그 改善方向을 모색해 봄으로써 國家稅收 確保와 適正하고도 公平한 課稅를 實現하는 데 뒷받침하고자 한다.

2. 新關稅評價制度의 運營現況

가. 關稅評價에 관한 國際協約

1) 브뤼셀 評價協約((Brussel's Definition of Value : B.D.V)

2차 세계대전 이후 1947年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유럽의 단일경제권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歐洲關稅 同盟研究團(추후 CCC로 재발족)이 설립되었는바, 이 연구단은 關稅率表上 物品의 분류를 위한 品目分類協約과 함께 GATT 제7조를 구체화하는 評價協約을 제정하였다. 이 協約의 초안은, 1949年 중반기에 완성되었으며 GATT 제7조에 그 기초를 두고 「關稅目的을 위한 物品評價에 관한 協約」에 포함되어 1950年 7月 15日에 조인되어 1953年 7月 28日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브뤼셀評價協約(B.D.V)은 가격개념 중 관념적 가격(Notional Value : 일정한 조건하에서 판매될 수 있는 가격)에 기초하여 시행되었으나, 價格決定 장소에 관한 기준 등을 수입지점가격(CIF)으로 하고 있어 선박인도가격(FOB)을 課稅價格으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同 協約을 가입하지 않고 각각 독자적인 關稅評價制度를 시행하고 있는 등 모순이 있어 FOB를 課稅價格의

기준으로 채택하는 국가도 同 協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차례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가가 브뤼셀 評價協約에 계속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중국에 가서는 이와 같은 B.D.V의 評價制度는 GATT가 추구하는 世界 貿易自由化 추진에 반하는 非關稅障壁의 일종으로 간주되어지자 GATT, 동경라운드에 의한 다자간 貿易協商(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 MTN)을 통하여 新評價協約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新關稅評價協定的 탄생으로 브뤼셀 評價協約은 퇴색되어 갔다.

2) GATT 關稅評價協約

1947年 4月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참가하여 마련한 關稅引下協定 및 I.T.O 憲章 中 貿易條項을 모체로 하여 1948年 1月 1日 關稅 및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GATT)이 탄생되었다. 여기서는 무차별주의, 自由貿易主義, 다자주의를 기본정신으로 모든 가맹국간에 상호주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으며 1950年代와 1960年代를 지나오면서 전후의 國際貿易秩序를 주도하고, 關稅引下 및 輸入制限 撤廢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世界貿易의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모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한 방안으로 1973년부터 시작하여 1979년에 타결된 GATT/MTN에서는 同 協商의 主要目標인 世界 貿易障壁의 除去 또는 緩和를 통하여 貿易의 自由化와 그 확대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協商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다. 이 協商의 결과의 하나가 오늘날 통칭 「GATT 제7조의 시행에 관한 協約」의 채택이며 여기서 輸入物品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을 기초로 하는 關稅評價의 실증적 개념을 도입하였다.

同 協約은 關稅目的의 物品評價에 대하여 공평하고 동일적이며 중립적인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교역의 실체를 확인하고 창의적이고 가공적

인 課稅價格 決定을 불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協約은 1980年 1月 以後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일본 등 先進國을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며 美國과 EU는 特別協定을 맺어 1980年 7月 1日부터 시행에 들어 갔다. 우리나라는 同 協約의 全面的 施行에 앞서 1984年 7月부터 新評價制度의 基本내용을 미리 시행하여 오다가 1986年 2月 5日부터 「算定價格에 의한 評價方法(協約 제6조)」을 제외한 協約規定을 시행하였으며 1989年 2月 5日부터는 協約 제6조까지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

참고로 CCC의 BDV 關稅評價와 GATT의 新評價 規定을 비교하면 <表 V-1>과 같다.

<表 V-1> 브뤼셀 評價와 GATT의 新評價協約의 比較

| | CCC(B.D.V) | GATT(New Valuation Code) |
|-----------|---------------------------|--|
| 1. 가격개념 | 관념적 가격(Notional Value) | 실증적가격(Positive Price) |
| 2. 가격원칙 | 정상가격(Normal Value) |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
| 3. 가격형태 | 원칙:CIF 예외:FOB(1974년이후) | 체약국이 자유로이 선택 |
| 4. 가격결정순위 | 당해물품의 정상거래가격만 규정 | ① 실제거래가격 ②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 ③ 유사물품 거래가격 ④ 역산가격 ⑤ 산정가격 ⑥ 합리적 산출가격 |
| 5. 평가대상 | 내수용만 적용 | 수출용, 내수용 구분없이 적용 |
| 6. 분쟁해결 | 분쟁 해결절차 결여→협약 시행상의 강제성 결여 | 분쟁해결절차 구체화→협약시행상 어느 정도의 강제성 도입 ¹⁾ |
| 7. 관리기구 | CCC 평가위원회 | 일반 : GATT 관세평가위원회 기술 : CCC에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설치 |

註 : 협약가입을 강제화하는 규정은 없음.

資料 : 이준삼·한규영, 『國際關稅制度論』, 서울:동성사, 1991, p. 303.

3) WTO 關稅評價協約

GATT 關稅評價協約의 제정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協約의 前文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공정하고, 통일되고 중립적인 關稅評價體制를 창설함으로써 각국의 稅關當局이 자의적이고 가공적인 課稅價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關稅評價가 國際貿易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목적의 하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세계의 주요 교역국가들이 모두 GATT 關稅評價協約에 가입하여 이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나 同 關稅評價協約에 가입하는 것은 각국의 자유에 맡겨져 있었고 이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특별한 불이익이 없었으므로 이 協約의 가입률이 저조하였고 따라서 協約이 추구했던 이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GATT 體制 아래의 第8次 多者間 貿易協商인 우루과이라운드에서 新評價協約의 개정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며, 이 협상과정에서 특히 인도, 브라질, 케냐 등 開發途上國이 稅關當局의 입증책임을 納稅義務者에게 전가하는 문제를 강도 높게 주장했으나 일부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關稅評價體制의 실질적인 내용은 거의 개정된 바가 없다. 다만 우루과이라운드 결과 탄생한 世界貿易機構(World Trade Organization : WTO)에 가입하기 위하여는 WTO 關稅評價協約에도 동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WTO 설립 協定 제2조 제2항 및 제12조) 2000年 1月 1日부터는 WTO 關稅評價協約의 공식적인 가입회원국의 숫자가 대폭 늘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였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공정하고, 통일되고 중립적인 關稅評價體制를 창설하여 關稅評價가 國際貿易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당초 목적의 달성에 크게 접근하였다고 하겠다.

우루과이라운드(UR)는 1986年 9月 우루과이의 폰타 델 에스테 각료 선언을 통해 출범하였는데 7年 이상의 긴 協商期間 동안 여러 가지 난관을 거쳐 1993年 12月 15日 協商에 참가한 117개국에 UR 最終協定文을

조인함으로써 최종 타결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1995年 1月 1日자로 GATT 體制가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世界貿易機構(WTO)體制가 탄생하게 되었다.

WTO 體制의 출범으로 1947年에 체결되고 7차에 걸친 多者間 貿易協商을 통해 수정·추가되어온 GATT 규범 전체가 WTO 體制에 편입되게 되었다. 1947年에 체결된 원래의 GATT 協定과 WTO 體制를 구분하기 위하여 전자를 'GATT 1947'로, 후자를 'GATT 1994'로 表示하기로 하였다(WTO 設立 協定 제2조 제3항). 따라서 'GATT 1994'는 WTO에 편입된 GATT 규범과 UR에서 새로 추가되거나 개정된 GATT 규범으로 구성된다. WTO 評價協約은 WTO 設立 協定의 부속서 I에 수록된 協約 중의 하나로서 WTO 設立 協定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同 協定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여 모든 會員國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WTO 體制에 편입된 'GATT 1994'를 구성하는 WTO 新關稅評價協約도 종전의 GATT 關稅評價協約과 구분하기 위하여 1994年을 協約 명칭 마지막에 붙여 그 정식명칭이 '關稅 및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 제7조의 시행에 관한 協約 1994'라고 불리게 되었는데(약칭으로 'GATT 關稅評價協約 1994' 또는 '新評價協約 1994')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本書에서는 'WTO 關稅評價協約' 또는 '協約'이라고 줄여 사용하고 있다.

나. 우리나라 關稅評價制度의 法的根據와 그 內容

1) 法的 根據

우리나라의 關稅評價는 「關稅와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 제7조의 시행에 관한 協約 1994」, 「關稅法」, 「關稅法 施行令」, 「關稅法 施行規則」,

「輸入物品 課稅價格 決定에 관한 告示」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關稅評價에 관한 國際協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1968年 7月 CCC 關稅評價協約에 가입한 이래로 16年間 同 CCC 關稅評價協約(BDV)을 關稅法令에 구체화하여 運營하여 왔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요 交易 對象國인 미국, 캐나다 등이 주도한 GATT 關稅評價協約에 의한 新關稅評價制度가 시행되게 되자 1981年 1月 6日 5年間の 시행유보 조건으로(同 協約 第6조는 8年間 유보) 同 協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CCC 關稅評價協約으로부터 GATT 新關稅評價體系로 전환하는 데에 따르는 制度 變更의 충격을 당초의 協約上의 의무시행시기보다 앞당기기 위하여 1984年 7月 1日부터 新關稅評價制度의 내용을 미리 시행하여 오다가 1986年 2月 5日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하였으며, 나아가서 1989年 2月 5日부터는 同 協約 第6조의 규정마저 시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WTO 관세평가협약에는 1994년 12월 30일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가입함으로써 동 협약에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종전의 CCC 關稅評價協約으로부터 1982年 4月에 탈퇴한 바 있다.

2) 關稅의 課稅價格 決定方法

現行 關稅法 및 WTO 關稅評價協約은 課稅價格의 決定方法을 6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간략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當該 物品의 去來價格을 기초로 한 課稅價格의 決定方法(Actual Transaction Value)

(WTO 關稅評價協約 第1條, 關稅法 第9條의 3, 第1評價方法)

이 方法은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關稅評價方法으로서 여기에서 去來價格이라 함은 수입거래에 대하여 그 物品의 수입국에 수출판매(Sale for Export) 되는 때에 購買者가 販賣者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의 총액으로 거래요건을 갖춘 物品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에 조정요소를 가감하고 운임, 보험료를 가산하여 課稅價格을 決定한다.

② 同種·同質物品 또는 類似物品의 去來價格을 基礎로 한 課稅價格의 決定

(WTO 關稅評價協約 第2條 및 第3條, 關稅法 第9條의 4 5, 第2, 第3 評價方法)

輸入物品이 輸入者에게 판매된 것이 아니거나 계약상의 어떤 조건 또는 特殊關係者間의 거래로서 第1評價方法이 적용될 수 없는 때에는 第2方法 및 第3方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第2方法으로서 同種·同質物品(identical goods)의 去來價格이라 함은 당해 輸入物品의 生産國에서 生産된 것으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物品의 去來價格을 말한다.

第3方法으로는 그 輸入物品과 유사한 物品(similar goods)에 대하여 第1方法에 의거 決定한 課稅價格이 있는 경우에 그 가격을 輸入物品의 課稅價格으로 決定하는 方法으로서 類似物品이란 동일국가에서 生産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동일한 기능을 遂行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한 정도로 비슷한 특성과 구성요소를 가진 物品을 말한다.

③ 國內販賣價格을 基礎로 한 課稅價格의 決定(Deductive Value method)

(WTO 關稅評價協約 第5條, 關稅法 第9條 6, 第4 評價方法)

第1方法 내지 第3方法에 의하여 課稅價格을 決定할 수 없는 때에는 그 物品을 수입 통관한 以後에 國內에서 판매하는 가격에서 수입 후 발생하는 법정공제요소금액(수수료, 이윤 및 일반경비)을 공제한 가격을 課稅價格으로 決定한다.

國內販賣價格이라 함은 수입 후 90日 以內에 輸入者가 실제로 판매한 가격 중 가장 많은 수량이 판매된 단가를 전체 수입수량으로 곱한 금액이다.

④ 當該 物品의 製造原價를 基礎로 한 課稅價格의 決定(Computed Value method)

(WTO 關稅評價協約 第6條, 關稅法 第9條의 7, 第5 評價方法)

當該 物品의 輸出國에서 外國製造業者가 제시한 제품의 原價計算書를 검토하여 생산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산정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課稅價格을 決定하는 것으로서 原價計算書의 검토내용은 輸入物品의 생산시 사용된 원자재 기타 가공비용과 수출·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계상하는 수수료, 이윤 및 일반경비가 계상되었는지의 여부를 輸出國에서 「一般的으로 인정되는 會計原則」에 따라서 검토되어야 한다.

⑤ 其他 合理的인 方法에 의한 課稅價格의 決定(Fall-back method)

(WTO 關稅評價協約 第7條, 關稅法 第9條의 8, 第6 評價方法)

第1方法 내지 第5方法에 의거 課稅價格을 決定할 수 없는 때에는 第1方法 내지 第5方法에서 정하는 내용을 확대해석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기준에 따라 課稅價格을 決定한다. 이와 같은 課稅價格 決定方法의 적용은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선순위의 課稅價格을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후순위의 評價方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

〈表 V-2〉 關稅評價方法別 運營現況

(單位: %)

|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
| 제 1 방법 (당해물품 거래가격) | 58.7 | 72.6 | 77.9 | 99.5 | 99.4 | 91.4 |
| 제 2 방법 (동종동질 품목가격) | - | - | - | - | - | 3 |
| 제 3 방법 (유사물품 가격) | - | - | - | - | - | - |
| 제 4 방법 (국내 판매가격) | - | - | - | - | - | 1.8 |
| 제 5 방법 (국내 판매가격) | - | - | - | - | - | - |
| 제 6 방법 (국내 판매가격) | 41.3 | 27.4 | 22.1 | 0.5 | 0.6 | 3.2 |

註: 1991年以後 자료의 신빙성에 다소의 문제가 있어 공식적으로 추정하지 아니함.
資料: 關稅廳, 「關稅行政 동향분석」, 1987~1992 참조.

며 다만, 輸入者는 第4方法을 적용하기 전에 第5方法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선택권(Importers Option)을 가지며 만약 輸入者가 요청하였으나 第5方法에 의하여 課稅價格을 決定할 수 없는 때는 第4方法(이 방법이 가능한 경우)에 의하여 課稅價格을 決定하도록 되어 있다.

3) 關稅評價運營의 基準

가) 價格申告

關稅의 納稅義務者는 輸入申告를 하는 때에 關稅廳長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稅關長에게 當該 物品의 價格에 대한 申告(이하 '價格申告'라 함)를 하여야 하며(法 제9조의 2 제1항) 納稅義務者는 納付하여야 할 關稅額을 스스로 決定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同 制度는 稅額을 決定함에 있어서는 課稅價格 산출근거가 명백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納稅者가 스스로가 上記 6가지의 評價方法 中 當해 物品에 대한 評價方法의 決定根據가 되는 去來狀況 또는 內容 및 價格決定方法 등이 記述된 거래 관계사실신고서와 課稅價格 계산내역을 기술한 稅務調整計算書 및 輸入申告書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을 추가로 기재토록 하여 제출함으로써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價格申告制度는 納稅義務者의 부실신고에 따른 관세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制度的인 장치이기 때문에 關稅連脫 憂慮가 없는 物品에 대하여는 關稅行政의 便宜 등을 고려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가격신고방법>

① 關稅法 施行令 제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가격신고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가격신고서'라 한다)에 의한다.

- ㉠ 거래관계사실신고서
- ㉡ 세무조정계산서

② 關稅法 施行令 제2조의 2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제1항 제1호의 거래

관계사실신고서를 수입신고서에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은 동일인으로부터 동일한 물품을 반복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말한다(최초로 수입하는 물품은 거래관계사실신고서를 제출한다). 다만, 신고수리전 평가대상물품,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물품, 제1방법 이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물품,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③ 關稅法 施行令 제2조의 2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제1항 제2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수입신고서에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은 관세법 제9조의 3의 규정에서 정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이외에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없는 물품 등 과세가격 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④ 우편물, 탁송품, 별송품 및 여행자휴대품 등 무환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신고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서식의 무환수입물품 가격신고서에 의한다.

나) 關稅評價의 時期

關稅를 納付하기 위해 행한 輸入申告者의 價格申告事項에 대한 課稅價格의 評價時期에는 2가지의 方法이 있으며, 그 하나가 輸入申告한 사항에 대하여 關稅의 課稅價格의 正當성 여부 및 적정성 여부를 評價한 후에 輸入申告를 受理하는 輸入申告受理 前 評價와 특정물품에 대한 잠정가격 평가 및 일단 輸入申告된 價格申告事項을 그대로 인정하고 輸入申告受理 後 사후에 評價하는 輸入申告受理 後 評價로 분류될 수 있다.

輸入申告受理 前 評價 對象物品은 수입하는 회주가 關稅滯納中에 있거나 事後評價 적용시 누락징세부분에 대한 輸入物品의 채권확보가 곤란하거나, 不誠實한 價格申告가 예상되는 物品에 대하여 輸入申告를 受理하기 前에 精密評價·審査하는 方法을 말하며 事前評價 對象의 物品은 다음과 같다(關稅法 施行規則 제6조).

- ① 關稅法 또는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關稅 減免을 받고자 하는 物品
- ② 關稅法 제36조에 의거 分割納付를 받고자 하는 物品
- ③ 關稅 滯納中에 있는 者가 申告하는 物品
- ④ 納稅者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關稅廳長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不誠實申告人이 신고하는 物品
- ⑤ 物品의 價格變動이 크거나 기타 稅額審査 前에 申告納付書를 교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關稅廳長이 정하는 物品

또한 輸入申告受理 後 評價는 輸入申告受理 前 評價對象物品을 제외한 모든 申告納付對象物品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신속 통관과 輸入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고한 價格申告書상의 내용을 인정하여 輸入申告受理 後 일정기간 별도 계획에 의거 사후에 業體別 企業調査時에 심사하는 評價方法이다.

다) 企業別 事後調査

企業別 事後調査制度는 關稅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申告納付한 稅額 등의 적정여부를 법 제9조의 14 및 동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에 企業別 確認 및 調査(이하 企業調査라 한다)를 하기 위한 制度로서 이는 일정기간 동안에 면허되어 통관된 物品에 대한 納付稅額 등의 적정여부에 대한 企業調査인 것이다. 여기서 調査할 사항은 관세율, 부과가격 등 納稅申告 稅額에 관련된 사항으로 일선 本部稅關의 권역내에 주사무소를 둔 사업장에 대해 調査하는 制度로서, 關稅廳長이 지정하는 調査業體는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다[수입신고제 실시에 따른 수입물품 통관의 적법성에 관한 사후확인 및 조사요령(관세청 훈령)].

調査對象으로는 원칙적으로 稅關에 輸入申告한 納稅義務者로 하고 課稅價格의 신고와 관련있는 輸入代行業者, 오판發行業者, 運送業者, 運送仲介者, 通關業者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필요시 補完 調査케 할 수 있으며(上記 訓令), 調査對象者는 納稅申告의 성실도, 滯納事實, 關稅法 違反事例 등을 고려하여 關稅廳長 또는 本部稅關長은 調査對象者를 별도

로 구분한다.

調査方法으로는 書面調査, 簡易實施調査, 一般實地調査로 구분 적용되며 調査對象期間은 關稅 納期日로부터 5年으로 정하고 있다(關稅法 제25조).

調査는 年1回 실시하되 5年 內에 最少 1回 以上은 實地調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1993年 1月 1日부터 과거의 시행하던 企業綜合審査制度가 폐회되면서 일정기간 申告納付한 稅額의 적정여부를 사후에 企業別로 확인 조사하는 制度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1996年度 上半期 현재의 사후 企業調査 對象業體는 3,358개 업체로 지정되어 있다. <表 V-3>과 <表 V-4>는 사후 평가로 인한 增收實績 및 年度別 不誠實業體 指定現況이다.

<表 V-3> 事後 評價로 인한 增收實績

(單位: 百萬원, %)

| | 1991년도 | | 1992년도 | | 1993년도 | | 1994년도 | | 1995년도 | |
|-----------|--------|------|--------|------|--------|------|--------|------|--------|-------|
| | 증수액 | 구성비 | 증수액 | 구성비 | 증수액 | 구성비 | 증수액 | 구성비 | 증수액 | 구성비 |
| 특허권 등 사용료 | 18,839 | 63 | 12,919 | 51.3 | 13,699 | 66.8 | 7,892 | 34.2 | 11,244 | 35.5 |
| 특수관계자 | 3,514 | 11.8 | 3,578 | 14.2 | 975 | 4.8 | 1,505 | 6.5 | 2,261 | 7.1 |
| 생산지원비 | 4,638 | 15.5 | 5,921 | 23.5 | 3,369 | 16.4 | 2,335 | 10.1 | 4,897 | 15.25 |
| 운임·보험료 | 1,714 | 5.7 | 758 | 3.0 | 407 | 2.0 | 1,343 | 5.8 | 459 | 1.4 |
| 수수료 | 339 | 1.1 | 165 | 0.6 | 411 | 2.0 | 1,589 | 6.9 | 1,103 | 3.5 |
| 기타 | 851 | 2.2 | 1,865 | 7.4 | 1,654 | 8.1 | 8,426 | 36.5 | 11,714 | 37.0 |
| 계 | 29,895 | 100 | 25,197 | 100 | 20,516 | 100 | 23,090 | 100 | 31,678 | 100 |

資料: 關稅廳.

<表 V-4> 年度別 不誠實業體 指定現況

(單位: 個)

|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
| 가격신고 허위기재 | 130 | 103 | 65 | 43 | 34 |
| 부정확한 기재 | 5 | 24 | 1 | 2 | 3 |
| 요구자료 파괴·거부 | 35 | 71 | 20 | 5 | 5 |
| 기타 | 2 | 6 | 0 | 0 | 0 |
| 계 | 172 | 204 | 86 | 50 | 42 |

資料: 關稅廳.

3. 現行 關稅評價制度의 運營上 問題點과 改善方向

가. 關稅評價協約에 대한 解釋 및 參考資料의 法的地位 關聯

1) 問題點

WTO 산하의 關稅評價委員會(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와 WCO 산하의 關稅評價技術委員會(Technical 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에서 제공되는 情報 및 助言은 決定(Decision), 勸告意見(Opinions), 例解(Commentaries), 解說(Explanatory Notes), 事例研究(Case Studies), 研究(Studies), 議定書(Protocol)등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들의 법적 성질에 대한 것이 協約規定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어 課稅價格決定에 관한 단순한 업무상의 참고사항 내지는 지침으로서의 역할만 하지 協約과 같이 國際法으로서의 기능을 遂行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締約국이 자국법으로 수용하지 않는 한 締約국에 대하여 國際法的 拘束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兩 委員會에서 상호 합의 해석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지위가 모호하여 논란의 對象이 되어 왔다⁴⁾.

2) 改善方向

WTO 關稅評價協約을 채택하고 있는 44個國의 關稅評價 行政에 있어서 앞에서 언급한 WTO 關稅評價委員會와 WCO 關稅評價技術委員會에서 채택한 決定, 勸告意見 등은 법해석 기준으로서 법규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協約에 대한 권고의견 및 해석자료에

4) 關稅廳, 『C.C.C 제2차 평가위원회 보고서』, 1981. 9, p. 10.

대해서는 協約上에 일정한 법적 한계를 설정하여 協約締約國에서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법령상의 수용절차 및 집행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법적지위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協約書上에 추가되거나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나. 關稅評價協約 關聯 規定의 明確性 與否 關聯

1) 問題點

가) 課稅價格 및 販賣條件의 概念

關稅評價協約에서는 關稅評價에 관하여 근본적인 규정을 하면서 구체적인 施行方案을 부속서에 위탁규정을 두어 運營하고 있다. 즉, 協約 施行上의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을 다시 決定, 勸告意見, 例解, 解說, 事例研究, 研究, 議定書 등에 다시 나열식으로 언급하면서 協約 締約國들에게 이를 수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關稅評價를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決定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도 대부분 그 내용에 있어 예시성에 불과하거나, 관념적인 설명에 그치는 경향이 많아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協約 施行에는 효과적인 내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課稅價格」에 대한 정의에 있어 協約 제1조 1항에 課稅價格은 수입국에 수출판매되는 物品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價格」으로 되어 있고, 協約 제8조 1항 (a), (b)의 규정에 의한 조정된 가격으로서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그 내용도 각 단계 조항별로 다단계로 설명되어져 있다. 이것에 대한 각 조항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의 <表 V-5>와 같다.

위의 예시와 같이 課稅價格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는 각 단계별로 보충 설명 등의 나열식, 다단계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協約適用의 용어해석에 있어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表 V-5〉 協約의 ‘課稅價格’에 대한 定義 例示

| 해당사항 | 주요정의내용 |
|-----------------|---|
| 협약 제1조1항 |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 |
| 부속서 I 제1조 주해 | 수입물품의 대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를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게 될 총 금액 |
| 의정서 I-8 |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특정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
| 해설(1조-1항) | 거래가격이어야 하며,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필요한 조정 절차를 거쳐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될 때 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된 가격 |

또한 課稅價格決定에 필수용어인 販賣(Sale)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정립이 있어야 하나, 協約事項에는 ‘販賣’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技術委員會의 권고의견(1.1)에서는 “輸入物品의 去來價格을 가능한 한 課稅價格으로 채택한다”는 協約의 근본취지에 따라 ‘販賣’라는 용어를 광의로 해석하고 있다. 더구나 協約 제1조 및 제8조의 요건 및 조건을 고려하여 판매로 볼 수 없는 사례목록을 경험 측면에 따라 마련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면서, 판매로 볼 수 없는 사례로서 ① 무상 탁송 물품 ② 受託販賣 物品 ③ 物品을 구입하지 않고 輸入後에 판매하는 中間人에 의해 輸入된 物品 ④ 별개의 法的 事業者가 아닌 지점 등에서 輸入된 物品 ⑤ 임대차 계약으로 수입되는 物品 ⑥ 송화주 소유의 貸與物品 ⑦ 송화주가 수입업자에게 役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수입국에서 파기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物品(웨이스트스크랩 등)을 예시만 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WCO 關稅評價 技術委員會에서는 이러한 예시된 사례가 전부가 아니므로 앞으로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계속 추가될 것이라는 견해를表明하고 있다.

나) 同種同質 및 類似物品의 定義

協約 제1조에서는 輸入物品의 去來價格이 없거나 課稅價格으로 채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第2方法으로서의 同種同質 物品의 去來價格을, 第3方法으로서의 類似物品의 去來價格을 課稅價格으로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同種同質 物品과 類似物品에 대한 조건을 확인하는데 있어서는 行政技術上의 고도의 技術이 요구되며 규정 그 자체가 추상적인 규정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物品의 性質에 대해서는 附屬書(1) 주해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稅關 당국은 가능한 언제나 評價될 物品과 동일한 상업적 수준 및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량의 同種同質 物品의 거래를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거래가 발견되지 않으면 ① 동일한 상업적 수준이지만 상이한 수량의 거래 ② 동일한 상업적 수준이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거래 ③ 상이한 상업적 수준 및 상이한 수량의 거래조건 중 어느 하나에 부합되는 거래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세가지 조건의 어느 하나에 부합되는 거래를 발견할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에 맞게 수량과 상업적 수준 요인에 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조정에 있어서는 합리성과 정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실증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 類似物品의 去來價格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앞에서 예시된 同種同質 物品의 경우와 거의 같으며, 또한 同種同質 物品과 類似한 物品에 대한 차이점은 이론적으로는 그 구별이 가능하나 실제로 구별하여 關稅評價에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 特殊關係 (being related)에 대한 規定

協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去來價格으로 인정되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서 購買者와 販賣者間的 特殊關係(이하 特殊關係라고 한다)가 없어야 하며, 特殊關係가 있는 경우에는 양자간의 거래상황을 검토하여 그 관계가 去來價格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아닐 때에만 그 가격을 채택하도록 규정되어져 있다. 特殊關係에 대해서는 協約 제15조 4항에서 세부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모호성이 대두하고 있는바, 15조 4항(E), (H)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알 수 있다. (E)의 경우 「양자 중 일방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방을 관리하는 경우」로서 이에 대해서 제15조의 주

해 제4항(t)에서는 일방이 타방에 대한 통제권 또는 지휘권을 법적 또는 실질적으로 행사할 위치에 있을 경우, 일방은 타방을 관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대한 해석은 너무 포괄적이고 매우 부정확한 정의임에 틀림이 없다. 즉 貿易이나 國際去來에 있어서 실제적인 소유권이 없다면 어떻게 일방이 타방을 통제 또는 지시할 수 있는 법률적 권리가 부여되겠는가?

또한 「實質的」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위치 또한 矛盾點이 있다. 하나의 同一社會 또는 기업내에서만 일방이 타방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에는 거의 모든 國際間的 계약은 비록 간단한 형태의 계약일지라도, 일방은 타방에 대해 어떠한 통제, 또는 지시를 법률적으로 행사할 권리를 갖게 되며, 또한 제품 또는 시장의 여건에 따라 일방이 타방에 대해 계약상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⁵⁾.

한편 (H)의 경우에 있어서는 「양자가 동일 가족인 경우」에 이어 그 내용은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단어에 대한 정의, 즉 「家族(Family)」의 용어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동 조항을 「購買者와 販賣者가 國稅基本法施行令 제 20조 제1호 내지 8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적절한 「家族 또는 親族 關係」는 국가와 문화에 따라 상이하다 할 수 있으며, 여기서의 가족관계는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추정을 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일 것으로 해석된다. 그 예로서 미국에서는 「家族關係」부분의 경우에는 동일 가족의 구성원, 형제, 그리고 자매(양부모의 혈통을 모두 물려 받았느냐는 불문), 祖上, 직계비속이라 규정하고 있어 협약의 내용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고,

5)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1996년 이후 「解説」(Explanatory Notes) 4.1의 수정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보다 그 범위가 다소 좁다. 일본의 경우에는 ‘販賣者 및 購買者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미국과는 그 범위를 달리하고 있으며, 여기서 「親族」이란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 및 3촌 이내인 인척을 말한다. 이와 같이 特殊關係의 범위 중 家族이나 親族 등의 정의는 국가나 문화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본 조항의 家族(Family)에 대한 명확한 규정, 통일적인 정의가 없이는 국가간, 協約의 규정적용에 있어서 問題點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라)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 課稅基準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는 協約 제8조 1항(c)에 의해 購買者가 評價對象 物品의 거래조건으로서 直接 또는 間接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으로 되어 있다.

WCO 關稅評價技術委員會에서는 동 조항에 대하여 6가지의 권고의견을 사례별로 豫示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로열티에 대한 協約의 규정은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인 데 반해 WCO는 일반적으로 法規方式으로 접근하지 않고 구체적인 해석의 접근 方法으로 특정 사례를 중심으로 개별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方式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로열티의 課稅評價의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協約의 「권고의견」(4.1 내지 4.6)에서는 사례를 들면서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를 課稅價格에 포함할 것인가, 아닌가를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사례 6가지 중 4가지가 로열티 課稅評價 부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과세되지 않는 사례를 주된 對象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에 대한 非課稅 주장을 유리하게 하는 근거로 인용될 수 있으므로 課稅權者의 입장에서는 課稅價格決定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問題點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에 대한 사용료가 去來價格에 포

합되기 위한 조건으로 協約 제8조 1항(c), 와 제8조의 주해 제1항(c)-2, 제3항을 검토해 보면, 첫째, 評價物品과 관련되어야 하고, 둘째, 評價物品의 販賣條件으로서 直·間接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調査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協約上에는 첫번째 조건인 評價物品과의 「關聯性」에 대한 한계와 정의가 없으며, 두번째 조건인 대금지급에 대한 포함여부를 調査할 수 있는 개관적이고도 명확한 기준이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國際去來에 있어서 통일적인 적용이 어려운 것이다.

2) 改善方向

가) 多段階的인 解釋의 脫避

協約에서는 관련규정에 대한 해석이나 정의에 있어 協約書의 내용을 결정, 예해, 해설, 사례연구, 연구 등의 위탁규정에 추가설명을 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련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러한 추가설명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요하는 나열식·다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위임규정에 의한 다단계식의 協約에 대한 정의나 해석은 協約規定의 이해와 적용에 복잡성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각 국가마다 해석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改善方向으로서는 協約에 대한 구성을 다단계적 구조에서 탈피하여 일정 위임법규나 해석, 사례 등 일단계적 참고지침 등으로 단계를 축약시켜 관련규정의 적용이나 해석에 있어 혼란이 없도록 개선되어져 할 것이다.

나) 概念 定義의 明確化

協約 締約국에 있어 가장 논란이 많은 特殊關係 거래에 대한 評價方法은 앞서 분석된 바와 같이 전 세계가 交易對象國家이고 去來方法의 多樣

성과 複雜性, 그리고 최근의 전반적인 貿易去來가 協約에서 규정된 特殊關係 거래가 성립(예: 獨占代理店, 代理店, 獨占契約, 獨占中繼... 등) 됨을 감안하면 적어도 協約에 있어 特殊關係去來 규정만큼은 그 범위가 정확하게 명시되거나 축소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協約 제1조 2항에 의한 評價方法 中 同種同質 또는 類似物品에 대한 단어의 사용은 과거의 브뤼셀 評價協約에서 사용되었던 용어로서 WTO 關稅評價協約에서의 이러한 ‘관념적인 단어’의 재사용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새로운 규정에 의한 評價方法 연구 및 단어의 배열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 로열티, 라이선스規定에 대한 改善

協約 규정에 있어 로열티 및 라이선스(協約 제8조 1항의 c)에 대한 구체적인 方法은 제시하지 않고 권고의견 등에서는 사례별 의견 등을 예시하면서 개별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方法으로 되어 있다.

근래 로열티 및 라이선스에 대한 지급은 輸入物品의 거래계약과는 별도로 통상 외국과의 로열티 지급이 輸入物品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국내에서 사용될 技術情報나 産業財産權의 사용대가의 지급인지 그 기준이 모호하고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열티나 라이선스에 대한 과세기준이 일반적인 원칙과 사례 몇가지만 들어 개별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協約의 규정 내용에 있어 미진하다는 것은 앞에서도 검토된 바 있다.

協約 체결국에서의 과세당국과 納稅者間 마찰 해소와 國際的인 評價方法의 통일을 위해서도 로열티와 라이선스 및 추가요소 비용 분배에 대한 協約規定은 원문의 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勸告意見」, 「事例」, 「研究」등에 대한 법적 지위문제와 아울러 課稅方法 및 範圍에서도 제한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開途國에 不利한 規定 關聯

1) 問題點

WTO 關稅評價協約은 브뤼셀評價協約이 지나치게 이론적으로 흐르는 것을 비판하는 입장(브뤼셀評價協約은 관념적 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실제거래에서의 가격을 관념적 가격으로 조정하는 方法을 실정법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이론적으로 타당한 方法은 무엇이든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브뤼셀評價協約에 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장점이 있으나 開途國에 대하여 불리한 면이 있다.

브뤼셀評價協約은 유럽關稅同盟의 연구단이 작성한 것으로 유럽關稅同盟 국가간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유럽關稅同盟이 關稅協力理事會로 확대 발전함에 따라 브뤼셀評價協約도 汎國際的인 協約이 되었다. 따라서 이 協約은 先·後進國間의 이해관계에 따른 특별한 고려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WTO 關稅評價協約은 貿易障壁의 완화를 위한 다자간 貿易協商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이러한 協商에서는 先進國과 開途國의 입장이 서로 다르므로 國際協商에서 발언권이 약한 開途國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 이 근거는 協商의 마지막 단계까지 주장된 開途國의 안에서 엿볼 수 있는데 그 問題點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⁶⁾.

가) 多國籍 企業의 移轉價格에 關한 問題

移轉價格(Transfer Pricing)은 多國籍企業에서 母會社와 從屬會社間 또는 從屬會社 상호간에 거래되는 상품 및 용역의 가격을 決定하기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회계 관행이다.

6) 李秀雄, 「관세평가제도와 그 운영실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85, pp. 66~88.

移轉價格(Transfer Pricing)의 관점에서는 多國籍企業은 販賣者인 동시에 購買者이며, 여러 나라에 산재한 從屬會社의 설비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 工場 내의 두 개의 조립라인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이들 상호간의 거래는 자유경쟁에 의한 協商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從屬會社의 역할과 생산량을 배치하는 관리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關稅評價에 있어서 이 가격은 자유경쟁하에 성립되는 가격과 동일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移轉價格의 決定은 각국의 關稅率, 評價原則의 差異, 資本金, 配當金, 利子, 로열티 등 여러 형태의 지급에 대한 내국세제의 차이, 이익 회수를 위한 여러 형태의 송금에 관한 外換管理 方法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課稅對象 수입을 非課稅對象으로 전환시키고 기업 전체로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移轉價格은 어떤 경우에는 고가가 될 수도 있으므로 關稅의 관점에서 저가신고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輸入價格과 費用, 利潤의 전반에 관하여 關稅, 內國稅, 原產地 등 관련 制度를 일관된 기준에 의거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브뤼셀評價規定에 의하면 移轉價格은 정상가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정상가격의 요건을 갖추도록 보정하여야 하는데, 그 조정요소는 이론적인 검토를 위주로 하고 稅關當局의 광범위한 決定權을 상징하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新評價規定에서는 移轉價格이 항상 課稅價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의 處理方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購買者와 販賣者가 特殊關係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들간의 가격을 불인정하여서는 안되고 稅關은 불인정 사유를 輸入者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 購買者와 販賣者가 特殊關係에 있더라도 그 物品의 가격이 동일 또는 類似物品의 제삼자 去來價格과 거의 비슷하거나 第4方法 또는 第5方

법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과 거의 비슷한 때에는 特殊關係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③ 상기의 가격을 비교하는 때에는 去來段階, 去來數量에 따른 차이의 조정과 상거래에 관련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WTO 關稅評價協約에서 稅關이 移轉價格을 심사하는 때에는 브뤼셀評價에서 보다 더욱 많은 업무가 필요하고 가급적이면 移轉價格 그 자체를 課稅價格의 기초로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納稅義務者와 징수기관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納稅義務者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多國籍企業의 모기업이 대부분 先進國에 있음을 감안한다면 WTO 關稅評價制度는 이 부분에서 先進國의 이익을 보호하는 制度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特殊關係者(related party)의 範圍에 關한 問題

購買者와 販賣者間에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양자의 공동목적을 위하여 物品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課稅價格으로 채택하는 것은 그렇지 아니한 거래와 비교할 때에 일관된 處理方法이 되지 못할 것이다. 전술한 移轉價格은 特殊關係者間 거래의 가장 代表的인 것이다.

브뤼셀評價에서는 공개시장에서 가격만이 유일한 고려대상이 되는 거래(물품과 대금의 완전교환)가 아닌 거래는 特殊關係의 거래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WTO 關稅評價協約에서는 特殊關係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으며(Positive Method), 특히 브뤼셀評價에서 特殊關係者로 규정한 獨占代理店, 獨占取扱權者 등에 대하여는 이들이 모두 特殊關係者가 아니고 그 관계의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보아 일방이 타방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만 特殊關係者로 볼 수 있다(協約 제15조 제4항 및 제5항 참조).

따라서 독립대리점 등이 수입하는 가격은 브뤼셀評價에서는 처음부터 정상가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보정할 方法을 검토하는 것

이었으나(보정할 요소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신고가격을 인정하는 경우) 新評價에서는 먼저 協約 제15조 제4항 및 제5항에 비추어 보아 特殊關係者에 해당하는지를 決定하여야 하며, 다음으로 特殊關係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를 協約 제1조 제2항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판단은 輸入者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지며, 輸入者가 輸出者를 위하여 지급하는 廣告宣傳費도 조정 요소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고, 價格의 決定이 당해 업계의 정상적인 價格決定方法과 일치하는 때에는 特殊關係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獨占代理店 등의 가격을 가급적 인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國際間에 거래되는 物品 中 獨占代理店 등의 유통구조가 필요한 것은 원자재가 아니라 商標가 있는 제품이며, 이러한 物品은 대부분 先進國에서 開途國으로 수출되는 物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獨占代理店 등의 가격을 그대로 課稅價格으로 인정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先進國의 生産者 내지 輸出者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론적으로 볼 때에 獨占代理店 등의 성립으로 인한 供給者와 代理店의 여건에 따라 供給者 優位 또는 代理店 優位가 決定된다고 하나 실제적으로는 先進國의 代理店은 開途國의 供給者에 대하여 優位를 차지하고, 先進國의 供給者는 開途國의 代理店에 대하여 優位를 차지할 것이므로 獨占關係는 어느 경우에도 先進國에 유리할 것이다.

開途國의 事業者가 先進國의 최신 제품의 獨占代理店 기능을 遂行하는 때에는 販賣戰略의 수립, 販賣價格의 決定, 廣告宣傳, 재고 수준 등 모든 부분에서 소위 권고 내지 노하우를 제공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開途國의 獨占輸入者는 先進國 供給者의 현지 주재 판매원과 유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독점수입자가 課稅價格에 유리한 처분을 받는 이익은 결국 그 物品의 외국 供給者의 이익이 될 것이다.

다) 獨占取扱權者가 支給하는 廣告宣傳費

브뤼셀評價에서는 獨占取扱權者가 지급하는 廣告宣傳費에 대하여 상거래의 본질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課稅價格에 가산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新評價에서는 開途國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課稅對象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新評價에서 광고비 등을 課稅價格에 가산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은 이로 인하여 課稅價格 계산업무가 곤란해지는 問題點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론적인 타당성이 희박하고 규정 상호간에 균형이 맞지 아니하는 問題點이 있다.

즉, 獨占取扱權者가 WTO 關稅評價協約 제15조에서 정하는 特殊關係者間의 범위에 해당하고, 그 輸入物品의 課稅價格을 決定하는 때에 第1方法 내지 第3方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第4方法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때의 利潤 및 一般經費는 수입국 내에서 同種 物品의 판매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利潤 및 一般經費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第1方法을 적용하는 경우에 廣告費 등을 課稅價格에 가산하지 않도록 한 것과 균형이 맞지 아니한다.

또한 協約 제1조에서 실제지급비용에는 購買者가 販賣者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제8조에서는 로열티 등과 사후귀속이익을 課稅對象으로 하고 있는 바, 購買者가 물품대금의 일부 또는 로열티나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고 등 시장개척비로 지급하는 계약을 한 경우에도 이를 課稅價格에 가산하지 않도록 한다면 동일한 실체를 두고 表現方法에 따라서 課稅·非課稅의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제도 자체가 균형이 맞지 아니하게 된다.

獨占取扱權者의 廣告費 등에 관하여는 協約 제정 당시 開途國에서는 이를 課稅價格에 가산하도록 주장하였으나 最終決定에서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요청에 의거하여 별도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일반적으로 先進國의 供給者는 開途國의 獨占代理店에 대하여 우위를 차지하므로 開途國에서 獨占輸入者에게 유리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이를 자기의 이익으로 흡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先進國에 유리한 조항으로 볼 수 있다.

라) 로열티, 特許使用料 등과 事後歸屬利益의 課稅價格 加算 與否

WTO 關稅評價協約 제8조는 課稅價格에 가산할 요소를 ㉠ 커미션 · 용기비용 · 포장비용 ㉡ 生産支援 ㉢ 로열티 · 특허권 등의 사용료 ㉣ 사후귀속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항은 輸入物品이 輸出國에서 수출을 준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중립적이나 ㉡항은 주로 先進國이 開途國에 대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이를 課稅對象으로 하는 것은 開途國에서 先進國의 하청을 받아 생산한 제품을 그 先進國에 수출하는 때의 課稅價格을 인상하는 것이 되어 先進國의 貿易障壁이 된다(이러한 경우에 해당 국가에서 生産支援 부분을 면세하도록 하는 制度가 있으나 이는 關稅評價의 문제가 아니므로 제외된다).

WTO 關稅評價協約 제8조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항과 ㉣항인바, 이를 課稅對象의 範圍, 輸入物品과의 관련성, 판매조건 여부, ㉢항과 ㉣항과의 관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課稅對象이 되는 로열티 등의 範圍

協定 제8조에 관한 주해에 의하면 로열티와 特許使用料는 特許 · 商標 · 著作에 관련되어 지급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정의는 없다. 關稅協理理事會(CCC)에서 인용한 「블랙범블사전」에 의하면, 로열티란 특허,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의 소유자에 의하여 지급이 유보되어 있고 그 권리의 양수자가 이를 사용하는 데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關稅評價에 있어 로열티 또는 特許使用料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권리가 輸入物品에 대한 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가의 지급이 노하우나 技術支援에 대한 대가, 기타 명목이 무엇이든지 輸入物品에 보호되는 권리가 있고, 송품장 금액 이외에 이러한 권리에 대한 대가 지급이 있는 때에는 關稅評價에서 문제가 된다.

한편 協約 제8조의 주해에는 課稅對象에서 제외하는 로열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輸入物品을 수입국내에서 재생산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charges for the right to reproduce the imported goods in the country of importation)는 課稅對象에서 제외하며, 로열티 중에서도 輸入物品을 分配 또는 再販賣하는 데 대한 지급(right to distribute or resell the imported goods)은 그 지급의 보장이 그 物品을 수입하는 때의 계약조건이 아니고, 수입국의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인 때에는 課稅對象으로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後者는 事實上 公허한 權利(hollow right)가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課稅對象 로열티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問題點이 있다.

첫째, 어떤 物品이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하는 特許權·商標權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거래 당사자가 이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하기 곤란하고, 특히 物品을 수입하면서 그 物品의 사용을 위한 技術支援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로열티의 발생 원인이 物品에 기인하는 것인지 技術支援에 기인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둘째, 協約 제8조에 관한 주해의 타당성에 관한 문제이다. 어떤 로열티의 지급이 수입국의 법령에 의하여 보장되는 경우(이러한 경우에는 販賣者가 로열티를 지급받기 위하여 계약서에 이를 명시할 필요가 없으며,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도 關稅評價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봄)에는 課稅對象에서 제외하고, 수입국에 그러한 법령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에 판매의 조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課稅對象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실체에 대하여 수입국의 법령에 따라 과세, 비과세가 달라지

는 것이 되므로 이론적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예 : 레코드판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가 그 판매가격의 3%를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에 대한 로열티로 지급하는 경우에 수입국의 법령에 이의 지급을 보장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로열티는 課稅對象이 아니고,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조건에 이를 명시할 것이므로 課稅對象이 된다(CCC Opinion 4.2 참조). 이러한 규정은 저작권 등에 관한 國際協定의 가입 촉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WTO 關稅評價協約은 로열티가 關稅의 課稅對象이 되는 이유를 명백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이 곤란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GATT 關稅評價協約을 기초한 사람은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한다.

② 輸入物品과의 關聯性

로열티 등이 課稅對象으로 거론되는 원인은 그것이 물품대금의 일부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브뤼셀評價에서는 로열티 등을 별도 지급금액의 일부로 보아 전액 과세하는 경우(완제품이거나 완제품의 주요특성을 갖춘 경우), 전액 비과세하는 경우(物品의 수입이 없거나 공개시장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경우); 비례계산하는 경우(부분품 또는 원자재를 수입하여 추가가공을 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新評價에서는 이에 관한 세부지침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特許權이 있는 기기의 미조립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추가가공을 거쳐 상표를 붙인 후 판매하면서 그 상표에 대하여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로열티의 전부를 課稅價格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일부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견해 및 전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어려운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은 대부분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것인데 그 기술도입은 기술제휴선으로부터 부품 또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로열티의 지급은 수입부품 또는 원재

료에 기인할 수도 있고, 순수한 技術支援에 기인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거래 당사자의 로열티 결정이유가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런데 技術導入을 인가하는 주무부처에서는 거래당사자의 로열티 결정 이유를 존중하지 않고 부처의 내부지침에 의거, '순매출액의 3% 또는 5%'라는 형식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상거래의 실제 내용이 왜곡되어 關稅評價의 관점에서 로열티의 課稅對象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곤란을 초래하고 있다(순매출액이라 함은 제품의 국내 판매가격에서 일정 항목의 생산비용과 기술공역자로부터 수입한 부품 또는 원자재의 금액을 공제한 것을 말한다. 로열티 지급액을 순매출액의 몇%로 규제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로열티의 지급금액을 行政力으로 낮추면 技術供與者는 부분품 또는 원자재의 가격을 높여 당초에 의도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販賣의 條件」에 대한 解釋

로열티등이 課稅對象이 되기 위한 또 하나의 요건은 그 로열티가 '판매의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규정에 관한 해석은 당해 輸入物品의 거래계약서에 物品 대가의 일부로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러한 계약서가 없거나 輸入物品에 대한 계약서와 로열티 지급에 대한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석상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첫번째 견해는 購買者와 販賣者가 그들의 사업을 두 개의 분리된 계약으로 준비한 것이라면 그 계약은 關稅評價에서도 별개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두번째 견해는 당해 거래를 둘러싸고 있는 전반적인 경제사정을 검토하여 별도로 로열티 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당해 物品의 '販賣의 條件'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다수 의견은 단순히 판매의 조건을 두 개의 계약으로 분할하는 것은 購買者와 販賣者間에 이루어지는 상거래의 실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후자의 여부를 확인하기도 곤란할 뿐더러 어떤 경우가

계약의 단순한 분할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④ 로열티와 事後歸屬利益과의 關係

新評價協定 제8조 제1항①에서는 ‘輸入物品의 販賣·處分·使用의 結果로서 얻어지는 수익으로서 直接 또는 間接으로 販賣者에게 귀속하는 것’은 課稅價格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예를 들면 輸入物品의 가격을 개당 100달러로 거래하면서 수입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데 따라 개당 20달러를 송금하여 주는 형태의 거래를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거래에서는 이와 같은 소박한 계약은 거의 없고, 로열티·技術支援料 등 여러가지 다른 요인과 복잡하게 얽혀 사후지급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사후지급’이 여기에서 정하는 ‘사후 귀속이익’(Subsequent Proceeds)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즉 어떤 輸入者가 로열티 등의 명목으로 사후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이 協定 제8조 제1항③에서 정하는 課稅價格 로열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 物品의 판매·사용·처분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이고, 販賣者에게 直接 또는 間接으로 귀속하는 때에는 協約 제8조 제1항①에 의거 課稅對象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③에 의거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은 ①에 의하여도 과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생각컨대 輸入物品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수입신용장에 의한 결제, 販賣者의 債務相計, 販賣者의 제삼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 부담, 販賣者의 지시에 의한 특별활동비의 지급(예 : 광고비), 로열티 명목의 사후지급, 기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으며, 課稅價格의 決定은 輸入者가 대금의 지급형태를 어떻게 취하든지 같은 결과에 도달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購買者가 販賣者에 대하여 物品을 수입하고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로열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사후 귀속이익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⁷⁾.

7) WCO 關稅評價技術委員會는 1992年 以後 이 問題點에 대하여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⑤ 逆算價格方法과 算定價格方法의 適用上 問題點

新評價에서는 輸入物品의 價格이 特殊關係 등으로 影響을 받은 것인 때에는 去來價格方法(제1方法)에 의거 課稅價格을 決定할 수 없고, 同一物品價格(제2方法), 類似物品價格(제3方法)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逆算價格方法은 4번째 적용하는 評價方法으로서 輸入物品을 通關한 후에 國內에서 판매하는 價格에서 수입에 소요된 비용과 이윤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課稅價格을 決定하는 方法을 말한다. 이 方法의 타당성은 수입가격은 特殊關係 등으로 影響을 받았으나 國內 판매시에는 그 物品에 대한 객관적인 價格으로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假定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假定은 대부분의 경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方法은 實제의 계산이 매우 복잡하고 課稅價格 決定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實체 처리를 어렵게 하는 問題點이 있는 이외에 市場 지배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저렴한 價格으로 수입하는 獨占代理店 등의 價格에 대하여는 아무런 통제를 할 수 없는 問題點이 있다.

예를 들면 獨占代理店 등의 수입가격이 特殊關係에 해당하고, 特殊關係가 價格에 影響을 미친 경우에 同一物品(第2方法) 또는 類似物品(第3方法)의 價格이 없고(商標가 유명한 物品은 關稅評價 목적에 적합한 同一物品 또는 類似物品이 없음). 따라서 제4方法을 적용하는 경우에 수입 후 國內 販賣價格을 市場開拓 또는 占有率(Market Share)의 확대를 위하여 저가로 책정하는 때에는 이 價格을 기초로 수입에 관련된 費用·利潤 및 一般經費 등을 공제하면 수입가격보다 낮은 價格이 산출될 수 있고(輸入者는 일정 기간 적자경영을 하거나 이윤을 남기지 아니함), 결국 輸入申告價格을 인정 처리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結果가 된다.

다음으로 第5方法은 輸出者의 製造原價計算書에 의거하여 과세하는 方法이다. 輸出者의 原價計算書를 확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 경로

를 통하여 승인을 받고 현지에 임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의 기준은 輸出國에서 '一般的으로 인정되는 會計原則'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方法은 각국의 行政能力에 따라서 실제 적용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行政能力이 있는 先進國은 輸出國에 關稅駐在官을 상주시키거나 擔當職員이 현지 출장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行政能力이 약한 開途國은 輸出者의 原價計算書를 書面確認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2) 改善方向

問題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多國籍企業의 移轉價格에 관한 問題, 로열티, 特許使用料 등과 事後歸屬利益의 課稅價格 加算與否 등의 분야에서 開途國에 불리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WTO 關稅 評價協約에 가입한 이상 그 協約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인도·아세안 등 이해관계국과 WTO 關稅評價協約의 시행에 따르는 問題點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동시에 改善方案을 강구하여 WTO나 WCO에서 開途國 등 이해관계국들이 연대하여 공동 대처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본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WTO 關稅評價協約의 시행에 있어 開途國 입장에서 불리한 독소조항을 잘 이해하고 改善方案을 강구해 낼 수 있는 關稅評價專門家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육성해 나가는 한편, 양국간 稅關協力會議 또는 한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評價協力會議 등을 개최하여 評價分野에서 공동관심사를 논의 대처해 나가는 것도 한 方法이라고 생각한다.

라. 協約의 國內法 受容 問題

1) 國內法上 受容時 法令水準 關聯

가) 問題點

WTO 關稅評價協約은 前文, 本文, 末文 및 3개의 附屬書로 構成되어 있고 同 協約(제14조)에 의하면 본문은 물론 3개의 附屬書까지도 協約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關稅法은 同 協約의 評價規範을 國內法으로 수용하면서 協約의 일부 규정은 法律, 施行令, 施行規則이 아닌 輸入物品 課稅價格 決定에 關稅評價施行細則에 관한 告示(關稅廳 告示)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法體系上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協約을 關稅法에 도입함에 있어 立法技術上 法律에서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법체계상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關稅廳 고시로 運營되는 輸入物品 課稅價格 決定에 關稅評價施行細則에 관한 告示(關稅廳 告示)는 法·施行令·施行規則의 해석을 위한 보충자료로서 行政內部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국가와 국민 사이의 외부관계에서 일반적 효력을 가지는 성질의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國民의 財產과 權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세요건의 해설기준이나 課稅價格 決定方法의 기준설정을 法規性이 없는 行政命令에 지나지 않는 施行細則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國際協約의 잘못된 國內法 受容方法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현행 WTO 關稅新評價協約을 關稅法에 수용함에 있어서 協約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여 해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야 있는데, 예컨대 第4方法의 國內販賣價格을 기초로 課稅價格을 決定함에 있어서 國內販賣價格이 없는 경우의 評價方法에 대해 國內 關稅法上 근거규정이 없다는 점, 항공운임이 일반운임보다 싼 경우의 評價問題, 關

稅 등의 세금 기타 公課金 中 公課金은 벌과금 수수료 등 과징금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關稅 및 內國稅로 바꾸는 문제, 처분 또는 사용상 제한의 주체의 한계를 購買者로 한정하는 問題와 輸出販賣, 輸出去來, 同種 同質物品, 商業的 段階와 商業的水準(Commercial Stage or Level) 등 用語上의 問題가 명확히 되지 않으면 WTO 關稅 評價協約 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⁸⁾.

나) 改善方向

從前의 關稅評價施行細則의 法規性 與否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최근의 法院判例를 들면(대구 고관 90구 1497, 1991. 9. 11 선고) 『... 關稅 評價施行細則은 關稅廳長이 關稅 行政組織과 職員들에 대하여 關稅의 課稅價格 決定에 관한 사무처리의 준칙을 정하여 시달한 行政命令일 뿐 국민과 법원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판례를 보더라도 國際協約을 國內法에 수용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에 침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인 課稅決定에 있어 참고가 되는 규정들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준거하여 제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규정들은 租稅法律主義 원칙상 법률과 동일법 체계를 구성하는 施行令이나 施行規則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WTO 關稅評價協約과 關稅法의 불일치 내용에 대하여는 關稅 評價 전문가로 구성된 Task Force를 구성 운영하여 조기에 改善方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8) 韓仁培, 「關稅評價制度의 活性化 方案」,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1993, pp. 37~38.

2) 不誠實申告者에 대한 處罰規定 關聯

가) 問題點

關稅評價制度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基本原則은 輸入貨主의 성실한 輸入申告라고 할 수 있다. 新評價制度에 있어 課稅價格의 決定은 輸出者와 輸入者間의 實去來價格으로 決定하므로 去來物品에 대한 사실과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역시 輸入者이기 때문에 輸入申告하는 사람의 성실한 輸入申告가 新評價制度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評價關聯 규정상 輸入申告 내역에 대한 不誠實한 업체에 대한 제재는 통관 절차상의 혜택적용을 제한하는 것과 5年 以內의 輸入申告事項에 대하여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정밀조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의 내용에 대하여 수익적 行政行爲의 撤回는 納稅者들의 성실한 價格申告 유도와 同 制度의 효율적 運營에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보나, 行政機關이 자의적·법적으로 보장된 각종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行政規則上의 근거규정을 가지고 제한하는 것은 行政機關의 權限濫用行爲라 볼 수 있다.

한편, 關稅法上 벌칙 내용으로서 不誠實 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면 關稅法 제175조(帳簿 또는 資料提出)의 규정을 들 수 있다.

그 내용은 『稅關公務員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輸出入業者, 販賣業者, 기타 關係業者에 대하여 帳簿 기타 관계 資料를 調査하거나, 그 지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제반 關稅行政에 관한 法 遂行에 필요한 帳簿나 資料의 提出을 요구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인 것이다. 處罰條項으로서는 이러한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關稅法上 명령위반에 대한 벌칙, 關稅法 제191조의 적용으로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본 조항도 關稅評價制度의 성실신고 불이행에 대한 처벌 또는 제제조항으로 運營하기에는 그 취지가 맞지 않으며, 輸入物品에 대한 課

稅價格 決定을 위한 不誠實申告로 行政被害나 稅收의 適期確保, 資料提出 기부에 따른 處罰條項으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 할 수 있다.

나) 改善方向

申告納付制度下에서는 納稅者의 성실한 價格申告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誠實申告를 위한 법령상 적절한 보완규정들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며 고의·과실로 租稅回避 또는 脫稅의 目的으로 가격을 조작한다든지 로열티·技術用役費 등 課稅價格 加算要素를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서는 장기적으로 關稅法 제180조(關稅連脫罪)로 그 처벌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課稅價格 加算要素를 稅關職員들이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전국 稅關에서 調査된 不誠實 사례와 기업체에 대하여서는 사례 집을 작성하여 일선담당부서에 배포토록 하여 企業會計調査나 關稅 賦課 등의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不誠實 申告時의 제재조치를 추진해 나가면서 민간단체 중심으로 성실한 價格申告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輸入申告되는 物品에 대한 가격 자료의 대외개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개방은 업체간의 저가신고나 혹은 고가신고로 인한 외환유출 등의 방지효과가 있는 方法으로 과거 輸入物品의 실적가격에 대하여 대외누설을 기피하는 行政에서 벗어나 개방적 과세행정 體制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둘째, 同一業種의 相關 協會나 組合에 課稅物品에 대한 수입가격자료를 통보하고, 지도를 협조·요청한다. 국내에 수입되는 物品에 대한 통보와 적정세액 납세 등에 대한 감시기능의 부여는 相關 輸入業體의 誠實申告를 간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方法인 것이다. 또한 수입통관 相關 주변업체인(綜合商社, 貿易代理店, 關稅士, 運送業體 등)에 대한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와 關稅協會나 貿易協會 등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홍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特殊關係 거래자나 특이한 거래조건인 交易物品 및 신규 플랜트, 大規模 工場建設資材 등에 대한 評價方法에 있어서는 法 施行規則 제6조의 규정에 의한 事前評價 對象物品이 아니더라도 貨主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事前評價를 가능하게 함으로서 輸入申告受理前 審査(이하 ‘申告受理前 評價’라 한다.)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事前審査制度의 활성화는 輸入評價 對象物品의 課稅價格의 加算요소나 加算금액에 대하여 수입전에 評價를 실시하고 수입시에는 그 내용대로 면허하는 것으로 貨主의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세관의 업무량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關稅廳에서 부과·징수하는 각종 內國稅의 표준은 關稅의 課稅標準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關稅의 課稅標準이 적정하게 調査·決定되도록 협조하는 것은 결국은 내국세의 課稅標準이 적정하게 調査·決定되도록 협조하는 것이 되므로 國稅廳과의 協助體制 強化를 통한 課稅資料 확보와 더불어 評價行政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評價를 담당하는 公務員들이 수시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 最近 關稅評價 實務에서 提起되고 있는 事關 關聯

1) 第4評價 方法 適用上 關聯(특수거래 관계의 처리문제 포함)

가) 問題點

제4방법인 국내판매가격에서 역산 또는 공제하는 방식(deductive method)이란 특정 국내판매가격에서 특정비용요소를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역산가격방법이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제조자가 수입국에 주재하는 대리인 또는 지사에 물품을 선적하고 이들이 해당물품을 수출자를 대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제조자와 대리인 또는 지사와의 관계에서는 ‘판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1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하고 대리인 또는 지사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가격에서부터 과세가격을 산출하는 역산가격방식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4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무상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법 제9조의 6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제4방법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판매가격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둘째, WTO 관세평가협약에 의거한 관세평가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국제조세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곧바로 정상가격을 내국세의 과세가격으로 과세하고 있어서 관세부과와 법인세부과조치간에 相異性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제4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수입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판매 단위가격이 결정되면 이 가격으로부터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 등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은 관세법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국세청의 업종별 이윤 및 일반경비에 관한 자료를 평균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표」를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평균운영세칙 제3-17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비율이 이 기준비율보다 20% 이상 적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준비율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또한 국세청이 이전가격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하는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 등이 동일한 업종임에도 관세청 조사결과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같은 세무당국간의 업무협조가 잘되지 않고 있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나) 改善方向

먼저 첫번째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국내판매 가격’이 없는 경우에 우리 관세법에 의하면 제4방법의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협약 제5조 제1항에서는 당해상품의 ‘수입후 가장 빠른 날에’ 그러나 ‘수입후 90일 이내에’ 판매되는 국내판매 가격을 기초로 제4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협약 제5조의 주해 제10항에 의하면 “가장 빠른 날이라 함은 그날까지 단위 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수입품 또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충분한 물량으로 판매된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세법 제9조의 6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8 제3항은 전면개정하여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국내판매가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서 관세평가협약 제5조 제1항(가) 및 (나)의 규정과 일치되게 맞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특수거래관계의 과세가격산정에 있어서 관세부과와 법인세부과 조치간의 상이성문제에 대하여서는 이전가격문제에 민감한 미국에서도 국세청과 관세청간의 시각차에 따라서 협의가 쉽지 않은 사안이며, 또한 OECD 재정위원회에서도 본 사안에 관하여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기본적으로 제4관세 평가방법과 국제조세 조정 법률상의 재판매 가격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동일한 접근방법인바, 따라서 과세가격의 결정업무에 있어서 관세청과 국세청간의 업무협조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양 기관간에 과세가격의 결정자료와 정보의 상호교류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세청 또는 관세청의 기업사후조사시에는 상이한 시각을 가진 상대기관의 실무직원이 상호참여하는 협조조사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2) 輸出者가 瑕疵保證期間內에 費用을 負擔하여 受理된 後 再輸入되는 物品(해외무상 수리물품)에 대한 關稅評價 關聯

가) 問題點

무상수리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산정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34조에 의하면 무상수리를 위하여 수출된 물품은 전액면세이나 수리에 소요된 비용과 수리관련 운임·보험료 등은 관세법 제34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수입후 하자가 발견된 물품은 하자부분 만큼 정상물품보다 실질적으로 가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산정하기가 곤란하여, 수리목적으로 수출시에는 수입시 신고가격을 그대로 신고하므로, 수리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이 하자없이 수입된 물품(정상물품)의 과세가격을 상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 무상수리비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법적근거는 있으나 하자보증기간중에 발생한 하자부분을 매도인의 부담으로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의 가공수리분에 대한 관세부과는 대외적으로 상식선에서 이해시키기가 용이하지 아니하다. 외국의 수출자가 우리나라의 관세제도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민원인이 무상수리비 산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기가 곤란하고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에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나) 改善方向

무상수리비의 과세근거규정인 관세법 제34조 제1항 단서규정을 개정하여 ‘하자보증기간중에 발생한 하자부분을 매도인의 부담으로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의 가공수리분에 대한 관세는 면세하도록 관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3) 自動車(新車 및 中古自動車)에 대한 關稅評價 關聯

가) 問題點

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세관의 관세평가 제6방법 적용실태를 살펴보면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현지구입 영수증상의 가격은 사실상 불인정하고 수출국내 자동차 시장의 일반적인 가격을 표시한 카다로그(예, 미국의 경우 'BLUE BOOK')가격에서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감가상각)한 가격을 사실상 일률적으로 과세가격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영수증의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하며 특히, 외국현지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호 공모하여 허위영수증을 작성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BLUE BOOK'상의 가격은 수출국 내의 통상적인 거래가격이므로 허위신고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적용기준의 일관성 측면에서 신고자가 제시한 영수증의 가격이 높은 경우에도 이를 무시하고 'BLUE BOOK'상의 가격에서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차감(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평가협약 제7조 제2항 제(c)호에서는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수출국내 시장에서의 물품가격'은 과세가격의 기초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1995년 8월 경 WCO가 발행한 「*SUPPLEMENT TO STUDY 1.1: VALUATION OF USED AUTOMOBILES*」이라는 문서에서도 상기 GATT/WTO 관세평가협약 제7조 제2항 제C호의 규정과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즉 수출국내의 일반적인 시장가격 또는 판매자가 다른 구매자에게 청약(offer)한 가격은 협약 제7조 제2항 제(c)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의 기초로 활용할 수 없고 수출국의 독립된 기관이 발행하는 카다로그상의 가격도 같은 근거에서 제6방법 평가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국내의 일반적인 시장가격을 나타내고 있는 'BLUE BOOK'상의 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사용하는 것은 협약규정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다.

나) 改善方向

이산화물로 수입되는 자동차의 과세가격결정시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최대한 협약규정에 합치되도록 한다. 즉, 현행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가격을 무조건 배제하고 '수출국내 시장의 카다로그가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가격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은 마련되어야 할 것이므로 'BLUE BOOK'상의 가격은 납세의무자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 제시가격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사용하도록 한다. 이때 납세의무자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정당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출국내의 실제거래관행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과세하는데 수출국내 매매관행이 List Price에서 최대 20% 정도 할인된 가격이라면 동 가격범위내에서 신고인이 제시한 가격을 인정하는 것이 그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4) 保稅販賣場 搬入申告價格을 對比價格으로 使用할 수 있는지 與否 關聯

가) 問題點(爭點)

내수용화장품 수입업체 (Kobel, PCD Korea, 성주 Int'l 등)는 외국 공급자의 현지법인 또는 독점대리점으로서 동 업체들의 수입가격은 보세판매장 반입가격(동종·동질물품)대비 약 50% 정도 저가이고 보세판매장 반입가격은 오퍼수수료, 광고비용, 판매원 인건비 등을 공급자가 부담하고, 내수판매용 물품은 광고비용, 판매원 인건비 등을 수입자가

부담하므로 보세판매용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이때 보세판매장 반입가격을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보아 대비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일고 있다.

나) 改善方向

대비가격의 채택조건은 독립당사자간에 성립된 가격이 관세평가협약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구비하고, 동 협약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정이 행하여졌으며, 세관당국에 의해 거래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경우에는 대비가격(Test Value)으로 사용 할 수 있다고 WCO 권고의 견에서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보세판매장에 반입신고한 가격은 세관당국에서 인정된 거래가격이 아니므로 동 가격은 대비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보세판매장 운영세칙(관세청 고시 제95-917호, 1995년 2월 28일)에 의하면 동세칙 제15조에서는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반입할 경우에 세관공무원은 ‘물품반입 검사시 동 물품에 대한 신고가격’만을 확정하는 것이지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즉, 보세판매장에 반입된 물품을 국내로 수입(반입)할 때에는 수입담당과에 ‘수입신고’(거래관계 사실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관련서류첨부)를 하고, 동 담당과에서 관세법 제9조의 3내지 동법 제9조의 8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때의 가격이 세관당국에 의해 거래가격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세판매장에 ‘반입신고’된 가격이 독립당사자간에 대등한 거래당사자로서 가격협상을 통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하고 또한 세관당국에 의하여 동 가격을 거래가격으로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서만 대비가격(Test Value)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關稅評價에 있어서의 그 基礎가 되고 있는 ‘一般的으로 認定되는 會計原則’(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關聯

가) 問題點

납세의무자가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에 그 신고가격이 진실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으면 제1방법의 거래가격(신고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제2방법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고가격이 진실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세관당국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관당국의 제1차적인 입증책임문제에 대하여 법적으로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성실한 신고금액이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확정되어 재정수입의 손실을 가져오거나 또는 성실한 신고금액이 인정되지 못하고 세관당국의 자의적인 평가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는 제9조의 3 제1항 단서에서 거래가격의 가산요소에 대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 제2방법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이 제기된다 하겠다. 따라서 입법적으로 이 문제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이 규정은 협약 제8조 제3항 및 협약 제3항의 주해의 규정에 일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규정은 당초의 신고 자체는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아무리 정당한 신고가 있더라도 이에 가산할 요소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제1방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당초의 신고 자체가 정당한지 여부는 검토하지 않는 것인가? 검토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검토하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협약에는 GAAP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관세법에는 GAAP와 관련된 협약의 규정은 도입되어 있지 않다.

신평가협약 일반서설 제2항 및 평가방법의 적용순위의 주해 제2항에 의하면 ‘협약 제1조(제1방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제2방법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사용의 주해 제2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일치되게 작성된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주해 제1항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과세가격 신고내용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일치되게 작성된 정보’인 경우에만 이를 활용하여 제1방법을 적용하고, 만약 그렇지 못한 자료인 경우는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일치되게 작성된 정보’를 활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동종·동질물품의 과세가격을 활용하는 등 제2방법 이하의 방법을 적용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관세법령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고 다만 세칙 제1-2조 제3호에서 ‘관련되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사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청장 고시인 세칙이 어느정도의 법적 효력이 있는지 의문이 있다.

나) 改善方向

가산요소에 대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없는 경우’의 제1방법의 적용배제는 현행법을 그대로 두되 미국의 예에 따라 그 개념을 명백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WTO 각료회의의 결정사항의 취지에 따라 ‘불성실신고로 간주되는 신고’에 대하여는 ‘정확한 거래가격’이 무엇이냐를 세관당국이 입증하지 않고 바로 제1방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제2방법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관세법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가 불성실 신고로 간주되느냐는 가격신고와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하여 제출된 세부자료와 서류가 GAAP에 의하여 뒷받침을 받고 있지 못한 경우로 규정하여야 한다. 즉 가격신고 및 이에 첨부하여 제출한 과세자료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일치되게 작성되어야 과세가격 결정의 자료로 활용되며 GAAP에 일치되게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격신고의 진실성 및 정확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1방법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참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은 추계결정사유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사유를 들고 있다. 관세법에도 이러한 규정을 두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국세청이 업체별로 이러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즉, GAAP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여 국세행정에 이용하고 있는 자료를 협조 받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②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제품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그 외에 법체계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협약상의 GAAP의 사용에 대한 주해의 내용에 따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6) Nissho Iwai America Co, v.u.s. Customs(1993년) 關聯

가) 問題點

수입신고 전에 여러 판매단계를 거치는 경우에는 최초의 수출자가 받는 수출가액과 최종 수입자가 지불하는 수입가액과는 차이가 날 것인바, 어느 단계의 거래를 수입국의 수출판매 또는 상품이 국제간 이전되는 거래로 볼 것이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곧 수출자가 수출대금으로

받은 가격으로 수출자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수입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가 그 쟁점사항이 된다. 지금까지 각 나라의 세관당국의 관례는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격으로 삼아왔다. 그런데 최근 뉴욕지하철당국(MTA)이 지하철 객차를 일본으로부터 구매하였는데 구매의 단계를 살펴보면 먼저 일본소재 가와사끼중공업이 지하철객차를 생산하여 니쇼이와이(일본)에 팔고 니쇼이와이(일본)는 니쇼이와이(미국)에 다시 팔고 니쇼이와이(미국)가 뉴욕지하철당국에 다시 판 경우이다. 이 경우에 어떠한 거래단계의 가격을 관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은 동건은 뉴욕지하철당국이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 지하철객차를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당초부터 가와사끼중공업이 지하철 객차를 생산하여 위와 같은 단계를 거쳐 구매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가와사끼중공업이 지하철 객차를 생산하여 일본의 니쇼이와이에 판매한 최초의 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해야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미국세관에서는 범원의 동건에 대한 판결은 당해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확대적용하지 않도록 일선세관에 시달하였고 이에 따라 일선세관에서는 가장 최후의 가격으로 계속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동건과 유사한 경우가 범원에서 최초의 가격으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결이 계속 나가 되자 세관당국은 최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공문을 시달함에 따라 미국세관에서는 최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여러 단계의 판매단계를 거친 경우에는 최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하는 데 반하여 미국이 수출하는 물품으로서 여러 단계의 판매단계를 거치는 경우에는 최후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게 되는 차별문제가 제기되게 되어 앞으로 미국측에서는 이와 관련 전 세계가 동일한 방법(최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으로 과세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라 할 수 있다.

나) 對應方向

앞으로 EU가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일본이 이에 동조하게 되면 아마도 그러한 방향으로 WCO의 의견이 정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 세관당국의 입장 정리가 시급하다 하겠다.

우리의 입장정립과 관련하여 수입신고 전에 여러 판매단계를 거치는 경우 어떤 단계에서든 꼭 한번은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후 판매단계가 아닌 어떤 한 판매단계에서 세관에 본인의 이름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과세가격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세관당국에서 추적조차 어려운 최초 또는 최후의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문제는 누가 최종 수입자이나 하는 것인데, 최종 수입자는 곧 수입신고한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동 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있어서는 수출자가 받는 가액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입자가 지불한 가액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장단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입장은 좋은 이유(Good Reasoning)로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바. 關稅評價業務 運營體系 및 方式 關聯

1) 問題點

納稅義務者가 價格申告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의 적정여부 및 로열티 등 조정요소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평가전담직원의 대기업 관리를 위한 原價計算, 簿記, 外換業務 등에 관한 전문지식의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評價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評價不在現象을 초래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關稅廳에서는 1996年 7月 1日부터 輸入免許制가 輸入申告制로 轉換됨에 따라 評價擔當組織도 이에 부응하여 종래 評價協力局 산하에 評價1課, 2課 등 2個課가 있던 것을 새로운 關稅廳 組織下에서는 通關局 산하의 評價還給

課로 대폭 縮小調整하는 한편 一線稅關에서도 通關局·監視局·調査局 등에서 일부 人力이 評價業務를 擔當하게 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評價業務와 관련 事後稅額調査 등을 수행함에 있어 全數調査體制에서 標本調査體制로 이행하는 것에 부응하기 위한 組織改編의 일환이라고 이해되나 評價擔當職員이 檢査·搜查 등 다업무와 병행하여 評價業務를 擔當하게 됨으로써 자칫 同 評價業務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2) 改善方向

가) 關稅評價 專門人力에 대한 人事上 優待 및 調査技法 習得

수입감정 경험이 풍부하고 評價業務의 有經驗者 및 簿記資格證을 구비한 직원을 선발하여 評價專門要員으로 양성·활용한다.

또한 關稅公務員教育院에 長期評價教育 과정을 신설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評價協約·簿記 등의 과목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公認會計士를 초빙하여 실제장부의 調査技法을 습득케 하는 한편, 실제 輸入物品 통관시 관련 서류에는 근거하여 輸入申告書를 작성하는 업무를 遂行하는 關稅士 事務員 등에게도 課稅價格 加算 申告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課稅價格을 적정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한다. 선발된 요원에 대하여는 評價業務의 지속성 유지를 위하여 가급적 6년 정도 장기간 근무를 시키고 전보시 보직 순환코스를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評價專門人力의 손실을 방지케 해야 할 것이다. 평가요원으로 장기간 근속한 자에 대하여는 근평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취하여 근무의욕을 제고시켜 지급과 같은 評價業務 부서의 비선호에서 탈피하여 우수한 인력이 다투어 支援할 수 있도록 制度的 장치의 강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우수한 직원을 선발하여 國稅廳에 6個月 이상 장기간 파견근무 조치하여 貿易의 지급 등 외화의 변태지급 내용이 실제 회계장부 및 전표 등에 나타난 외형상 형태에 대한 確認方法에 대하여 실제 合同調査業務를 통하여 숙지시켜 그 기법을 關稅評價調査 업무에 활용한다.

나) 關稅評價業務의 電算化

一線稅關에서는 輸入物品의 規格별 價格자료를 평가카드로 작성하여 評價參考資料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본청에서는 通關지 세관에서 송부한 수입송품장 사본을 HS Code별로 區分·管理하여 評價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輸入物品의 전산입력 사항에는 品名·規格 등이 구분되지 않아 입력된 자료를 課稅價格 決定時 참고자료로 활용하기가 곤란하며, 또한 課稅價格 決定에 중대한 요소인 거래관계가 전산입력되지 않아 전산자료를 評價에 활용하는 데 미흡하다.

評價電算化는 장기적으로 通關관리 전산화와 연계하여 추진이 필요하며 輸入者(貨主)와 輸出者間 거래관계도 전산입력하여 거래상황을 추적· 파악하며, 또한 特殊關係者間 거래(약 2,000거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전산입력토록 한다. 또는 현재 價格정보 교환은 문서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本部稅關 稅務管理課에서 CRT를 통하여 輸入實績價格의 직접 조회가 가능토록 하고, 현재의 輸入物品 價格자료로 하고 있는 전산화 物品의 對象을 擴大·入力한다.

다) 海外駐在官 增員 및 海外研修 實施

현재 香港, 美國, 日本, 캐나다, 호주 등의 關稅廳 주재관의 수를 EU 권 등 국가로 대폭 확대하여 外國시장의 價格정보 수집에 신속을 기하여 이를 評價調查業務에 이용하여 同 調查業務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또한 評價專門要員에 대하여는 단기간 순환적으로 日本 등 국가에 해외연수를 통하여 先進國家의 評價調查技法을 습득시키고 동 연수보고서의 검토회 등을 개최하여 評價調查技倆 향상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VI. 現行 關稅減免制度的 運營上 問題點과 改善方向

1. 問題의 提起

우리나라의 關稅減免制度는 產業別·高關稅·高減免方式에서 벗어나 점차 機能別·低關稅·低減免 내지 無減免 方向으로 그 運營方向을 전환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方向 전환은 특정산업 위주의 성장전략을 탈피하고 각 부문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產業政策의 基本方向에 부응해 나가고 낮은 關稅率下에서도 SOC 擴大 등에 필요한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는 한편 WTO에 대한 關稅率의 전반적 讓許 등 關稅政策 환경의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評價된다.

이상과 같은 關稅減免制度 運營의 方向 전환에도 불구하고 現行 關稅減免制度的 실제 運營實績을 살펴보면 아직도 特定性·既得權化·慢性化·集中性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특정성·기득권화 등의 現行 減免制度 運營上 제기되는 問題點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아울러 低關稅率體制下에서의 關稅減免은 모두 폐지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關稅減免制度를 존속시킨다면 어떠한 方向으로 關稅減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基本方向이 명백히 정립되어야 基本關稅率制度的 부분적인 문제를 보완하는 制度로서의 關稅減免制度가 그 역할을 옹기 遂行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關稅減免制度的 運營現況, 問題點 및 그 改善方向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關稅減免制度의 運營現況

가. 關稅減免制度 概要

關稅減免制度는 크게 産業減免, 非産業減免 및 協約減免으로 분류되고 産業減免은 그것이 특정한 産業에 대하여 減免을 하는지 아니면 산업 전반에 波及效果가 있는 기능별 減免을 하는지로 분류된다. 非産業減免은 部門別 均衡發展, 福祉 向上, 學術支援을 위한 減免支援을 말하고, 協約減免은 關稅分野의 國際協約 및 國際慣例에 따른 減免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정리할 수 있다.

1) 産業減免 : 特定産業減免 + 기능별減免

- 特定産業減免 :
 - 첨단산업시설기자재 감면
 - 항공기제조용원료품 감면
 - 농기계제조용품 감면
 - 방위산업시설기자재 및 원자재 감면
 - 해저광물탐사장비 감면
 - 외자도입법에 의한 고도기술수반산업 감면 등
- 기능별 감면 :
 - 공장자동화물품 감면
 - 산업기술·연구용품 감면
 - 산업해해예방물품 및 오염물질·폐기물처리물품 감면 등

2) 非産業減免 : 균형발전 + 복지향상을 위한 감면

- SOC : 지하철 건설용품 등 사회간접자본지원 감면
- 보건 : 수질측정, 가족계획, 장애인용품 등 감면

- 학술진흥 : 각종 과학연구 · 교육물품 감면
- 체육 :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경기용품 감면
- 농수축산물부문 감면
- 기타 : 정부물품 · 군수물품 등

3) 협약감면 : 외교활동의 보장+국제적인 인적 · 물적교류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채택된 각종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운영

- 1994년 11월 현재 84개에 이르는 관세감면과 관련된 다자간 협약 및 권고사항 중 우리나라는 30개에 가입중임.
- 양자협약도 군사 · 항공 · 무역 등 각 분야에 걸쳐 관세감면내용이 포함된 협약이 84개에 이르고 있음.

〈表 VI-1〉 關稅減免關聯 國際協約 現況

(單位: 個)

| | 협약 주체 | 협약 · 권고 | 우리나라 가입 |
|-----------------|-----------|------------------|---------|
| 다 자 협 약 (84) | W C O | 53 ¹⁾ | 9 |
| | UN 기 구 | 16 ²⁾ | 13 |
| | 기 타 | 15 | 8 |
| 양 자 협 약 (84) | 항 공 협 약 | 66 | |
| | 무 역 · 문 화 | 4 | |
| | 기 타 | 14 | |
| 계 | | 168 | 30 |

註: 1) 권고 21 포함.

2) 권고 1 포함.

나. 關稅減免制度 運營實績

1) 關稅減免支援制度 運營 推移

그 동안 우리의 關稅減免은 產業別·高關稅·高減免方式에서 벗어나 점차 機能別·低關稅·低減免 내지 無減免方向으로 그 運營方向을 전환해 가고 있다. 이는 關稅率의 전반적 引下 등 關稅行政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특정산업 위주의 성장전략에서 각 부문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국민경제를 運營하고 낮은 關稅率下에서도 社會間接資本 擴大 등에 필요한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는 한편 주요시설·機資材의 國產化를 조기에 促進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정책전환이라 하겠다.

그 동안 關稅減免支援制度의 추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關稅減免支援에 있어 특정부문 또는 특정산업에 대한 支援은 關稅의 중립성을 저해하고 그 결과 자원배분의 왜곡과 市場經濟原理의 毀損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1983年 以後 產業支援에 대한 減免은 段階的으로 축소·폐지하면서 기능별 減免制度로 전환한 바 있다. 이와 같이 減免支援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 산업에 고루 혜택이 가고 산업 무차별적인 기능별 減免支援制度의 활성화가 산업에 대한 關稅의 중립성 유지와 시장기능에 의한 효율성 제고를 추구해 나가야 하는 關稅支援制度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아 동 방향으로 減免政策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간 생산성 향상과 技術의 研究·開發을 통한 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技術研究·開發關聯 關稅減免 對象機關 및 對象物品을 확대하는 한편, 減免對象 학술연구 관련 기관도 확대하여 학술연구와 교육용 및 실험실습용품 등에 대해 減免支援을 함으로써 학술연구 및 技術開發 등의 진흥을 도모토록 노력해 왔다. 또한 환경보전 및 산재예방측면에서의

支援을 강화하고자 汚染物質排出 防止, 産災豫防 및 職業病 豫防에 필요한 국내생산이 곤란한 수입기자재의 減免對象 범위를 확대하여 왔다.

아울러 1983年 以後 産業別 關稅減免制度가 關稅의 중립성을 저해하는 점을 감안, 重要산업에 대한 減免支援制度는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하여 왔다. 그러나 1989年부터 1990年 末까지 한시적으로 運營되는 尖端技術産業 및 防衛産業에 대한 減免支援은 경기부진 등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의 성격상 초기단계에 財政金融支援의 필요성이 큰 尖端部門에 대한 設備投資를 촉진하고자 支援對象業種 및 物品을 확대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 경제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특히 産業構造의 調整, 技術研究·開發의 促進, 製造業의 競爭力 提高 등을 통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1990年 12月 關稅法 改正을 통하여 關稅支援制度가 대폭 整備·補完되었다.

尖端技術産業의 減免對象을 확대하고 減免期間도 延長하는 한편, 기업의 原價 節減과 생산능력의 증대를 위한 生産自動化를 支援하기 위하여 工場自動化 器機에 대한 減免支援制度도 신설하고 廢棄物 處理用 器機, 環境汚染測定·分析 및 上水道 水質測定機器 등 環境保全을 위한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支援制度도 대폭 강화하였다.

그러나 1993年 末에 이르러서는 關稅減免制度는 국내산업 발전이나 국가의 정책방향과 부합되는 부문에 소요되는 物品에 대하여 특별히 關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특정한 산업이나 輸入者에게 特惠를 부여하는 성격으로 규정짓고 關稅減免制度는 과세의 公平성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엄격한 기준과 원칙에 입각하여 運營되어야 하며 가능한 필요하면 關稅率 자체에 반영하여 運營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정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現行 尖端技術産業 및 防衛産業 減免은 특정한 산업부문에 대한 支援 성격이 크므로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1998年 이후에는 완전히 폐지하기 위해 關稅法 본조에서 삭제하고 부칙으로 규정

하게 되었다. 즉 현재의 尖端技術産業減免은 減免率을 매년 5%씩 引下하여 1994年 35%에서 1997년에는 20%로 하고, 防衛産業製品 製造·加工·修理 등을 위한 부분품과 원재료는 減免率을 1994年 100%에서 매년 10%씩 引下하여 1997년에는 70%로 조정하였다. 다만, 현재 防衛産業減免 對象 中 防衛産業製品 研究開發用·試驗分析用品 및 見品은 學術研究用品 減免對象에 포함시켜 계속 존속하도록 하였다.

한편, 航空機 製造用 原料品 및 工場自動化器機에 대하여서도 그 減免率을 1994年 50%, 1995年 40%, 1996年 30%, 1997年 20%로 매년 10%씩 引下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이 關稅減免制度 運營은 과세의 公平性 확보를 위해 가능한 특정한 산업부문에 대한 減免을 축소해 나가야 하겠으나, 국가 전체적 측면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과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특히 환경보호 등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감면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기기, 폐기물 처리용 기구, 산업용마그네딕테이프, 공장자동화 기계기구 등은 별도로 규정하여 계속 감면대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의 핵심 부분품을 관세감면대상에 추가하였는바, 이는 핵심부분품을 구별하는 문제와 통관심사시 확인 및 사후관리 등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하나 공장자동화기기, 기구 자체는 감면을 받으면서 이를 구성하는 부분품은 減免을 받지 못할 경우 逆關稅 현상이 발생하여 工場自動化器機의 수입을 촉진하여 기계의 국산화 촉진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새로이 減免對象에 포함시키게 된 것이다. 다만, 減免對象이 되는 모든 物品의 부분품으로 확대하지 않은 것은 부분품 減免 자체가 갖게 되는 위와 같은 어려운 점을 예상하여 問題點을 보완하여 나가면서 그 對象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다.

關稅減免支援制度의 年度別 推移를 살펴 보면 <表 VI-2>와 같다.

<表 VI - 2> 關稅減免支援制度 運營 推移

| | 1983년 이전 | 1984~1988년 | 1989~1990년 | 1991년 이후 | |
|-----------|--|--|---|--|--|
| 산업별 | - 중요산업 감면제도 (화학공업, 일반기계 제조업 등 14개 산업) | (1983.12) 화학공업, 전기철도운수업 광업· (1985.12) 송전업 제철제강업· (1987.12) 조선업 등 7개 산업 기술개발주도산업 (기계·전자공업) (1988.12) | - 첨단기술산업 한시적 감면 신설 ○ 기계·전자 공업 중 첨단 기술산업에 속하는 68개 업종 (1989~1991) | - 첨단기술산업 관세감면제도 확대 ○ 7개 첨단 기술산업 (147업종) (첨단산업발전 심의회 확정) (1991~1993) ○ 1998년부터 패지를 전제로 감면율의 축소조정 (1994.11) 1995:30% 1996:25% 1997:20% | - 방위산업제품 제조·가공· 수리용 부품품 및 원재료 감면율 축소 (1994.1) 1994:100% 1995: 90% 1996: 80% 1997: 70% - 원료품감면율의 조정 1995: 40% 1996: 30% 1997: 20% |
| 기능별 감면 | - 학술연구 용품감면 | - 과학계측 및 조정기기 관세감면(1984.1) - 심신장애자용품 관세 감면(1984.1) -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용품 관세감면 (1988.12) | - 기업부설 연구소 · 산업기술 연구소의 수입물품 관세감면 (1989.1) | - 고도기술 소프 트웨어 관세감 면(1991.1) -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1991.1) - 폐기물처리용 기계·기구 관세감면 (1991.1) | - 공장자동화기기 감면율의 축소조정 (1994.12) 1995: 40% 1996: 30% 1997: 20% |

2) 關稅上 支援制度에 있어서의 減免制度의 位置

우리나라는 1983년 이래 두 차례의 關稅引下 5個年豫示制 시행 결과 先進國 수준의 낮은 關稅率 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平均關稅率은 1983年 23.7%에서 1995年 7.9%로 크게 引下되었다. 1995年 현재 8%를 중심세율로 하여 전체적으로 均등관세율(Uniform Tariff)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HS 전세목 세율을 단순 평균한 平均關稅率도 7.9%에 이르러 미국·

EU의 關稅率이 5.4% 수준임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關稅率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게 아닌가 하는 일부 견해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다.

1995年度の 경우 輸入實績에 기초한 가중평균세율은 6.89%이나 全輸入物品 輸入額 대비 실제 세입 징수액을 나타내는 실효세율은 4.43%였다. 6.89% 중에서 關稅減免 0.45% 포인트(4,757억원), 關稅還給 1.17% 포인트(1조 2,197억원), 保稅 0.52% 포인트(5,399억원), 割當關稅 0.32% 포인트(3,345억원)가 각각 支援되었다.

關稅還給이나 保稅制度는 외국의 경우에도 많은 예가 있으나 割當關稅 支援, 關稅減免은 그 규모면에서나 빈도면에서 우리나라의 支援規模가 큰 편이다.

關稅減免制度는 여러 關稅支援手段 중에서 還給·保稅·割當關稅 다음으로 중요한 수단이다.

還給制度나 保稅制度는 輸出 모두를 對象으로 하거나 保稅工場·保稅販賣場 등 일반적인 특정성이 없이 支援되는 制度이나, 割當關稅 支援이나 關稅減免은 特定物品을 지정하여(割當關稅의 경우에는 수량까지 지정)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物品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낮은 關稅適用을 받도록 하고 있어 支援의 특정성 내지 選別性·政策的 彈力性이 큰 支援制度라고 할 수 있다. 1984年 이후의 減免制度와 여타 關稅上 支援制度의 推移 및 比重을 보면 <表 VI-3>과 같다. 1984~1995년 기간중 실효세율이 6.4%에서 4.43%로 줄어들었으나 關稅上 支援은 7.2%에서 2.46%로 보다 크게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原資材의 稅率引下幅이 크고 國產化가 크게 진전됨에 따라 還給支援과 保稅支援이 크게 줄었다.

특정성이 큰 支援制度인 割當支援과 減免을 보면 減免은 크게 축소되었으나 물가안정 및 물자수급 원활화, 1~2차 원유과동에 따른 원유 割當關稅適用 등의 요인에 따라 割當支援은 계속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바, 이는 전반적으로 關稅上 支援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表 VI-3〉 關稅上 支援制度 推移 및 比重

(單位: %)

| | 1984 | 1986 | 1988 | 1990 | 1992 | 1993 | 1994 | 1995 |
|-----------------------|------|------|------|------|------|------|------|------|
| -실효세율 ¹⁾ | 6.4 | 7.0 | 6.8 | 5.6 | 4.9 | 4.3 | 4.18 | 4.43 |
| -관세상 지원 | 7.2 | 8.3 | 7.8 | 4.2 | 3.6 | 3.1 | 2.64 | 2.46 |
| · 감면지원 | 1.0 | 1.1 | 1.0 | 0.6 | 0.6 | 0.5 | 0.47 | 0.45 |
| · 환급지원 | 4.0 | 4.2 | 4.2 | 2.0 | 1.5 | 1.4 | 1.2 | 1.17 |
| · 보세지원 | 2.2 | 1.8 | 1.3 | 0.8 | 0.8 | 0.6 | 0.57 | 0.52 |
| · 할당지원 | 0.1 | 0.3 | 0.8 | 0.8 | 0.7 | 0.6 | 0.39 | 0.32 |
| -가중평균세율 ²⁾ | 13.6 | 15.3 | 14.6 | 9.8 | 8.5 | 7.4 | 6.84 | 6.89 |

註: 1) 總 輸入金額(달러표시 輸入額을 課稅換率을 적용 환산한 금액)에 대한 각각의 징수액 · 支援額의 비율임.

2) 실효세율과 關稅上 支援의 合計가 加重平均稅率(trade weighted average tariff)임.

資料: 財政經濟院

3) 分野別 關稅減免 支援現況

減免制度를 성질별로 구분하면 기계류 등 기업의 설비도입 부담을 경감하는 企業減免制度和 비엔나協約 · 교토協約 등 國際協約 · 慣例에 따라 支援하는 協約 減免制度로 대별할 수가 있고 근거법률은 關稅法 외에도 租稅減免規制法, 外資導入法, SOFA協定 등이 있으나 關稅法 이외의 여타 법에 근거한 減免은 그 支援規模로 보아 미미하다.

1994年度の 減免實績을 구분해 보면 〈表 VI-4〉와 같다.

企業減免과 協約減免의 비중은 각각 50.5%와 49.5%로서 1980年 이후 企業減免 比重이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 企業減免 中에서도 보다 특정성이 큰 產業減免의 비중이 크게 줄고(1980: 100% → 1990: 86.2% → 1995: 28.9%) 工場自動化器機 · 環境 관련 物品 · 科學技術研究開發用品 등에 대한 기능별 減免 비중이 점차 높아짐(1980: 0% → 1990: 13.8% → 1995: 71.1%)을 알 수 있다.

外交官免稅 · 再輸入免稅, 再輸出免稅 등은 각종 協約에 근거하여 다

른 協約國과 동일하게 支援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이용되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보아 특정산업 중심의 경제개발 전략을 택하는 나라일수록 범위(지원종류)나 수준(減免 등 支援率)면에서 보다 강력한 財政·金融上 支援을 하고 있다.

〈表 VI-4〉 關稅減免額 推移 (I)

(單位: 億원, %)

| | 1980 | 1985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
| - 관세징수액(A) | 7,661 | 15,661 | 27,654 | 34,352 | 31,582 | 28,859 | 34,489 | 46,332 |
| - 관세감면액(B) | 1,853 | 2,982 | 2,776 | 3,711 | 3,898 | 3,538 | 3,872 | 4,757 |
| (B/A+B) | (19.5) | (16.0) | (9.1) | (9.7) | (11.0) | (10.9) | (10.1) | (9.3) |
| < 기업감면(C) | 1,210 | 1,543 | 1,284 | 2,136 | 2,269 | 1,868 | 2,178 | 2,401 |
| (C/B) | (65.3) | (51.7) | (46.3) | (57.6) | (58.2) | (52.8) | (56.3) | (50.5) |
| ○ 산업감면(D) | 1,210 | 1,500 | 1,107 | 1,391 | 1,136 | 867 | 758 | 693 |
| (D/C) | (100.0) | (97.2) | (86.2) | (65.1) | (50.1) | (46.4) | (34.8) | (28.9) |
| · 첨단·방위산업 | 1,184 | 1,162 | 912 | 1,089 | 888 | 618 | 613 | 585 |
| · 선박·항공기 | - | 190 | 178 | 212 | 159 | 151 | 52 | 52 |
| · 지하철·농기계 | 26 | 117 | 17 | 91 | 80 | 98 | 93 | 56 |
| ○ 기능감면(E) | 0 | 43 | 177 | 748 | 1,133 | 1,001 | 1,420 | 1,708 |
| (E/C) | (0) | (2.8) | (13.8) | (34.9) | (49.9) | (53.6) | (65.2) | (71.1) |
| · 공장자동화 | - | - | - | 444 | 906 | 779 | 1,074 | 1,348 |
| · 고도기술소프트웨어 | - | - | - | 30 | 23 | 29 | 27 | 10 |
| · 오염방지·폐기물처리 | - | - | 7 | 120 | 31 | 23 | 47 | 33 |
| · 산업재해예방 | - | - | - | 1 | 7 | 1 | - | - |
| · 기술연구·개발 | - | 43 | 170 | 150 | 167 | 169 | 272 | 317 |
| < 협약감면(F) | 643 | 1,439 | 1,492 | 1,575 | 1,629 | 1,670 | 1,694 | 2,356 |
| (F/B) | (34.7) | (48.3) | (63.7) | (42.4) | (41.8) | (47.2) | (43.7) | (49.5) |
| · 학술연구 | - | 81 | 190 | 250 | 198 | 210 | 164 | 179 |
| · 외교관·정부용품 등 | 236 | 412 | 560 | 664 | 705 | 689 | 826 | 1,127 |
| · 재수출·입 | 132 | 277 | 451 | 437 | 568 | 618 | 582 | 857 |
| · 차선·구호 등 | 134 | 47 | 93 | 129 | 118 | 83 | 100 | 147 |
| · SOFA 등 협약 | 100 | 420 | 124 | 23 | 22 | 18 | 21 | 27 |
| · 조감법 등 타법령 | 41 | 195 | 74 | 72 | 20 | 52 | 1 | 19 |

資料: 財政經濟院.

3. 關稅減免制度의 運營上 問題點

가. 産業間·品目間 均等關稅率 策定原則을 크게 沮害

우리나라는 1983年, 1988年 두 차례에 걸쳐 전례없는 대폭적인 關稅 政策의 改編을 단행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제품의 가공도에 따라 다른 關稅率을 적용하는 差等關稅率制度(Tariff Escalation System)에서 탈피하여 均等關稅率制度(Uniform Tariff System)로 이행한 것과 平均關稅率의 대폭적인 引下라고 할 수 있다. 均等關稅率制度로의 이행은 정부주도형의 보호와 支援政策에서 파생된 問題點을 조속한 시일 내에 불식하고 대내외의 競爭體制를 정착시켜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민간 주도형 經濟體制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1980年代의 産業정책방향에 따른 것이며 平均關稅率의 引下는 그 동안 국내산업 발전에 따른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방향에 따라 8% 중심세율이 책정되어 거의 대부분의 세율을 8%로 책정한 바 있으나 關稅減免制度를 통하여 현행 關稅率을 경감 내지 면세하게 되면 對産業 중립성을 견지하기 위해 8% 중심세율로 수렴한 기본방향을 품목별로 깨뜨리는 결과가 되어 결과적으로는 均等關稅率制度라는 기본정신을 크게 저해하게 된다고 하겠다. 産業정책의 기본방향이 對産業 중립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립된 이상 각 정책수단은 그러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運營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직도 일부 유지되고 있는 特定産業別 關稅減免制度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나. 關稅收入의 減少

그 동안 우리의 關稅減免制度를 關稅收入 減少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1980年代에는 減免의 폭이 컸으나 1990~1991년에는 그 폭을 크게 축소

하였다가 최근에는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1974年 1月 14日 緊急措置 등을 통하여 關稅減免幅이 크게 축소되었고 1975年 7月 1日 關稅還給制의 시행으로 輸出用原資材에 대한 免稅制度가 폐지됨으로써 減免稅額이 크게 감소되었으며 1983年 12月 31日 關稅法 개정으로 重要産業減免稅 幅을 대폭 축소하였고, 1989年 1月 1日 關稅法 개정시에 동법 제28조 ‘기술개발주도산업임시감세’와 제28조의 3 방위산업용품감면세 중 제1항 제1호의 ‘防衛産業製品의 製造·加工·受理·整備用 施設機械類 및 基礎設備品’ 減免을 삭제함으로써 減免稅의 幅이 또다시 대폭 축소되었으나 1991年 關稅法 개정시 尖端技術産業 및 防衛産業 育成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동법 제28조에 尖端技術産業 및 防衛産業減免條項을 신설하고 적용시한을 1993年 12月 31日까지로 연장하였으나 1993年 12月 31日 關稅法 改正으로 부칙 제7호로 1997年 12月 31日까지 연장되었다.

〈表 VI-5〉 關稅減免額 推移(Ⅱ)

(單位: 億圓, %)

| | 1980 | 1988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
| - 관세징수액(A) | 7,661 | 15,661 | 27,654 | 34,352 | 31,532 | 28,859 | 34,489 |
| - 관세감면액(B) | 1,853 | 2,982 | 2,776 | 3,711 | 3,898 | 3,538 | 3,872 |
| (B/A+B) | (19.5) | (16.0) | (9.1) | (9.7) | (11.0) | (10.9) | (10.1) |

資料: 財政經濟院.

다. 關稅免稅惠澤의 慢性化 및 消費者 歸着 與否 不透明

關稅는 間接稅이기 때문에 關稅賦課는 결국 일반 소비대중의 조세부담으로 전가된다. 따라서 關稅의 減免은 그 減免된 금액만큼 소비대중의 부담이 경감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關稅免稅의 特惠가 生産·流通 등의 中間流通段階에서 흡수되어 버리고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극히 미

미할 소지가 큰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 동안 關稅의 減免을 받기 위한 업계의 요청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었고 한번 특정부문에 대한 減免을 해주게 되면 일정기간 경과 후 減免을 줄이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따라서 한번 關稅減免產業으로 지정되면 오랫동안 關稅減免 혜택을 계속 받아온 것이 사실이었다. 이렇게 하여 특정부문에 대한 關稅減免을 해주다 보면 다른 한편으로 면세에 따른 歲入 不足分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세원을 찾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 減免을 받지 않게 되는 여타 분야의 세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세부담의 불공평성 또한 유발한다 하겠다.

라. 産業別 關稅減免의 特定性 問題, 大企業 集中 및 中小企業 疎外

産業減免의 경우 支援對象物品이나 업종을 지정하고 對象品目 및 규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정보력면에서나 투자계획 준비성이 앞서는 대기업 위주로 運營될 수밖에 없다는 면이 있다. 1990~1993年 4個年의 자료에 의하면 매년 減免規模가 큰 순위별로 놓아 보면 상위 10개 기업이 産業別 減免의 68~85%를 차지하고 있다. 비록 이들 기업이 다른 많은 업체에 비하여 當該年度에 施設投資 規模가 컸다고도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製造業 총수 8만여 개(5인 이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關稅減免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보여준다.

한편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시설투자시 사전에 투자규모·도입설비나아가 구체적인 규격을 알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정성이 있는 産業減免支援規模는 미미하게 된다.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의 「중소기업의 세계·세정이용 및 애로실태분석」(1992. 12)에 따르면 매출액이 50억원에 못미치는 기업의 95%가 내국세 등 支援制度에 대하여 정보도 없고 利用實績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關稅減免을 시행함에 있어 品目別 指定方式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별 품목별 輸入實績이나 減免支援額 및 당해품목의 산업적 특

성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품목지정 여부도 단순히 국산화 여부, 통관상 마찰 등 피상적인 기준에 의존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품목별 지정방식은 자연히 특정 신청기업의 도입계획중인 규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소기업 등 여타 기업이 類似物品을 수입하는 경우 減免規格과 달라 적용을 못받게 되는 排他性의 問題를 안고 있다 하겠다.

마. 關稅減免 根據法規의 散在

關稅의 減免은 關稅法에 기초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租稅減免規制法을 통하여 農機械, 都市鐵道用品 등의 減免을 하고 있고 外資導入法에 의거 外國人投資企業의 施設材 도입시 減免을 하고 있으며, 海底鑛業資源開發法에 의하여 석유·천연가스 등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海底鑛物 探查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하여 關稅를 면제하고 있고 아울러 각종 條約·協約에 의한 關稅減免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關稅減免이 關稅法 이외의 타 법령에서 광범위하게 運營된다면 關稅減免 支援이 방만하게 運營될 수 있다는 비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실무집행상에 복잡성을 초래한다 하겠다.

바. 分野別로 多岐化되어 있는 減免率 水準

關稅減免支援 대상분야별로 關稅減免率 수준을 살펴보면 분야별로 1996年 현재 25~100%까지 減免할 수 있으나, 어떤 분야는 그 減免率이 20%이고 또다른 분야는 100%인지 등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찾기 어려운 것이 문제라고 하겠다.

사. 關稅減免에 따른 事後管理 負擔 加重

일반적으로 政策的 필요에 따른 免稅에는 일정한 조건이 붙기 마련이

〈表 VI-6〉 分野別 關稅減免率 現況

| | 감 면 율 | | | | 감 면 율 | | |
|--------------------------|-------------------------|-------|-------|---|--------|-------|-------|
| | 1995년 | 1996년 | 1997년 | | 1995년 | 1996년 | 1997년 |
| 첨단기술산업 | 30% | 25% | 20% | 방산용시험분석 용품 | 80~90% | | |
| 산업기술연구· 개발용품 | 80% | | | 원료품감면세 | 40% | 30% | 20% |
| 환경오염방지 (또는 재활용) 용품 | 50% | | | 도시철도·공공 철도 또는 고속철도 건설용품 | 85% | | |
|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 예방용품 | 50% | | | 농업기계화 촉진용품·첨단 의료용기기, 태양 에너지이용기기 제조용 기자재 | 65% | | |
| 공장자동화기기 용품 | 40% | 30% | 20% | 해지광물탐사 장비 등 | 100% | | |
| 도시철도용품 | 85% | | | 외자도입법 | 100% | | |
| 방산용품제조용 부분품 및 원재료 | 1995~1997년 : 100~70% | | | | | | |

다. 예를 들면 일정한 용도에만 사용할 것, 특정한 업체에서만 사용할 것 등의 조건이 붙게 되면서 行政機關은 그 조건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確認節次는 그 對象이 커짐에 따라서 확인기관으로서도 커다란 부담이 되며, 免稅를 받는 者의 입장에서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事後管理 과정에서 조건 불이행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關稅犯으로 處罰 또는 關稅를 추징하게 되지만 이 또한 行政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친 關稅率 引下豫示計劃이 종결됨에 따라 關稅率이 낮아지고 면세율도 낮아져 실제감면에 따른 혜택(예를 들어 關稅 8% 품목에 대하여 35% 減免받는 경우 減免效果는 수입액대비 2.8% 불과)이 줄어들었음에도 事後管理의 강도(사후 관리기간이 3年으로 줄었다고 하더라도)는 종전과 같아 기업의 불만도 크고 규제완화 등 간소화 요구도 큰 실정이다.

事後管理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자료도 없다.

또한 事後管理를 감안하여 關稅減免이 주로 완제품 중심으로 運營되고 있는바, 이 경우 완제품의 실제 세부담은 낮고 당해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의 세부담은 높아 逆關稅 문제가 생긴다. 이에 따라 1993年 關稅法 개정시 핵심부분품에 대한 關稅減免制度를 도입한 바 있으나 핵심부분품의 정의나 범위면에서 정리가 쉽지 않은 것 같다.

아. 關稅法과 附加價值稅法上的 減免支援 方向 不一致

關稅法上에는 尖端技術產業用品과 工場自動化器機用品에 대하여는 모두 關稅減免을 해주고 있으나 附加價值稅法에 의한 輸入附加價值稅를 부과하는 경우에 尖端技術產業用品에 대하여서는 면세를 해주고 있으나 工場自動化器機用品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고 있다. 사실상 工場自動化器機用品이나 尖端技術產業用品은 비슷한 物品들로서 그 구분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受惠對象도 大企業·中小企業 불문하고 광범위하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尖端技術產業用品과 工場自動化器機用品에 대해 하나는 輸入附加價值稅를 면세하고 다른 하나는 減免對象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본다.

자. 減免對象品目 未確定 分野 常存 및 減免 必要性이 없는 機關이 法上 減免機關으로 계속 存續

租稅減免規制法上 첨단의료용기기는 減免率만 65%로 정해져 있고 對象業種 및 物品은 아직 지정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關稅法 제28조의 7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機械·電子技術 또는 情報處理技術을 응용한 工場自動化器機·器具·設備(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同 物品의 핵심부분품(완제품에 대한 減免으로 부품과의 逆關稅 발생을 이유로)에 대하여 減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핵심부분품에 대해

여는 아직 物品 지정고시가 되어 있지 않다.

또한 關稅法 제28조의 5(학술연구용품 減免稅)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표본, 참고품, 도서, 레코드,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기타 이와 유사한 物品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減免하도록 되어 있다.

동 규정에 의해, 예를 들면 關稅法 시행규칙 제17조(학술연구용품 減免對象 시설 등) 제2항에 의해 한국조세연구원 등 32개 기관, 동조 제4항에 따른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등과 동조 제6항에 의한 재단법인 韓國科學技術振興財團, 동조 제7항에 의한 재단법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관세감면 수혜기관이 총리령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 중 전혀 수입을 하지 않은 기관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이는 필요도 없이 수혜기관 관련 규정을 너무 복잡하게 하는 면이 있다.

4. 向後 關稅減免制度的 改善方向

가. 基本方向

우리나라의 關稅率이 先進國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산업에 대한 關稅減免이 축소는 되고 있으나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 關稅의 중립성이 저하되고 재정수입에도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WTO 補助金 및 相計關稅 協定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산업발전 수준에 걸맞는 關稅減免制度的 運營이 요망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특정산업에 대한 關稅減免은 계속 축소해 나가되 기능별 감면은 계속 확대 및 制度改善을 통해 關稅減免의 实效性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産業減免의 경우에는 關稅率이 계속 낮아지고 있으므로 個別支援制度別로

日沒法(Sun-Set Law) 체계로 전환하여 減免支援의 한시성이 확보되도록 하여 계획대로 1998년에는 폐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重點 減免縮小 分野

1) 尖端技術産業, 防衛産業 및 航空機(原料品 減免稅)에 대한 關稅支援 1998년부터 반드시 廢止 必要

1993年度 關稅法 改正으로 特定産業減免을 1994年度부터 減免率의 일정률을 줄여나가서 1997年을 마지막으로 關稅減免支援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産業減免의 대부분은 대기업이 수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특정성이 문제가 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減免率이 30% 이하가 될 때에는 關稅減免을 받고 事後管理 절차를 이행하는 것보다 이자율 등을 감안해 보면 오히려 分割納付를 받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특정산업에 대한 減免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尖端産業減免이 WTO 補助金 및 相計關稅 協定上 相計可能 補助金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WTO 및 이해관계국과의 협의과정에서 특정성이 없음을 잘 설명하여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工場自動化器機에 대한 關稅減免 縮小

工場自動化器機의 경우에는 支援對象의 특정성이 없으므로 WTO보조금 및 相計關稅 協定上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關稅減免支援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주요시설·기자재의 국산화 촉진 및 關稅의 對 産業中立性 原則 견지라는 차원에서 그 減免率을 1995年 40%, 1996年 30%, 1997年 20%로 점차 축소 조정하기로 한 원칙을 반드시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農業機械化 促進 用品의 減免範圍 縮小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하여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농업기계제조업체가 도입하는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에 대하여는 현재 減免率을 65%로 하여 關稅를 경감하고 있으나 농업기계제조업체나 예컨대 섬유기계제조업체간의 구분을 둘 수 없고 구분의 명확한 논리를 설정해 낼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同 減免率도 尖端技術産業 · 防衛産業 및 航空機(原料品 減免稅)에 대한 關稅支援 폐지처럼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 重點 減免擴大 分野

1) 科學 · 産業의 研究開發物品, 障礙人用品 등 社會福祉物品, 環境 關聯物品 등에 대한 關稅減免 擴大

WTO 補助金 · 相計關稅 協定에서도 許容補助金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들 분야에 대하여는 關稅歲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減免의 폭을 넓혀 모든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들 분야의 減免惠澤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減免受惠額의 年度別·목표치를 정하여 그 目標에 도달될 수 있도록 減免對象物品의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한 方法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1994年 기준으로 總關稅 減免額은 3,872억원인데 이 중 汚染防止 · 廢棄物處理, 産業災害豫防, 技術研究 · 開發, 學術研究用品에 대한 關稅減免額은 483억원으로 總減免額 대비 12.5%에 불과한 實績이므로 同 減免額을 1996年度에는 전체 減免額의 20%, 1997年度 30% 등의 方式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尖端醫療用器機 및 核心部分品에 대한 減免對象 指定告示 早速 마련 必要

尖端醫療用器機에 대한 關稅減免時 그 혜택이 병원으로 귀속되느냐 아니면 환자에게 귀속되느냐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방향을 조속히 決定하여 物品指定告示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關稅減免의 결과 완제품의 실제 關稅負擔은 낮고 당해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의 세부담은 높아 逆關稅 문제가 생겨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1993年 關稅法 개정시 핵심부분품에 대한 關稅減免制度를 도입한 바 있으므로 逆關稅 문제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금액기준으로 하든지 아니면 生産技術研究所 등의 자문을 받아 품목기준으로 하든지 하여 조속히 減免對象 품목고시를 하여야 할 것이다.

3) 中小企業 支援을 위한 關稅減免 運營 擴大方案 등 研究

中小企業만을 支援하는 경우에는 關稅減免으로 支援하느냐 또는 關稅率 引下로 支援하느냐의 두 가지 方法이 있을 수 있다.

먼저 關稅減免을 통해 中小企業用品만을 支援하는 것은 WTO 補助金·相計關稅 協定上 특정성이 다소 적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용 物品에 대해 엄격한 事後管理를 전제로 用途減免을 적용하는 方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해 볼 만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한편 關稅率 引下에 의한 中小企業에 대한 支援을 확대하기 위하여서는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物品의 關稅率을 引下하는 方法이 있을 수 있다. 이 방법은 수혜받는 중소기업의 수도 늘리고 支援效果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만이 주로 사용하는 物品을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 이렇게 선정할 경우에 그 對象의 범위가 그리 크지 않을 소지가 있다.

라. 效率的인 關稅減免支援을 위한 制度改善 繼續 推進

1) 分野別로 多岐化되어 있는 減免率 水準의 適正性 檢討

1996年 현재 최저 25%에서 100%까지 7단계로 減免率이 복잡하게 되어 있으므로 加급적 減免段階를 단순화하고 減免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왜 減免率이 30% 또는 40% 등인지에 대한 分명한 기준을 설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

2) 減免 必要性 없는 機關 調査·整理

減免 必要性이 없음에도 繼續 關稅法上 減免機關으로 유지되고 있는 일부 官廳의 實態를 全面調査하여 整理하여야 할 것이다.

3) 關稅와 附加價値稅制 減免制度間의 연계성 제고

1977年 輸入附加價値稅制 도입시 關稅減免 對象 및 輸入附加價値稅의 減免對象이 일치되어 있었으나 1980年代 들어와 양자가 점차 乖離되어 감으로써 減免支援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으므로 尖端技術產業用品(輸入附加價値稅 免稅)과 工場自動化器機用品(輸入附加價値稅 賦課)에 둘다 公히 輸入附加價値稅의 減免對象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4) WCO, UN 등 國際機構가 채택하고 있는 각종 協約의 가입범위 확대 및 國內協約 減免관련 법령의 투명성·객관성을 先進國 수준으로 제고

關稅分野에 관련된 協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자로 구성된 特別전문팀(Task Force)을 만들어 關稅協約 전체를 말끔하게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關稅分野에 국한된 協約을 우선하여 검토·추진하되 다수의 協約이 關稅減免 문제 이외에도 통관 관련 사안과 내국세·지방세 등 減免內容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한 범부처적인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또한 기가입되어 있는 각종 協約이 國內法令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 一線稅關에서 통관마찰의 원인이 되는 한편 국가적 이미지를 실추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들 관련 協約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國內法令에 반영하거나 필요시 별도의 규정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事後管理制度의 劃期的 改善

減免對象이 시설기계류이며 제품수명(Life cycle)이 점점 짧아지고 있고 낮은 關稅率, 낮은 減免率로 이행됨에 따라 최초 설비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비용이 실제 減免惠澤보다도 큰 경우가 많은 실정임으로 용도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하고 減免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가급적 최초 확인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¹⁾. 실제 減免惠澤이 수입가격대비 2~3% 이내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설치 확인외의 事後管理를 폐지하여야 하며 일부 不誠實業體의 경우와 減免惠澤이 큰 物品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事後管理하여 기업과 稅關 양쪽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하겠다. 또한 어떤 物品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누가 쓰더라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라면 구태여 事後管理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1) 姜汀鎬, 『關稅政策課題의 理解』, 韓國關稅研究所, 1994, pp. 118~119.

6) 關聯 法規의 關稅減免關聯 條項을 關稅法으로 一元化

關稅減免은 關稅法 이외에도 租稅減免規制法, 外資導入法, 海底鑛業 資源開發法, 各種 條約·協約의 關稅減免 관련 規정을 關稅法으로 일원 化하여 運營함으로써 關稅減免이 방만하게 運營되는 것도 방지하고 關稅減免 정책의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7) 關稅減免關聯 規定을 알기 쉽게 改正 必要

關稅減免關聯 規定이 너무나 복잡하여 담당실무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바, 관련 規정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정작업을 추진하거나 關稅減免關聯 안내책자를 만들어 關稅減免을 원하는 民願人에게 배포하는 것도 생각해 볼 必要가 있다고 본다.

8) 減免受惠對象者의 範圍 明確化

關稅法 제28조의 7의 規定에 의한 環境汚染防止物品 등의 減免稅 制度를 運營함에 있어서 同 施行規則 제21조 2(環境汚染防止物品 등의 關稅減免對象物品)의 規定을 살펴 보면 減免受惠 가능한 者로서 同 施行規則에서 減免對象物品으로 정한 物品 中 實需要者 및 施工者가 수입하는 것으로서 따로 총리령으로 定하는 것에 한한다고 受惠對象者를 명확히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기타 減免規定에서는 實需要者 및 施工者가 수입한다는 법상 근거규정이 없이 실제로는 實需要者 및 施工者에게 대해 減免惠澤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이에 대해 법상 근거규정을 두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Ⅶ. 現行 關稅還給制度의 運營上 問題點과 改善方向

1. 問題의 提起

WTO체제하에서도 輸出支援制度로서 허용되고 있는 關稅還給制度는 輸出用 原材料에 대한 關稅負擔을 제거함으로써 國產品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켜 輸出을 확대하고 原資材의 國產化를 촉진하며, 關稅行政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施行되고 있다. 同 制度는 關稅減免制度和 함께 關稅率 政策의 補助手段으로서 우리나라 輸出支援을 위한 關稅政策의 주요수단 가운데 하나로서 1975年 7月 1日 도입된 이후 20여년이 경과되었다.

그 동안 우리의 輸出은 1970년에 8억달러 수출에서 1995년에는 1,251억달러를 수출하여 156배가 늘어났고 輸出免許 件數도 1995年 기준으로 236만 2천건에 이르렀다. 200만건을 상회하는 수출에 대해 還給業務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新經濟 100일 계획과 그 이후 경제활성화-投資促進, 輸出增大-를 위하여 수립된 新經濟 5個年計劃 및 行政規制緩和 作業의 일환으로 關稅還給制度는 많은 制度 改善을 이루어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貿易業界에서는 原材料에 대한 關稅納付 後 還給金을 수령하는 데 약 100여일이 소요되고 있고 總 關稅還給額 대비 還給所費用은 약 4%(1995年 基準 總 關稅還給額은 1조 2,197억원)의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것이 우리 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關稅還給의 획기적 절차 개선 등에 대한 요구가 점증하고 있다.

따라서 現行 關稅還給制度의 現況과 運營上 問題點 등을 살펴보고 그러한 運營方向이 바람직한 것인지, 어떤 問題點이 있는지 재검토하여 바람직한 改善方向을 모색해 본다.

2. 關稅還給制度의 運營現況

가. 制度概要

1) 意義

關稅還給制度란 輸出物品 제조에 소요된 原材料의 수입시에 납부한 關稅 등을 수출 등에 제공한 때에 輸出者 등에게 되돌려 주는 制度이며 輸出支援의 한 방법으로 國內產業保護를 위하여 설치된 關稅障壁을 수출의 경우에는 제거하여 우리나라 輸出品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制度로서 國內產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수출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4年 12月 12日 법률 제2675호로 공포하여 施行(1975年 7월 1일) 하여 왔다.

關稅還給制度는 還給制度和 相計制度로 구분·운영하고 있으며 還給制度는 個別還給制度和 定額還給制度로 定額還給制度는 少額輸出 簡易 定額 還給制度,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制度로 구분·운영되고 있으며 個別還給制度는 개산 선환급 후 정산제도를 보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還給制度의 부수된 制度로서 平均稅額證明制度, 基礎原材料 納稅證明制度, 輸入申告 受理畢證 分割證明制度 등으로 運營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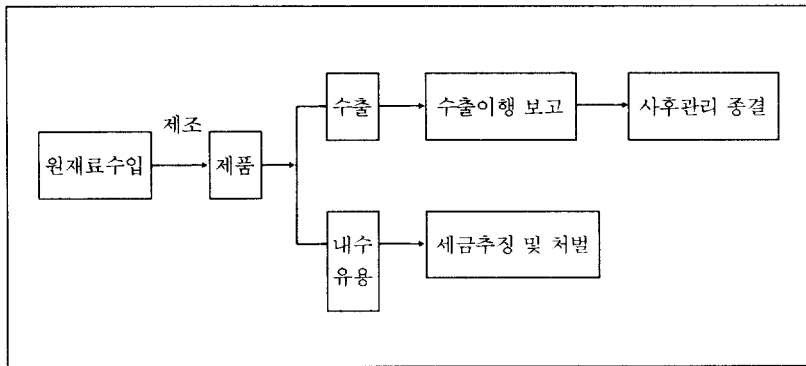
2) 沿革

그 동안 우리나라의 輸出物品에 대한 關稅負擔免除制度의 沿革을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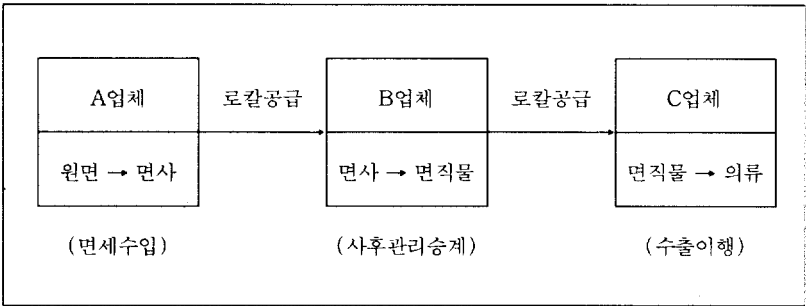
펴보면 1949年度부터 施行된 輸出用原材料에 대한 事前免稅制度는 1960年代 우리나라 경제발전 初期의 수출진흥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무역의 규모가 확대되어 100억달러를 초과함에 따라 實物事後管理가 불가능하게 되고 製鐵·製鋼·石油化學 등의 소재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함에 따라 輸出用原材料의 國産化를 위하여 1975年 7月 1日부터 關稅還給制度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運營해 오고 있는바, 그 세부연혁을 조금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輸出用原材料에 대한 事前免稅制度 (1949~1975년 6월 30일)

輸出用原材料에 대한 事前免稅制度는 原材料를 내수용으로 수입하면 과세하고 輸出用으로 수입하면 수출조건으로 關稅 등 제세를 면세하는 制度를 말한다. 關稅 등을 면세받은 原材料로 물품을 製造·加工하여 수출했는지를 稅關에서 사후관리하고 만약 수출 불이행시에는 면세된 제세를 추징조치하고 처벌하였는바, 同 制度는 經濟發展 初期段階에서 高加工原材料를 수입, 이를 단순조립 가공하여 직접수출하는 산업구조에 적합한 輸出支援 制度였다.



同 事前免稅制度의 問題點을 살펴보면 基礎原材料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여러 단계로 가공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 수출이행 확인을 위한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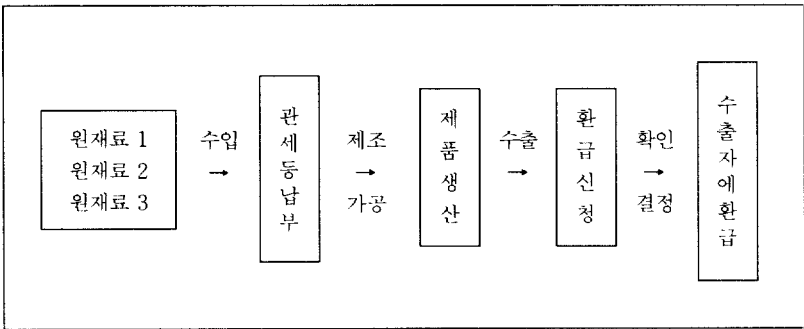


리절차가 복잡하여 行政需要가 증가하고 輸出業體의 人力負擔이 가중되었다.

또한 事前免稅制度는 原材料에 대한 關稅負擔이 없으므로 國產原材料의 개발이 저해되고 高加工 原材料의 수입을 유발하여 수출물량 증가에 비해 外화가득률이 저조한 점이 문제였고 輸出·內需를 병행하는 기업에서는 免稅輸入한 原材料를 內需用으로 전용하고 나중에 과세 수입한 原材料로 對應輸出義務를 이행하여 輸入原材料의 관리에 불합리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나) 關稅還給制度(1975년 7월 1일~現在)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關稅還給制度는 原材料를 수입할 때 일단 關稅 등을 징수하고 수입한 原材料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한 경우 그 原材料를 수입할 때 납부한 關稅 등을 還給하는 制度인바, 輸出品에 대한 關



稅負擔을 수출 후에 제거하여 수출가격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데 同 制度의 근본목적이 있다.

同 關稅還給制度는 事前免稅制度의 수출이행여부 사후관리에 따른 복잡성을 해소하고 原材料 수입시부터 還給金을 지급받을 때까지 關稅負擔을 주므로 原材料 輸入抑制 및 國產原材料 사용 촉진 효과는 있으나 關稅還給에 따른 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여 輸出 즉시 還給할 수 없어 업체의 資金負擔 및 輸出支援 效果가 減少되는 점이 短點으로 꼽히고 있다.

다) 關稅還給制度의 運營經過

1975年 7月 1日부터 關稅還給制度를 施行할 때 全輸出物品의 定額還給을 목표로 定額還給 중심(主制度: 定額還給, 補完制度: 個別還給)으로 還給制度를 運營하였으나 국가가 모든 輸出物品에 대한 定額還給率을 책정하기가 어렵고 평균개념이 고려된 定額還給金은 개별기업의 實際·納付稅額과 많은 차이가 있어 업체에서 個別還給을 선호(個別還給 이용실적 90% 수준)하므로 1985년부터 個別還給 중심으로 還給制度를 전환하였다. 1985년부터 個別還給 중심으로 還給制度를 運營하면서 個別還給의 복잡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副材料定額還給制度(主材料: 個別+副材料: 定額), 簡易定額還給制度, 概算額 先還給·後精算制度, 先支給後審査制度 및 平均稅額證明制度를 새로이 도입·施行하였다. 또한 1989年 11月 簡易定額還給制度는 중소기업 수출물품에만 적용하고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制度를 도입하면서 副材料定額還給制度를 폐지하였다. 相計制度는 1985년부터 施行하였으나 還給制度에 비해 관리가 복잡하여 1989년부터 계속 축소 운영중에 있다.

〈表 VII-1〉 經濟發展 段階別 輸出用 原材料에 대한 關稅負擔 免除方法

| | 산업구조 및 경제여건 | 관세부담 면제방법 | 비 고 |
|-----|---|---|-------|
| 1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조립가공형수출 산업구조 - 고가공원재료 수입 → 단순조립가공수출 ○ 높은 수준의 관세율 ○ 수입자유화율의 저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면세제도 - 장점: 관세부담 완전면제 -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절차 복잡 · 소요인력 및 부대비용 과중 | 저개발국 |
| 2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단계 가공수출 산업구조 - 일부 중간원재료, 일부 기초원재료 수입 → 완제품수출 ○ 상당한 수준의 관세율 ○ 수입자유화율의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환급제도 - 장점: 납부세액 전액환급 -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급절차 복잡 · 소요인력 및 부대비용 과중 ○ 정액환급제도 - 장점: 환급절차 간편 -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소환급시 수출저해 · 정액환급액 산출곤란 | 개발도상국 |
| 3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가공수출 산업구조(산업구조의 고도화) - 기초원재료 수입 → 고부가가치제품 수출 ○ 저수준의 관세율 - 기초원재료: 0~3% ○ 수입자유화 실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환급제도 폐지 ○ 단, 필요부문 한정적 운영 - 일부 관세환급 대상물품 지정 - 보세공장제도 활용 | 선진국 |

3) 現行 關稅還給制度의 分野別 內容

가) 定額還給制度

定額還給制度는 品目別(HS 10단위) 수출금액 단위당 還給額을 미리 책정하여 수출면장만 가지고 還給이 되도록 하는 제도로서 少額輸出簡易定額, 業體別·品目別定額 2가지 定額還給制度가 있다. 同 制度는 還給節次를 간소화함으로써 還給費用을 절감시킬 뿐만 아니라 수출을 하

고도 輸入申告受理畢證이 없거나 소요량 證明의 절차를 밟지 못하여 還給이 불가능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還給書類 및 審査가 간단하여 還給을 가능하게 하기도 하며 輸出用 原材料의 國産化를 촉진시키는 합리적인 制度이나 정확한 定額 還給率의 책정이 어렵기 때문에 過多, 過少還給의 발생으로 還給額이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制度的으로 個別還給額보다 20% 이상 過少還給時 비적용 승인을 받아 定額還給 적용의 배제가 가능토록 하여 업체의 불이익을 구제하도록 하였다.

① 少額輸出簡易定額還給

少額輸出簡易定額還給制度는 中小企業基本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中小企業者의 輸出物品에 대한 還給額 산출시에 총리령이 정하는 일정 기준금액(현재 연간 還給額 기준 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업체의 輸出物品別로 關稅廳長이 정하는 일정금액(少額輸出 簡易定額還給率表上的의 금액)을 輸出物品 제조에 소요된 原材料의 수입시 납부한 稅額으로 보고 還給額 등을 算出(平均還給額에 의거 수출금액 10달러 還給額 책정 고시)토록 한 制度이다.

- 定額還給率 = 前年度 輸出物品(HS 10단위)의 平均還給額을 基礎로 산출
- 還給額 = 수출금액(FOB \$) × 定額還給率
- 中小企業(年間 還給額 1억원 이하 업체)의 輸出品에만 적용

②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

수출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關稅廳長이 定額還給品目으로 선정한 輸出物品에 대하여 平均還給額(前年度 6月間의 平均還給額) 또는 原材料 平均 納付稅額(定額還給支給을 신청하는 달의 前前月로부터 소급하여 6월 간 구매한 原材料의 平均稅額)을 基礎로 關稅廳長이 業體別로 輸出物品 1단위당 還給額을 정하여 還給하는 완전 定額制度이다.

이때 定額還給額은 각 신청 業體別(제조장 기준)로 關稅率表上의 품명(HS 10 단위를 말하며 필요시 규격별로 세분할 수 있음)별로 산정하게 되므로 같은 輸出物品이라 하더라도 업체의 原材料 수입형태에 따라 還給額 기준은 상이하게 된다.

- 定額還給率: 6월간의 원재료 평균세액을 기초로 산출(소요량×평균세액)
- 還 給 額 = 수출수량×정액환급률<납부세액
- 定額還給率表에 의해 계산된 환급금을 환급할 때 수입면장을 제시받아 수출용 원재료(HS 10단위 기준)의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환급

나) 個別還給制度

個別還給制度는 수출 등에 공한 물품을 제조하는 데 소요된 原材料의 수입시 납부한 關稅 등의 稅額을 소요 原材料別로 확인, 합계하여 還給금을 산출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還給금은 실제 納付稅額과 일치하나 구비서류 및 還給金 算出·審査가 복잡하다. 同 制度는 概算先還給後 精算 制度를 보조적으로 運營하고 있으며 부수된 制度로서 平均稅額 證明 制度, 基礎原材料納稅證明 制度, 輸入申告畢證 分割證明 制度가 運營되고 있다.

이러한 個別還給은 輸出物品 제조시에 사용한 原材料別 納付稅額의 총액(전액)을 還給稅額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히 국산사용 촉진을 위하여 還給을 제한하는 原材料의 경우에는 수입시 납부한 稅額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제한하며(個別還給金 支給制限 制度) 輸出物品의 제조시에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산물에 해당하는 만큼 納付稅額에서 공제(부산물 공제제도)한 후 還給稅額을 산정 지급한다.

① 概算先還給後 精算 制度

還給이란 輸出物品 제조에 사용된 原材料를 수입할 때 납부한 제세를 환부하는 制度이므로 還給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이 된 후 輸出物品 제조

에 소요된 原材料의 종류와 수량 및 소요 原材料別 수입시 納付稅額 등을 관련 서류에 의거 證明하여야 한다.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업체 내의 업무량이나 原材料 구매업체에서의 관련 서류의 제시 지연 등으로 이러한 證明書類를 구비하는 데 長時間이 소요되어 그 동안에는 자금부담을 받게 된다.

先還給後 精算制度는 이러한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還給稅額의 證明없이 수출면장만으로 일정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3個月(기납증을 첨부하는 때에는 4月이며 延長承認을 받은 때에는 6月) 내에 정산하도록 하는 制度로서 업체의 임의선택 制度이다.

② 平均稅額證明制度

개별업체가 수입(또는 국내거래)하는 1개월분 총 輸出用 原材料를 HS 10 단위별로 단위당 平均 納稅額을 산출하여 平均稅額證明書を 발급하고 關稅還給時 輸入申告畢證 등 대신에 사용하는 制度로서 個別還給時의 복잡한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制度이다. 同 制度를 運營함에 있어 原材料에 따라서는 규격을 알아야만 還給額 決定의 基礎가 되는 소요량 산출이 가능한 것이 있는데 이러한 물품들은 규격 생략시 소요량 산출 내지는 還給額 결정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平均稅額 證明書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基礎原材料納稅證明書

基礎原材料納稅證明書란 關稅 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原材料를 사용하여 제조한 중간 原材料를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 거래되는 中間原材料에 포함된 稅額을 證明하는 서류로 中間原材料를 판매하는 자가 稅關長으로부터 발급을 받아 中間原材料를 購買한 者에게 주게 된다.

中間原材料를 販賣한 者가 基礎原材料 納稅證明書を 발급받기 위해서는 첫째, 거래물품과 거래사실을 證明하는 內國信用狀, 購買承認書 등과 둘째, 거래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된 原材料의 種類와 量을 證明하는 所要量證明書 셋째, 사용된 원자재를 수입할 때 납부한 세금을 證明하는 輸入申告畢證 등 넷째, 거래일자를 확인하기 위한 物品受領證明書

와 申請書가 필요하며 이는 原材料가 수입된 날 또는 전단계 原材料의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年 內에 거래가 되어야 한다.

④ 輸入申告畢證 分割證明書

輸入申告畢證 分割證明書는 關稅 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原材料를 수입한 상태대로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 거래되는 原材料에 포함된 稅額을 證明하는 서류로 原材料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者가 輸入申告畢證 分割證明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술한 基礎原材料納稅證明書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다만 輸入申告畢證 分割證明書는 원상태 거래이므로 소요량 證明書는 필요하지 않다.

基礎原材料納稅證明書는 국내에서 製造·加工한 경우에 발급되는 것이므로 각 거래단계마다 1年 內에 거래가 되면 되나 輸入申告畢證 分割證

<表 VII-2> 個別還給과 定額還給의 比較

| | 개 별 환 급 | 정 액 환 급 |
|---------|--|---|
| 1. 첨부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申告畢證(수출물품, 수량, 금액증명) · 소요량증명(당해 수출품에 투입되는 모든 재료의 투입수량을 증명(시·도 공진청)) · 수입申告畢證(투입원재료 중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의 수량·금액 증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申告畢證(정액고시 : 관세청장이 평균 소요량과 외산원재료 평균 투입비율을 산정하여 정하거나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기준하여 환급해 줄 금액을 미리 결정 고시) |
| 2. 장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납부세액의 환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 간편한 환급 |
| 3. 단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급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인력, 비용의 과다 · 국내 가공단계가 많아질수록 최종 수출자의 환급관련 서류 구비상 애로가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치 채택의 불가피성에 연유하는 과다, 과소 환급문제 발생의 필연성 - 충분한 환급 : 국고관리상의 문제가 감사기관의 주된 지적 대상 - 과소환급 : 업체의 반발과 수출 경쟁력의 저하 |
| 4. 활용도 | | |
| 구성비 | | |
| 1991년 | · 97.2%(1조 625억원) | · 2.8%(307억원) |
| 1994년 | · 93.6%(9,420억원) | · 6.4%(639억원) |

明書의 경우에는 製造·加工期間이 필요없는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가 되는 것이므로 여러 단계에 걸쳐 발급되는 경우에도 輸入日字로부터 최초의 製造 加工後 거래일자까지 1年 內이거나 1年 6月 內에 수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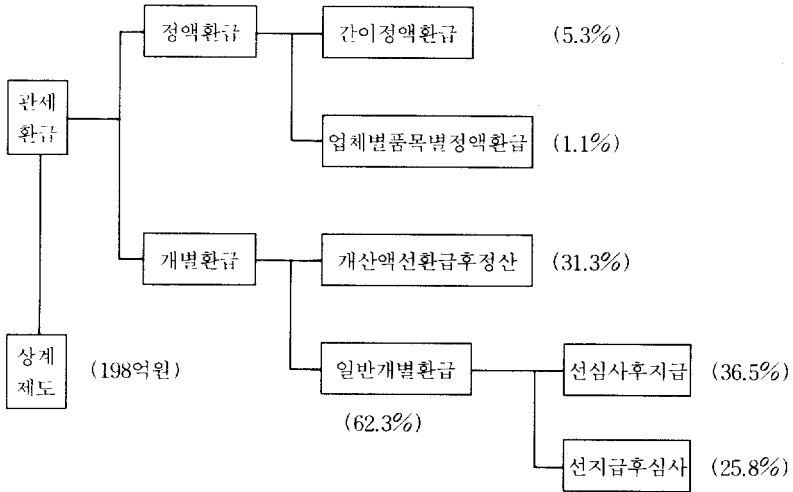
다) 相計制度

輸出用原材料를 수입할 때 1年 6月 內에 수출 등을 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제세(관세 등)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納稅告知猶豫 처리하고, 1年 6月 內에 수출 등에 공하게 되면 納稅告知猶豫받은 세금에 대하여 장부상으로 상계 처리하게 되므로 성실한 수출업체는 수입제세에 대한 자금부

〈表 Ⅶ-3〉 相計制度和 還給制度의 差異

| | 상 계 | 환 급 | 사 전 면 세 |
|-------------------|----------------------|--------------------------|-------------------|
| 1. 원재료수입시 제세징수 | 18개월 동안 납세 고지 유예 | 징수유예 제도는 있 으나 시행은 아니함 | 사전면세 |
| 2. 국내거래 | | | |
| · 조세부담 | 없 음 | 있 음 | 없 음 |
| · 주된거래 | 상계원재료 소요량 확인서 | 기초원재료 납세 증명서 | 양수도 승인서 |
| · 납세의무전가 | 제한적으로 인정 | 전가원칙 | 전가원칙 |
| · 세관개입도 | 약함(세관에서 직접 관리 안함) | 약함(세관에서 직접 관리 안함) | 강함(세관에서 직접관리함) |
| 3. 수출의무기간 | 1년 6월 | 1년 6월 (로컬거래별 1년) | 1년 |
| 4. 수입자의 의무 정도 | 강 함 | 약 함 | 약 함 |
| 5. 수출불이행시조치 | | | |
| · 납세의무 | 거래관련자 연대 | 없음(수입자 징수) | 최종양수자 |
| · 제재 | 책임 25% 가산세 | 없음 | 처벌병과 |
| 6. 행위완료자 | 수입자 | 수출자 | 수출자 |

[圖 VII - 1] 現行 關稅還給 制度의 利用現況



<表 VII - 4> 關稅 還給 實績

(單位 : 億원, %)

| | | 1993 | | 1994 | | |
|----------|----------------|----------|----------|--------|-------|-------|
| 정액 환급 | 간 이 정 액 환 급 | 264 | 2.7 | 533 | 5.3 | |
| | 업체별·품목별 정액 환급 | 129 | 1.3 | 106 | 1.1 | |
| | 소 계 | 393 | 4.0 | 639 | 6.4 | |
| 개별 환급 | 개산액 선회 환급 후 정산 | 2,925 | 30.2 | 3,143 | 31.3 | |
| | 일반 | 선심사 후 지급 | 3,795 | 39.3 | 3,681 | 36.5 |
| | | 개별 | 선지급 후 심사 | 2,564 | 26.5 | 2,596 |
| | 소 계 | 9,284 | 96.0 | 9,420 | 93.6 | |
| 전 체 | | 9,677 | 100 | 10,059 | 100 | |

資料 : 關稅廳.

답이 전혀 없는 制度이다. 相計制度는 이를 희망하는 업체가 희망하는 原材料에 대해서 이용하는 制度로서 關稅廳(還給課)에 相計業體 및 相計原材料 지정을 신청하면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그 申請時期는 정기적으로 매년 2月 1日부터 2月 末日까지이다. 제출서류는 相計業體指定申請書, 輸出入業許可證 寫本, 工場登錄證 寫本, 金融機關長이 확인한 輸出入實績, 覺書 등이다.

나. 關稅還給制度의 存置與否 關聯 論議

1) 論議의 背景

原材料에 대한 關稅率이 높은 수준에 있었던 1988년까지의 關稅還給額은 수출금액의 4~5%를 차지하였으나 1989년부터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4년에는 1~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앞으로 수출물량이 증

〈表 Ⅶ-5〉 輸出物量의 增加, 關稅率引下 및 年度別 還給現況

| |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
| 원자재 수입액(억달러) | | 211 | 224 | 224 | 247 | 257 | 279 | 324 |
| 관세율의 변 동 (%) | 비경쟁원재료 | 5 | 1~2 | 1 | 1 | 1 | 1 | 1 |
| | 경쟁 원재료 | 10 | 5 | 5 | 5 | 4 | 4 | 3 |
| | 1차 가공품 | 20 | 10 | 10 | 10 | 9 | 7 | 5 |
| | 평균 관세율 | 18.1 | 12.7 | 11.4 | 11.4 | 10.1 | 8.9 | 7.9 |
| 수 출 액 (억달러) | | 607 (459) | 624 (474) | 650 (494) | 719 (546) | 766 (580) | 822 (625) | 960 (726) |
| 환 급 액 (억원) | | 18,638 | 15,494 | 12,239 | 10,932 | 9,945 | 9,677 | 10,059 |
| 수출금액대비 환급비율(%) | | 5.94 | 4.81 | 3.46 | 2.5 | 2.1 | 1.83 | 1.76 |
| 수출 1달러 환급액(원) | 총 수출 | 30.7 | 24.8 | 18.83 | 15.21 | 12.98 | 11.77 | 10.48 |
| | 환급대상 수출 | 40.60 | 32.69 | 24.78 | 20.02 | 17.15 | 15.48 | 13.86 |

註: ()안은 保稅工場 輸出 등을 제외한 還給對象 수출임.
資料: 關稅廳.

가하면 原材料에 대한 關稅率은 계속 인하될 전망이고 原材料의 國산화도 높아지게 되면 수출금액에서 차지하는 還給額 비중은 더욱 감소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關稅率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내려가고 그 중 원자재 關稅率도 1~5% 수준에서 앞으로 더욱 하향조정될 것이므로 關稅還給을 받는 데 드는 所要經費 등을 감안해 보았을 때 이제 더 이상 關稅還給制度를 存置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다.

2) 對應方向 : 關稅還給制度의 存置 必要

가) WTO 協定上 許容되는 輸出支援制度

수입한 原材料가 제품이 되어 다시 수출된 경우 이는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製造期間 동안 국내에 있다가 결국 외국에서 소비되므로 국내 소비를 전제로 부과되는 關稅의 성격상 輸出物品에 대한 關稅는 조세이론상 還給됨이 타당하기 때문에 WTO 협정의 발효에 따라 수출금융 등 수출우대조치는 허용되지 않으나 수출상품이 부담한 關稅를 초과하지 않는 關稅還給은 輸出支援制度로 허용되고 있다.

나) 關稅還給廢止時 輸出企業에 막대한 打擊豫想

수출금액에서 차지하는 關稅還給額의 비중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우리나라 제조업의 제조원가 중 原材料 비율이 65%이고 平均關稅率이 7.9%이므로 輸出品에 대한 關稅負擔이 아직도 높은 편이며, 수출금액 대비 還給額 비율이 기업의 매출액 경상이익률을 상회하고 있어 關稅還給制度를 폐지할 경우 수출경쟁력 확보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또한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關稅還給을 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關稅還給額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關稅還給을 계속 원할 것이다.

〈表 VII-6〉 製品原價 中 原材料 費用(1993)

(單位: %)

| | 평 균 | 대 기업 | 중소기업 |
|----------------|-------|-------|-------|
| 제조업 전체 | 65.04 | 66.55 | 61.72 |
| 섬유제품 | 51.17 | 49.21 | 53.47 |
| 화합물 및 화학제품 | 66.56 | 66.14 | 68.12 |
| 제1차 금속 | 67.02 | 65.87 | 71.52 |
| 사무·계산 및 회계용 기계 | 70.93 | 67.32 | 78.56 |
|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 67.50 | 68.16 | 64.90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 71.49 | 74.36 | 61.68 |

資料: 關稅廳.

〈表 VII-7〉 製造業에 대한 關稅還給의 效果

(單位: %)

|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
| 수출금액대비 환급비율 | 5.94 | 4.81 | 3.46 | 2.5 | 2.1 | 1.83 | |
| 매출액 정상이익률 | 4.1 | 2.5 | 2.3 | 1.8 | 1.5 | 1.7 | 2.7 |

資料: 關稅廳.

3. 現行 關稅還給制度의 運營上 問題點과 改善方向

가. 現行 還給制度의 運營上 問題點

1) 還給申請 所要日數 過多 및 費用負擔 過重

個別還給은 수출기업이 매 수출 건별로 還給金을 계산하여 還給申請하면 稅關에서 審査 後에 還給金을 지급하는 방법인바, 수출기업 입장에서 보면 個別還給은 輸出品에 대한 精確한 還給金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還給計算 및 具備書類 過多 등으로 還給金을 지급받는 데 많은 時間이 소요된다.

즉, 기업마다 차이가 있지만 原材料에 대한 關稅 납부 후 還給金을 수령하는 데 약 100일이 소요되고 있고 總關稅 還給額 대비 還給所要費用은 4% 수준에 있으며 수출금액에서 차지하는 還給額 비율이 점차 감소할 것이므로 수출기업에서 關稅還給의 절차 개선 등에 대한 개선요구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 定額還給 擴大 困難

定額還給은 매년 平均還給額을 基礎로 국가가 還給金을 계산하여 고시하면 민간기업은 수출면장만 제시하여 還給받게 되므로 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쉽게 還給받을 수 있으나 국가가 모든 輸出物品에 대하여 還給金을 책정고시하기가 어렵고 平均 개념에 의해 還給金을 산출해야 하므로 기업 입장에서 실제 부담한 關稅보다 過多·過少還給받는 문제가 있어 이용실적이 저조하다. 또한 기업은 還給節次 간소화를 바라고 있으

〈表 Ⅶ-8〉 還給申請 所要日數(1995)

(單位: 日)

| | 관세 납부 → 환급금 수령 | | | 환급신청서 작성기간 | | 환급 → 환급금 신청 수령 |
|---------|----------------|------|-------|------------|-----|----------------|
| | 개 별 | 정 액 | 평 균 | 개 별 | 정 액 | |
| 평 균 | 102 | 86 | 98 | 8.3 | 3 | 5.8 |
| 경 공 업 | 103 | 86 | 96.5 | 8.3 | 3 | 5.5 |
| 중 공 업 | 100 | - | 100 | 8.2 | 3 | 6 |
| 대 기 업 | 113.2 | 82.2 | 106.6 | 7.4 | 1.6 | 5.4 |
| 중 소 기 업 | 90 | 89.8 | 90 | 9.2 | 4.4 | 6.2 |

資料: 關稅廳.

〈表 VII-9〉 輸出業體가 關稅還給을 받는 데 所要되는 費用負擔率(1995)

(單位: %)

| | 환급비용/ 매출액 (A) | 이자부담액/ 매출액 (B) | 총 부 담 륜 | |
|---------|------------------|-------------------|---------|-------------|
| | | | A + B | 총 부담액 / 환급액 |
| 평 균 | 0.02 | 0.15 | 0.17 | 3.35 |
| 정 공 업 | 0.02 | 0.08 | 0.10 | 3.96 |
| 중 공 업 | 0.01 | 0.19 | 0.20 | 3.47 |
| 대 기 업 | 0.02 | 0.17 | 0.19 | 3.53 |
| 중 소 기 업 | 0.01 | 0.11 | 0.12 | 3.66 |

資料: 關稅廳.

나 실제 納付稅額보다 過少還給받을 경우 절차는 복잡하지만 還給금이 정확한 個別還給금을 더 선호하고 있다. 아울러 WTO 출범에 따라 '수출상품에 물리적으로 통합된 原材料의 수입시 納付稅額을 초과하는 還給'은 GATT 相計關稅 協定上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실제 納付稅額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定額還給制度를 모든 輸出物品에 대해 적용할 경우 교역상대국과 통상 마찰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表 VII-10〉 年度別 定額還給比率

(單位: 億원, %)

| | 1991 | 1992 | 1993 | 1994 |
|--------------|--------|-------|-------|--------|
| 정 액 환 급(A) | 307 | 342 | 393 | 639 |
| 개 별 환 급(B) | 10,625 | 9,603 | 9,284 | 9,420 |
| 계(C) | 10,932 | 9,945 | 9,677 | 10,059 |
| 정액 환급비율(A/C) | 2.8 | 3.4 | 4.1 | 6.4 |

資料: 關稅廳.

3) 國家에 의한 所要量 管理體制 維持

所要量은 輸出物品을 제조·가공하는 데 소요된 原資材의 양을 말하는 것으로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손모량을 합한 개념(단위실량 + 손모량 = 소요량)이다. 現行 還給制度에서는 對外貿易法 제23조에서 정한 소요량을 적용하고 있는바, 계속 반복 수출되는 물품은 주무부처에서 기준소요량을 고시하고 이를 우선 적용하고 신규 輸出物品은 수출건별로 시·도지사 등이 단위소요량을 확인하여 還給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소요량 관리방식에 대하여 최근 對外開放 擴大에 따라 對外貿易法에서 규제하고 있는 수입제한품목의 수출이행 여부 事後管理制度와 輸出入承認制度가 1997年 以後 폐지(전략물자 등 일부품목 제외)될 것이고 稅關의 수출검사도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폐지될 전망이다. 따라서 위장수출, 수출품의 단위실량 책정 등 關稅還給上 주요요소에 대한 사전확인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도래했음에도 아직도 국가관리 소요량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민간자율화를 지향해가는 경제기조에 역행한다고 생각한다.

4) 稅關職員의 還給申請書 審査의 限界

現行 還給申請書의 사전 건별 심사 후 還給金 支給方法은 輸出物品에 대한 所要原材料가 많고 첨부서류가 많아서 업체가 제출한 還給申請書에 대한 還給要件 및 還給金 산출이 걱정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審査 所要期間이 많이 소요되고 이로 인해 還給金 지급의 遲延要因이 되고 있다. 그 동안 稅關의 사전심사 및 사후감사에서 적발한 過多還給額은 전체 還給額이 0.2% 수준(1994年 기준시 總還給額 1조 59억원 중 추정액은 약 20억원)으로 극히 미미하다.

나. 改善方向

1) 輸出用原資材 輸入時의 關稅 등에 대한 事後一括納付制度의 導入

現在 關稅廳과 財政經濟院이 검토하고 있는 制度改革(案)으로서 同制度의 내용은 業體別로 前年度 總還給額과 輸出展望 등을 고려하여 策정한 일정 한도액까지는 關稅納付없이 원자재를 수입토록 하고 수출 후에 還給申請하면 還給金を 지급하지 않고 원자재의 輸入稅額에 相當하고 還給金으로 相當되지 않는 差額關稅 등은 매분기 종료 익월말까지 신고납부토록 하는 制度이다. 同 制度가 입법화될 경우 輸出物品에 소요된 原材料에 대한 關稅納付 및 還給金 支給節次를 생략하여 輸出支援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制度라고 생각한다.

2) 企業의 自律管理 所要量 制度로 轉換

關稅廳과 財政經濟院은 앞서 설명한 소요량 관리에 대한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현재의 국가관리 소요량 체제에서 기업의 自律管理 소요량 체제로 전환하는 改編(案)을 성안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所要量 制度가 전환되면 從前 還給申請 前에 국가가 소요량을 確認, 證明하던 것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輸出物品에 대한 所要量을 책정하도록 하게 되는데 이때 기업은 자사의 소요량 관리방안을 稅關長에게 신고하고 輸出物品에 대한 所要量을 계산하여 還給에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이와 같이 소요량 관리를 업계자율에 맡기되 소요량 책정에 관련된 자료는 5年間 보관토록 하고 소요량을 과다책정한 기업은 환급 후에 선별하여 사후조사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자체 소요량 관리가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은 간단하게 定額 還給으로 還給하되 일부 個別還給 品目は 현행 기준소요량을 적용토록 하고 점차 자율책정 소요량에 의해 還給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바, 이 또한 입법화될 경우 소요량

制度 運營의 環境變化에 시의적절히 부응해 나가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료된다.

3) 關稅還給業務의 電算化 및 申告還給制度로의 轉換

現行 關稅還給制度는 그 還給節次의 복잡성 때문에 還給費用이 들기로 인해 결국 輸出品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수출업체가 작성한 還給申請 서류를 건별로 서류심사한 후 還給金을 지급하던 것을 電算으로 還給申請하고 이를 電算 審査後 還給金을 지급하도록 還給申請, 審査, 支給業務를 電算化해야 한다. 또한 還給金은 전산심사만으로 우선 지급하고 필요시 소요량 확인 등은 事後審査하는 申告還給制度로 전면 전환하고 還給業務의 전산화 등에 따라 業體別·品目別 定額還給制度, 先還給後精算制度 등 보완적인 기타 還給制度는 폐지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輸出 및 還給額이 많은 企業 및 定額還給 適用을 원하지 않는 中小企業은 업계 스스로 還給金을 산출하여 서류없이 전산으로 還給申請하면 關稅還給 전산시스템에서 수출내역 등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還給金을 지급하고 關稅還給에 적용할 소요량 내역, 輸出入申告畢證 등 還給金 산출의 근거서류는 5年間 企業에서 보관토록 하고 稅關에서 필요한 경우 사후에 종합심사하여 過多還給된 경우에는 加算稅 징수 등 不誠實申告 還給業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성실한 申告還給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4) 簡易定額還給의 擴大

中小企業이 쉽게 還給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現行 簡易定額還給制度를 改善하여 中小企業의 還給節次를 간소화하되 적용대상을 현행 年間 還給額 1억원 이하인 기준액을 引下調整(簡易定額還給 확대 실시)

〈表 Ⅶ-11〉 電算資料에 의한 還給實績

(單位: 億원)

| | 업체별 | 환 금 액 | | | 비 고 |
|-----------------|-----|-------------------|-------|---------------|-------------------|
| | | 총환금액 | 전산환금액 | 전산환금비율(%) | |
| 1989 (10~12) | 115 | 15,494 (3,619) | 1,110 | 7.2 (30.7) | |
| 1990 | 186 | 12,239 | 3,247 | 26.5 | |
| 1991 | 189 | 10,932 | 3,377 | 30.8 | |
| 1992 | 220 | 9,945 | 1,703 | 17.1 | 상계제도 이용의 경우 제외 |
| 1993 | 237 | 9,677 | 1,888 | 19.5 | |
| 1994 | 202 | 10,059 | 1,326 | 13.3 | |

資料: 장근호, 『關稅還給制度의 現況과 理論的 檢討』, 미발표자료, 韓國租稅研究院, 1996.3.

하고 對象品目 및 還給金 책정방법을 개선하여 中小企業의 수출을 지원
하고 還給申請 및 支給業務를 완전 전산화해 나가도록 해야 하겠다.

5) 原油 等 製造工程이 特殊한 輸出物品(연산품)은 별도의 定額還給 절 차 마련

아울러 한가지 原材料로 여러 가지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원유제품
등(제조공정이 특수한 輸出物品)은 각 제품별로 가치가 다르므로 현재
매수출 건별로 생산비율 및 가치비율을 감안한 還給金 計算 및 그 還給
節次가 복잡하고 원유제품은 내수판매비율이 높아서 還給에 이용할 수
있는 輸入申告畢證이 많아 업체에서 가장 還給額이 많은 輸入申告畢證
을 선택하여 還給申請하고 있어 過多還給의 소지가 있으므로 원유에 대
한 6月 以上の 平均稅額을 基礎로 각 제품의 가치비율을 감안, 수출내역
만 확인하여 還給토록 함으로써 還給節次를 간소화(별도의 定額還給 절
차 마련)하고 過多還給을 방지해 나가야 하겠다.

Ⅷ. 現行 關稅分割納付制度의 運營上 問題點과 改善方向

1. 問題의 提起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대외지향, 전방위 그리고 다각화의 3기조 - ‘대외지향’은 될 수 있으면 밖으로 나가서 기회를 발굴해 내자는 것이고, ‘전방위’는 이념의 벽을 뛰어 넘어 전방위의 대외정책을 쓰며, ‘다각화’는 우리가 그 동안 제품 위주였지만 이제는 우리 인력이 우수하므로 서비스쪽도 관심을 갖자는 기조 - 에 바탕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 동안 이러한 경제정책 기조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각종 支援政策에 힘입어 우리의 수출 및 제조업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지만 이제 WTO체제가 출범된 이 시점에서는 特定性(Specificity)이 있다고 판단되는 支援(補助金, 減免支援 등)은 더이상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하에서 수출 및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政府의 直接的 支援은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기업은 政府次元의 直接的 支援을 더이상 기대해서는 아니되고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증대나 업종전문화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민간부문의 자구노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政府의 直接支援이 크게 제약된다고 하더라도 特定性(Specificity)이 없는 支援은 WTO체제하에서도 유지가 가능할 것이므로 關稅側面에서 계속 支援이 가능한 수단은 關稅還給, 機能別 關稅減免, 彈力關稅制度, 關稅分割納付制度 등이 있으나 특히, 關稅分割納付制度는 特定性이 없는 좋은 制度임에도 불구하고 支援 규모면에 있어서, 또 그 업계의 활용면에 있어서 가장 뒤처지는 制度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關稅分割納付制度의 활용실적을 살펴보면 주로 대기업에 편중되어運營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극히 적다는 등의問題點을 안고 있다.

따라서 WTO체제 내에서 인정될 수 있는 制度의 하나인 分割納付制度를 보다 보완·발전시켜 우리의 수출 및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그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關稅分割納付制度의 運營 現況

가. 制度概要

1995年 12월에 改正된 關稅法에 의하면 輸入申告의 受理 後 15日 以內에 關稅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關稅의 부담을 일정한 期間 동안 분담시킴으로써 中小製造業體의 支援,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事業, 學校·訓練院, 研究所, 非營利法人의 公益事業, 社會福祉事業 등에 쓰이는 물품의 수입을 支援하기 위하여 5年을 초과하지 않는 期間을 정하여 關稅를 分割하여 납부토록 승인하는 制度가 分割納付制度이다(關稅法 제36조).

關稅의 分割納付는 輸入通關時 關稅의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생기는 자금부담의 집중을 일정한 期間 內에서 분산시키고 이의 결과로 오는 자금의 이자부담을 輕減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을 分割納付期間에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이익금으로 關稅를 납부할 수 있는 편익이 있다.

關稅의 分割納付는 施設機械類·基礎設備品·建設用材料 등의 수입에 따른 자금부담 압박을 완화하거나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關稅負擔 輕減을 그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政府事業 또는 公益事業을 支援하는 데에도 그 목적을 두고 있다. 政府

事業 또는 公益事業은 收益性이 없는 반면 豫算에 拘束을 받으므로 關稅를 分割 納付하도록 하고 있다.

나. 關稅分割納付 對象要件 · 物品, 申請節次 · 期間 및 方法

1) 關稅分割納付 對象要件 및 物品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稅關長은 關稅廳長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年이 초과하지 않는 期間을 정하여 關稅의 分割納付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關稅分割納付를 받을 수 있는 물품은 關稅法, 기타 關稅에 관한 法律 또는 條約에 의하여 關稅의 減免을 아니하여야 한다.

가) 施設機械類, 基礎設備品, 建設用材料 및 그 構造物과 工業用 裝備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아래에 제기하는 ①~③호의 물품) 이외의 물품

- ① 關稅率表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할 것
- ② 당해 關稅額이 500만원 이상일 것. 다만, 中小企業振興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일 것
- ③ 關稅法 제10조 내지 제16조(彈力關稅)의 적용을 받는 물품이 아닐 것

나)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다음과 같은 물품

- ①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수입하는 消防車
- ② 教育部에서 國際開發協會 및 國際復興開發銀行의 借款 및 기타 教育借款의 자금으로 수입하는 教育용 기자재
- ③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上水道擴張施設用 物品과 綜合下水處理場 및 동 구역안에 병설되는 衛生處理施設建設用 物品

- ④ 서울特別市에서 輸入하는 綜合運動競技場 建設用品
- ⑤ 政府에서 수입하는 警察用裝備와 그 裝備의 製造用 部分品 및 附屬品

다) 學校 또는 職業訓練院에서 수입하는 物品 및 非營利法人이 公益事業을 위하여 수입하는 物품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物品

- ① 여기에서 말하는 非營利法人이 公益事業을 위하여 수입하는 物品이란 韓國放送公社 또는 韓國教育開發院이 수입하는 放送用의 送·受信器機, 中繼器機, 調整器機 및 移動放送車

라) 醫療機關 등 총리령이 정하는 아래의 社會福祉機關 및 施設에서 수입하는 物품 중 총리령이 정하는 物품

- ① 국립 또는 공립의료기관(특수범인병원 및 공사형태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 ② 의료법인(비영리의료재단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기관
- ③ 의료취약지구에 설립된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하여 추천하는 기관
- ④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또는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하여 추천하는 시설 및 단체

마) 총리령이 정하는 아래의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비영리 법인인 연구기관, 기타 이와 유사한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중 총리령이 정하는 物품

- ①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임을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②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임을 과학기술

처장관이 인정하는 산업기술연구조합

- ③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생산기술연구원
- ④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민간생산 기술연구소임을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바) 총리령이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 ① 여기에서 중소제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체로 분류되는 업체임을 수입승인서 발급은행,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상공회의소의 장이 확인한 업체를 말하며, 分割納付對象物品은 法 別表 關稅率表 제 84류, 제 85류 및 제 90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 ② 아울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 ㉠ 關稅法 別表 關稅率表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할 것
 - ㉡ 당해 關稅額이 300만원 이상일 것
 - ㉢ 關稅法 제 10조 내지 제 16조의 적용을 받는 물품이 아닐 것
 - ㉣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시설재 및 기기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일 것

사) 총리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

〈表 Ⅷ-1〉 中小製造業體에 대한 關稅分割納付制度 比較

| | 현 | 행 | 중소제조업체 특례 신설 |
|-------------|---|---|---|
| 대상(법) | 전 산업체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한국표준 산업분류 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시행규칙) |
| 요건(시행규칙) | 대기업 · 관세율표상 부분품 제외 · 관세감면을 받지 않은 물품 · 탄력관세 적용을 받지 않은 물품 · 당해 관세액 500만원 이상 | | 중소기업 · 관세율표상 부분품 제외 · 관세감면을 받지 않은 물품 · 탄력관세 적용을 받지 않은 물품 · 당해 관세액 300만원 이상 ·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임을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 |
| 선정기준 | · 국산불가능 물품 · 비 소모성 물품 · 기계류, 전자기기류, 측정·검사기기류, 강관 등 290개 품목(총리령) | | · 국산불가능 물품 · 원재료 제외 · 소비재 제외 · 기계류, 전자기기류, 측정·검사기기류, 강관 등 290개 품목(총리령) · 관세율표 제84류(기계류), 제85류(전기기기류), 제90류(측정·검사기기류)에 해당하는 시설재 및 기기(시행규칙) |
| 분납기간(관세청고시) | · 3년 : 1억원 이하 · 4년 : 5억원 이하 · 5년 : 5억원 초과 | | · 3년 : 2천만원 이하 · 4년 : 5천만원 이하 · 5년 : 5천만원 초과 |
| 확인기관 | | | · 수입승인서 발급은행,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공회의소(시행규칙) |

註 : 現行 關稅分割納付 대상물품은 290개 품목으로 한정돼 있으나 1991년부터 중소기업체는 ① 消費財 ② 原材料 ③ 部分品이 아닌 施設材 및 機器의 수입시 分割納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2) 分割納付 申請節次 · 期間 및 方法

가) 分割納付 申請節次

分割納付 승인을 받고자 하는 者는 당해 物품의 輸入申告時 그 物품의 品名, 規格, 數量, 價格, 用途, 使用場所와 事業의 種類를 기재한 申請書를 稅關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分割納付 期間

分割納付는 수입시 關稅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함으로써 겪게 될 업체의 資金부담을 완화하여 줌으로써 設施투자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期間이 너무 장기적인 경우에는 불필요한 수입의 증가를 초래하고 지나치게 단기로 하는 경우에는 資金負擔緩和라는 分割納付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빚어낼 것이므로 그 期間을 사업의 성질에 따라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關稅廳長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物품의 종류에 따라 關稅廳長이 정한 分割納付 期間은 다음과 같다.

① 施設機械類

· 一般業體用品

| | | | |
|-----------|--------|--------|--------|
| 분할납부승인관세액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
| 분할납부기간 | 3년 | 4년 | 5년 |

· 中小製造業體用品

| | | | |
|-----------|---------|---------|---------|
| 분할납부승인관세액 | 2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 분할납부기간 | 3년 | 4년 | 5년 |

② 其他

政府輸入物品, 學校輸入物品, 醫療機關用品, 技術研究開發用品 및

實驗實習用品의 分割納付期間은 2年으로 하고 醫療脆弱地區의 醫療機關이 수입하는 醫療用具 및 施設機資材에 대한 分割納付期間은 5年으로 한다.

다) 分割納付 方法

分割納付方法은 물품에 따라 다음과 같이 納付方法을 달리한다.

- ① 施設機械類는 分割納付 期間을 6個月로 나누어 납부 회수를 정하고 分割納付를 승인한 關稅額을 分割納付 회수로 나누어 납부하되 1차분은 輸入申告 受理 後 15日 以內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政府輸入物品, 學校輸入物品 등은 關稅分割納付 승인액을 2등분하여 1次는 分割納付 承認日로부터 12月 內, 2次는 分割納付 승인일로부터 24月 內로 한다. 다만, 輸入申告書 건당 關稅分割納付 금액이 30만원 이하는 제외한다.
- ③ 醫療機關 등의 用品은 分割納付承認 關稅額을 4등분하여 6월마다 납부하되 1차분은 輸入申告의 受理 後 15日 以內에 納付하여야 한다.
- ④ 醫療脆弱地區의 醫療機關用品은 分割納付 승인한 關稅額을 10등분하여 6月마다 납부한다.

다. 關稅分割納付의 條件

關稅의 分割納付는 解除條件附 分割納付이며 그 解除條件은 첫째, 關稅의 分割納付期間中에 用途變更을 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처벌을 하는 것과 둘째, 分割納付期間 內에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용도 외에 사용할 者에게 讓渡한 때, 關稅를 指定된 期限까지 納付하지 아니한 때, 破産宣告를 받을 때 및 法人이 解散한 때에는 未納殘餘關稅를 전액 즉시 징수하는 것의 두 가지가 있다.

1) 處罰條件

關稅의 分割納付 證인을 얻은 物품은 分割納付 期間 內에 그 物품의 用途變更 또는 讓渡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者는 關稅法에 의하여 處罰을 받게 된다. 그러나 稅關長의 承認을 얻고 用途變更을 하거나 讓渡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關稅法 第36조 第2項 및 同法 第186조의 2, 第2項).

2) 未納殘餘關稅의 즉시 徵收要件

關稅를 分割納付하던 중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未納殘餘關稅의 전액을 즉시 징수한다.

① 關稅의 分割納付 證인을 얻은 物품을 分割納付期間 內에 용도 외에 사용한 者로부터, 용도 외에 사용할 者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讓渡人으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讓渡人이 行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讓渡人으로부터 關稅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納稅義務를 讓受人에게 확장하여 讓受人으로부터 징수한다(關稅法 第36조 第4項).

② 分割納付 期間中에 있는 關稅를 指定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즉 滯納關稅가 발생한 때. 그러나 關稅廳長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分割納付를 인정한다.

③ 關稅를 分割納付하는 者가 파산선고를 받을 때. 이때의 未納殘餘關稅는 破産管財人으로부터 징수한다(關稅法 第36조 第6項).

④ 關稅를 分割納付하는 法人이 解散한 때.

法人이 解散함으로써 未納殘餘關稅의 전액을 즉시 징수할 때에는 그 關稅의 納稅義務는 清算人에게 승계되므로 清算人으로부터 징수한다(關稅法 第36조 第7項).

라. 納稅義務者

關稅의 分割納付 승인을 받은 者가 關稅를 分割納付하던 중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一般民法 또는 商法の 규정에 의하여 그 租稅債務가 승계된다. 그러나 보다 納稅義務者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關稅法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다음에 설명한다.

1) 法人 合併時의 納稅義務者

關稅를 分割納付하고 있는 法人이 合併된 때에는 合併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의 尊屬法人에게 未納殘餘關稅의 納稅義務가 承繼되어 설립 또는 尊屬法人이 納稅義務者가 된다.

2) 破産宣告를 받은 때의 納稅義務者

關稅를 分割納付하고 있는 者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破産管財人에게 未納殘餘關稅의 納稅義務가 承繼된다. 이 경우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未納殘餘關稅의 전액을 즉시 破産管財人으로부터 징수한다.

3) 法人 解散時의 納稅義務者

關稅를 分割納付하고 있는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未納殘餘關稅의 清算人에게 승계된다. 이 경우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未納殘餘關稅의 전액을 즉시 清算人으로부터 징수한다.

4) 本人이 死亡한 때의 納稅義務者

關稅를 分割納付하고 있던 者가 사망한 때에는 未納殘餘關稅의 納稅義務는 相續人에게 承繼되어 相續人이 納稅義務者가 된다.

5) 讓渡人으로부터 關稅를 徵收할 수 없을 때의 納稅義務者

關稅를 分割納付하는 物품을 分割納付期間 內에 용도 외에 使用할 者에게 양도하면 未納殘餘關稅의 全額을 즉시 讓渡人으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讓渡人이 行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讓渡人으로부터 그 關稅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그 納稅義務는 讓受人에게 확장되어 讓受人이 納稅義務者가 된다.

6) 同一用途에 使用할 者에게 讓渡한 때의 納稅義務者

關稅를 分割納付하는 物품을 同一用途에 使用하는 者에게 讓渡한 때에는 未納殘餘關稅의 納稅義務는 讓受人에게 승계된 것으로 讓受人이 納稅義務者가 된다.

마. 事後管理

1) 目的

事後管理란 分割納付의 승인을 받고 輸入申告 受理된 物품에 대하여 당해 조건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稅關長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양도를 하지 않았는지 등을 稅關(타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에서 확인 또는 관리하는 것이다.

사후관리의 목적은 용도의 사용이나 稅關長의 승인없이 양도나 임대

함으로써 分割納付 받은 물품에 대하여 關稅 등을 추징코자 할 때 關稅 등을 적기에 확보함에 있다.

2) 事後管理 方法

稅關長은 關稅를 分割納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대한 分割納付를 하는 者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물품의 性質, 用途, 分割納付를 하는 者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서면보고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稅關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품확인을 할 수 있다.

3. 現行 關稅分割納付制度의 運營上 問題點과 改善方向

가. 關稅分割納付支援의 活用 關聯

1) 問題點

〈表 Ⅷ-2〉에서 보는 바와 같이 關稅分割納付 활용이 주로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고 중소기업체 활용이 상당히 저조하며 특히 關稅法 제36조 제1항 제2호(政府·地方自治團體 輸入物品)와 제7호(職業訓練院 用品)는 關稅分割納付 이용실적이 전혀 없고 동법 동조 제3호(學校 등 非營利法人 輸入用品), 제4호(醫療機關 輸入物品) 및 제5호(企業附設研究所 등 輸入用品)는 그 이용실적이 극히 미미한 실정에 있다.

2) 改善方向

中小製造業體의 關稅分割納付制度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이들 中小製造業體가 關稅法上 關稅分割納付制度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서

〈表 VIII-2〉 關稅分割納付 承認實績

(單位：千, 百萬元)

| 범 조항별 | 1990 | | | 1993 | | | 1995 | | |
|--------------------------------|-------|-----------|---------|------|---------|---------|-------|-----------|---------|
| | 건수 | 감정가격 | 분 납 승인액 | 건수 | 감정가격 | 분 납 승인액 | 건수 | 감정가격 | 분 납 승인액 |
| 36조 1항 1호 (일반수업자) | 3,468 | 1,090,255 | 144,407 | 360 | 478,837 | 22,103 | 686 | 1,242,636 | 61,355 |
| 36조 1항 2호 (정부·지방 자치단체) | | | | | | | | | |
| 36조 1항 3호 (학교 등 비영 리 법인) | 2 | 1,707 | 222 | 3 | 479 | 33 | 3 | 1,751 | 140 |
| 36조 1항 4호 (의료기관) | 1 | 14 | 2 | 108 | 3,396 | 298 | 44 | 2,317 | 186 |
| 36조 1항 5호 (기업부설 연구소 등) | | | | 1 | 170 | 15 | | | |
| 36조 1항 6호 (중소 제조 업체) | | | | 407 | 161,437 | 13,852 | 564 | 512,548 | 29,050 |
| 36조 1항 7호 (직업훈련원) | | | | | | | | | |
| 누 계 | 3,471 | 1,088,562 | 144,631 | 879 | 644,319 | 36,301 | 1,297 | 1,759,253 | 90,731 |

資料：財政經濟院.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關稅士 및 有關機關·協會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韓國銀行에서 발표한 1994年 기준 기업의 貸出平均金利가 11.4%임을 감안하면 關稅分割納付가 허용되면 동 금리만큼 이익을 보게 되므로 특히 이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關稅分割納付 이용실적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政府·地方自治團體用 物品 등의 기타 5개 關稅分割納付 대상 항목은 關稅減免도 할 수

있고 關稅分割納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가급적 기능별 減免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지난 4~5年 동안 分割納付 대상물품 지정 고시를 새롭게 한 적이 없음을 감안, 대상품목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한 후 1차적으로는 關稅分割納付 대상물품 지정 고시를 다시 할 때 關稅減免制度쪽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關稅減免 쪽으로 몰아서 지정 고시하도록 하고 2차적으로는 政府·地方自治團體用 物品 등의 기타 5개 關稅分割納付 대상을 關稅減免制度쪽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關稅法 改正을 추진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 關稅減免支援 縮小와 關稅分割納付 運營 關聯

1) 問題點

關稅上支援制度는 關稅減免支援, 還給支援, 保稅支援, 割當關稅支援, 分割納付支援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중 關稅減免은 1983年 이전에 채택하였던 產業別·業種別·品目別 減免이 關稅의 중립성을 저해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과잉투자 유발 등 問題點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주로 大企業이 혜택을 누리는 特定產業 減免을 1997年까지 연차적으로 폐지도록 하는 한편 보다 중립적이고 산업전반에 과급효과가 있는 기능별 減免制度로 전환해가고 있다.

이와 관련 關稅分割納付의 支援內容을 살펴보면 關稅法 제36조 제1항에 施設機械類·基礎設備品·建設用材料 및 그 構造物과 工業用 裝備에 대해 關稅分割納付 규정을 두고 있고 同法 同條 제6항에 보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中小製造業體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關稅分割納付를 허용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中小製造業體用品은 동 제6항에 의하여 혜택을 받을 것이고 제1항의 규정은 주로 대기업이 수혜를 받는 조항일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동안 低關稅率 체계로의 이행, 關稅의 對產業 중립성 제고 등을 위해 특정산업에

대한 關稅減免이 축소 조정중에 있다면 대기업이 주요 활용하고 있는 제 1항의 關稅分割納付制度의 유지는 關稅減免制度에 의한 支援 縮小와 그 政策的 均衡이 맞지 않다고 본다.

2) 改善方向

特定產業에 대한 關稅減免이 1997年까지 유지되다가 1998年 1月 1日 부터 모두 폐지되도록 되어 있으나 減免制度의 폐지가 가져오는 업계의 부담 때문에 통상산업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1998年 이후에도 특정산업에 대한 관세감면을 계속 유지하도록 요구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1995年 1月 1日부터 출범한 'WTO체제하에서는 더 이상 特定產業減免은 허용되기 곤란함을 감안해 볼 때 관련 부처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대안으로서 제1안은 關稅減免制度 폐지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다소라도 완화해주는 차원에서 일단 特定產業 關稅減免은 계획대로 폐지하되 關稅分割納付制度로 전환했다가 同 關稅分割納付 혜택을 서서히 줄여 나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제2안으로서는 特定產業關稅減免制度를 계획대로 폐지함은 물론 關稅法 제36조 제1항에 의해 대부분의 대기업이 적용받는 施設機械類·基礎設備品·建設用材料 및 그 構造物과 工業用 裝備에 대한 關稅分割納付 支援도 동시에 철폐하는 것이 關稅의 對產業 中立性 제고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이 중 어떤 案을 선택하느냐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라고 보여지나 여하튼 어떤 방향으로든 그 政策方向이 조만간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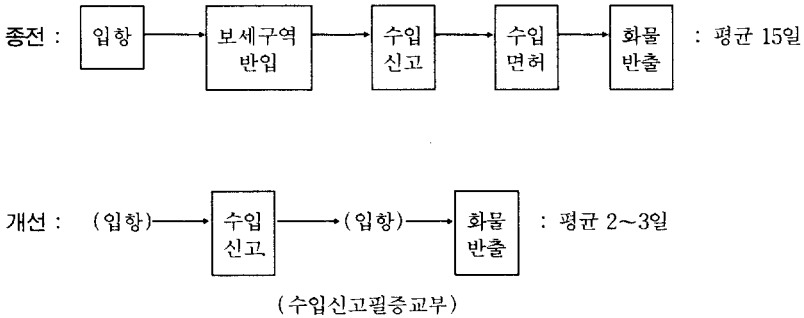
IX. 現行 保稅制度의 運營上 問題點과 改善方向

— 保稅運送 및 搬入申告制를 뒷받침하기 위한 制度改善方案을 中心으로 —

1. 問題의 提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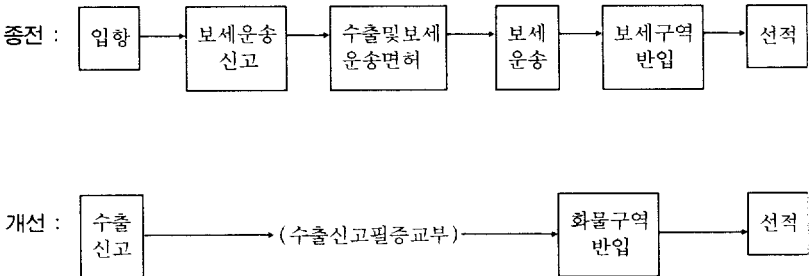
政府는 1993年 12月과 1994年 12月에 각각 關稅法을 改正하여 ①의 무적인 保稅區域藏置制度를 폐지하여 부두에서 직접 반출할 수 있게 하고, 특히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긴급한 물품의 경우 物品入港 前에도 輸入申告를 허용하고 특별한 사유(검사대상 등)가 없는 한 하역 즉시 물품을 반출할 수 있게 하였으며 ② 물품반출 후에 關稅를 납부하게 하여 輸入節次와 納稅節次를 분리함으로써 迅速通關 및 納稅者의 資金負擔을 완화하였고(다만, 關稅債權 확보를 위하여 신용도가 낮은 경우에는 반출 전에 담보를 제공함) ③ 保稅區域에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稅關長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반입하게 하고 ④ 輸出保稅運送制度를 폐지하여 자유롭게 운송하도록 하고 수입물품 保稅運送의 경우는 許可制에서 申告制로 전환하고 保稅運送 發送報告를 폐지하였고 ⑤ 入港 前 保稅運送申告를 허용하여 하역 즉시 부두에서 화주 창고 등 목적지로 직반출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종전의 규정에 의하면 輸入申告受理時까지 물품반출이 불가하던 것이 입항 즉시 반출가능 체제, 바꾸어 말하면 입항 즉시 생산현장 투입가능체제로 일대전환을 하여 물류흐름의 신속화를 도모하였는바, 이를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圖 IX - 1] 輸入通關 節次圖(I)



| 종 전 | 개 선 |
|--|--|
| <p>「수입신고 수리시까지 물품반출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생략물품, 검사완료물품 등이 물류 흐름이 중지된 상태로 통관심사, 관세납부, 수입면허 절차 완료 후 반출됨에 따라 공항, 항만, 보세구역 등의 화물적체 ◦ 수입면허시까지 물품반출 보류로 적기 생산지원 곤란 및 추가재고 부담 | <p>「입항 즉시 반출가능체제 → 입항 즉시 생산현장 투입가능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항 즉시 반출로 물류흐름의 신속화 ◦ 공 · 항만 보세구역의 화물적체 해소 ◦ 수입화물 입항 즉시 생산현장 투입가능으로 원활한 생산지원 및 재고부담 경감가능 |

[圖 IX - 2] 輸出通關 節次圖(II)



이상과 같은 制度改善에 부응하여 제기되는 정책과제는 어떻게 하면 1995年의 保稅制度에 관한 關稅法 改正의 취지를 살려 물류의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출입화물 물류 관리절차는 이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처리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현재 保稅區域의 貨物 搬出入 業務 및 在庫管理를 自動으로 처리하는 保稅區域 전산망 구축이 일부 되었으나 화물흐름의 전과정의 EDI화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아 물류 흐름의 지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同 EDI가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출입화물이 늘어남에 따라 (1995年 기준 4억 2천만톤) 保稅區域 시설이 부족하나 계속 늘릴 수는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保稅區域 설치 수요를 줄여 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制度改善이 요구된다.

아울러 우리나라 總輸出額의 약 23%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保稅工場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支援措置를 강구하여 保稅工場을 통한 수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하거나 保稅藏置場 등의 集團化·大型化 등을 통해 效率性을 제고토록 하여 그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保稅區域別로 특성에 맞는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現行 우리나라 保稅制度의 분야별 運營現況과 問題點을 살펴보고 그 改善方向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우리나라 保稅制度의 運營現況

保稅制度는 保稅區域制度和 保稅運送制度로 구분할 수 있고 保稅區域은 保稅貨物을 搬入, 藏置, 加工, 製造, 建設, 展示, 販賣하는 區域을 말하며 保稅運送은 保稅貨物을 保稅狀態에서 移動(運送)하는 것을 말한다.

아래에서 保稅區域制度和 保稅運送制度로 나누어 兩 制度別 概要를 설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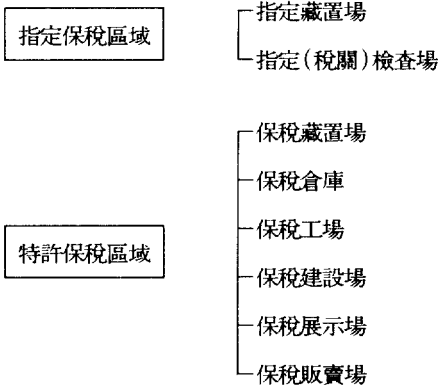
가. 保稅區域制度

1) 意義

保稅區域은 輸入申告가 受理되기 前의 상태로 外國物품을 藏置, 檢査, 製造加工, 展示, 建設 및 販賣 등을 할 수 있고, 또 通關節次를 이행하려는 내국物품을 藏置할 수 있는 場所 또는 區域으로 稅關長이 指定하거나 特許한 區域을 말한다.

2) 種類

保稅狀態가 動的이나 靜的이나를 구별의 기준으로 하면 保稅運送制度는 前者에 속하고 保稅區域制度는 後者에 속함은 일반적 분류방법이다. 現行 關稅法上에 규정된 바에 따라 保稅區域制度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가) 指定藏置場

指定藏置場은 通關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藏置하기 위한 장소로서 물품의 藏置期間은 6月의 범위 내에서 關稅廳長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關稅廳告示로 부산항 및 인천항 부두 내의 指定藏置場은 그 藏置期間을 2個月, 기타 指定藏置場은 3個月로 하고 신청에 의하여 2個月의 범위 내에서 延長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指定藏置場에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보관책임은 원칙적으로 貨主에게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貨主에 같음하여 보관책임을 지는 管理人을 指定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현재 關友會와 埠頭管理協會가 그 代理人으로 指定되어 있다.

나) 指定(稅關)檢査場

指定(稅關)檢査場은 通關을 하고자 하는 物品을 檢査하기 위한 장소이다.

稅關長은 檢査를 받을 物品의 전부 또는 일부를 稅關檢査場에 반입하여 檢査할 수 있고, 檢査對象物品의 採取, 運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貨主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다) 保稅藏置場

保稅藏置場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物品을 藏置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保稅藏置場의 特許期間은 10年 以內로 하되 당해 保稅區域의 設營特許 申請人이 신청한 期間으로 한다.

物品의 藏置期間은 6個月의 범위 내에서 關稅廳 고시로 부산항 및 인천항 부두 내의 指定藏置場은 그 藏置期間을 2個月, 기타 指定藏置場은 3個月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指定藏置場의 경우와 같다. 藏置期間 경과한 내국물품과 輸入申告 受理된 物品은 10日 以內에 반출하여야 한다.

保稅藏置場은 그 성격에 따라 營業用과 自家用藏置場으로 구분되고 있다. 保稅藏置場과 유사한 것으로 指定藏置場과 保稅倉庫가 있다. 保稅藏置場과 指定藏置場은 똑같으나 단지 保稅藏置場은 영리를 목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고 指定藏置場은 稅關長이 指定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保稅藏置場과 保稅倉庫는 關稅法上에는 많은 차이가 있으나 실질적

인 運營面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일반적으로 保稅倉庫라고 하는 것은 關稅法上의 保稅藏置場을 말한다.

라) 保稅倉庫

保稅倉庫는 外國物품을 藏置하기 위한 구역을 말하며, 特許期間은 10年內로 하되 당해 保稅區域의 設營特許 申請人이 申稱하는 期間으로 한다.

물품의 藏置期間은 外國物품에 대하여는 2年이며 이기간은 1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稅關長의 허가를 받아 藏置된 內國物품의 藏置期間은 6個月이다.

保稅倉庫도 그 성격에 따라 營業用과 自家用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保稅倉庫는 保稅藏置場과는 달리 外國物품을 장기 藏置하기 위한 保稅區域으로서 중계무역의 발전을 위하여 마련된 保稅區域이며, 保稅藏置場과는 구분할 실익은 없으나 關稅法에서 구분되고 있다.

마) 保稅工場

保稅工場은 加工貿易의 진흥을 위하여 外國物品 또는 內國物品과 外國物品을 原料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이다.

그런데 國內수입을 위한 물품을 제조·가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內需用 保稅工場의 업종은 총리령에서 정하는 것에 한하도록 제한되고 있다.

保稅工場의 特許期間은 10年의 범위 내에서 해당 保稅工場의 設營特許 申請期間으로 하되 1年의 범위 내에서 延長받을 수 있다.

바) 保稅展示場

保稅展示場은 국제적인 博覽會, 展覽會, 見本市場 등의 運營을 위하여 外國物품을 藏置하거나 展示 또는 使用을 하는 區域이다.

博覽會의 규모가 대형화되면 다수 참가국이 會場 내에 자국전시관을 건설하고 전시, 기타 행사를 하는 데 필요한 업무용품, 건축자재까지 자

국에서 반입하게 되며, 이러한 대규모 博覽會의 원활한 運營을 위하여 博覽會場을 保稅區域으로 하여 전시용뿐만 아니라 博覽會 運營을 위한 외국 물품을 보세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1967년에 새로 마련된 制度이다.

保稅展示場의 特許期間은 그 博覽會의 會期, 外國物品의 搬入·搬出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期間을 감안하여 정하게 되어 있으나 이 경우 特許期間의 갱신은 인정할 규정이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保稅展示場에 반입되는 물품의 藏置期間은 設營特許期間과 같다.

사) 保稅建設場

保稅建設場은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될 외국물품인 機械類設備品 또는 工事用 裝備를 藏置 사용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하는 區域이다.

保稅建設場의 特許期間은 당해 건설공사의 期間을 고려하여 稅關長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 그 期間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여기에 반입되는 물품의 藏置期間은 特許期間과 같다.

保稅建設場에 반입한 외국물품은 건설공사에 제공하기 전에 당해 물품에 대한 신고를 하여 稅關公務員의 검사를 받고 사용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保稅建設場에 건설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동하고자 할 때에는 輸入申告가 受理된 후에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아) 保稅販賣場

保稅販賣場은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關稅法 제27조(외교관 면세)의 규정에 의하여 關稅의 免除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販賣하는 區域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國際空港 또는 부두 내 出國場에서 출국하는 旅行者에게 판매하는 免稅賣店과 外交官 전용 면세매점이 이에 해당한다.

保稅販賣場의 特許期間은 10年 以內로 하되 당해 保稅區域의 設營特許 申請인이 신청한 期間으로 하고 있으며 물품의 藏置期間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表 IX - 1〉 保稅區域의 種類

| | | 의의(설치목적) | 세 관 규 제 개 요 | 특허기간 | 장치기간 |
|--------------------------------------|-------------------|---|---|--|--|
| 지정 보세 구역 | 지정 장치장 |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일시장치를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 | 1. 화주가 보관책임 부담 2. 화물관리인을 지정 할 수 있음 3. 반입의국물품에 대 한 반출 명령 가능 | | 6월 내 (2~3월) |
| | 지정 (세관) 검사장 |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검사를 위 한 장소로서 세관 장이 지정하는 구역 | 1. 검사받을 물품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반 입하게 할 수 있음 2. 일정요건을 갖춘 자 가 반입물품을 채취 또는 운반함 | | |
| 특 허 지 정 보 세 구 역 | 보세 장치장 |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장치를 위 한 구역으로서 세 관장의 특허를 받 은 곳 | 1. 허가를 받아 내국물 품 장치 가능 2. 6월 이상 계속 내국 물품만을 장치하려 면 승인요 3. 장치기간 경과 내국 물품은 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 반출 4. 수입신고 수리 물품 10일 이내 반출 | 10년 내 (신청한 기간) 갱신가 6월 내의 의제기간 | 6월 내 (2~3월) |
| | 보세창고 | 외국물품 또는 내 · 외국물품을 원 재료로 하여 제조 · 가공작업을 하 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곳 | 1. 허가를 받고 통관을 하지 아니하는 내국 물품 장치 가능 2. 내국물품의 장치기 간은 반입한 날로부터 6개월 | 10년 내 (신청한 기간) 갱신가 6월 내의 의제기간 | 외국물품은 2년(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 비축 물품 은 비축기 간 |
| | 보세공장 | 외국물품 또는 내 · 외국물품을 원 재료로 하여 제조 · 가공작업을 하 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곳 | 1. 허가범위 내에서 내 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작업할 수 있음 2. 내수용 보세공장의 업종은 총리령으로 정함 3. 반입물품은 사용신 고를 하고 사용하여 야 함 | 10년 내 (신청한 기간) 6월 내의 의제기간 | 1년(1년 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 관세청장 지정물품 은 2년 |

〈表 IX-1〉의 계속

| | 의의(설치목적) | 세 관 규 제 개 요 | 특허기간 | 장치기간 | |
|--------------------------------------|----------|--|--|--|----------|
| 특 허 지 정 보 세 구 역 | 보세공장 | 4. 사용신고한 물품은 검사할 수 있음 5. 사용신고한 외국물품에 대한 수입허가 승인 등의 증명요함 6. 원재료 손모음이 인정되고 감시상 곤란이 없는 경우 특별보세공장으로 지정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음 7. 공장의 작업을 허가함 8. 외국물품과 혼용한 내국물품은 원칙으로 외국물품으로 봄(제품과세) 9. 내수용보세공장에서 사용한 외국물품에 대하여 신청에 의하여 원료과세 가능함 10. 보수작업은 승인을 받아야 함 | | | |
| | 보세 전시장 | 박람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의 장치·전시·사용하는 구역으로서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곳 | 1. 외국물품 반입시 신고를 요함 2. 특허소멸 후의 외국물품은 설명인이 타보세구역에 반출하여야 함 | 박람회기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함 6월 내의 의제기간 | 특허기간과 동일 |
| | 보세 건설장 | 산업시설에 소요될 외국물품인 기계류·공사용 장비를 설치·사용하여 건설공사를 하는 구역으로서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곳 | 1. 외국물품반입은 신고를 요함 2. 반입외국물품은 사용전에 수입신고를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함 3. 반입물품의 장치장소를 제한하거나 사용상황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음 | 당해 건설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함. 연장가능함 6월 내의 의제기간 | 특허기간과 동일 |

〈表 IX-1〉의 계속

| | | 의의(설치목적) | 세 관 규 제 개 요 | 특허기간 | 장치기간 |
|--------------------------------------|-----------|---|--|---|------|
| 특 허 지 정 보 세 구 역 | 보세 건설장 | | 4. 건설된 시설은 수입 신고 수리전에 가동 못함 5. 역외작업을 허가함 | | |
| | 보세 판매장 | 외국으로 반출하 거나 외교관 면세 권자가 사용할 물 품을 판매하는 구 역으로서 세관장 의 특허를 받은 곳 | 1. 세관장은 판매할 물 품의 종류·수량· 장치장소 등을 제한 할 수 있음 | 10년내 (신청한 기간) 갱신가 6월 내의 의제기간 | |

〈表 IX-2〉 保稅區域 現況(1996年 1月 4日 現在)

(單位: 건, 평방미터)

| | | 특허(허가)또는 지정 건 수 | 면 적 | 비 고 |
|----------------------------|---------------------------------|--------------------|------------|--------|
| 지 정 보 세 구 역 | 지 정 장 치 장 | 54 | 1,697,813 | |
| | 컨 테 이 너 장 치 장 | 5 | 787,264 | |
| | 세 관 검 사 장 | 17 | 132,325 | |
| | 소 계 | 76 | 2,617,402 | |
| 보 세 장 치 장 | 영 업 용 | 270 | 4,930,808 | |
| | 자 가 용 | 588 | 3,087,605 | |
| | 컨 테 이 너 장 치 장 | 55 | 66,690,047 | |
| | 소 계 | 913 | 74,708,460 | |
| 보 세 창 고 | 영 업 용 | 32 | 89,681 | |
| | 자 가 용 | 21 | 359,004 | |
| | 소 계 | 53 | 448,685 | |
| 보 세 공 장 | 수 출 용 | 130 | 8,080,199 | |
| | 내 수 용 | 19 | 71,799 | |
| | 검 용 | 35 | 989,672 | |
| | 소 계 | 184 | 9,141,670 | |
| 보 세 전 시 장 | | 61 | 395,043 | |
| 보 세 건 설 장 | | 92 | 11,189,784 | |
| 보 세 판 매 장 | 해·공 항 매 점 | 7 | 4,048 | |
| | 시 내 매 점 | 14 | 33,685 | |
| | 외 교 관 매 점 | 1 | 472 | |
| | 소 계 | 22 | 38,205 | |
| 총 계 | | 1,401 | 98,539,249 | |

資料: 關稅廳.

3) 他所藏置制度

가) 意義

輸入申告가 受理되기 전의 外國物品이나 輸出申告가 受理된 輸出物品은 船積 前에 원칙적으로 保稅區域에 藏置하여야 하는 것이나 貨物の 성질상 保稅區域에 반입할 수 없거나 또는 保稅區域에 반입하는 것이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保稅區域 아닌 장소에 藏置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他所藏置 對象物品

- ① 巨大·重量 기타 사유로서 保稅區域에 藏置하기 곤란한 物品
- ② 輸出申告가 受理된 貨物 중 保稅區域 반입이 곤란하다고 稅關長이 인정하는 物品
- ③ 災害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서 임시 藏置할 物品
- ④ 檢疫物品
- ⑤ 押收物品
- ⑥ 郵便物品

다) 他所藏置의 許可

巨大·重量 기타 사유로 保稅區域에 藏置하기 곤란한 貨物에 대하여 他所藏置를 하려면 他所藏置하고자 하는 貨物의 品名, 數量, 價格, 船舶名, 入港年月日, 船荷證券番號 등을 기재한 申請書에 輸入許可書 寫本, 藏置場所의 圖面 및 略圖, 기타 稅關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稅關長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自律管理 保稅區域制度

가) 意義

保稅貨物管理란 外國貨物이 입항되면서부터 輸入申告가 受理되기까

〈表 IX-3〉 年度別 他所藏置 許可現況

(單位: 건, 千톤, %)

| | 수 출 | | 수 입 | | 계 | | 총 보세화물량 대비 | |
|-----------------|---------|--------|--------|--------|---------|---------|------------|-----|
|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A) | 중량(B) (반입) | A/B |
| 1987 | 411,470 | 17,713 | 22,827 | 33,487 | 434,297 | 51,200 | 169,886 | 30 |
| 1988 | 512,404 | 20,994 | 25,649 | 35,324 | 538,053 | 56,318 | 193,235 | 29 |
| 1989 | 583,734 | 20,982 | 35,486 | 47,253 | 619,220 | 68,235 | 200,219 | 29 |
| 1990 | 658,180 | 19,163 | 36,809 | 41,226 | 694,989 | 60,389 | 189,824 | 32 |
| 1991 | 717,357 | 21,280 | 52,238 | 64,298 | 769,595 | 85,578 | 251,505 | 34 |
| 1992 | 819,349 | 34,730 | 73,387 | 80,179 | 892,736 | 114,909 | 271,404 | 42 |
| 1993 | 843,028 | 44,888 | 67,160 | 78,318 | 910,188 | 123,206 | 302,822 | 41 |
| 1994 | - | - | 72,028 | 83,070 | 72,028 | 83,070 | 235,561 | 35 |
| 1995 (1~12월) | - | - | 86,633 | 92,110 | 86,633 | 92,110 | 370,750 | 35 |

註: 1. 1994年 1月 1日 以後 輸出他所許可制度 廢止.

2. 1994年 以後 重量(B)은 輸入物量임.

資料: 關稅廳.

지의 전과정에 대한 監視·監督을 의미한다.

그러나 수출입 물동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의 감시·감독은 그만큼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부족한 稅關人力으로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表 IX-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經濟의 開放化 및 自律化 추세에 따라 稅關의 감시기능은 일대전환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업계의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민간부문의 관리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업계를 支援함과 동시에 稅關의 감시기능도 강화하기 위하여 自律管理 保稅區域制度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表 IX-4〉 關稅行政 與件變化(Ⅱ)

| | | 1970년(A) | 1980년 | 1990년 | 1995년(B) | 비율(B/A) |
|------------------|-----|----------|-----------|-----------|-----------|---------|
| 수출입 (억 달러) | 수출 | 8 | 175 | 650 | 1,251 | 156배 |
| | 수입 | 20 | 223 | 698 | 1,351 | 68배 |
| 보세화물 (백만톤) | 수출 | 3 | 20 | 26 | 68 | 23배 |
| | 수입 | 13 | 74 | 163 | 284 | 22배 |
| 입(출)항선박 (척·편) | 선박 | 9,095 | 18,650 | 28,912 | 42,853 | 5배 |
| | 항공기 | 4,408 | 11,382 | 27,926 | 46,304 | 11배 |
| 여행자 (명) | 입국 | 332,350 | 1,235,512 | 4,153,326 | 6,756,824 | 20배 |
| | 출국 | 351,449 | 1,298,132 | 4,208,371 | 6,793,773 | 19배 |
| 관세세수(억원) | | 507 | 7,780 | 27,654 | 46,332 | 91배 |
| 관세청인원(명) | | 1,890 | 3,467 | 4,427 | 4,472 | 2.4배 |

資料：關稅廳.

나) 自律管理保稅區域 對象

自律管理保稅區域의 대상이 되는 保稅區域은 특히 또는 指定保稅區域 모두 포함되나 그 중 保稅貨物의 管理체계가 확립되어 貨物관리 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보세사를 채용하여 藏置하는 물품의 管理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保稅貨物의 반출입 건수가 적어 自律管理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保稅區域, 保稅展示場 등 保稅區域의 運營 및 特許期間이 한시적이어서 自律管理가 부적당한 保稅區域, 稅關公務員이 파견되어 상주하고 있는 保稅區域으로서 稅關長이 自律管理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保稅區域, 기타 貴金屬類 保稅工場 등 감시 단속상 問題點이 있다고 稅關長이 인정하는 保稅區域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表 IX-5〉 自律管理 保稅區域 現況(1995年 12月 31日 現在)

(單位: 개, 명, %)

| | 총 보세구역 | 제 외 보세구역 | 대상보세 구역 (A) | 지 정 (B) | 근무중인 보세사수 | B/A 지정률 |
|-----------|-----------|-------------|----------------|------------|--------------|---------|
| 지정보세장치장 | 58 | 28 | 30 | 20 | 36 | 66 |
| 세 관 검 사 장 | 17 | 17 | 0 | 0 | 0 | |
| 영업용보세장치장 | 304 | 0 | 304 | 288 | 373 | 91 |
| 자가용보세장치장 | 577 | 49 | 528 | 430 | 579 | 81 |
| 영업용보세창고 | 31 | 1 | 30 | 21 | 17 | 70 |
| 자가용 보세창고 | 21 | 9 | 12 | 7 | 26 | 58 |
| 보 세 공 장 | 183 | 50 | 128 | 93 | 116 | 73 |
| 보 세 전 시 장 | 42 | 42 | 0 | 0 | 0 | |
| 보 세 건 설 장 | 70 | 70 | 0 | 0 | 0 | |
| 보 세 판 매 장 | 23 | 2 | 21 | 12 | 25 | 57 |
| 합 계 | 1,326 | 268 | 1,058 | 871 | 1,172 | 83 |

資料: 關稅廳.

나. 保稅運送制度

1) 意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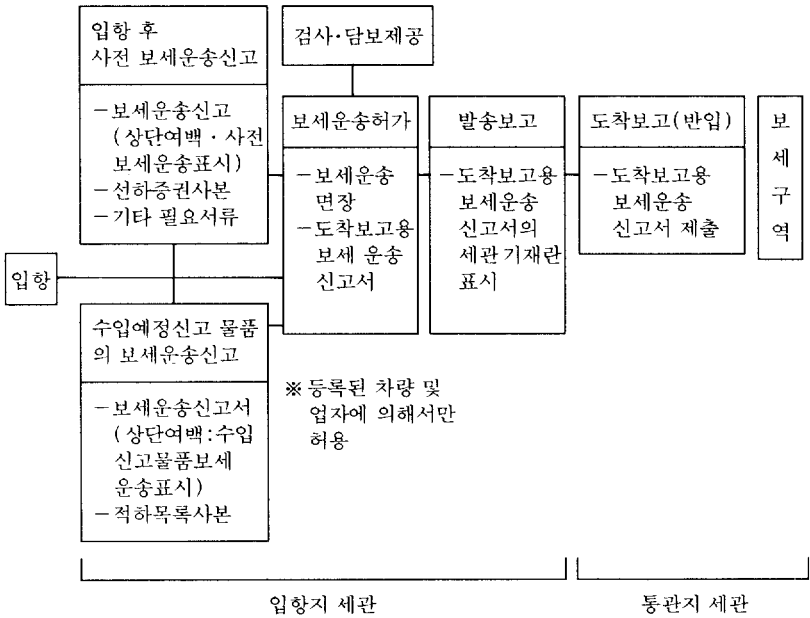
保稅運送이란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운송하는 制度를 말한다. 외국물품을 보세상태로 국내에서 운송하기 때문에 保稅運送이라고 말한다. 保稅運送은 원칙적으로 開港·保稅區域 他所藏置場·稅關關署·通關驛·通關場 상호간에 외국물품을 발송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2) 保稅運送節次

1995年 12月 關稅法 改正에 따라 1996年 7月 1日 이전에는 다음에

서 보는 바와 같이 保稅區域에 물품을 반입하는 때에는 稅關長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保稅運送의 경우에는 稅關長의 면허를 받고 發送報告·到着報告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절차가 복잡하였고 이로 인해 通關遲延이 초래되었다.

[圖 IX-3] 從前制度：入港 後 保稅運送申告·免許制 → 制約的인 保稅運送制度



그러나 1996年 7月 1日 이후부터는 앞서 제1절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保稅區域 搬入 및 運送節次를 간소화하여 물류를 촉진하고 輸入業者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획기적인 새로운 保稅運送制度가 施行되고 있다.

① 保稅區域 곧 保稅倉庫(關稅法 제96조 제1항), 保稅工場(關稅法 제98조 2의 제1항), 保稅展示場(關稅法 제108조), 保稅建設場(關稅法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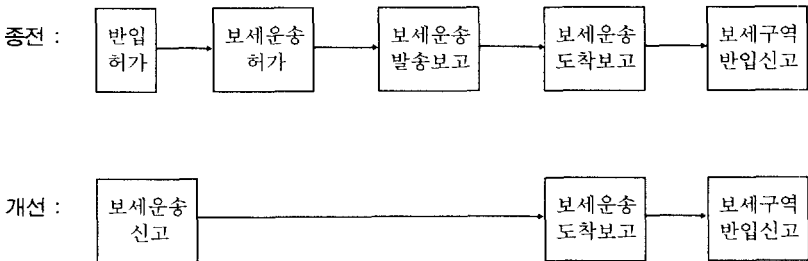
113조 제1항) 반입시의 保稅運送時(關稅法 제128 제2항) 稅關長에게 신고만으로 반입 및 운송이 가능(許可制에서 申告制로 轉換)하도록 하였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保稅運送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최소한의 保稅貨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첫째, 保稅運送하고자 하는 물품이 운송도중 운송수단을 변경하거나 경유지를 거쳐야 하는 경우 둘째, 關稅法 제5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保稅運送業者의 운송수단 외에 운송수단으로 保稅運送하고자 하는 경우 셋째, 기타 關稅廳長이 불법수출입의 방지 또는 안보 위해 물품적발 등의 사유로 保稅運送 제한 물품으로 指定하는 물품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② 保稅運送時 從前의 發送報告(關稅法 제129조 제1항) 및 到着報告中 保稅運送 到着報告만 하면 되도록 하고 있다.

③ 輸出申告制 도입과 함께 수출신고가 受理된 물품에 대한 保稅運送을 생략하여 자유롭게 자가운송으로 保稅區域에 搬入·船積하도록 하여 輸出者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다만, 關稅廳長이 정하는 경우에는 保稅運送이 필요하도록 규정하여 최소한의 감시 단속상의 필요에 부응하도록 하였다.

④ 入港 前 保稅運送 신고를 허용하여 하역 즉시 부두에서 화주창고 등 목적지로 직반출이 가능하게 하였다.

[圖 IX-4] 保稅區域 搬入 및 保稅運送 節次 比較



3) 保稅運送이 制限되는 物品 및 保稅運送 節次를 要하지 않는 物品

가) 保稅運送이 制限되는 物品

稅關長은 ① 關稅法 제146조에 규정된 輸出入物品 ② 檢疫法·植物 防疫法·家畜傳染豫防法의 規定에 依하여 防疫을 要하는 物품으로 所定의 조치를 필하지 않는 物품 ③ 危險物品(다만, 도착지가 소방법 등에 依하여 위험품을 취급할 수 있고 운송차량 및 운송방법 등이 위험물품 취급요령에 依하여 합당한 경우는 예외) ④ 일부 비금속 ⑤ 귀석·반 귀석·귀금속·시계·한약재·의약품·향료(원료 포함) 등과 같이 부 피가 적고 고가인 物품으로서 稅關監視團束上 保稅運送이 적합하지 못 하다고 稅關長이 인정하는 物품 ⑥ 화주 미확정 物품 ⑦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무환물품 및 이산화물 등에 해당하는 物품에 대하여는 保稅運送을 제한할 수 있다.

나) 保稅運送의 節次를 要하지 않는 物品

- ① 郵便法에 의거 遞信官署의 管理하에 운송하는 郵便物品
- ② 檢疫法 등에 의거 檢疫官署의 管理하에 指定場所로 운송되는 檢疫 對象物品
- ③ 國家機關에 依하여 운송되는 押收物品에 대하여는 保稅運送을 요 하지 않는다.

4) 保稅運送業者의 登錄

가) 登錄業務 委託

關稅廳長은 關稅法 제58조의 2 제1항의 規定에 의한 保稅運送業者의 등 록에 관한 업무를 社團法人 韓國關稅協會에 위탁한다. 위탁을 받은 關稅 協會長은 위탁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 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關稅廳長의 事前承認을 받도록 했다.

나) 保稅運送業者의 登錄要件

保稅運送業者의 登錄要件은 다음과 같다.

- ① 自動車運輸事業法에 의한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免許를 받거나 登錄을 필한 者, 해운법에 의한 海上貨物運送事業免許, 航空法에 의한 航空運送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 철도소운송업법에 의한 컨테이너운송이 가능한 철도소운송업의 登錄을 필한 者
- ② 法 제79조 각호의 1(設營人의 缺格事由)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③ 保稅運送業者의 期間更新 : 保稅運送業者의 登錄期間은 2年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登錄을 更新하고자 하는 者는 期間滿了 30日 前에 保稅運送業者登錄 更新申請書에 保稅運送實績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保稅運送業者의 種類

保稅運送業者는 一般保稅運送業者와 簡易保稅運送業者로 구분되고 이러한 簡易保稅運送業者는 特別簡易保稅運送業者, 海上貨物簡易保稅運送業者, 鐵道貨物簡易保稅運送業者, 航空貨物簡易保稅運送業者(無換貨物簡易運送業者 포함)로 구분되는데 이 중 特別簡易保稅運送業者는 一般保稅運送業者 中에서 재력과 신용이 있는 者를 指定하여 이 指定運送人이 關稅法上의 책임을 지는 保稅運送의 申告人이 될 때에는 簡易한

〈表 IX-6〉 保稅運送業者 現況

| 종 | 류 | 보세운송업자의 수(개) |
|---|-----------------------|--------------|
| 일 | 반 보 세 운 송 업 자 | 61 |
| 특 | 별 간 이 보 세 운 송 업 자 | 77 |
| 해 | 상 화 물 간 이 보 세 운 송 업 자 | 1 |
| 철 | 도 화 물 간 이 보 세 운 송 업 자 | 18 |
| 항 | 공 화 물 간 이 보 세 운 송 업 자 | 12 |
| 소 | 계 | 169 |

註 : 1996년 3월 20일 현재 기준임.

資料 : 關稅廳.

절차에 의한 保稅運送을 허용하는 경우를 特別簡易保稅運送業者라고 한다.

다. 外國物品의 賣却

1) 意義

保稅區域은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保稅區域에 藏置된 외국물품은 국내로 인취하거나 외국으로 반출되어야 하는바, 이들 외국물품들을 적기에 반출시킴으로써 保稅區域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稅關區域에 藏置된 외국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반입일로부터 一定期間(藏置期間) 내에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물품을 稅關長이 貨主를 대신하여 賣却하여 반출시키는 동시에 그 賣却貨金에서 그 물품의 關稅를 징수한다. 다만, 살아있는 動·植物, 腐敗할 우려가 있는 것 또는 倉庫나 다른 外國物品을 害할 우려가 있는 것과 賣却時效가 경과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藏置期間에 불구하고 賣却할 수 있다.

2) 賣却處分の 對象

藏置期間이 경과하여도 반출하지 아니하는 외국물품은 모두 稅關長이 賣却하는 것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賣却處分을 保留할 수 있다.

- ① 법 위반으로 심리중인 경우
- ②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 쟁송이 계류중인 경우
- ③ 貨主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통관 지연의 귀책사유가 국가에 있는 경우
- ④ 외자에 의한 도입물자로서 외자관계법의 규정에 의거 財政經濟院 長官의 賣却處分 보류요청이 있는 경우
- ⑤ 貨主의 賣却處分 보류요청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 통보를 요청받

은 稅關長은 수출입 또는 반송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2月の 범위 내에서 필요한 期間을 정하여 賣却處分을 보류할 수 있다.

⑥ 기타 稅關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나 공공차관에 의해 도입된 물품 중 체화된 것에 대하여는 외자도 입법령에 의거 그 외자의 목록을 關稅廳長을 경유하여 財政經濟院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 2월 경과시까지 財政經濟院長官으로부터 보류요구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즉시 賣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賣却處分의 方法

물품을 賣却하는 方法에는 一般競爭入札, 競賣, 隨意契約 및 委託販賣 등이 있으나 외국물품을 賣却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一般競爭入札에 의한다.

경쟁입찰에 의하여 賣却하고자 하는 경우 賣却되지 아니할 때에는 5日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시마다 체감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예정가격의 체감은 제3회 입찰때부터 하되 그 체감한도액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最初豫定價格을 基礎로 산출한 稅額 이하의 금액으로는 체감할 수 없다.

가) 公賣條件

輸出하거나 外貨를 받고 販賣하는 것을 조건으로 賣却할 물품은 다음의 물품으로 한다. 다만, 稅關長이 선의의 輸入者의 被害를 救濟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關稅廳長의 승인을 얻어 輸入條件으로 公賣할 수 있다.

① 法律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된 物品

② 關稅廳長이 정하는 物品(생강·고추·깨 등 농산물, 소뿔·천연

꿀 등 축산물, 명계·조기·고등어 등 수산물, 건설중장비·복사기 등 중고품, 갈근·건강 등 한약재, 외제승용차·이륜자동차 등 일부 수입선다변화품목 및 누에고치·생사 등 기타 품목)

나) 競賣 또는 隨意契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競賣 또는 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다만, 競賣 또는 隨意契約을 할 수 있는 者로서 그 체결에 응하지 아니하는 者는 당해 물품에 대한 차회 이후의 競爭入札에 참가할 수 없다.

- ① 3회 이상 競爭入札에 붙여도 賣却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차회에 체감될 예정가격 이상의 응찰자가 있을 때
- ② 腐敗, 損傷, 變質 등의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즉시 賣却하지 아니하면 상품가치가 低下될 憂慮가 있을 때
- ③ 1회 공매의 예정가격이 50만원 미만인 때
- ④ 競爭入札 方法에 의하여 賣却함이 公益에 반하는 때

다) 委託販賣

競賣 또는 隨意契約에 의하여서도 賣却되지 아니한 物品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物品에 대하여는 委託販賣의 方法에 의하여 賣却할 수 있다.

4) 國庫歸屬

關稅法 第124條에 의거 장치기간이 경과한 외국물품을 매각하려고 해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한정으로서 그 물품을 장치해 둘 수 없으므로 장치장소에서 그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 기회를 그 물품의 貨主에게 주고 그래도 반출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득이 國民의 財產權이 다소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 물품의 소유권을 國庫에 歸屬시킬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貨主가 있는 물품을 國庫에 歸屬시키는 것은 國民의 財產權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이의 집행은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表 IX-7〉 滯貨發生 및 在庫現況

(單位：件, 噸)

| | | 건 수 | 중 량 | 비 고 |
|------|---------|--------|-----------|-----|
| 1991 | 전 년 이 월 | 24,925 | 138,839 | |
| | 발 생 | 71,920 | 561,385 | |
| | 처 리 | 61,960 | 511,889 | |
| | 재 고 | 34,885 | 188,335 | |
| 1992 | 전 년 이 월 | 34,885 | 188,335 | |
| | 발 생 | 75,075 | 1,002,995 | |
| | 처 리 | 77,651 | 977,944 | |
| | 재 고 | 32,309 | 213,386 | |
| 1993 | 전 년 이 월 | 32,309 | 213,386 | |
| | 발 생 | 58,727 | 911,030 | |
| | 처 리 | 60,305 | 872,899 | |
| | 재 고 | 30,731 | 251,517 | |
| 1994 | 전 년 이 월 | 30,731 | 251,517 | |
| | 발 생 | 57,431 | 982,367 | |
| | 처 리 | 55,239 | 961,996 | |
| | 재 고 | 32,923 | 271,888 | |
| 1995 | 전 년 이 월 | 42,958 | 153,263 | |
| | 발 생 | 4,899 | 62,752 | |
| | 처 리 | 3,372 | 54,218 | |
| | 재 고 | 43,018 | 152,859 | |

資料：關稅廳.

물론 그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그 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國庫歸屬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國庫歸屬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現行 保稅制度의 運營上 問題點과 改善方向

가. 保稅(輸出)貨物 흐름의 管理 關聯

1) 問題點

이상과 같이 保稅區域에 장치함이 없이 물품입항전·후에 수입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保稅運送 및 保稅區域 搬入申告制 導入에 따라 제기되는 정책과제는 어떻게 하면 이들 制度 도입의 취지를 살려 물류의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원활히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輸出入貨物 物流 管理節次는 이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처리하여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현재 保稅區域의 貨物搬出入 業務 및 在庫管理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保稅區域 전산망이 일부 구축되었으나 화물흐름의 전과정의 EDI화가 아직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다.

즉, 현재까지는 保稅藏置場·稅關 및 關稅士間에는 전산망으로 서로 연결되어 관리하고 있으나 기타 선사, 항공회사, 하역회사, 운송업자 등과는 전산망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있어 컴퓨터에 의한 종합적인 화물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특히 1995年 12月 關稅法 改正에 따라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入港前·後 保稅藏置場에 搬入前에 輸入申告가 가능하고 稅關에서 同 申告에 대한 受理가 되면 空港이나 港灣에서 곧 바로 공장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므로 선사·항공회사, 하역회사, 운송업자 등과의 전산망 연결에 의한

화물관리가 制度改善에 따라 제기되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2) 改善方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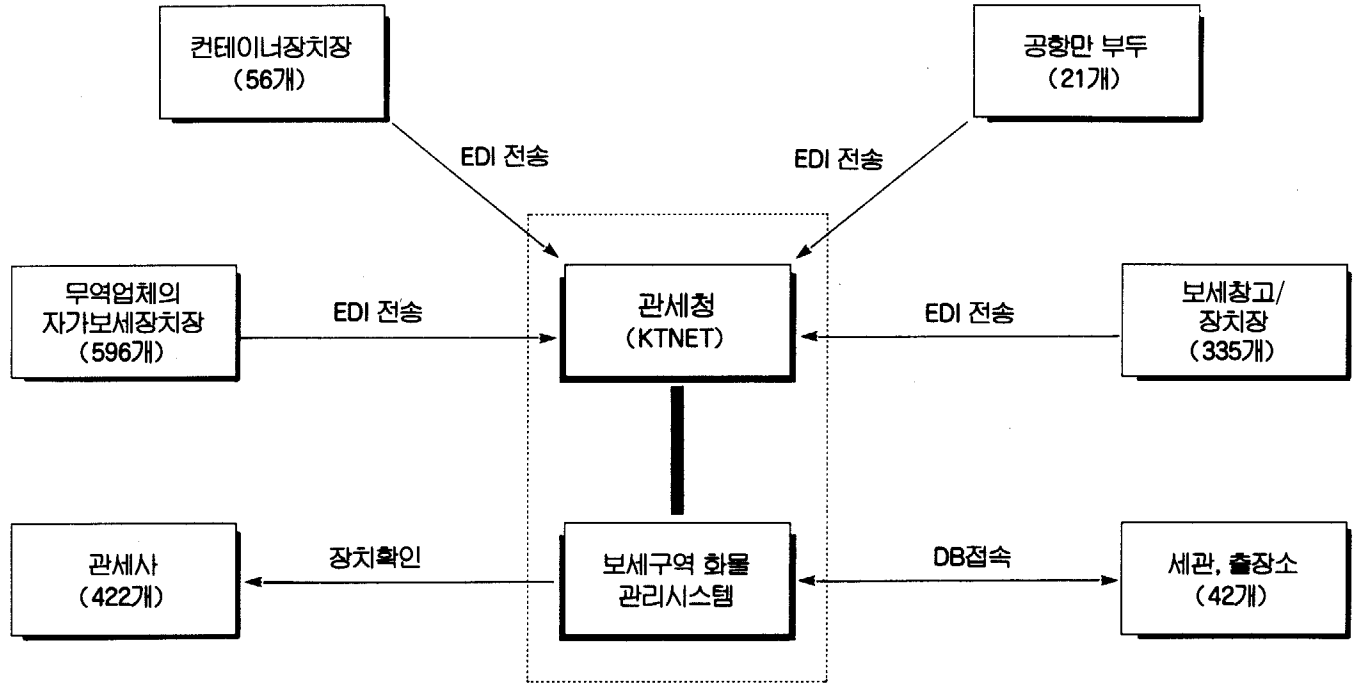
1995年 12月 關稅法 改正에 따라 輸入(輸出)貨物의 흐름이 稅關次元에서 끊이지 않도록 制度的으로 改善되었으나 同 改革的인 制度가 早期 定着될 수 있도록

① 1995年 4月부터 保稅區域의 貨物搬出入業務 및 在庫管理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保稅區域 전산망을 構築·施行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를 보다 發展·定着시켜 나가는 한편 貨物흐름의 전과정(入港·荷役·保管·通關 등)의 EDI화를 적극 추진하여 [圖 IX-5]와 같은 先進物流體系를 조속히 확립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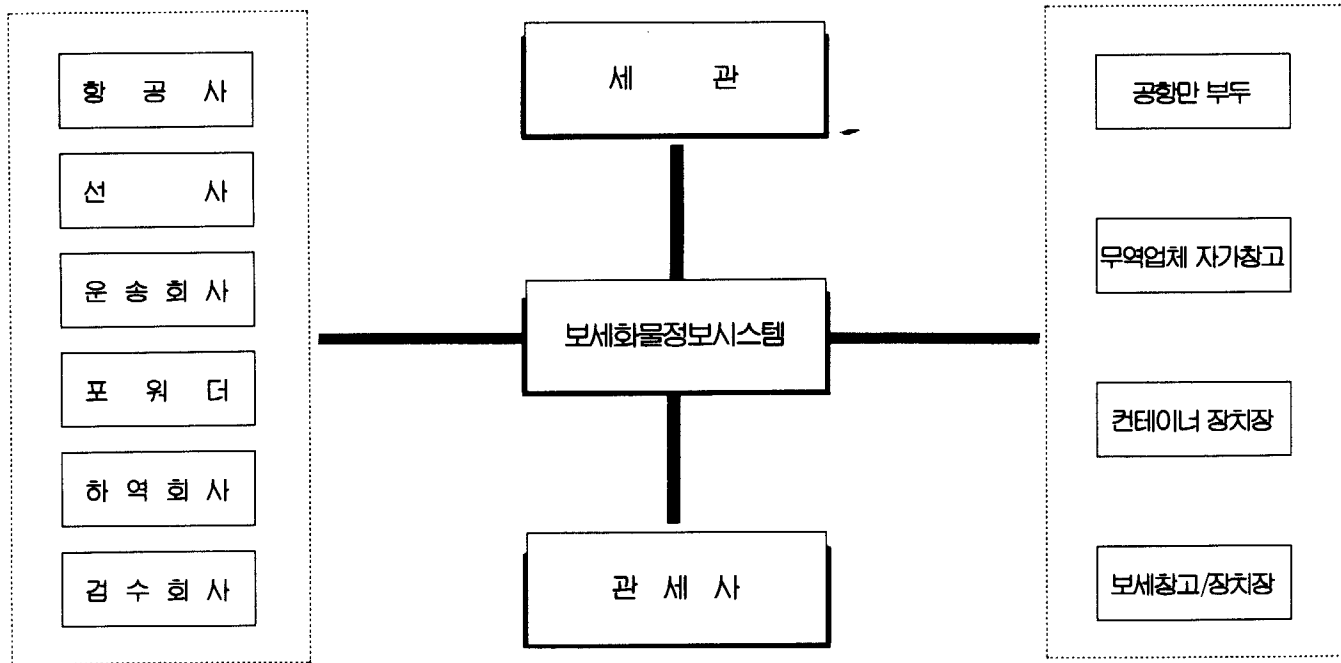
② 또한 이와같이 EDI형 輸入貨物管理시스템 개발 추이에 따라 현행 相關 規定(施行細則 등)을 대폭 개정함으로써 輸出入貨物의 物流 迅速化 및 物流費用을 절감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③ 航空·海上分野別 貨物 흐름의 절차분석을 통해 問題點을 계속 발굴해 나가되 相關 制度 改善時 반드시 효과적인 貨物감시대책도 병행하여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稅關에서는 모든 制度가 선진형으로 구축되었다고 하더라도 荷役·運送 등 相關 貨物取扱業體가 24時間 勤務體系가 갖추어지지 아니하면 物流의 흐름이 끊겨질 것이므로 24時間 勤務體系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關係機關과 協力해 나가야 할 것이다.

[圖 IX-5] 保稅區域 電算網



[圖 IX-6] 保稅貨物 情報 시스템



註: 1) 1,008개 업체를 제외한 업체는 보세화물정보시스템에 속해 있지 않은 업체임.

1,008개 업체
(총 2,366개 업체)¹⁾

나. 保稅區域 自體에 대한 管理 關聯

1) 問題點

기본적으로는 保稅區域 수요가 근본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關稅 制度가 꾸준히 개선되어야 하겠으나 現在 輸出入貨物을 처리할 保稅區域 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空·港灣 등 주요 SOC 施設(민자부두, 영종도 신공항 등)이 계속 확충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保稅區域이 계속 늘어나면 통관장소는 여러 곳에 분산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稅關業務의 비효율이 발생될 소지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롭게 늘어나는 保稅區域도 중요하지만 기존 1,400여 保稅區域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각 保稅區域別 특성에 맞게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 關稅上 支援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그 동안의 保稅區域制度가 너무 엄격하게 運營되어 保稅區域이 70~80% 수준밖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改善方向

保稅區域은 空·港灣 등 주요 SOC 시설의 확충추세를 감안하여 통관장소의 분산에 따른 稅關業務의 비효율이 발생되지 않도록 集團化·大型化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각 保稅區域別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가) 保稅藏置場

空·港灣施設은 대부분 關稅法上 保稅藏置場에 해당되므로 우선 단기적으로 貨物積滯 解消을 위한 保稅藏置場 集團化 등 시설보강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는 영종도 신공항

건설에 대비하여 서울의 도심창고를 집단화·대형화하도록 도시터미널 건설을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김포공항에 보관시설 증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 항만의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부산항 제4단계와 광양항 건설이 완료되면 부두에서 직접 공장으로 이송될 수 있는 화물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양산 ICD (Inland Container Depot)에 부산시내 사설컨테이너 藏置場 (Off-Dock Container Yard)을 이전하여 統合運營하도록 함으로써 貨物管理의 大型化·集團化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상의 확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기존 保稅藏置場 수용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關稅法上 保稅區域 特許運營을 확대하고 신속반출을 위한 制度改善 또한 並行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保稅工場

保稅工場은 中繼貿易方式에 따라 외국산 원료를 수입하여 제품생산 후 수출하는 保稅區域인데 최근 保稅工場에서의 수출비중(1984 : 15% → 1994 : 20%)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保稅工場 運營支援 대책을 강구하여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 保稅倉庫

保稅倉庫는 최근 비축용 원료를 보관하는 창고개념에서 中繼貿易의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추세가 대두되고 있는바, 홍콩 등 주요 수출경쟁국의 유통센터(Distribution Center)는 保稅倉庫의 개념임을 감안해 볼 때 保稅倉庫 內에서의 보수작업 허용범위 확대 등 필요한 支援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라) 保稅展示場

保稅展示場은 외국수입상품의 전시목적으로만 이용되었으나 보세가 공된 수출상품의 見本品 市場(Sample Mart)로도 이용될 수 있도록 기

능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외국의 바이어가 공장까지 가지 않고도 공항 인근지역에 설치된 전시장 내에서 수출상담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保稅工場業體 공동으로 保稅展示場 설치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된다.

마) 保稅建設場

保稅建設場에 있어서는 최근 기업의 설비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保稅建設場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1994. 6 : 41개소 → 1994. 9 : 51개소, 1996. 1 : 92개소)인바, 앞으로도 保稅建設場은 업계 물류비용이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향으로 運營되어야 할 것이다.

바) 保稅販賣場

保稅販賣場은 1994年 한국방문의 해 등을 맞이하여 保稅販賣場에서의 판매실적이 급증(1992 : 12% → 1993 : 22% → 1994 : 33%)한 바 있으며 외화가득률은 <表 IX-8>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150% 수준에 달하고 있다.

<表 IX-8> 外貨稼得率

(單位 : 백만달러, %)

| 구 분 | 1992 | 1993 | 1994 | 1995 |
|--------------------------|------|------|------|------|
| 수 입 액(A) | 191 | 211 | 557 | 650 |
| 판 매 액(B) | 447 | 519 | 795 | 929 |
| 수 지 비 율($\frac{B}{A}$) | 234 | 246 | 142 | 142 |

다. 未通關 滯貨物品 關聯

1) 問題點

전체적으로 볼 때 전체 화물의 99.6%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화물은 정상적으로 통관처리중이나 나머지 0.4%는 미통관 滯貨物品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滯貨發生 및 在庫現況을 살펴보면 滯貨發生(1991 : 561,385톤, 1992 : 1,002,995톤, 1993 : 911,030톤, 1994 : 982,367톤, 1995 : 62,752톤)이 크게 줄어 들고 있는 추세이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나 급적 기존 保稅區域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서는 장기체화 물품에 대한 처리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改善方向

長期滯貨物品에 대하여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조기처분 대책(公賣, 國庫歸屬 또는 廢棄處分, 返送 등)을 수립 추진하고 滯貨發生 業體에 대한 행정제재 등으로 滯貨發生을 사전에 예방하여 나가야 하겠고 기타 沒收物品은 전량 한국보훈복지공단에 대한 위탁판매로 신속히 처분해 나가야 할 것이다.

X. 現行 産業被害救濟制度의 運營上 問題點과 改善方向

1. 問題의 提起

우리나라는 經濟의 國際化·開放化를 위하여 1988년에 IMF 8조국에 가입하여 외환시장을 開放하였으며, 1990년에는 GATT 18조국에서 GATT 11조국으로 이행하여 貿易自由化를 施行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른 貿易自由化의 施行정도를 살펴보면 輸入自由化率은 1984年 84.8%에서 1996年 98.5%(공산품 99.9%)로 높아졌고, 平均關稅率은 1984年 21.9%에서 1996年 7.9%로 낮아져 우리나라도 거의 선진국 수준의 貿易自由化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그간 GATT 제18조 B항의 개도국조항에 의하여 사전적 貿易管理政策을 실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사전적 貿易管理政策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貿易自由化에 따르는 보완대책으로서 GATT 등 國際規範이 인정하는 사후적 보완조치인 産業被害救濟制度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바, 1986年 對外貿易法의 制定으로 同 制度의 토대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産業被害救濟制度는 貿易自由化에 따르는 産業被害를 사후적으로 救濟하기 위한 制度이고 國際的인 통제를 강하게 받고 있는 制度이기 때문에 그 運營에 있어서 國內産業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救濟할 수 있는 대내적 효율성이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외국정부나 기업에 의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대내적 신뢰성이 확보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産業被害救濟制度를 잘못 인식하여 貿易自

由化가 진행됨에 따라 기존과 같은 事前的 輸入制限措置에 의하여 國內 産業이 보호를 받지 못하자 그 대안으로서 새로운 保護貿易手段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최근 대량 수입되고 있는 農産物이나 輕工業製品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특히 심한데, 이 분야의 종사자들은 輸入增加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덤핑防止關稅制度나 緊急輸入關稅制度(safeguard)로 보호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産業被害救濟制度를 잘못 활용한다면 國際規範에 위반되어 타국과의 심한 통상마찰이 야기되는 등의 問題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의 産業被害救濟制度의 一般現況 및 實際救濟措置事例에 대한 分析을 토대로 貿易自由化에 따르는 事後的 補完措置로서 同 制度의 活性化 方案 및 發展方向을 모색해 본다.

2. 우리나라의 産業被害救濟制度 運營現況

가. 우리나라 輸入管理體系의 變遷과 貿易委員會의 機能 및 性格

우리나라 輸入管理體系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開放化 準備期에 해당되는 1970年代에는 開途國으로서 數量制限·關稅引上 등의 조치를 용이하게 발동할 수 있었으며 특히, 輸入監視制度, 輸入推薦限定制, 링크제, 實需要者 制限 등의 사전적 輸入管理手段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였다.

開放化 推進期에 해당되는 1980年代에는 數量制限, 關稅引上 등의 行政措置를 다소 제한적으로 발동하면서 輸入自由化에 대비한 관련 制度를 정비하였는바, 1986년에는 덤핑방지 협정 가입 등에 따른 반덤핑 및 相計關稅 制度를 정비·보완하였고 1987년에는 선진국형의 産業被害救濟 制度인 産業影響調查制度를 도입하였다.

개방경제기에 해당되는 1990年代에는 GATT 18조 B항 졸업에 따라 國際慣行上 先進國에 허용되는 被害救濟 手段을 활용할 수밖에 없으며

로 GATT 19조에 의한 産業被害救濟制度는 對外貿易法에 의하여, GATT 6조 및 16조에 의한 반덤핑·相計關稅制度는 關稅法에 의하여, GATT 20조 및 제21조에 의거한 수입제한은 藥師法, 食品衛生法, 檢疫法 등 特別法에 의하여 발동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輸入管理體系의 변천에 따라 貿易委員會는 수입에 의한 國內産業被害 여부를 調査하고 同 調査結果에 따라 産業被害判定 및 救濟措置의 건의를 위하여 通商産業部長官 傘下의 準독립적 審議·議決機關으로 1987年 7월에 발족되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GATT/BOP 協議對象國으로서 事前的인 輸入管理과 高率關稅 및 낮은 讓許로 사전에 産業被害 예방이 가능하였으나 1989年 11月 GATT 18조국으로부터 졸업함에 따라 1989年 12月 對外貿易法 改正을 통해 貿易委員會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대폭 확대하였다.

- ① 輸入數量의 급증으로 인한 國內産業被害調査 判定 및 救濟建議
- ② 덤핑 또는 補助金을 지급받은 物品의 輸入으로 인한 國內産業被害 調査 및 判定
- ③ 知的所有權을 침해한 物品의 수입 등 不公正 輸入行爲로 인한 國內産業被害調査·判定 및 救濟建議
- ④ 輸入이 産業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의 調査 및 分析
- ⑤ 國際貿易法規·制度 및 분쟁사례에 관한 調査·研究
- ⑥ 不公正 輸出入行爲의 調査 및 制裁 建議
- ⑦ 기타 公正貿易助長 등 일반적인 調査 및 建議

貿易委員會는 通商産業部 소속이지만 對外貿易法에서는 부여한 위의 기능에서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독립적으로 業務를 수행할 뿐 아니라 産業被害 有無에 대해서는 公正性을 유지함으로써 準司法的 調査 및 判定을 하도록 되어 있다.

對外貿易法 제38조에 의하면 貿易委員會는 연임이 가능한 임기 3년의 委員長 1人과 委員 8人(常任 1人) 이내로 구성되며 委員長과 委員은 通商産業部の 提請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1996年 9月

〈表 X-1〉 主要國의 産業被害救濟機關 比較

| | 美 國 | 캐 나 다 | 濠 洲 | E U | 韓 國 |
|----------|---|---|--|--|--|
| 名稱 | 國際貿易委員會 (USITC) | 國際貿易調查 委員會 (CITT) | 産業支援委員會 (IAC) | EU 執行委員會 (DGI) | 貿易委員會 (KTC) |
| 性格 | 大統領 산하 獨立規制 委員會 | 財務部 산하 獨立規制 委員會 | 商工技術省 所屬 諮問委員會 | | 通商産業部 所屬 準獨立行政 委員會 |
| 委員 人員 | 6명(상임) 472명(3국 14실 24과) | 9명(상임) 100명(3국 13과) | 9명(상임) 260명(2국 2실 12과) | 17명 100명(1국 1실) | 7명(상임 1명) 50명(1실 1담당 관 4과) |
| 機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피해조사 및 구제 건의 - 수입급증 - 덤핑(보조금 지급) - 지적소유권 등 불공정 수입 ○ 무역 및 관세 제도 조사 연구 - 산업교역상품 모니터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피해 조사 및 구제 건의 - 수입급증 - 덤핑(보조금 지급) - 서비스 ○ 경제, 무역, 관세문제에 관한 일반적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지원업종 및 수단 건의 * 반덤핑(상계) 관세부과 조치는 호주 관세성과 반덤핑청에서 담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피해조사 및 구제 건의 - 수입급증 - 덤핑(보조금 지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피해조사 및 구제 건의 - 수입급증 - 덤핑(보조금 포함)수입 - 지적소유권 피해 등 불공정 수입 - 무역 및 유통 서비스 공급 급증 ○ 수입이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분석 ○ 국제무역제도 및 경쟁 사례 조사 ○ 불공정수출입 행위조사 |
| 救濟 手段 | 관세, 수량규제 및 무역조정 지원 등 | 관세 및 수량 규제 등 | 산업조정지원 및 수량규제 | 관세 및 수량 규제 | 관세, 수량 규제 및 산업 조정 지원 |

資料 : 최홍진, 「우리나라 産業被害救濟制度의 經濟의 效果에 관한 研究」, 1992.

현재 委員長 1人和 委員 6人(常任 1人)으로 구성되어 있고, 委員會를 정점으로 1室 4課에 50名의 人員을 두고 있다.

나. 우리나라의 産業被害救濟制度

수입의 증가는 그것이 公正貿易去來인지, 不公正貿易去來인지를 막론하고 國內産業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國內産業을 보호하기 위한 制度的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公正貿易(輸入增加)으로 인한 産業被害救濟制度和 不公正貿易의 일환으로 덤핑 등에 의한 産業被害救濟制度를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公正貿易(輸入增加)으로 인한 産業被害救濟(세이프가드)

가) 法的根據 및 擔當機關

우리나라 세이프가드制度는 對外貿易法 제32~36조, 同法 施行令 제64~74조, 그리고 수입에 의한 産業被害調查의 運營 節次 등에 관한 규정인 貿易委員會 고시 제90-1호 등에 규정되어 있다.

세이프가드 業務는 産業被害調查 및 判定과 救濟措置의 건의에 이르기까지 通商産業部 貿易委員會가 총괄하여 擔當하되, 최종조치에 있어서는 非關稅措置는 通商産業部가, 關稅措置는 財政經濟院이 擔當한다.

나) 發動要件 및 判定基準

對外貿易法 제32조는 특정한 물품의 輸入 또는 貿易 및 유통서비스의 공급이 國內産業에 미치는 피해를 調查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핵심조항이라 할 수 있는 제1항에서의 발동요건을 살펴보면 ① 수입수량의 증가 ②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國內産業의 실질적인 被害 또는 被害憂慮 ③ 輸入增加와 産業被害와의 因果關係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輸入數量的 增加’는 GATT 제19조의 ‘輸入增加’에 해당되며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수입의 절대적 증가와 상대적 증가 모두를 포함한다는 의미로 해석상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수입에 의한 産業被害調査의 運營節次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輸入數量的 急増이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거나 국내생산에 대비한 수입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國內産業’이라 함은 産業被害調査를 신청한 특정한 輸入物品과 同一・同質物品이거나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생산 또는 생산하고자 하는 國內生産者 전체 또는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國內生産者 집단을 말하며, 國內生産者가 수입을 겸하는 경우에는 국내생산부분만을, 國內生産者가 한가지 이상의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해당생산부분만이 해당된다.

‘실질적인 피해’는 GATT 제19조의 ‘심각한 피해’에 해당되나 그 의미는 일반적으로 GATT 제19조의 규정에 비해 약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질적인 피해유무의 결정시 검토사항으로는 ① 工場閉鎖를 포함한 國內産業의 생산시설의 상당한 遊休與否 ② 상당한 수의 업체가 합리적인 이윤수준에서 국내생산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 ③ 國內産業의 상당한 실업 또는 불완전한 고용여부 등을 고려한다.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 유무의 결정시 검토사항으로는 ① 國內産業에 있어서는 販賣, 市場占有率 및 稼動率 감소 또는 재고의 증가여부 ② 國內産業의 生産・利潤・雇傭의 減少 또는 賃金の 인하추세 여부 등을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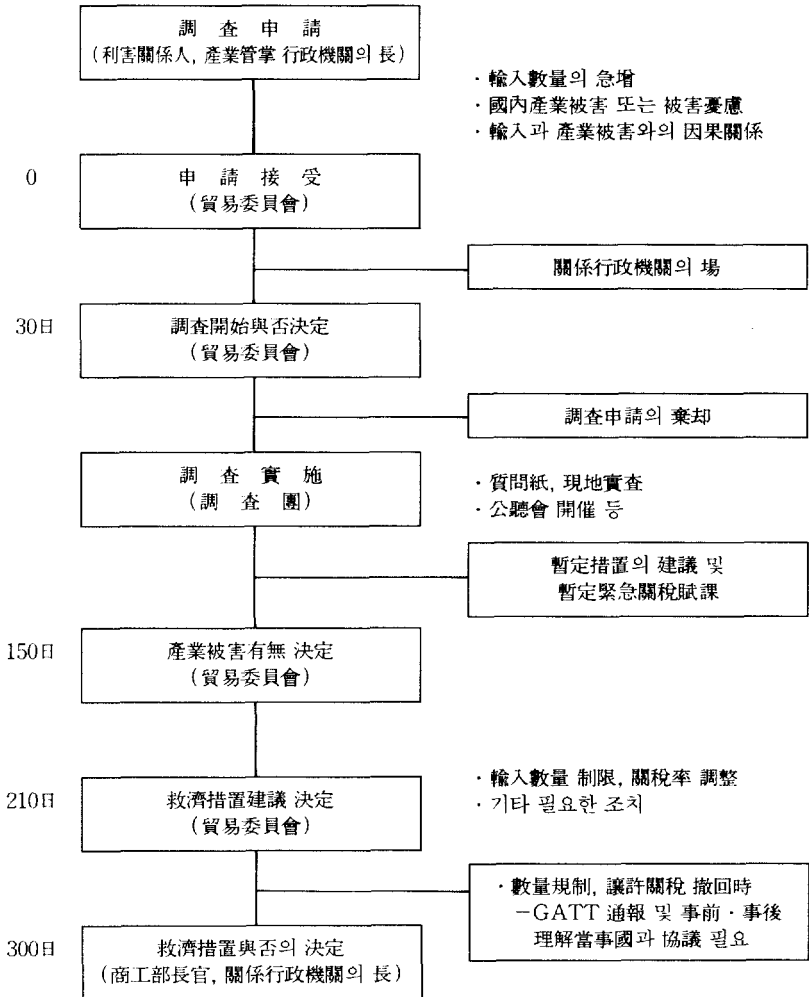
‘輸入增加와 産業被害와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1989年 對外貿易法改正 이전에는 ‘輸入과 國內産業開發 沮害 등의 실질적이고 다른 요인 못지않게 중요한 원인이 된 관계’라고 명시하였으나 法改正 이후 제외되었다.

다) 調査節次

對外貿易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國內産業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및 당해 國內産業을 관장하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 國內産業에 미치는 피해를 調査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對外貿易法施行令에

[圖 X - 1] 輸入急增으로 인한 産業被害救濟 節次



資料：商工部 貿易委員會, 「貿易委員會 資料 91-6」, p. 11.

서는 당해 國內産業에 이해관계가 있는 者의 범위를 당해 國內産業에서 차지하는 생산량 또는 업체수의 비중이 30% 이상인 生産者이되 農林水産業의 경우에는 10人 이상의 당해물의 生産者 및 당해 國內産業의 生産者로 구성된 協會, 組合 또는 産業別 勞動組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輸入者인 生産者에게는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救濟措置 節次 및 內容

貿易委員會는 産業被害決定日로부터 60日 以內에 輸入數量制限, 關稅率引上, 産業構造調整을 위한 지원 등의 救濟措置를 通商産業部長官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通商産業部長官이 救濟措置를 결정하거나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게 되고 關係行政機關의 長이 救濟措置를 결정한다.

通商産業部長官 및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貿易委員會가 건의한 날 또는 通商産業部長官이 요청한 날로부터 90日 以內에 救濟措置를 決定·施行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救濟措置가 國際通商關係 및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貿易委員會는 救濟措置가 실시된 날로부터 1年마다 그 조치의 효과를 分析하는 연례검토를 하게 되는데 同 分析結果에 따라 貿易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쳐 당해 조치의 期間을 延長하거나 완화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정식 緊急關稅의 부과기간은 4年을 초과할 수 없으며 暫定緊急關稅는 200日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상기한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暫定緊急關稅의 부과기간, 緊急關稅의 賦課期間 또는 輸入數量制限 등의 適用期間 및 그 延長期間을 포함한 총적용기간은 8年을 초과할 수 없다.

輸入의 急增 곧 公正貿易去來에 의한 産業被害의 救濟措置는 緊急, 調整 및 割當關稅 등 關稅上의 措置와 輸入制限, 輸入先多變化制度 활용 등 非關稅 조치가 활용되고 있다.

① 緊急關稅制度(關稅法 第12條)

緊急關稅制度는 특정물품의 수입으로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國內生産者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어 당해 피해를 방지하거나 救濟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率의 범위안에서 關稅를 부과하는 制度를 말한다. 同 緊急關稅制度의 적용을 받을 物品·稅率·適用期間과 數量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同 緊急關稅制度는 1990年 12月 關稅法 改正時 그 발효요건을 축소 조정하였는바, 그것은 UR關稅率 인하협상 결과 GATT 양허품목이 크게 확대(공산품의 경우 91%, 수산물 42.6% 수준)되고 있는 상황에서 GATT 등에 양허된 특정물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國內産業 被害救濟를 위한 關稅率 引上措置도 GATT에서 허용하고 있는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緊急關稅의 발동요건을 GATT 규정과 완전히 일치시킴으로써 대외적인 통상마찰의 발생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발동요건을 축소 조정하게 된 것이다.

② 調整關稅制度(關稅法 第12條의 2)

調整關稅制度는 공산품에 대한 수입이 본격적으로 자유화된 1983年度에 關稅率을 全面 改編하면서 도입된 制度로서 수입개방에 따른 보완수단으로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새롭게 지정된 물품 중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關稅率을 최고 100%까지 인상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率의 범위 안에서 關稅를 부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1990年 12월에 關稅法 改正에 의해 GATT 規定上 緊急關稅의 발동요건이 GATT 양허품목으로서 GATT 제19조(safeguard)의 규정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關稅率을 인상조정할 수 있도록 제한됨에 따라 종전의 緊急關稅 적용대상이었던 GATT 비양허품목의 수입억제나 세율 불균형 현상 시정을 위한 關稅率 인상에 필요한 관계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서 現行 彈力關稅 規定 中 가장 유사한 調整關稅의 발동요건에 이들 요건을 이관하여 규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調整關稅의 적용

物品 · 稅率 및 適用期間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割當關稅制度(關稅法 第16條)

割當關稅制度란 물자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특정물품을 수입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40% 포인트 범위 내 (농산물의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關稅率을 引上하거나 引下할 수 있는 制度이다. 다만 세율의 조정범위에 있어서 農畜水産物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同種物品 · 類似物品 또는 代替物品의 國內外價格差에 상당한 率을 加算率의 범위 안에서 關稅를 부과할 수 있다.

④ 輸入物品의 限時的 輸入制限

貿易委員會가 특정품목의 수입으로 國內産業에 피해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60日 以內에 通商産業部長官에게 수입물품의 수량 등에 관한 제한을 건의할 수 있고 通商産業部長官은 貿易委員會의 건의에 따라 救濟措置를 할 수 있다.

⑤ 輸入先多邊化制度

輸入先多邊化制度의 법적근거는 對外貿易法 제19조 제2항과 同法 施行令 제35조 제5호로서 이에 의하면 수입초과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 중 국가별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通商産業部長官이 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輸出入의 許可 또는 承認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制度는 産業被害救濟制度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첫째, 輸入先多邊化制度는 수입의 급증에 의한 産業被害 보전이 목적이 아니라 국가별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며 둘째, 특정품목에 대한 수출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규정함으로써 그 규제수단이 行政的 재량에 의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가령 産業被害를 救濟하기 위해 동 조치가 사용된다 하더라도 수입선다변화가 목적이라도 그 구체적 효과에는 의문이 많은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사용방법에 따라 특정 상품의 수입이 특정국에서 주로 수입될 때 이 制度의 활용을 통해 産業被害의 救濟를 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⑥ 其他

輸入物品의 數量 및 品質 등에 관한 輸入制限 및 輸入先多邊化制度 이외에 기술개발 지원, 국산품 우선구매 권고, 수입물량 자율조정 권고 및 업계간 수입물량 자율합의 등이 있는바, 각 조치별 長·短點을 비교하여 사실에 가장 적합한 조치를 선택하게 될 것이며 가능한 조치수단은 다음과 같다.

㉠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한 경우 技術開發準備金 損金算入時 技術集約産業 수준의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고, 특정 설비투자 에 대한 투자촉진산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강구할 수 있다. 이 경우 貿易委員會의 결정에 따라 생산성 향상 지원업체가 설치하는 시설 및 설비를 포함하되, 通商産業部에서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확인서 혹은 합리화 시설투자 확인서를 발행할 수 있을 것이다.

㉡ 資金支援의 경우에는 工業發展基金 운영지침에 반영 자금을 출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기술개발 관련 정부출연(特定研究開發事業, 工業基盤技術開發事業 등)시 포함할 수 있도록 강구할 수 있을 것이며, 기타 韓國生產性本部 등을 통한 經營指導 등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 工業發展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공업기술의 향상이나 설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현저히 증진할 수 있는 경우로서 工業發展과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國際競爭力의 확보가 긴요하다고 인정되고 사업자의 자주적인 노력만으로 그 확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합리화 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종별 합리화 계획에는 필요한 기술의 내용 및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제품의 성능 또는 품질수준에 관한 사항 및 생산규모의 적정화 또는 생산품목의 전문화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工業發展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通商産業部長官은 공업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으로 되어 있는 기술 분야, 사업자의 자주적인 노력만으로 기술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

는 기술분야의 기술수준을 효율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공업기반 기술향상 계획을 수립하여 공업기반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通商産業部長官은 그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할 경우 生産性本部는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通商産業部長官이 위탁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발전기금이 설치되어 업종별 합리화 계획의 실시를 위한 사업, 공업기반 기술향상 계획의 실시를 위한 사업, 通商産業部長官이 생산성 본부에 위탁하여 행하는 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同法 제21조는 工業發展法에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通商産業部에 工業發展審議會를 두고 있으며, 合理化 業種의 審議, 業種別 合理化 計劃의 樹立, 合理化 사업에 대한 支援, 工業基盤 技術向上 計劃, 工業發展基金의 運營·管理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産業政策審議會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제반규정을 살펴볼 때, 工業發展法에 의한 技術·生産性向上 支援 및 産業 합리화 업종의 지정 등은 상기요건에 맞는 외에 工業發展審議會 및 産業政策審議會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그 실시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며, 貿易委員會의 결정외에 또 다른 2個의 유사한 委員會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는 절차상의 번잡성이 있다.

㉔ 위에서 열거한 각종 지원수단 외에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國內産業의 救濟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에는 貿易調整 支援制度(Trade Adjustment Assistance)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사안별로 기존의 조치 외에 보다 적합한 조치를 開發·發展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㉕ 기타 국산품 우선구매 권고, 수입물량 자율조정 권고 및 업계간 수입물량 자율회의 등이 있다.

2) 不公正貿易으로 인한 産業被害救濟

不公正貿易去來에 대한 産業被害救濟制度로는 덤핑防止關稅와 相計關稅를 들 수 있다. 그런데 덤핑防止關稅와 相計關稅는 발동요건이 다를 뿐 그 절차와 적용은 거의 동일하다. 아울러 덤핑防止關稅制度和 相計關稅制度의 세부내용에 대하여서는 제4장 彈力關稅制度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가) 덤핑防止關稅制度

① 法的根據 및 擔當機關

우리나라의 덤핑防止關稅制度는 關稅法 제10조, 同法 施行令 제4조의 2 및 15, 덤핑防止關稅 및 相計關稅運營規定(재무부고시 제89-6호)과 對外貿易法 제40조, 수입에 의한 産業被害調查의 運營·節次 등에 관한 규정 제31~32조 등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덤핑調查 및 賦課業務의 총괄은 財政經濟院이 擔當하되, 조사과정에서 덤핑여부 및 덤핑률 산정 등 가격조사부문 및 국내산업의 피해 여부 즉, 産業被害調查部門은 모두 通商産業部 貿易委員會가 담당하게 되고, 貿易委員會는 財政經濟院長官에게 暫定덤핑防止關稅의 賦課, 確定덤핑關稅의 賦課 및 價格修正이나 輸出의 中止 또는 縮小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덤핑調查機關과 관련해서는 EC 및 일본 등과 같이 價格調查와 産業被害 여부의 調查를 同一機關이 담당하는 一元主義 體制와 미국 및 캐나다 등과 같이 별개기관이 담당하는 二元主義 體制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② 賦課節次

貿易委員會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덤핑防止關稅의 부과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調查開始를 결정하여 調查申請을 받은 날로부터 1個月 以內에 그 결과를 財政經濟院長官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調査開始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個月 以內에 豫備調査를 하여 同 調査 結果보고서와 豫備判定議決書가 財政經濟院長官에게 제출된 날로부터 1個月 以內에 暫定덤핑防止關稅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調査機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豫備調査 結果報告書 또는 豫備判定 議決書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각각 本 調査를 개시해야 하나, 財政經濟院長官이 豫備調査에 따른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전체 수입량의 3% 이하이거나 덤핑률이 2% 이하이면 本 調査를 중지하게 할 수 있으며 일단 調査가 개시되면 1年 以內에 종결되어야 한다.

조사결과 법적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財政經濟院長官은 필요시 關稅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關稅賦課를 결정하고 産業政策審議會 또는 經濟長·次官會議과 國務會議의 審議·議決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공시한다.

調査가 개시되거나 暫定措置가 취해진 경우에도 당해물품의 공급자는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수출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제의할 수 있으며, 약속수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調査의 中止 또는 終結이 가능하다.

나) 相計關稅制度

相計關稅制度란 외국에서 製造·生産 또는 輸出에 관하여 直接·間接으로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國內産業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國內産業開發이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당해 國內産業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국 또는 수출자를 지정하여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에 의한 關稅外에 당해 補助金 등의 금액 이하의 關稅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制度를 말한다. 그 부과절차 등은 반덤핑防止關稅의 경우와 大同小異하기 때문에 생략한다.

3) 우리나라 産業被害救濟 實績

그 동안의 우리나라 貿易委員會의 요청에 의해 정부가 취한 産業被害救濟 實績은 <表 X-2>와 같다.

○總提訴件數：40건(반덤핑 14건, 세이프가드 26건)

－주요국별 제소품목：중국 14건, 일본 10건, 미국 10건, 기타(대만 등) 6건

－제소품목별 형태：공산품 22건, 농수축산품 18건

<表 X-2> 産業被害 提訴・處理現況

(單位：件)

| | 총신청수 | 판정결과 | | 조사종결·중지 | | 기각 | 조사중 |
|-------|------|------|----|---------|------|----|-----|
| | | 긍정 | 부정 | 신청철회 | 약속수락 | | |
| 반덤핑 | 14 | 6 | 4 | 2 | 2 | - | - |
| 세이프가드 | 26 | 16 | 1 | 7 | - | 1 | 1 |
| 합계 | 40 | 22 | 5 | 9 | 2 | 1 | 1 |

註：1995年 11月 末 현재 기준임.

資料：貿易委員會.

3. 現行 産業被害救濟制度의 運營上 問題點과 改善方向

産業被害救濟制度는 대내외 상호관계에서 발생하는 被害를 救濟하기 위한 제도로 보고 對內的 效率性 側面과 對外的 信賴性 側面에서 産業被害救濟制度의 運營上 問題點과 改善方案을 모색해 보았다. 다음으로 이러한 제도가 잘 運營되기 위해서는 그 擔當機關의 位相과 機能이 중요시 되므로 擔當機關의 기능활성화 측면에서 貿易委員會 등 관련 機關의 運營上 問題點을 기술하고 앞으로 경제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국경개념이

희박해지고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므로 産業被害救濟制度는 국가간 公正去來라는 측면에서 國內公正去來制度와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對內的 效率性 關聯

1) 問題點

效率性이라고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는데 여기서 對內的 效率性이라고 하면 外國製品의 輸入으로 발생한 國內産業의 被害를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救濟目的을 달성하느냐 하는 데에 있을 것이므로 이를 金錢的 負擔 側面과 所要期間 側面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金錢的 負擔 側面에서 보면 현 제도의 경우는 提訴者에게 과중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므로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활용하고 싶어도 활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음으로 所要期間 側面에서는 덤핑防止關稅制度나 緊急輸入制限措置를 신청한 후 그 救濟措置가 실행되기까지의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바, 팝콘 옥수수와 돼지고기 통조림의 경우는 제소에서 救濟措置까지 각각 385日(1990.11.16日 제소)과 211日(1989.7.24日 제소)씩 걸렸다.

또한 救濟措置의 효과성 측면에서 반덤핑關稅賦課의 경우를 예로서 살펴보면 폴리아세틸수지(1990.5.8日 제소)의 덤핑률이 20.6%까지 調査되었으나 실제 부과된 것은 4%였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救濟措置로서의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고 하겠다. 또 팝콘옥수수(1990.11.16日 제소)의 경우도 貿易委員會는 90%의 반덤핑關稅賦課를 건의하였으나 關稅審議委員會에서는 關稅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2) 改善方向

産業被害救濟制度를 運營함에 있어서 提訴者로 하여금 자료제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貿易委員會의 調査機能을 강화하여야 하고 제소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提訴者들이 어느 기관에 제소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貿易委員會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늘려서라도 提訴에서 救濟措置까지의 소요기간을 줄여나가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救濟措置가 너무 늦어져서 國內産業 倒産 後 被害救濟 措置가 내려져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될 수도 있다. 또한 貿易委員會의 건의조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대로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制度的 장치에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救濟制度의 效率性을 위해 豫備判定制度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貿易委員會의 기능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調査機關과 調査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貿易委員會의 人力管理과 調査團의 구성에서 改善方案을 찾아야 할 것이다. 貿易委員會의 人力管理 側面에서 채용도 지금과 같이 公開競爭試驗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特別採用方法을 이용하여 외부의 우수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現在 通商産業部 公務員間에 循環補職制로 運營되고 있는데 이 期間을 延長할 뿐 아니라 貿易委員會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調査團의 구성에 있어서는 <表 X-3>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사례마다 비교적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소된 제품의 전문가를 우선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貿易委員의 전문성 측면에서는 현재 1명으로 되어 있는 常任委員의 數를 늘리고 이공계 출신의 전문가를 한 두명 정도 두어야 하며 非常任貿易委員에게 事務補助員을 한명씩 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外部專門家の 활용문제이다. 産業被害救濟制度 자체에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가 많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감당할 만큼 專門要員을 확보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調查團 구성이나 자문을 구하는 데 있어서 외부 전문가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表 X-3〉 産業被害救濟要請 各 事例別 調查團 構成 現況

| | 조사단 구성내용 |
|----------|---|
| 폴리아세틸수지 | 공무원 5명(산업피해조사1과장(단장), 조사2과 실무자 4명), 변호사 1명, 공인회계사 1명 등 총 7명 |
| 폴리아크릴아미드 | 공무원 4명(산업피해조사2과장(단장), 조사1과 상공부 1명), 국립공업시험원 1명, 산업연구원 1명, 공인회계사 1명 등 총 7명 |
| 팜콘 옥수수 | 공무원 5명(산업피해조사2과장(단장), 조사2과 2명, 농림수산부 1명, 보건사회부 1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명, 공인회계사 1명 등 총 7명 |
| 돼지고기 통조림 | 공무원 6명(무역조사실 4명, 농림수산부 및 보사부 각1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소 각1명, 공인회계사 1명 등 총 9명 |

資料：貿易委員會, 「産業被害 調查結果」 각 권.

나. 對外的 信賴性 側面 關聯

1) 問題點

對外的인 信賴性이란 外國의 政府 및 企業들이 우리나라의 産業被害救濟 조치에 대하여 얼마나 수긍해 주는가 하는 정도로 해석하기로 하고, 이러한 대외적 신뢰성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개념적 요소인 公正性과 獨立性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公正性은 다시 실제적 측면에서의 公正性과 절차적 측면에서의 公正性으로 나누고 실제적 측면에서의 公正性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産業被害 판정시 GATT 규정 및 반덤핑협정 등과 같은 國際規範과 國內規範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同種商品의 正義, 덤핑 및 輸入增加與否, 産業被害, 因果關係에

관하여 國際規範과 國內規範間에 다소 상이점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국내의 규범들이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못하여 判斷機關에 따라 재량의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 判斷機關들의 公正性이 중요시 된다 하겠다.

1990年 5月 8日에 貿易委員會에 제소된 폴리아세탈수지의 경우 외국의 被提訴者들은 貿易委員會의 産業被害 公正판결에 불만을 품고 GATT 패널(panel)에 제소한 바 있고 동 패널 권고안은 “韓國은 폴리아세탈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반덤핑협정상 의무에 일치시켜야 한다”고 권고함으로써 사실상 반덤핑 조치가 잘못 되었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節次的 側面에서의 公正性은 조사과정이나 公聽會의 운영 등에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表 X-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팝콘 옥수수 와 돼지고기 통조림과 같은 緊急輸入 制限措置의 경우에는 公聽會 개최

〈表 X-4〉 公聽會 參席者 現況

(單位: 名)

| | 공청회 개최일 | 무 역 위 원 회 | 이 해 관 계 인 | | |
|--------------|--------------------------|---------------------------|----------------------|--|-----------------------------|
| | | | 제 소 자 | 피 제 소 자 | 기 타 |
| 폴리아세탈 수지 | 1991. 1.18 1991. 2.27 | 위 원: 5 공무원: 5, 조사단원 | 회 사: 3 변호사: 3 | 듀 폰: 회사 3, 변호사 3 첵스트: 회사 2, 변호사 2 아사히: 회사 2, 변호사 1 | |
| 폴리아크릴 아미드 | 1990. 8.30 | 위 원: 5 공무원: 5, 조사단원 | 회 사: 2 | SNF: 회사 1, 변호사 1 Colloids: 변호사 1 Stock Hausen: 변호사 2 | 타생산자: 2 수입자: 2 참관인: 7 |
| 팝콘 옥수수 | 1991. 3.18 | 위 원: 5 공무원: 5, 조사단원 | 조 합: 2 농 민: 1 | | 참고인: 6 |
| 돼지고기 통조림 | 1989.10.20 | 위 원: 4 공무원: 5, 조사단원 | 양돈협회, 한국육가 공협회 | | 수입유통 협회, 소비 자연맹 |

資料: 貿易委員會, 産業被害調査 公聽會 속기록 각 권.

시나 자료제출시 外國業體의 참여기회가 없고 국내이해 관계자들만 참석하게 되기 때문에 그 公正性에 대한 이의제기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독립성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는 産業政策 담당부서인 通商産業部 傘下에 貿易委員會를 두고 있어서 독립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産業被害救濟에 관한 대부분의 提訴者들이 기업체들인데 이들은 通商産業部의 主要業務 대상집단이므로 通商産業部는 이들의 압력을 많이 받게 된다. 그 결과 이들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여지게 되어 保護主義的인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 改善方向

실체적 측면에서의 公正性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동종상품의 정의, 덤핑 및 輸入急増 與否, 産業被害, 因果關係에 관하여 細部施行細則을 制定하여 구체성과 명확성 원칙하에서 運營되도록 하여야 한다. 절차적 측면에서의 公正性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救濟節次를 보다 公正하게 하고 公聽會를 활성화하여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貿易委員會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通商産業部에서 벗어나야 하고 準司法的인 機構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

XI. 現行 關稅審判制度의 運營上 問題點과 改善方向

1. 問題의 提起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의 권익신장이 증대됨에 따라 關稅法上 不服申請인 異議申請, 審査請求, 審判請求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음을 <表 XI-1>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年度別 異議申請件數는 1988년의 7건에서 1993년에는 118건으로 크게 증가되었으나 최근에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審査 및 審判請求 件數는 1988년에 각각 57건 및 38건에서 1992년을 예외로 하고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表 XI-1〉 不服請求 提起趨勢

(單位: 件, 百萬元)

| | 이 의 신 청 | | | | 심 사 청 구 | | | | 심 판 청 구 | | | |
|------|----------|----------|-----|-------|----------|----------|-----|--------|----------|----------|-----|--------|
| | 이월 건수 | 접수 건수 | 계 | 금액 | 이월 건수 | 접수 건수 | 계 | 금액 | 이월 건수 | 접수 건수 | 계 | 금액 |
| 1988 | | 7 | 7 | 129 | 5 | 52 | 57 | 2,239 | 19 | 19 | 38 | 2,651 |
| 1989 | | 6 | 6 | 174 | 5 | 75 | 80 | 3,381 | 8 | 19 | 27 | 1,697 |
| 1990 | | 19 | 19 | 1,525 | 19 | 94 | 113 | 4,899 | 10 | 62 | 72 | 4,765 |
| 1991 | 8 | 18 | 26 | 336 | 30 | 100 | 130 | 8,058 | 5 | 73 | 78 | 5,533 |
| 1992 | | 17 | 17 | 449 | 13 | 82 | 95 | 7,837 | 25 | 50 | 75 | 7,072 |
| 1993 | 1 | 117 | 118 | 1,704 | 9 | 211 | 220 | 6,089 | 19 | 82 | 101 | 7,698 |
| 1994 | 10 | 51 | 61 | 2,817 | 35 | 180 | 215 | 10,614 | 34 | 125 | 159 | 6,047 |
| 1995 | 1 | 30 | 31 | 3,596 | 13 | 195 | 208 | 21,327 | 81 | 119 | 200 | 13,499 |

資料: 關稅廳.

한편, 이러한 不服申請件數에 대하여 稅關이나 關稅廳 또는 國稅審判所의 認容率은 10%~20% 내외 수준에 머물고 있는바, 최근 국민의 권리의식이 나날이 신장되어 租稅賦課의 적법성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여 關稅審判制度的 법적인 측면이나 運營上의 問題點을 시정하여 보다 높은 權利救濟가 이루어지도록 改善方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 따라서 本書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關稅上 權益救濟方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表 XI-2〉 不服請求 認容率 趨勢

(單位: %)

| | 이 의 신 청 | | 심 사 청 구 | | 심 판 청 구 | |
|------|---------|------|---------|------|---------|------|
| | 건수기준 | 금액기준 | 건수기준 | 금액기준 | 건수기준 | 금액기준 |
| 1991 | 8 | 3 | 9 | 1 | 36 | 20 |
| 1992 | 31 | 6 | 26 | 14 | 38 | 32 |
| 1993 | 3 | 8 | 5 | 10 | 12 | 37 |
| 1994 | 10 | 3 | 7 | 5 | 15 | 17 |
| 1995 | 13 | 3 | 27 | 43 | 18 | 40 |

資料: 關稅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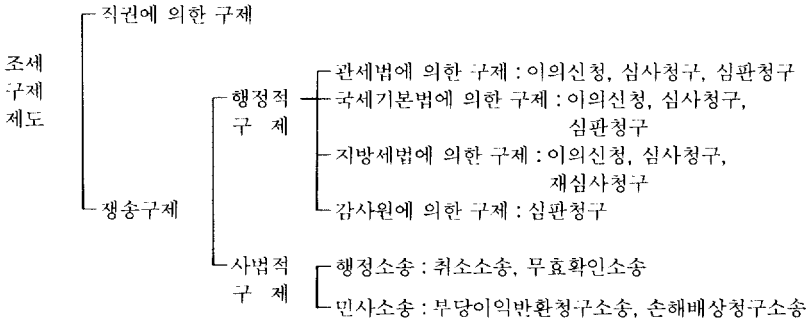
2. 우리나라 關稅審判制度的 現況과 特殊性

가. 우리나라 關稅審判制度 概要

① 租稅救濟制度는 行政廳의 職權에 의한 救濟와 納稅者의 不服請求에 의한 救濟로 대별되며, 不服請求에 의한 救濟는 다시 審判機關에 따라 行政的 救濟와 司法的 救濟로 구분되는데 [圖 XI-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② 關稅審判의 請求는 關稅行政處分이 違法 또는 不當하다고 하여 권

[圖 XI - 1] 租稅救濟制度的分類



한있는 行政機關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請求하는 절차이므로 마땅히 그 請求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 關稅法 제38조 제1항이 규정하는 關稅審判請求의 대상을 세분하여 보면 ㉠ 위법한 관세부과처분 ㉡ 위법한 관세징수처분 ㉢ 부당한 관세부과처분 ㉣ 부당한 관세징수처분 ㉤ 필요한 관세처분의 부작위 등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違法한 關稅賦課處分이라 함은 關稅의 課稅要件(納稅義務者, 課稅物件, 課稅物件의 歸屬, 課稅標準, 稅率)이 완벽하게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의 부과처분을 말한다. 이를테면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 20%라는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세액이 달라진 경우의 처분은 이 경우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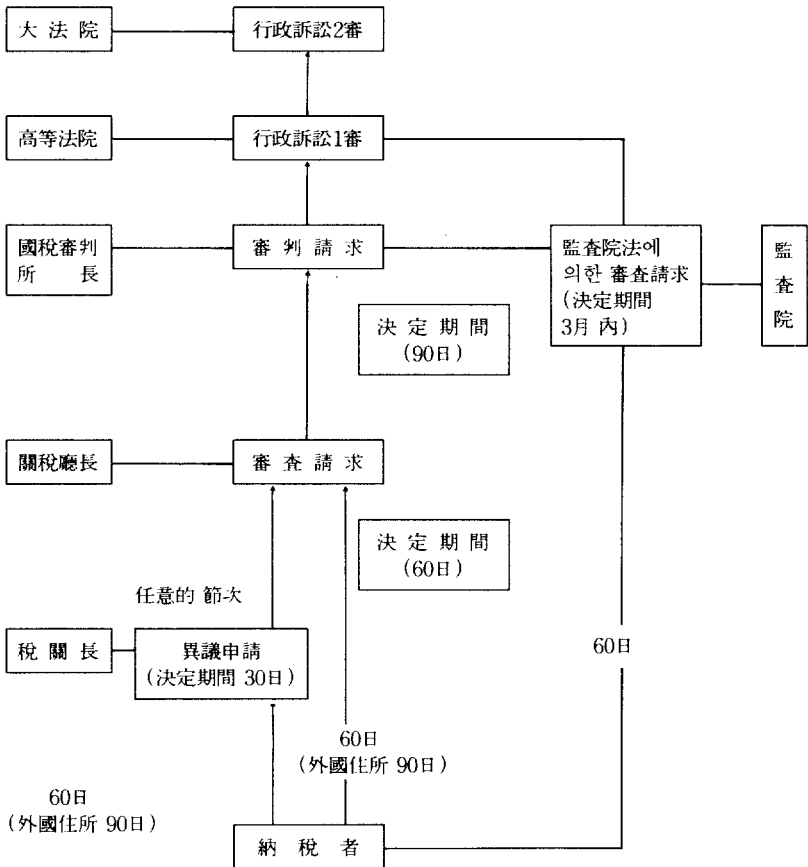
㉡ 違法한 關稅徵收處分이라 함은 關稅의 徵收要件(납세고지, 독촉 등)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의 징수처분을 말한다. 이를테면 독촉장 발부없이 행하는 체납처분은 이에 해당된다.

㉢ 不當한 關稅賦課處分은 과세요건이 제대로 구비되었지만 그 처분의 결과가 다른 납세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를테면 關稅評價에 있어서 똑같은 내용의 수입물품이 달리(고액으로) 評價된 경우의 부과처분은 이에 해당된다.

㉔ 不當한 關稅徵收處分은 징수요건이 제대로 구비되었지만 그 처분의 결과가 다른 納稅義務者의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징수처분을 말한다. 이를테면 체납처분의 제1단계로서 압류를 함에 있어 지나치게 過多押留를 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징수처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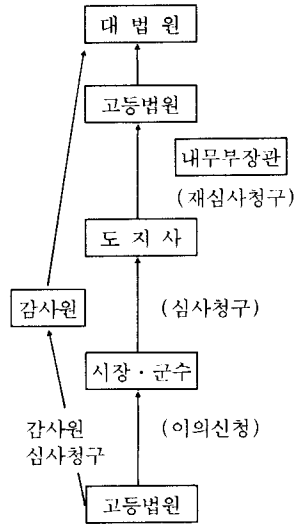
㉕ 필요한 관세처분의 부작위라 함은 關稅行政當局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처분을 행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를테면 직권으로 압류해제를 하여주지 아니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된다.

[圖 XI-2] 關稅에 관한 爭訟節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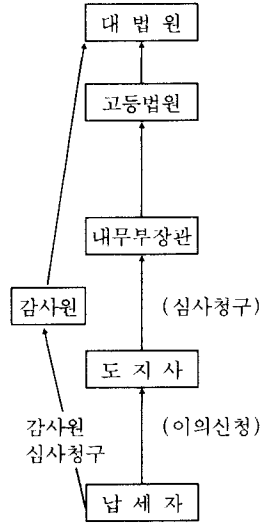


[圖 XI-3] 租稅救濟制度 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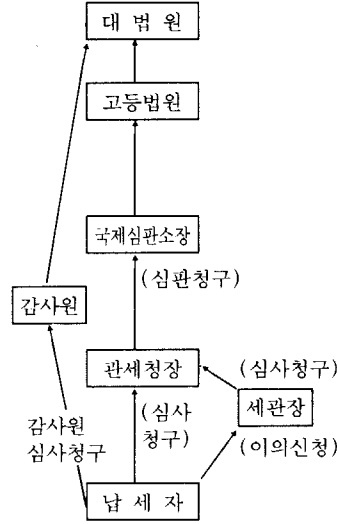
1. 市·郡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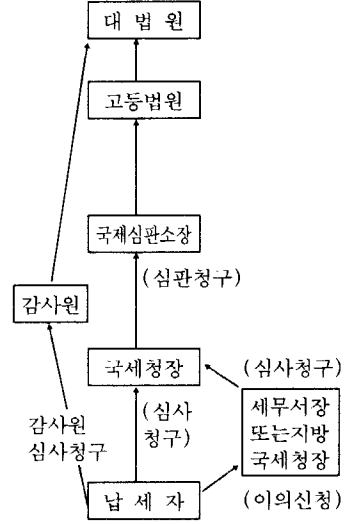
2. 道稅



3. 關稅



4. 國稅



- 註 : 1. 시·군세의 내무부 심사청구와 국세의 이의신청은 임의제로서 선택적 청구사항임.
 2. 청구기간은 모두가 60일(국의거주시 90일)로 되어 있음.
 3. 결정기간은 대부분이 60일로 되어 있으나 국세의 이의신청은 30일, 심판청구는 90일로 되어 있으며 감사원 청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소송의 결정기간은 지방세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소송법에 따라야 함.

③ 監査院의 審査請求를 거친 者가 그 결정에 대하여 不服하는 경우, 國稅基本法 또는 關稅法上의 不服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行政訴訟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監査院의 審査請求는 國稅審判所의 審判請求決定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請求人이 監査院長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日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高等法院에 行政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監査院에 대한 審査請求는 行政審判에서 최종심이라 할 수 있다.

나. 우리나라 關稅審判制度의 特徵

우리나라 關稅審判制度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① 우리나라 關稅審判制度를 포함한 租稅爭訟制度는 영미법계의 예에 따라 行政事件에 대해서도 일반법원에서 管轄審判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울러 行政事件의 特殊性을 고려하여 租稅審判前置主義, 職權調查 등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의 색채도 가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關稅審判制度의 不服節次는 원칙적으로 審査請求, 審判請求의 2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納稅者의 선택에 따라 審査請求 이전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어 선택적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③ 關稅廳長에게 審査請求가 제기된 때는 關稅廳長은 關稅審査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④ 關稅의 賦課·徵收에 관한 關稅審判은 원칙적으로 行政審判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租稅의 專門性·技術性을 고려하여 行政審判法을 배제하고, 關稅法 절차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運營하고 있다. 다만, 關稅 不服請求는 特別行政審判 節次라 할 수 있으므로 關稅法 및 國稅基本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行政審判에 관한 一般法인 行政審判法에 따라야 한다.

3. 現行 關稅審判制度의 運營上 問題點과 改善方向

가. 關稅不服對象 處分 關聯

1) 問題點

1993年 12月 31日字의 關稅法 全面 改正의 結果로 도입된 自進申告納付制度下에서 納稅者가 自진납부한 경우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不服請求에 대한 본안 심리여부가 결정되므로 처분의 존재여부에 대한 의견이 다음과 같이 다양한 편이다. 아울러 1994年度의 각하율 25% 중 대부분이 自진납부로 인하여 발생된 것임을 감안할 때 關稅法上 관련 규정을 시급히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① 自進申告納付한 關稅 등은 關稅法上 審査請求對象이다.

關稅法 제 17조 제2항에 稅關長은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면허후에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同法 施行令 제5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한 輸入通關事務處理規定(關稅廳 고시 제95-934호)에 通關審査를 하는 稅關公務員은 '세번의 정확여부 등' 실질적인 通關審査 사항을 확인한 후 통관가능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더러 關稅法 제 38조(不服의 申請)에 不服對象을 關稅法 등에 의한 처분의 위법, 부당한 처분뿐만 아니라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까지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세번의 정확여부심사는 실질적인 사전세액심사이므로 自進申告納付한 關稅 등에 대해서도 關稅法上 行政處分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關稅 등의 過誤納金의 還給請求 拒絕은 行政處分이다.

關稅法 제24조 제1항에 自進申告 納付한 稅額에 대한 還給請求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還給하여야 하며, 稅關長이 직접 확인한 過誤納金은 納稅者의 請求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還給하

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볼 때 동법 24조는 關稅法 제17조의 자진신고한 關稅 등에 過誤納이 있을 때에는 國稅基本法の 更正請求節次와 같이 還給請求를 받은 稅關長은 실질적 심사를 하여 환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稅關長이 還給拒否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처분으로 보아 關稅法 제38조에 의한 不服請求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關稅 등의 過誤納金의 還給拒否는 關稅法 제38조의 不服請求 대상이 아니다.

關稅法 제24조의 還給規定은 국가는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過誤納金額이나 법에 의하여 還給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 즉시 還給해야 한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을 뿐이며, 課稅官廳에 대하여 過誤納金額이나 還給稅額의 존부 및 범위 자체를 調査결정할 의무 즉, 納稅義務者의 권리 내지 법적이익에 영향을 주는 行政爲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규정은 자진신고납부방식의 關稅 納稅義務者에게 課稅官廳에 대한 過誤納金額이나 還給稅額에 대한 還給決定申請權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으므로 關稅法 제24조에 의한 환급거부는 行政審判으로 救濟받을 수 없고 단지 不當利得返還請求訴로 救濟받아야 한다(대법원판례 85누 883, 1989.1.31).

만약 환급거부를 처분으로 본다면 審査請求期間 60日과 還給請求權 2年을 합친 2年 60日이 權利救濟期間이 되어 租稅債權 債務關係를 조속히 확정짓기 위하여 審査請求 제척기간을 두는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關稅法 제24조의 過誤納金 환급거부는 關稅法 제 38조의 不服請求對象이 아니다.

처분의 존재여부에 대한 이상의 의견에 대해 財政經濟院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過誤納還給 拒否를 行政審判의 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는 有權解釋을 하였다.

關稅의 경우에는 내국세와 달리 감액 수정신고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還給請求를 行政審判 대상으로 보지 않는 大法院 判例(1985누 883)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1993年 關稅法 改正時 동 사항을 감안하여 關稅法 제24조를 보완한 사실이 있으며, 國稅審判所에서도 大法院 판례에도 불구하고 國稅還給 거부처분을 國稅審判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關稅의 경우 過誤納 還給 거부처분을 行政審判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 대부분의 신고납부한 誠實納稅者의 權利救濟手段을 제한하게 된다(민사상 국가를 상대로 不當利得返還의 訴를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稅關長의 過誤納 還給의 거부처분을 行政審判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改善方向

關稅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納稅義務者가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납세신고한 세액에 過不足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보정하는 方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정정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한 후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納稅義務者가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도 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救濟의 길을 열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수정신고하는 방법 이외에 過誤納 還給申請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過誤納 還給申請을 접수한 稅關長이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관세법 제24조 제1항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법적논란을 해소해 나가면 될 것이다.

또한 關稅法 제17조 제5항에 의하면 稅關長은 納稅義務者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關稅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 수리전 세액심사를 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過不足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更正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稅關長이 직권에 의하는 경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자진납세한 納稅義務者가 更正申請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更正申請을 받은 稅關長은 60日 以內(關稅審査 등 不服請求提起 기간인 60日을

고려)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어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나. 不服請求期間 關聯

1) 問題點

關稅法, 國稅基本法 및 地方稅法上에는 異議申請이나 審査請求의 不服請求期間에 있어서 天災地變 기타의 사유로 異議申請이나 審査請求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日 내에 異議申請이나 審査請求를 할 수 있는 명문규정을 각각 두고 있으나 監査院에 대한 審査請求의 경우에는 監査院法上 이와 관련한 명문규정이 없고, 關稅法, 國稅基本法, 地方稅法, 監査院法 공히 異議申請이나 審査請求에서 인정하고 있는 請求期間의 연장관련 명문규정이 審判請求의 경우에 없는데, 不服申請 단계별로 이러한 차이를 두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데도 차이를 둔 것은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참고로 關稅法이나 國稅基本法上의 異議申請이나 審査請求(監査院法의 규정에 의한 審査請求 포함)의 경우 공히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日(납세자가 외국에 거소를 둔 경우에는 90日) 내에 제기하도록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나(關稅法: 제39조 제4항 및 제43조 7의 제2항, 國稅基本法: 제61조 제4항 및 제66조 제5항, 監査院法: 제44조 제1항) 地方稅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異議申請의 경우에만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日(납세자가 외국에 거소를 둔 경우에는 90日) 내에 제기하도록 명문규정을 두고 있어 審査請求의 경우에는 納稅者가 外國에 居所를 둔 경우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法間에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2) 改善方向

監査院에 대한 審査請求 및 關稅法, 國稅基本法, 地方稅法上的 審判請求의 경우에도 天災地變 기타의 사유로 각각 審査請求 및 審判請求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日 이내에 審査請求 및 審判請求를 할 수 있는 명문규정을 두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地方稅法上 審査請求의 경우에도 다른 법의 예와 같이 납세자가 외국에 거소를 등 경우에는 90日 내에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제기할 수 있도록 명문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 關稅審判制度 法體系關聯

1) 問題點

위임입법에서의 일반적·포괄적 위임은 인정될 수 없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별적·구체적 위임이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권리와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법에 근거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고 行政規則에 의존하는 예가 많다.

예컨대, 關稅法 제38조 단서에 그 처분이 關稅廳長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審査請求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審査業務處理規定(關稅廳 훈령 제95-532) 제6조(異議申請과 審査請求와의 관련) 제3항 제38조 단서에서 關稅廳長이 調查決定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경우를 '關稅廳長 이외에도 本部稅關長 및 中央分析所長의 調查·決定·解釋·回信에 의한 처분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 不服請求權者가 異議申請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審査請求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불명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것은 위임입

법의 범위를 넘어선 租稅法規 체계상의 誤謬라 할 것이므로 시급히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2) 改善方向

上位法에서 정한 범위보다 下位法令에서 확대 해석하여 규정한 내용들은 차기 상위 및 下位法令 改正時 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納稅者의 權益이나 財產權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行政規則의 규정은 가급적 關稅法令에 명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라. 押留財產의 公賣關聯

1) 問題點

國稅徵收法(제61조 제3항) 및 地方稅法(제58조 제10항)에 의하면 國稅基本法 및 地方稅法에 의한 異議申請·審査請求 또는 審判請求가 계류중에 있는 國稅 및 地方稅의 체납으로 인하여 押留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 申請 또는 請求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公賣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關稅法이나 監査院法에는 공매정지의 예외 규정이 없는데, 이는 權利救濟에 관한 法間의 衡平이 맞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改善方向

關稅法에 의한 異議申請·審査請求 또는 審判請求가 계류중에 있는 關稅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도 그 申請 또는 請求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公賣할 수 없도록 입법화하여야 할

것이고 監査院法에 의한 審査請求가 계속 존치되어야 한다면 監査院法上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 監査院 審査請求關聯

1) 問題點

監査院法 제43조에는 國稅基本法, 關稅法 및 地方稅法の 不服節次와는 별도로 監査院에 審査請求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監査院의 審査請求는 國稅審判所의 審判請求決定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國稅基本法 제55조 제5항, 關稅法 제38조 제5항). 따라서 처분청 또는 상급관청에 대한 不服節次 外에 납세자에게 별도의 不服節次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선택기회를 많이 주는 혜택이 있다고 보여지나 租稅審判의 裁決機關은 租稅法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므로 一般行政에 대한 직무감찰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監査院에게 전문분야인 租稅審判을 재결토록하는 것은 立法上 타당치 않다고 본다.

2) 改善方向

監査院의 審査請求는 納稅者의 權利救濟의 기능보다는 관계기관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하여 行政運營의 改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權利救濟機能을 위주로 하는 審判請求機能까지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 監査院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監査院 審査請求의 존치문제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바. 關稅審查委員會 運營關聯

1) 問題點

關稅廳長에게 審査請求가 제기된 경우에는 關稅廳長은 關稅審查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審査請求의 대상이 각하 사유에 해당하거나 경미한 사항인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關稅審查委員會에 회부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도록 關稅審查實務協議會가 설치되어 있다.

關稅審查委員會는 모두 13인으로 구성(委員長: 關稅廳 次長, 委員: 法務部와 通商產業部 所屬의 局長級 각 1人, 關稅廳長이 지정하는 關稅廳 所屬 局長級 4人 이내 및 財政·經濟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者로서 關稅廳長 委囑 6人 이내)되어 있는 반면 國稅廳審査委員會는 모두 11인으로 구성(委員長: 國稅廳 次長, 委員: 國稅廳長이 임명하는 國稅廳 所屬 局長級 4人과 법률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者로서 國稅廳長 委囑 6人)되어 있다. 양 위원회의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 참여비율이 關稅廳 對 國稅廳이 65% 대 42%로서 關稅廳의 경우 17%나 공무원의 참여비율이 높은 점을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關稅審查委員會의 關稅審查 결정에 있어 처분청의 의견을 존중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同 委員會는 부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바, 不服請求人 입장에서 보면 언제 不服請求審査가 이루어질지 모르게 되어 不服請求에 대한 權利救濟가 상당기간 불명확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不服請求人에게 行政便宜 爲主의 한 행태로 비춰지기 쉽다.

2) 改善方向

關稅審查委員會의 구성에 있어 공무원보다 민간인을 더 많이 충원(적

어도 國稅審査委員會 수준)하여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關稅審査決定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同會議도 매월 개최일을 지정하여 그날에는 반드시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權利救濟 일정을 명확히(trans-parent)하여 稅關顧客의 입장에서 權利救濟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 稅額納付延期申請制度 關聯

1) 問題點

郵便物 등 賦課告知對象物品의 경우와 自進申告納付制 중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關稅債權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輸入申告 수리 후 稅額審査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財務部令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 輸入申告 수리 전에 신고된 納付稅額을 심사하여 關稅額이 확정되는 경우에 納稅義務者가 납세신고한 것보다 많은 關稅를 내도록 심사된 사례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하여 조정된 關稅는 동 조정된 關稅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집행부정지원칙을 채택하여 納稅義務者가 同 關稅를 납입한 연후에 異議申請 등 不服請求 절차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너무 일방적인 行政便宜 爲主로 賦課·徵收處分을 하는 문제가 있다.

2) 改善方向

賦課告知 對象物品은 납세고지 후 15日 以內에 關稅를 납부하여야 하고 自進申告納付 對象物品 中 신고된 납부세액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심사하는 경우에는 輸入申告 受理 後 15日 以內에 조정된 당해 關稅를 납부하여야 하나 納稅義務者가 稅額이 과다하게 부과 또는 산정되었다고 하여 不服請求를 하는 경우에는 일단 稅關長과 納付義務者間에 의견이 일

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關稅를 납부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받고 세액납부 연기신청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이러한 방안강구시 세금납부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 不服請求의 남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納稅義務者가 질(敗訴)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보완대책을 연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동 문제 연구와 관련되는 關稅法 관련 法條文은 제42조 단서 규정임).

아. 異議申請制度 運營關聯

1) 問題點

異議申請은 違法·不當한 행정처분을 한 稅關長에게 자기반성의 기회를 주어 稅關長으로 하여금 자율적 시정을 하는 길을 열어 줌과 동시에 납세자를 신속하게 救濟해 주는 바람직한 不服請求制度라 할 수 있다. 최근의 금액 및 건수대비 認容率은 공히 10% 미만 또는 10% 수준에 각각 머물고 있는바, 이는 法·行政規則 해석상의 오류에 따른 감사의 지적을 우려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2) 改善方向

異議申請에 대해 稅關長이 직접 職權是正할 경우 책임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각 稅關別로 민간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異議申請協議會의 의결에 따라 職權是正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자. 請求人 適格關聯

1) 問題點

不服請求를 할 수 있는 者는 違法·不當한 處分에 의해 權利 또는 利益의 侵害를 받은 者 또는 필요한 處分을 받지 못한 者를 말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連帶納稅義務者는 納稅義務가 있는 者로서 處分의 직접적인 상대방이므로 請求人 資格이 있는 것이 명백하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즉 제2차 納稅義務者 또는 納稅保證人 등이 주된 納稅義務者에 대한 부과·징수처분에 대하여 請求人 資格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請求人 資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대법원 1981.3.18 선고, 80수48 판결 등)하고 있어 실질적인 당사자가 權利救濟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결과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2) 改善方向

본래 納稅義務者가 不服節次에서 적절히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제2차 納稅義務者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제2차 納稅義務者에게도 請求人 適格을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카. 同一 또는 類似事案 處理 問題關聯

1) 問題點

소송단계에서 처분청의 원처분과 다른 결정을 내린 경우 課稅關廳에서는 당해 사건만을 救濟해 주고 있는 입장이어서 訴訟을 제기하지 않은 납세자는 또다시 關稅審判을 거친 후 비용이 많이 드는 訴訟을 거쳐야 하는 부당함과 번거로움을 초래하여 결국 稅關에 대한 불신의 요인이 되

고 있다.

2) 改善方向

당초 부과처분이 잘못되어 國稅審判所나 法院에서 밝혀진 때에는 동일 또는 유사사안에 대해서는 그 이후 또는 그 이전을 불문하고 이를 존중하여 救濟 처리해 주어야 할 것이다.

실혹 類似事案에 대하여는 監査院의 감사 염려가 있다고 하면 적어도 동일사안에 대하여는 全 國稅關을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여 일괄 환급처리해 주도록 하는 것이 納稅義務者인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稅關象 정립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ⅩⅡ. 現行 關稅士制度的 運營上 問題點과 改善方向

1. 問題의 提起

關稅士 業務 분야에도 무한경쟁의 바람은 곧 불어닥칠 것 같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확대로 輸出入物量이 계속 증가하여 經濟環境이 量的으로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품이 계속 개발되고 새로운 國際運送方式의 이용에 따른 貿易慣行이 도입되며, 全世界貿易業界는 EDI에 의한 서류없는 貿易節次를 실현하는 등 世界貿易의 관행과 절차는 크게 변모하고 있다.

최근 수출입 화주들은 화물의 荷役, 運送, 保管, 通關 등 일련의 貿易 관련 절차에서 일관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1995年 1月부터 우리나라는 通關서비스業種이 시장개방되었고 1996년부터 陸上運送業이 개방(運送業은 1995년에 倉庫業은 1993년에 각각 개방)되어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의 陸上運送業體가 通關法人을 설립하여 通關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들 外國通關法人이 外國行商運送業體와 연계하여 海上運送되는 物品通關 위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내 通關業 시장을 크게 잠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무한경쟁시대에서 물류비용의 절감은 우리 상품의 경쟁력 제고에 큰 動因이 되고 있는바,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EDI 運營 등 通關節次가 크게 간소화 됨에 따라 關稅士 無用論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貿易이 특수한 분야이고, 通關節次가 까다로운 때에는 關稅士의 역할이 중요하였으나 通關節次가 간소화되고 稅番分類, 評價, 기타 通關節次에 관하여 稅關 또는 關稅廳에서 직접 안내함에 따라 關稅士의 가

치가 저하되고 있고 1980年代 以前에는 稅關의 通關여부가 사업의 손익에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므로 關稅士의 業務領域이 貿易節次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정 받았으나 최근에는 運送·保管 등이 사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通關節次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關稅士는 稅關窓口的 通關만 業務範圍로 하는 데 비하여 運送業者는 運送·保管·通關에까지 貨主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關稅士의 業務는 運送·保管過程의 일부로 縮小·格下되고 있다.

2. 關稅士制度的 運營現況

가. 關稅士의 資格要件

關稅士法上 關稅士가 될 수 있는 者는 ① 關稅士 시험에 합격한 者 ② 일반직 公務員으로 10年 以上 關稅行政에 종사한 者 중 5級 以上 公務員으로 5年 以上 재직한 者로서 大統領령이 정하는 연수를 마친 者 ③ 一般職 公務員으로 20年 以上 關稅行政에 종사한 者 중 大統領령이 정하는 특별전형에 합격한 者로 규정하고 있다.

關稅士試驗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되어 있는바, 현행 關稅士法上 關稅士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關稅士 試驗科目

〈제1차 시험과목〉

1. 行政法概論
2. 關稅法概論
3. 對外貿易法 및 外國換管理法
4. 貿易英語

〈제2차 시험과목〉

1. 關稅法(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關稅 등 還給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2. 關稅率表 및 商品學
3. 內國消費稅法(附加價値稅法, 特別所費稅法, 酒稅法에 한한다)
4. 貿易實務

또한 關稅士試驗에 있어서 시험의 특전사항으로서 워드프로세서 및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이 있는바(關稅士法 施行令 제16조) 이를 소개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분야 자격증소지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과목 만점의 5% 이내를 최고점으로 〈表 Ⅹ-1〉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하며 동 가산은 매과목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한다.

〈表 Ⅹ-1〉 워드프로세서 및 情報處理分野 資格證 加算比率

| 자 격 증 |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 |
|---------------|---------------|-----------------|------------------------------|----------------|
|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 등급 | 정보처리기사 1급 이상 | 정보처리기사 2급, 정보처리 기능사 1급 | 정보처리 기능사 2급 |
| | 가산비율 | 5% | 4% | 3% |
| 워드프로세서 | 등급 | 1급 | 2급 | 3급 |
| 자 격 증 | 가산비율 | 5% | 4% | 3% |

나. 關稅士의 營業組織 形態別 分類

1) 一般의인 類型

關稅士法上 通關業務를 취급할 수 있는 關稅士 등의 營業組織 形態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通關業者

1975年 關稅法 改正 以前 通關業者 자격을 취득하여 현재 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者(關稅士法 附則 제8조)

② 關稅士

關稅士는 個別 또는 合同으로 營業을 할 수 있으며 綜合貿易商社 등에 고용되어 貨主名義通關도 할 수 있다.

③ 關稅士法人

關稅事務所의 영세성을 탈피하고 대형화함으로써 通關節次의 조직적 이행과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3인 이상의 關稅士를 사원으로 하여 구성하는 법인으로 關稅士法上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商法上 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④ 通關取扱法人

運送·保管·荷役을 業으로 하는 법인 또는 동 법인이 출자한 법인은 運送·保管·荷役 등을 위탁받은 물품에 한하여 通關節次를 이행할

〈表 Ⅱ-2〉 關稅士 資格 取得形態別 開業 現況

(單位: 名)

| | 통관업자 (관세법 부칙7-7) | 전과목 (관세법 159-1) | 과목면제 (관세법 159-1-1) | 특별전형 (관세법 159-4) | 자동 (관세법 159-1-2) | 계 |
|------------|------------------------|-----------------------|--------------------------|------------------------|------------------------|-------|
| 1976~1994년 | 137 | 63 | 302 | 283 | 295 | 1,080 |
| 1995 | | | | | 7 | 7 |
| 총 계 | 137 | 63 | 302 | 283 | 302 | 1,087 |
| 사망및반납 | 47 | 1 | 22 | 16 | 20 | 106 |
| 현 소 지 자 | 90 | 62 | 280 | 267 | 282 | 981 |
| 개업관세사 | 53 | 38 | 161 | 126 | 67 | 445 |
| 가용관세사 | 37 | 24 | 119 | 141 | 215 | 536 |

註: 1995年 10月末 현재임.

資料: 關稅廳.

수 있다.

開業 關稅士 中 稅關出身 이외인 者 (全科目試驗 合格者, 舊 通關業者)는 91명으로 전체의 20%에 불과하고 資格證所持者의 開業率은 45.5%에 이르고 있으며 55세에서 65세 사이가 전체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表 Ⅺ-3〉 關稅士 年度別 開業現況

(單位: 名)

|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
| 자격소지자 (A) | | | | | | 981 |
| 개업자수 (B) | 357 | 364 | 376 | 374 | 430 | 445 |
| 개업비율 (B/A) | | | | | | 45.5% |

註: 1995年 10月 末 현재임.
資料: 關稅廳.

〈表 Ⅺ-4〉 關稅士 年齡別 開業現況

(單位: 名, %)

| | 34세 이하 | 35~39 | 40~44 | 45~49 | 50~54 | 55~59 | 60~64 | 65~69 | 70~74 | 75세 이상 | 계 |
|----|-----------|-------|-------|-------|-------|-------|-------|-------|-------|-----------|-------|
| 인원 | 9 | 15 | 36 | 42 | 50 | 93 | 85 | 62 | 39 | 14 | 445 |
| 비율 | 2.0 | 3.4 | 8.1 | 9.4 | 11.2 | 20.9 | 19.1 | 13.9 | 8.8 | 3.1 | 100.0 |

註: 1995年 10月 末 현재임.
資料: 關稅廳.

2) 關稅士法人制度

가) 關稅士法人의 意義

① 概念

1981年 12月 31日 關稅法の 改正으로 關稅士事務所를 法人으로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 새로 制定된 關稅士法에서도 關稅士法人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존의 關稅法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동법에서 通關節次의 조직적 이행과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3인 이상의 關稅士를 사원으로 구성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關稅士法 제5장) 이를 關稅士法人이라고 한다.

通關業務는 企業性과 公益性의 양면을 지니고 있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通關節次의 이행을 인수하는 반면에 수출의 지원이라는 차원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니 신속·정확한 업무의 집행이 요청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關稅士法은 이러한 양면성을 고려하여 通關節次를 조직적으로 이행하고 通關業務 수행자의 대외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3인 이상의 關稅士를 구성원으로 하여 정관 작성 등 상법상의 법인 설립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關稅廳長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립 절차는 상법의 규정 외에 關稅士法 및 關稅士法 施行令에서 關稅士法人의 인가 신청의 요령을 규정하고 있다.

② 法的 性質

關稅士法人은 通關業務의 수행을 위하여 3인 이상의 등록 關稅士를 사원으로 하여 설립되는 營利社團法人이다.

通關節次의 이행이라는 목적하에 결합한 인적 합체에 법인격이 주어진 것으로 關稅士法人에 의하여 關稅士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關稅士法 제17조 제5항) 간접적으로 그 법적 성격이 합명회사임을 암시하고 있다.

合名會社는 실질적으로 법인이면서도 조합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關稅士法人의 내부법률 관계에 관한 한 상법의 규정 외에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많이 적용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합명회사는 자본의 결합적 측면보다는 구성원 개인의 특성이 강한 인적회사인 바, 이는 전문인으로서 關稅士의 직무가 고려된 것이라 할 것이다.

③ 通關取扱法人・合同關稅事務所와의 關係

通關取扱法人이란 貨物の 運送・保管・荷役을 業으로 하는 法人 또는 그 법인이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關稅廳長의 허가를 받아 通關業을 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한다. 通關取扱法人도 법인격을 가지고 通關業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는 면에서 關稅士法人과 동일하다.

그러나 通關取扱法人은 通關業을 행할 수 있는 通關節次의 범위가 通關取扱法人 또는 그 通關取扱法人이 출자한 법인이 運送・荷役・保管을 위임받은 화물에 한하여 通關節次를 행할 수 있다.

또 關稅士法人이 그 조직면에서 3인 이상의 關稅士로 구성된 인적요소가 강한 법인임에 반하여 通關取扱法人은 물적요소에 기초를 둔 영리법인으로서 다만 通關節次의 이행 필요상 關稅士를 채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로 물적회사의 전형인 주식회사가 대부분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볼 때, 通關取扱法人은 화물의 運送・荷役・保管業務가 主業務이고 通關節次의 이행은 附隨業務로서의 성격을 띤 것이라고 보이므로 關稅士法人의 業務와는 그 主와 從이 바뀌어진 것이다.

그러나 合同關稅事務所의 경우는 關稅士 法人과 매우 유사한 외형을 갖는다. 특히 2인 이상의 合同關稅事務所의 경우는 더욱 뚜렷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지만 법 형식적으로 合同關稅事務所는 그 자체에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은 조합임에 불과하지만 關稅士法人은 그 구성원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률행위의 효과의 직접적 귀속주체가 되고 合同關稅事務所는 그 構成關稅士 개개인에게 별률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關稅士法人을 구성하는 각 關稅士는 關稅士法人이라는 한 법주체의 機關으로서의 존재밖에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에 흡수되어 버리고 독립된 법적 주체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關稅士法人과 合同關稅事務所間에는 그 영업지의 범위에서도 차이가 있다.

合同關稅事務所가 通關節次를 행하는 稅關 혹은 稅關의 出張所에서만

通關業 기타 關稅士의 직무를 행할 수 있지만(關稅士가 3人 이상인 合同關稅事務所는 開業申告를 한 稅關 또는 稅關出張所 管轄구역 이외에 별도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關稅士法人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고 다만 關稅廳長의 關稅士法人의 인가시에 영업구역의 제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을 따름이다(關稅士法 施行令 제28조 제3항).

그 외에도 법인과 개인기업의 일반적 차이인 세무회계상의 차이와 손해와 이익의 분담면에서도 다름은 물론이다. 적어도 合同關稅事務所보다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分業化되고 강화된 단체가 關稅士法人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關稅士法人制度的 長短點

① 公信用 提高

關稅士法人은 우선 3人 이상의 關稅士가 구성요소다.

資本的 側面에서 3人 이상이 투자를 하므로 물적기초가 튼튼하여지고 다수인이 業務를 분장하므로 分業化와 專門化가 이루어져 專門業務로서 通關業務 遂行에 능률을 기할 수 있어 사회의 신뢰도가 증대하게 된다.

法人은 人的要所와 物的要所의 결합에 법 주체성이 주어진 것이지만 일단 성립하면 개개인의 인격을 떠나 하나의 사회적 실체로서 존재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法人은 효율적인 조직으로 分業化를 달성하고 독자적 사회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分業化에 의한 전문성의 제고는 업무의 신속·정확으로의 이행을 의미하므로 이것이 공신력의 기초가 된다.

② 入·退社 制度

關稅士法人은 商法上 合名會社의 사원 入·退社 규정에 따라 간단한 入·退社의 절차로 법인의 확장, 혹은 축소가 가능하다. 合同關稅事務所의 關稅士 增減時 그 복잡성을 고려하여 보면 법인의 경우는 지분의 評價에 의하여 入·退社가 쉽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③ 事務所의 數

關稅士法施行令 제28조 제③항은 關稅士法人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 關稅廳長은 通關節次의 조직적 이행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무소數의 조정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關稅士法人은 法人 아닌 關稅事務所와 영업구역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규정은 關稅士法人制度의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에 가장 중요한 인자가 된다. 關稅士法人이 성립됨으로써 영업구역이 확대됨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④ 稅制上の差異

關稅士法人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하여야 한다(法人稅法 제62조). 그러나 개인 關稅事務所는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만 複式簿記義務者다.

따라서 2억원 미만인 關稅事務所가 帳簿를 비치·기장하는 경우는 소득금액의 10%의 기장세액공제를 받는다(소득세법 73조). 그러나 關稅士法人의 構成員은 定額給料과 配當利益의 합계가 종합소득의 課稅標準이 된다.

3) 通關取扱法人制度

가) 通關取扱法人의 意義

關稅士法 제19조 제1항의 運送·保管 또는 荷役을 業으로 하는 法人과 運送·保管 또는 荷役의 法人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法人은 關稅廳長의 허가를 받아 通關業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유통산업에 있어서 중요시되는 「종합유통 시스템」의 일환으로서 輸出入保稅貨物을 취급하는 運送業, 倉庫業 또는 荷役業을 영위하는 법인과 이런 業을 하는 者가 대부분의 자본인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별도로 설립한 법인(예: 대한통운이 출자하여 설립한 대한통운합진

주식회사)이 關稅廳長의 허가를 받아 자기 회사가 위탁받은 화물에 한하여 運送·保管 또는 荷役과 아울러 輸出入通關 절차를 일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유통서비스에 입각한 원터치 토탈 서비스(One Touch Total Service)를 화주에게 제공하기 위한 通關制度이다.

이와 같이 運送業, 保管業 또는 荷役業과 이와 관련된 輸出入通關을 일원화함으로써 대량물량 증가에 따른 通關業務의 신속과 경제성을 도모하여 능률화를 기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자본 및 시설이 크고 공신력이 있는 법인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通關取扱法人이라고 하는 것이다.

나) 通關取扱法人制度의 沿革

制定 關稅法 및 제15차 改正 關稅法(1967. 11. 29)에서는 運送營業人인 鐵道運送人, 海上運送人 또는 航空運送人이 그 수탁물품에 대하여 수송 도중에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경우에는 通關業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1978年 12月 6日의 제23차 關稅法 改正時에는 제158조 제1항에서 運送·保管 또는 荷役을 業으로 하는 법인과 그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關稅廳長의 허가를 받아 通關業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通關法人制度를 최초로 창설하였는데 그 내용은 새로이 制定한 關稅士法上의 通關取扱法人과 大同小異하다.

다) 通關取扱法人의 許可申請

關稅士法 제29조 제1항에 의해 通關法人을 허가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關稅廳長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34조 제1항).

- ① 法人의 名稱·所在地와 代表者의 住所, 姓名
- ② 本社 및 通關을 하고자 하는 營業所의 所在地
- ③ 保管·運送·荷役業의 免許證寫本

- ④ 채용하고자 하는 關稅士의 姓名 및 資格證寫本
- ⑤ 法人의 財産狀況(그 법인에 출자한 법인의 재산상황을 포함)
- ⑥ 기타 參考事項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通關取扱法人으로 關稅廳長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運送業, 保管業 또는 荷役業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 또한 법인의 재산상황을 제출토록 하여 通關取扱法人의 자산이나 인원, 시설규모, 장비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내주도록 하여 貨主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이행책임을 튼튼하게 하고 있다.

또한 運送業者·保管業者 또는 荷役業者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피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通關取扱法人에 출자한 모법인이회사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關稅士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한 通關取扱法人 허가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취급실적, 기타 허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 ② 關稅廳長이 정하는 通關取扱法人의 通關業遂行 管理, 기타 필요한 사항(기준)에 적합할 것.

또한 關稅廳長은 通關取扱法人이 通關節次를 행하는 稅關의 數·通關業務量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稅士의 數를 증원하게 하거나 通關業을 하는 稅關을 제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새로이 설립되는 通關取扱法人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있고, 기존의 通關業을 영위하는 關稅士와의 共生共存을 염두에 두고서 通關秩序의 維持와 既得權의 保障, 過當競爭의 事前防止 등 입법적으로 通關取扱法人의 허가를 상당히 신중적으로 運營하려는 의도를 살필 수 있다 하겠다.

라) 通關節次의 範圍

通關取扱法人이 輸出入通關節次를 이행할 수 있는 물품은 通關取扱法人 또는 通關取扱法人에 출자한 모회사가 運送·保管 또는 荷役을 위탁받는 물품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關稅士法 제19조 제3항).

〈表 Ⅱ-5〉 稅關別 登錄 關稅士 (開業) 現況

(單位: 名, 個)

| | 개인 자영 관세 사수 | 합동사무소 | | 관세사법인 | | 통관법인 | | 화주명 의통관 업자수 | 통관 업자 수 | 통관 합계 | 사무원 및 종업원 | | |
|-------------------------|----------------------|-------|----------|---------|----------|---------|----------|-------------------|---------------|----------|-----------|---------|-------|
| | | 수 | 관세 사수 | 법인 수 | 관세 사수 | 법인 수 | 관세 사수 | | | | 사무 원 | 종업 원 | 계 |
| 본 청 | 1 | | | | | | | 3 | | 4 | 24 | 18 | 42 |
| 서울세관 | 39 | | | 7 | 13 | 1 | 2 | | | 54 | 279 | 394 | 665 |
| 서구성안동 | 14 | 1 | 2 | 1 | 3 | | | | | 19 | 76 | 99 | 175 |
| 남양해세관 | 5 | | | | | | | | | 5 | 25 | 51 | 76 |
| 안양해세관 | 7 | 1 | 3 | | | | | | | 10 | 29 | 39 | 68 |
| 동해세관 | 1 | | | | | | | | | 1 | 2 | 2 | 4 |
| 소 계 | 66 | 2 | 5 | 8 | 16 | 1 | 2 | | | 89 | 403 | 585 | 988 |
| 부산(용당, 사상, 감해, 창원, 마거주) | 49 | 9 | 18 | 2 | 10 | 1 | 3 | | | 80 | 631 | 742 | 1,373 |
| 산세관 | 1 | 1 | 2 | | 1 | | | | | 3 | 13 | 30 | 43 |
| 동래, 양산세관 포함) | 1 | 2 | 4 | | | | | | | 6 | 29 | 42 | 71 |
| 김해세관 | 11 | | | | | | | | | 13 | 54 | 76 | 130 |
| 창원세관 | 10 | 3 | 6 | | | | | | | 16 | 40 | 71 | 111 |
| 마산세관 | 1 | 1 | 2 | | | | | | | 3 | 6 | 11 | 17 |
| 거제세관 | 1 | | | | | | | | | 1 | 2 | 2 | 4 |
| 소 계 | 74 | 16 | 32 | 2 | 11 | 1 | 3 | | | 122 | 775 | 974 | 1,749 |
| 인천부수안 | 25 | 1 | 2 | | 3 | | 2 | | 1 | 33 | 135 | 229 | 364 |
| 천안세관 | 12 | | | 3 | 5 | | | | | 17 | 43 | 66 | 109 |
| 원산세관 | 8 | | | 1 | 3 | 1 | 2 | | | 13 | 56 | 123 | 179 |
| 안산세관 | 6 | 2 | 4 | | 2 | | | | | 12 | 36 | 74 | 110 |
| 소 계 | 51 | 3 | 6 | 4 | 13 | 1 | 4 | | 1 | 75 | 270 | 492 | 762 |
| 대구구미 | 9 | 2 | 4 | 2 | 4 | | 1 | | | 18 | 83 | 119 | 202 |
| 구미세관 | 3 | 1 | 2 | | | | | | | 5 | 22 | 30 | 52 |
| 포항세관 | 2 | 3 | 6 | 1 | 2 | | | | | 10 | 36 | 65 | 101 |
| 소 계 | 14 | 6 | 12 | 3 | 6 | | 1 | | | 33 | 141 | 214 | 355 |
| 광주목역 | 4 | 1 | 2 | | 1 | | | | | 7 | 14 | 28 | 42 |
| 주산포수세관 | 3 | 1 | 2 | 2 | 10 | | | | | 15 | 19 | 51 | 70 |
| 목포수세관 | 1 | 1 | 2 | | 1 | | | | | 4 | 6 | 5 | 11 |
| 여수세관 | 7 | 1 | 2 | | | | | | | 9 | 34 | 32 | 66 |
| 소 계 | 15 | 4 | 8 | 2 | 12 | | | | | 35 | 73 | 116 | 189 |
| 대전천안 | 9 | | | 1 | 5 | | | | | 14 | 43 | 86 | 129 |
| 전주세관 | 2 | 2 | 4 | | 2 | | 1 | | | 9 | 33 | 39 | 72 |
| 천안세관 ¹⁾ | | | | | | | | | | | | | |
| 소 계 | 11 | 2 | 4 | 1 | 7 | | 1 | | | 23 | 76 | 125 | 201 |
| 김포세관 | 46 | 3 | 6 | | 8 | 4 | 5 | | | 65 | 341 | 446 | 807 |
| 합 계 | 278 | 36 | 73 | 20 | 75 | 7 | 16 | 3 | 1 | 445 | 2,103 | 2,990 | 5,093 |

註: 1. 1995年 10月 末 현재임.

1) 1996년 7월 신설 세관임.

資料: 關稅廳.

다. 關稅士의 報酬

制定 關稅士法에서는 기존 關稅法(제159조)上的 報酬規定에 대한 행정쇄신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報酬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報酬超過基準을 금지하였으며 報酬基準의 게시와 표준계약서 사용 등을 신설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關稅士 報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過多한 受任料 請求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같은 關稅士의 報酬基準은 關稅士會가 關稅士의 직무에 관한 報酬와 그 상한선을 정하여 關稅廳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3. 現行 關稅士制度의 運營上 問題點과 改善方向

가. 關稅士의 營業區域 關聯

1) 問題點

通關業의 신고를 한 稅關 또는 出張所 관할 구역 내에서 關稅士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예외: 부산지역)하고 있어 수입업체가 물품의 반입지별로 關稅士를 선정 通關할 수밖에 없어 貨主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특정지역에 關稅士가 집중하여 사무실 확보난을 초래하는 등 關稅士間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關稅士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한다는 비난과 함께 EDI형 輸出入通關制度의 시행에 따라 영업구역을 제한할 필요성이 점차 감소해 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關稅士의 영업구역 제한은 재고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表 Ⅻ-6〉 關稅士 報酬料率表

關稅士法 第24條의 規定에 依하여 關稅廳長의 許可를 받은 關稅士의 職務에 關한 報酬는 다음과 같다.

| 區 分 | 報 酬 料 率 | 區 分 | 報 酬 料 率 | 區 分 | 報 酬 料 率 |
|---|--|--|--|--|--|
| 1. 通關節次報酬 가. 一般報酬 (1) 輸出 (가) 料率 (나) 最高報酬額 (다) 最低報酬額 (2) 輸入 (가) 料率 (나) 最高報酬額 (다) 最低報酬額 나. 特別報酬 (1) 無換輸出入物品 (가) 輸出 (나) 輸入 (2) 防衛産業用機資材 (가) 料率 (나) 最低報酬額 | 鑑價×1.5/1,000 以下 40,000원 12,000원 鑑價×2/1,000 以下 950,000원 27,000원 10,000원 26,000원 一般報酬料率의 70/100 一般報酬最低報酬額의 70/100 | (3) 輸出用原資材 (가) 料率 (나) 最高報酬額 (다) 最低報酬額 (4) 小麥, 大麥, 쌀, 옥수수, 原糖, 原油, 原綿, 原木, 服料, 소금 (5) 其他 特別한 輸出入 物品(예: 船舶, 航空機) 2. 其他節次代行報酬 가. 還給請求 (1) 還給 書類를 關稅士가 作成하는 境遇 (가) 定額還給 (나) 個別還給 | - 一般報酬率의 70/100 一般報酬最高報酬額의 70/100 一般報酬低高報酬額의 70/100 一般報酬率의 70/100 一般報酬料率의 50/100 關稅上의 委託인이 協議決定 關稅上의 委託인이 協議決定 | 나. 異議申請 및 審査請求와 審判請求 다. 諸證明 라. 關稅相談料 (1) 月定額 (2) 口頭相談料 (3) 書面相談料 마. 關稅士旅費 바. 臨時開慶報酬 | (1) 取消 또는 更正 稅額의 10/100 以下 (2) 書類作成料 건당 20,000원 (다만, 서류작성에 그치는 경우에 한함) 通當 2,000원으로 하되 追加 1通마다 1,000원 80,000원~240,000원 件當 20,000원 件當 60,000원 日當 240,000원 (交通費, 宿泊費 및 其他는 實費) 時間當 4,000원 |

註: 1) 從前 關稅法 規定에 근거하여 1995年 11月 1日에 關稅廳長 承認이 난 사항으로서 새로이 制定된 關稅士法 附則 第2條(經過措置)에 의거 계속 유효.

2) 改善方向

1995년의 경우 輸出入通關件數가 수출 236만 2천건, 수입 280만 6천건 합계 516만 8천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輸出入申告件數에 대해 1996年 7月 1日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신고 즉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 물품을 반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입 물류의 흐름을 촉진하도록 규제완화 차원에서 수출입신고제로 전환하였다. 이렇게 되면 사후에 세액심사를 하게 되고 사후세액 심사에 따라 신고내용에 하자가 많을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신고인인 關稅士에게 문의할 사항이 많으므로 원거리에 있는 稅關의 경우 의사소통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어 關稅士의 영업구역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FAX 등 통신수단의 발달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불편사항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현재의 영업지제한은 稅關의 EDI化가 진전되어 가는 추세에 부응하여 점진적으로 철폐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 關稅廳은 행정쇄신위원회와 협조하여 현재 영업지역을 37개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1996年 1月부터는 영업지역을 보다 광역화(37개지역 → 15개 지역)하고 EDI가 완성되는 1998年 1月부터는 동 영업지역 제한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關稅士法人 關聯

1) 問題點

關稅士法 제17조 제5항을 살펴보면 關稅士法人을 합명회사로 제한하고 있는바, 매년 크게 증가하는 수출입 물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運送, 保管, 荷役, 물류정보 등을 일괄처리하는 「輸出入物流一括處理體制」의 조기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通關業體의 대형화가 필수적

이나 關稅士의 財力과 經營能力이 고려되지 않고 關稅士法人을 합병회사 형태로 제한시킴으로써 通關業務와 倂連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運送, 保管, 荷役 등 輸出入物流一括體制를 구축을 위한 자금조달과 조직구성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改善方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改善方向

최근 輸出入 貨主들이 화물의 荷役, 運送, 保管, 通關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서는 關稅士業이 보다 대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현재의 關稅士法人의 규모와 거액의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우선 업무 관련이 있는 원거리에 소재하는 關稅士 상호간 및 동일지역 내에 소재하는 關稅士 상호간에 關稅士法人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대형화를 점진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 隣接業種의 通關業營爲許容 要求 關聯

1) 問題點

1983年 以後 複合運送周旋業의 通關業(通關法人 형태) 진출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複合運送周旋業體에게 通關法人을 설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논거는 첫째, 複合運送業을 通關法人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신속한 물류흐름을 지연시키고 둘째, 대외개방시 複合運送周旋業體의 國際競爭力 提高를 위하여 모든 複合運送周旋業體에 대해서 通關法人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참고〉

— 複合運送周旋業(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제4호): 타인의 수요에 응하

여 자기의 정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船舶·航空機·鐵道車輛 또는 自動車 등 2가지 이상의 運送手段을 이용하여 화물을 運送하는 事業
 - 海上貨物運送周旋業(海運法 제2조 제5호) : 자기(계약된 외국인 周旋人을 포함한다)의 명의로 船舶에 의한 화물의 運送을 周旋하는 事業

〈表 Ⅺ-7〉 複合運送周旋業 現況

(單位: 億원, 個)

| 자분급 | 5 | 5~10 | 10~50 | 50~100 | 100 초과 | 계 |
|-----|-----|------|-------|--------|--------|-----|
| 업체수 | 131 | 10 | 8 | 3 | 4 | 156 |

註: 1994年 9月 기준임.
 資料: 財政經濟院.

〈表 Ⅺ-8〉 海上貨物運送周旋業 現況

(單位: 億원, 個)

| 자분급 | 2 | 3~5 | 5~10 | 10 이상 | 계 |
|-----|-----|-----|------|-------|-----|
| 업체수 | 298 | 10 | 9 | 10 | 327 |

註: 1994年 9月 기준임.
 資料: 財政經濟院.

2) 改善方向

通關서비스 시장개방에 적극 대비하고 무역관련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關稅士業이 보다 대형화되어 여러 관련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어야 하므로 運送·荷役·保管 등을 겸하지 않는 단순한 運送周旋業體까지 通關法人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여 通關業에 대한 예외를 계속 확대하는 것은 通關秩序 유지 측면, 通關業務의 國際競爭力 제고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보다 더 상세히 설명하면 關稅士法上 通關法人은 貨主에 대한 손해배상 및 이행책임과 성실한 通關節次를 이행하는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運送業, 保管業 또는 荷役業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서는 자본 등 시설이 크고 공신력이 있는 법인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고 “海上 貨物運送周旋人은 運送을 業으로 하는 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관례(1989. 12. 12)와 같이 複合運送周旋人은 수출입 화물의 흐름상 運送, 保管, 荷役 등의 기능을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며 단순한 중개인의 알선 역할만 擔當하고 있기 때문에(Paper Company) 通關法人의 허가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현재 複合運送周旋人 運送, 保管, 荷役과 같이 通關部門은 關稅士를 알선중개하여 일괄처리함으로써 一括運送業務處理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에도 일정한 물적 시설을 갖춘 複合運送周旋業體에게는 通關法人의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고 시장개방에 대비 通關法人을 더욱 건실하게 육성·발전시켜야 하며, 현재까지 複合運送周旋業體들의 법적지위나 책임 등에 관한 근거 규정들이 없는 상태에서 영세한 複合運送周旋業體에까지 通關業을 허용할 경우, 通關秩序 紊亂, 貨主保護 측면의 안전장치 미흡 등의 문제가 많다고 본다.

라. 關稅士 資格試驗 關聯

1) 問題點

關稅士 자격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關稅士 자격취득자(1995. 10 현재) 1,087명 중 일반 응시자는 63명에 불과하고 關稅士 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보더라도 일반 응시자는 3.1%에 불과한데 특별전형자(關稅 行政에 一般職 公務員으로 20年 以上 종사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전형에 합격한 者)의 경우에는 98.2%가 합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關稅士 시험 응시자 중 일반응시자의 합격률이 저조함에 따라 稅關出身이 關稅士를 독점한다는 비난이 대두되고 있다.

2) 改善方向

일반응시자의 대다수가 關稅士를 公認仲介士 등 타자격사와 같이 잘못 인식하여 충분한 수험 준비없이 응시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일반응시자의 합격자수가 적다고 생각되나 여하튼 세관출신이 關稅士를 독점한다는 비난이 점점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시험출제의 난이도를 조정하여 일반응시자의 합격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制度運營面에서의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 關稅士와 關稅士事務員(職務補助者) 資格關聯

1) 問題點

同一 業務에 關稅士와 事務員의 2중구조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자격증이 처리할 수 있는 業務限界가 불분명하고 辯護士, 稅務士 등 다른 資格士制度에는 事務員 資格制度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라 생각된다.

2) 改善方向

關稅士는 關稅士 사무실의 運營經費 지출이 많음에 따라 關稅 관련 受任業務를 얻기 위해 通關業務에 전념하지 못하고 영업에만 몰두함으로써 화주에게 양질의 通關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므로 關稅士 事務員들이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다소나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과 과거에 關稅士 事務員들이 通關秩序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通關秩序를 바로 잡는다는 차원에서 關稅士 사무원의 資格制度를 두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關稅士가 스스로 경험 있는 事務員을 자기 책임하에 쓰면 되는 것이지 정부가 기준을 정하여 꼭 자격

증을 가진 자로 하라는 것은 自律經營原則에 배치된다 하겠으므로 關稅士 事務員 資格制度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바. 關稅士의 營業活動 關聯

1) 問題點

關稅士 業務에 타자, 서류사송 등 노동집약적 業務가 많으며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분야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關稅士가 이러한 노동집약적 業務를 직접 처리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며 서류검토를 실제 수행했는지 여부를 사후에 확인하는 것도 곤란하다. 또한 關稅業務는 他業務에 비하여 종업원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자본과 영업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자본과 영업분야에 강한 無資格者가 關稅士를 고용하는 명의대여·지입제경영 등이 위법사항으로 문제시되고 있다.

2) 改善方向

앞으로 關稅士는 貨主가 필요로 하는 關稅士, 稅關의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關稅士, 업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關稅士의 3가지 방향에서 보다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通關節次에 관련되는 關稅士 업무범위를 보다 확대해 나가는 것이 그 한 방법이라 보는데 예컨대, 稅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권한위임 규정에 의해 넘기거나 세번 사전회시, 민원인의 세번 질의, 關稅還給代行 등 여러 분야로 關稅士가 대할 수 있는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關稅士의 業務領域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명의대여, 지입제경영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關稅士會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정화해 나가는 한편 關稅士法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히 문책하여 關稅士業이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Ⅲ. 現行 關稅行政罰制度의 運營上 問題點과 改善方向

1. 問題의 提起

關稅行政의 기본업무는 수출입 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부정 수출입의 방지이다. 최근 關稅廳은 輸出通關의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와 수입물품 통관의 간소화·자율화를 추진함에 따라 자칫 밀수의 사각지대가 나타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는바, 예를 들면

① 수출 EDI가 시행됨에 따라 전산조작을 통한 허위수출과 외화의 밀반출이 예상되는 등 전산을 이용한 밀수출입사범이 점증할 우려가 있다.

② 통신문이 발달되어 기업의 國際化가 진전됨에 따라 본 지점간의 虛僞輸出入, 가격조작, 외환조작 등 국제거래를 통한 밀수행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③ 國際競爭力이 취약한 農水畜產物의 불법유입이 예상된다.

④ 국가통일정책과 남북교류 확대 측면에서 북한물자의 無關稅化로 중국산 농산물이 북한산으로 둔갑하여 위장 반입될 소지가 크다.

⑤ 貿易規模의 증가로 검사생략 물품이 확대되고 通關이 간소화된 점을 악용하여 過多搬入, 低價申告, 書類變造 등 僞裝搬入 사례가 늘고 있다.

⑥ 생활수준의 향상과 무역규모의 증대로 입출국 인원의 급증, 旅具檢査制度의 혁신으로 旅具檢査 비율의 대폭적인 감소를 틈탄 공항 밀수의 증가가 예상된다.

⑦ 남서해안의 지리적 특성상 밀수선박에 대한 감시가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내국선박을 이용한 공해상에서의 분선밀수가 예상된다.

⑧ 외제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경향이 잔존하고 외국산 농산물에 대해 국내주산단지에서 반입되어 국산으로 둔갑되거나 국산품과 혼합판매하는 등 국내유통질서를 혼란시키고 있다.

⑨ 1990年以後 국민소득 향상과 향락추구 계층의 증가로 마약밀수가 늘어나 마약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되었고, 마약류 운반수단, 은닉수법, 마약출처국 등이 매우 다양하고 갈수록 기묘화·지능화 되고 있다.

⑩ 최근 총기류의 밀반입이 늘어나고 있다. 밀반입된 총기류가 테러 등 폭력조직에 의한 사회적 범죄목적에 이용될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할 것이다.

⑪ 국가간 公正貿易의 실현에 대한 장애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위조 상품 등 知的財産權 침해 물품의 교역은 점차 조직화·대형화되어 이제는 전세계 교역의 8%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

關稅行政의 간소화·자율화 추세를 악용한 범죄 및 밀수행위를 척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현행 關稅行政罰의 수준이 적정한지를 범조별로 分析하여 運營上 問題點을 살펴보고 改善方向을 모색해 본다.

2. 最近 密輸事犯의 實態 및 關稅行政罰制度 現況

가. 最近 密輸事犯의 實態

輸入自由化의 擴大 및 國產品 品質 向上으로 1988년에 약간 감소되는 등 小康狀態를 보이던 密輸事犯 檢舉實績이 交易量 및 出國者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 증가 경향을 보이고, 密輸手法이 더욱 지능화·다양화되고, 정상적인 무역을 위장한 합법가장 밀수가 성행하며, 참깨 등 農水産物을 중심으로 대중국 해상밀수가 증가하고 있는바, 서울地方檢察廳 發刊 『關稅刑罰法』에 分析된 최근 밀수의 유형을 그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表 ⅩⅢ-1〉 最近 密輸의 類型

| | 유형 | 수법 | 주요품목 |
|------------------|-----------------------------------|--|--|
| 무역권승 밀수 | 일반무역권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물품의 세율 및 가격조작 수입물품의 품명, 가격조작으로 수입제한 물품 위장 수입 정상신고 화물 속에 은닉 | 식료품, 기계, 의약품 |
| | 택송품 및 이사회화물 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회화로 가장 밀반입 타화물 속에 은닉 및 초과 반입 | 골프채, 금괴, 가전제품, 모피, 의류, 녹용 등 |
| 항공편 밀수 | 여행자 밀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변은닉: 허리품, 발바닥, 항문 등의 신체 은닉한 부분 여행용구 이용: 가방이중장치 휴대품 이용: 술병속, 통조림속, 골프채속 신변품으로 변형: 목걸이, 버클 등 | 금괴, 보석, 시계, 장식용품 등 |
| | 항공사 직원 가담 밀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하목록 조작에 의한 밀수 | 한약재 등 |
| 선박편 밀수 | 외항선원(냉동물운반선박, 일반외항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내 은닉: 기름탱크속, 선실내 비창 설치 은닉 등 신변은닉: 옷속, 항문 등 공, 영해상에서 분선인수, 인계 휴대품가장 | 금괴, 시계, 전자계산기, 식료품 등 |
| | 부관해리 여행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변은닉: 옷속, 발바닥 등 여행용구 이용: 가방, 이중장치 등 부관해리 반입승용차 이용 은닉: 문짝, 의자 및 트렁크속, 기름탱크속 | 금괴, 시계, 전자계산기, 식료품 등 |
| SOFA 관련 밀수 | 면세물품유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군인, 군속이 한국인과 결탁 매입유출 PX 종업원이 판매가장 부정유출 기존 위안부가 미국인으로부터 용역대가로 받은 물품판매 | VTR 등 가전제품, 커피 등 식료품 |
| | 미군우편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인, 군속이 자가용품 가장 반입유출 한국인이 미군인 명의 이용 반입 유출 | 밍크코트, 고급의류, 의약품 등 |
| | 미군 이사회화물 가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군인, 정상신고 화물속에 은닉 한국인이 미군인 명의 이용 가장 반입 유출 | 호화가구, 가전제품 등 |
| 외화 밀반출 | 여행자에 의한 밀반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변은닉(허리품, 발바닥 등) 휴대품 이용(도자기속, 책갈피속) 여행도구 이용(가방, 이중장치 등) 공항 상주업체직원이 운반 | |
| | 외항선원에 의한 밀반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변은닉 휴대품 이용(옷속 등) | |
| | 수출입물품 가격 조작에 의한 밀수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물품대금 저가결제 차액 해외 유출 수입물품대금 고가결제 차액 해외 유출 | |
| | SOFA대상자 이용 밀반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군인들이 출국이사회화물 또는 휴대품 속에 은닉반출 후 전달 미군 등의 명의이용 | |
| 밀수품 시중 유통 | 각종수법으로 밀반입된 물품 및 부정 유출된 면세품 시중 유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은 창고에 보관 카달로그 판매 부정유출된 통관필증 부착 불특정 수입면장 비치 | 호화외류, 가전제품, 보석류, 일제가전제품, 오락기, 대만산 컴퓨터칩 |

資料: 서울地方檢察廳 發刊, 『關稅刑罰法』 참조.

나. 關稅行政罰의 種類

1) 概況

關稅行政罰은 처벌의 내용에 따라 關稅行政刑罰과 關稅行政秩序罰로 구분되는데 편의상 關稅刑罰, 關稅秩序罰이라고 한다.

關稅犯에 관하여 어떤 것이 犯罪이며 그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法律로는 關稅法 제9장 「罰則」규정이 있고 특별규정으로 서 特定犯罪加重處罰 등에 관한 法律 제6조(關稅法違反行爲의 加重處罰), SOFA 실시에 따른 關稅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法律 제8조(關稅免除物品의 讓渡制限) 등이 있으며 이를 편의상 「關稅刑法」이라 부른다.

關稅犯 處罰節次에 관하여는 關稅法 제10장 「調査와 處分」규정이 있고 특별규정으로서 특가법 제16조(訴追에 관한 特例)가 있으며 關稅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刑事訴訟法을 준용한다(關稅法 제235조).

가) 關稅刑罰

關稅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制度로서 刑法上 刑名이 있는 刑罰을 과하는 것을 말한다. 즉, 懲役, 罰金, 沒收 등의 형을 과하는 關稅法 제179조 내지 제192조가 이에 해당하는 벌칙이며 關稅法上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형법총칙이 적용된다(刑法 제8조).

刑法上 刑의 종류에는 ① 死刑 ② 懲役 ③ 禁錮 ④ 資格喪失 ⑤ 資格停止 ⑥ 罰金 ⑦ 拘留 ⑧ 過料 ⑨ 沒收 등 9종이 있다. 그 輕重은 기재된 순서와 같으며 동종의 형은 長期의 긴것과 多額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長期 또는 多額이 동일한 때에는 그 단기의 긴것과 소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刑法 제41조 및 同法 제50조).

그러나 關稅法上에는 懲役, 罰金, 沒收의 3種이 규정되고 特定犯罪加重處罰 등에 관한 法律 제6조(關稅法 違反行爲의 加重處罰)에는 死刑,

懲役, 罰金の 3種을 규정하고 있어 關稅犯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刑은 死刑, 懲役, 罰金, 沒收의 4種이며 過怠料는 刑法에 刑名이 없는 것이므로 形이 아니다.

〈表 XIII-2〉 關稅行政罰의 要旨

| 죄 | 명 | 법 | 정 | 형 |
|----------------------------|---|---|---|---|
| 제179조(금지품 수출입죄) |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 |
| 제180조(관세포탈죄) |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 | | |
| 제181조(무신고 수출입죄) |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 |
| 제181조의 2(부정 수출입죄)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 |
| 제182조(교사, 방조, 예비, 미수) | | 제1항: 정범에 준함 제2항: 본죄에 준함 | | |
| 제186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 |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2배 이하의 벌금 제2항: 미수범처벌 | | |
| 제186조의 2(감면물품의 용도의 사용죄) | |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된 관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제2항: 200만원 이하의 벌금 | | |
| 제186조의 3 (신고수리 전 반출죄 등) | |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제2항: 200만원 이하의 벌금 | | |
| 제186조의 4(통관절차 위반 등에 관한 죄) | |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
| 제186조의 5 (관세사의 비밀누설죄)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
| 제186조의 6(허위보고죄 등)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
| 제188조(허위신고죄 등) | | 제1항: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200만원 이하의 벌금 | | |
| 제189조(운수기관에 대한 벌칙) |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 |
| 제190조(금지위반에 대한 벌칙) |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 |
| 제191조(명령위반에 대한 벌칙) | | 100만원 이하의 벌금 | | |
| 제192조(보고 불이행죄) | | 50만원 이하의 벌금 | | |

註: 罪名, 法定刑은 法定事項임.

나) 關稅秩序罰

關稅法上的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긴 하나 형법에 형명이 없는 별, 즉 「過怠料」를 과하는 경우로서 關稅法 제192조의 2가 이에 해당한다.

過怠料에 대하여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關稅法上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關稅犯에 대한 公訴時效

확정판결 전에 犯罪가 있었던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그 犯罪에 대한 국가의 刑罰權이 소멸되고 檢사는 公訴提起를 할 수 없다.

關稅犯의 公訴時效에 관하여 關稅法에 규정이 없으므로 刑事訴訟法 제24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① 死刑에 해당하는 犯罪는 15年

② 無期懲役に 해당하는 犯罪는 10年

③ 長期 10年 이상의 懲役に 해당하는 犯罪는 7年

④ 長期 10年 미만의 懲役に 해당하는 犯罪는 5年

⑤ 長期 5年 미만의 懲役 또는 多額 1만원 이상의 罰金에 해당하는 犯罪는 3年

⑥ 多額 1만원 미만의 罰金에 해당하는 犯罪는 1年

時效는 犯罪行爲 終了時부터 진행하고 共犯의 경우는 最終行爲의 終了時부터 全 共犯에 대하여 起算한다(刑事訴訟法 제252조).

時效는 公訴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公소기각 또는 管轄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또한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刑事訴訟法 제253조).

關稅犯에 대하여 通告處分을 한 때에는 公訴의 時效가 중단된다(關稅法 제22조 제③항).

時效의 중단이란 時效의 기초인 사실상태와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실의 발생으로 時效의 진행이 중絶되어 이미 진행된 기간은 무효가 되고

중단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全時效의 진행기간을 계산하는 制度이고 (關稅法, 租稅犯處罰節次法 등에서 채택), 時效의 停止란 時效의 진행이 일시 중지되었다가 중지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나머지 時效가 진행되는 制度이다(刑事訴訟法에서 채택).

3) 關稅犯의 處分

關稅犯의 처분이란 關稅公務員이 關稅犯이 있다고 인정하여 犯人, 犯罪事實 및 증거를 調査한 결과, 犯罪의 존재에 관하여 確證을 얻었을 때 關稅廳長이나 稅關長이 행하는 通告, 告發 등의 행정처분을 말한다.

關稅廳長이나 稅關長은 犯罪의 確證을 얻는 이상 반드시 ① 통고처분을 하든지 ② 고발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犯罪의 혐의가 없을 때에는 沒收할 것으로 인정하여 압수한 물품을 환부하여야 한다.

① 關稅法上的 통고처분이란 關稅廳長 또는 稅關長이 關稅犯에 대하여 關稅 공무원으로 하여금 調査토록 한 결과 犯罪의 確證을 얻었을 때 그 범인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고 罰金에 상당한 金額, 沒收에 해당하는 물품과 追徵金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行政處分이다(關稅法 제22조 제①항).

② 告發이란 關稅廳長 또는 稅關長이 關稅法의 규정에 의하여 關稅犯罪 사실을 검사에게 고지하여 일반형소절차에 따라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刑事訴訟法上 告發이란 犯人 또는 告訴權者 이외의 제3자가 검사나 기타 調査機關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調査와 訴追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調査의 단서가 된다.

그러나 關稅法上的 고발은 關稅廳長이나 稅關長이 犯罪의 確證을 얻은 경우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고발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고발은 검사의 公訴提起의 요건이 되는 것으로서, 임의적이고 고발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 刑事訴訟法上的 고발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다.

〈表 XIII-3〉 通告處分 基準

| 죄 명 | 법 정 형 | 일수유형 | 금 액 기 준 | 비고 |
|------------------------------|---|---|-----------------------------------|----|
| 과세포탈죄 (제180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 | -승무원 -여행자 -PX, APO 이용 -무환수입가장 -기타 | 범칙시가 1,000만원 미만 -포탈세액 500만원 미만 | |
| 무신고수출입죄(제181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무신고수출입범 | 물품원가 1,000만원 미만 | |
| 부정수출입죄(181조의 2)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부정수출입범 | 물품원가 1,000만원 미만 | |
| 밀수품취득죄 등(제186조) |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원가 2배 이하의 벌금 제2항) 미수범처벌 | -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범 | 범칙시가 1,000만원 미만 | |
| 감면 물품의 용도의 사용죄(제186조의 2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된 관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감면물품 용도의 사용범 | 감면세액 1,000만원 미만 | |
| 신고수리전 반출죄 등(제186조의 3)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보세장치장물품 무신고 반출범 | 신고가격 1억원 미만 | |

註：罪名, 法定刑은 法定事項임.

다) 密輸檢舉 實績

최근의 密輸檢舉 實績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 XIII-4〉 密輸檢舉 實績

(單位: 件, 百萬원)

| | | 1994년 누계 | | 1995년 10월 | | 1995년 누계 | | 전년동기대비(%) | |
|------------------|--------------------|----------|---------|-----------|-------|----------|---------|-----------|-------|
| |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 밀 수 입 | 협회의 밀수입 | 656 | 22,181 | 64 | 2,229 | 521 | 30,801 | 92 | 200 |
| | · 공항밀수 | 320 | 9,634 | 37 | 705 | 292 | 8,459 | 103 | 194 |
| | · 해상밀수 | 336 | 12,547 | 27 | 1,524 | 229 | 22,342 | 80 | 203 |
| | 밀수품의 시중 판매 | 1,516 | 8,726 | 84 | 179 | 1,053 | 4,812 | 85 | 60 |
| | 수입 규제물품 위장수입 | 95 | 32,194 | 9 | 4,140 | 73 | 60,149 | 96 | 196 |
| | 가격조작 등에 의한 관세포탈 | 182 | 65,711 | 20 | 1,662 | 142 | 86,251 | 111 | 175 |
| | 관세 부정환급 | 8 | 459 | 0 | 0 | 3 | 3 | 38 | 1 |
| | 소 계 | 2,457 | 129,271 | 177 | 8,210 | 1,792 | 182,016 | 88 | 175 |
| | 밀 수 출 | 협회의 밀수출 | 51 | 1,780 | 3 | 1,091 | 22 | 11,103 | 48 |
| · 공항밀수 | | 39 | 1,130 | 2 | 30 | 12 | 406 | 34 | 40 |
| · 해상밀수 | | 12 | 650 | 1 | 1,061 | 10 | 10,697 | 91 | 2,058 |
| 위조상표 | | 1 | 772 | 0 | 0 | 5 | 256 | 500 | 33 |
| 소 계 | | 52 | 2,552 | 3 | 1,091 | 27 | 11,359 | 57 | 491 |
| 합 계 | 2,509 | 131,823 | 180 | 9,301 | 1,819 | 193,375 | 90 | 186 | |
| 마 약 밀 수 | 밀수입 | 15 | 4,951 | 1 | 15 | 6 | 124 | 50 | 22 |
| | 밀수출 | 0 | 0 | 0 | 0 | 0 | 0 | 0 | 0 |
| | 소 계 | 15 | 4,951 | 1 | 15 | 6 | 124 | 50 | 22 |
| 총 계 | 2,524 | 136,774 | 181 | 9,316 | 1,825 | 193,499 | 88 | 181 | |

註: 1994년 密輸入 空港에 外貨密搬入 實績 1건 1,600만원 포함.

資料: 關稅廳.

3. 現行 關稅行政罰制度的 運營上 問題點과 改善方向

가. 關稅通脫罪와 無申告輸出入罪 處罰 水準 關聯

1) 問題點

關稅通脫罪와 無申告輸出入罪의 처벌에 있어서 그 동안 판례는 상상적 경합범, 예컨대 유세품을 밀수입한 경우에 無申告輸入罪와 關稅通脫罪가 성립되나 상상적 경합관계(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으므로 이때에는 가장 중한 죄인 關稅通脫犯으로 보다가 최근 판례는 보호범의차원에서 다소 입장을 달리하여 “關稅通脫罪의 보호범익은 세정에 의한 국가재정권의 확보”라고 판시(大法院 1961. 3. 31 선고4294 형상8)하였을 뿐만 아니라 無申告輸入罪와의 관계에 대하여도 “關稅法의 보호범익은 유세품에 관한 한 關稅의 확보라 할 것이므로 關稅通脫罪는 물론 유세품에 대한 無申告輸入罪의 범익은 關稅通脫罪의 범익 중에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無申告輸入罪는 關稅通脫罪에 흡수된다”라고 판시(大法院 1984.6.26 선고 84도782, 同 宣告內容 中 無免許라는 용어는 無申告라는 용어로 바꾸어 표기하였음)하고 있다.

이상의 판례의 태도가 다소 상이하다 하더라도 그 동안 關稅法에서 가장 중한 죄로서 다루어 왔던 關稅通脫罪로 처벌하는 것은 동일하다 할 것이나, 최근 關稅率이 계속 하향 조정되는 바람에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아니하면 關稅率이 높은 경우에는 關稅通脫罪가 無申告輸出入罪보다 중하게 처벌되나 關稅率이 낮은 경우에는 關稅通脫罪가 無申告輸出入罪보다 낮게 처벌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중하게 다루어야 할 關稅通脫罪가 無申告輸出入罪보다 낮게 처벌되는 결과가 발생되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과세표준이 1천만원이고, 關稅率이 8, 20, 50%이라고 가정하고 關稅通脫罪로 처벌되면 최고 罰金刑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관세를 8%시 벌금액은 80만원, 20%시 벌금액은 160만원에 불과하고 50%시는 500만원에

달하나 無申告輸出入罪로 처벌하면 最高 罰金刑의 경우 300만원을 물게 되어 과거 關稅率이 높았을 때는 關稅逋脫罪가 가장 중한 벌칙 규정이었으나 關稅率이 낮아진 현재에서는 오히려 無申告輸出入罪가 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유세품에 대한 關稅의 확보가 중요한 보호법익임을 감안할 때 關稅逋脫罪가 가장 중한 處罰을 받아야 함에도 關稅率 인하에 따라 처벌의 수준이 변동된 현 상황을 감안한 관련 法 改正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參考事項〉

罰 則

| 관 세 법 | 내 용 |
|--------------------------|--|
| - 관세법 제180조 (관세포탈죄) |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 |
| - 관세법 제181조 (무신고수출입죄) |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제품원가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2) 改善方向

關稅法上 가장 중한 죄로 다루어 왔던 關稅逋脫罪를 중심으로 하여 계속 同罪를 가장 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無申告輸出入罪의 처벌규정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인 법집행의 합목적성에 적합하다 할 것이다.

나. 不正輸出入罪와 無申告輸出入罪의 區分 및 處罰水準 關聯

1) 問題點

詐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條件 등을 구비하여 不法的으로 輸入申告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不正輸出入罪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

고 판례에 의하면 수출입신고의 수리가 된 내용과 실제로 輸出入된 物品間의 사이에 동일성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無申告輸出入罪에 해당되기도 하고 不正輸出入罪에 해당되기도 하는바, 평상인이 關稅法 제181조의 2(不正輸出入罪)의 법조문을 살펴봐서는 구분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아울러 不正輸出入罪는 법익 침해에 있어서는 無申告輸出入罪, 關稅通脫罪 등과 하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物品原價 이하에 상당하는 罰金刑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關稅刑罰間 處罰의 衡平性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

2) 改善方向

처음부터 輸出入申告에 대해 受理가 되지 않았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輸出入申告에 대해 申告가 受理된 경우 수리된 내용과 실제로 輸出入, 반송된 물품과의 동일성 유무에 따라 無申告輸出入罪에 해당되기도 하고 不正輸出入罪에 해당되기도 하는바, 그 판별기준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大法院 1983.12.13 선고 83도 2278 판결)에서도 동일성의 기준으로 “同種의 物品으로 輸出入免許 부여의 요건이 동일한 물품”을 들고 있다. 즉 위 판결에서 “輸出入申告書 기재물품과 동일성이 있는 물품이라 함은 동종의 물품으로서 輸出入免許 부여의 요건이 동일한 물품을 말하며 동종의 물품이라도 輸出入免許 부여(現在는 輸出入申告의 受理)의 요건이 다른 것은 동일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양파씨앗과 부추씨앗은 동종의 백합과에 속하는 씨앗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는 수입제한 품목이고, 다른 하나는 輸入自由品目으로서 輸入免許 부여의 요건이 상이하어 동일성이 있는 물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 2193호 전원 합의체 판결 : 소수의견 및 보충의견 있음. 1984. 1. 14 83도 2216호 동지). 즉, 이 판결에서 수입자동승인품목인 잔디씨앗을 수입신고하고 수입제한품목

인 상치씨앗을 수입한 경우 無免許輸入(現在 無申告輸入)을 인정하였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83도 2278호 판결). 그리고 수입자동승인품목인 염장마늘을 수입신고하면서 수입제한품목인 신선마늘을 혼합수입한 경우 동일성이 없다고 하여 無免許輸入(現在는 無申告임)을 인정한 판례도 있고(大法院 1983. 9. 27 선고 83도 172호 판결) 主務官廳에 의한 輸入承認과 稅關長에 의한 輸入免許(現在는 輸入申告受理)를 받은 물품과 실제로 다른 물품을 수입하였다면 이 물품이 輸入自動承認物品이라고 하더라도 無申告 輸入罪(現在는 無申告輸出入罪)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대판, 1989. 11. 10 선고 89도 783 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취지를 감안하여 關稅法上의 無申告輸出入罪와 不正輸出入罪의 구분을 명백히 구분하기 위한 法改正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不正輸出入罪는 법익침해에 있어서는 無申告輸出入罪, 關稅連脫罪 등과 하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낮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규정 “3年 以下の懲役 또는 物品原價 以下에 상당하는 罰金”을 “5年 以下の懲役 또는 物品原價 2倍 以下에 상당하는 罰金”으로 上向 調整하여야 할 것이다.

다. 過失犯 處罰 및 罰金刑處分 關聯

1) 問題點

過失이라 함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한 행위”를 말한다. 주의를 태만하지 않았음에도 결과 발생을 예측하지 못한 경우는 過失이 아니고 不可抗力이다. 정상의 주의란 사회의 보통인이 할 수 있는 주의(객관설)의 범위 내에서 다시 행위자 본인의 주의능력을 표준(주관설)으로 하여 정하여 진다(절충설). 부주의로 구성요건에 속하는 위법한 사실을 不知하는 경우를 사실의 과실이라 하고 위법의 인식이 없는 데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를

법률의 과실이라 한다. 過失을 벌함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刑法 제14조) 그 형량은 故意犯에 비하여 경미하다. 關稅法에서는 제189조 내지 제192조의 罪(虛僞申告罪를 제외한 秩序罰)을 범한 者도 過失로 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輸出入 對象物品 및 通關件數가 확대되고 다기화된 輸出入 관련 규정의 수시변동으로 인한 이해부족 등의 과실로 관련 규정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할 소지가 많게 되는데 현행 규정대로 하면 너무 과중하게 처벌되게 되므로 현행 처벌규정을 보다 완화하고 또한 過怠料가 아닌 罰金刑으로 處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前科者로 만드는 사유를 들어 罰金制度를 過怠料制度로 변경하여 원활한 수출입활동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2) 改善方向

上記한 바와 같이 關稅犯도 원칙적으로 고의(범의)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게 하고 예외적으로 일부 秩序犯을 過失犯으로 처벌토록 한 것은 질서범 대상의 행위는 과실의 입증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과실까지도 일률적으로 처벌 가능하여야 關稅行政 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關稅行政의 기본업무는 輸出入 物品의 신속한 통관과 부정수출입의 방지이다. 최근 關稅廳에서는 서류 없는 通關을 위한 EDI 실시로 輸出入 物品(輸入物品은 1996. 7. 1 전면 실시 예정)의 신속한 通關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수입물품 通關節次의 簡素化·自律化에 편승하여 자칫하면 關稅行政 질서를 잘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고 또한 자칫 密輸의 死角地帶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은 通關節次의 簡素化·自律化가 成熟段階에 이르기까지는 두고 보아야 할 과제이며 차후 成熟段階에 진입하게 된 이후에는 과실범 처벌수준을 크게 완화하든지 또는 罰金制度를 過怠料 制度로 전환하든지 그 처벌 방향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라. 罰金刑 水準의 適正性 與否 關聯

1) 問題點

최근 政府는 수출입절차 간소화 작업의 일환으로 輸入免許制를 輸入申告制로의 전환 등을 통하여 稅關長의 재량의 여지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짐차 업계의 자율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러한 업계의 자율기능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은 일응 바람직한 방향이나 정부가 관여하지 아니하더라도 업계가 關稅法에서 정한 제반절차를 잘 준수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關稅刑罰 내지는 秩序罰 制度가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벌과금 수준은 물가의 상승 등을 감안해 볼 때 改正된 지가 오래된 법조문은 당해 법조문의 범익침해를 방지하는데 적절한 수준인지의 여부가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 조문은 1983年 12月 31日 以後, 어떤 조문은 1990年 12月 31日 以後, 기타 조문은 1993年 12月 31日 改正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각 조문별로 罰金刑의 수준 적정성 여부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① 1983年 12月 31日 改正한 이후 現在까지 維持되고 있는 條文

| | 관세법 (개정, 신설일자) | 별 칙 내 용 |
|-------------------------------------|--|---|
| 금지품수출입죄 | 제179조 (개정 1983.12.29)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 관세포탈죄 | 제180조 (개정 1983.12.29)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 |
| 신고수리전 반출죄 등 -보세장치장 물품의 신고수리전 반출죄 | 제186조의 3 -동조 제1항 (개정 1983.12.29)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 -보세건설 물품의 무신고수리전가동 행위에 대한 처벌 | -동조 제1항 후단 (개정 1983.12.29)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 관세사의 비밀누설죄 | 제186조의 5 (신설 1983.12.29)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② 1990年 12月 31日 改正한 이후 現在까지 維持되고 있는 條文

| | 관세법 (개정, 신설일자) | 별 칙 내 용 |
|---|---|------------------------------|
| 통관절차위반 등에 관한 죄 - 통관절차위반죄 | 제186조의 4 - 동조 제1항 (전문개정 1990.12.31)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 - 관세사의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 | - 동조 제2항 (전문개정 1990.12.31)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허위신고죄 등 - 항공기 제조용원료품 감면세 물품 등의 채권 담보제공 사실에 대한 무신고행위 처벌 | 제188조 - 동조 제2항 (전문개정 1990.12.31) |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 명령위반에 대한 벌칙 | 제191조 (개정 1981.12.31) (개정 1990.12.31) | - 100만원 이하의 벌금 |
| 보고불이행죄에 대한 벌칙 | 제192조 (개정 1990.12.31) | - 50만원 이하의 벌금 |

③ 1993年 12月 31日 改正한 이후 現在까지 維持되고 있는 條文

| | 관세법 (개정, 신설일자) | 별 칙 내 용 |
|---|---|--|
| 무신고수출입죄 | 제181조 (개정 1993.12.31) |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 부정수출입죄 | 제181조의 2 (전문신설 1993.12.31)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 밀수품의 취득죄 | 제186조 (개정 1983.12.29) (개정 1993.12.31)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2배 이하의 벌금 |
| 감면물품의 용도의 사용죄 - 용도의 사용 및 무단 양도 행위에 대한 처벌 | 제186조의 2 - 동조 제1항 (개정 1988.12.26) (개정 1990.12.31) (개정 1993.12.31)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된 관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 | 관세법 (개정, 신설일자) | 벌 칙 내 용 |
|--|---|-----------------------------|
| - 동일용도 사용자에게 무단 양도한 행위 처벌 | - 동조 제2항 (개정 1988.12.26) (개정 1990.12.31) (개정 1993.12.31) |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 - 분할납부 승인 물품의 무단 용도변경 및 무단 양도행위에 대한 처벌 | - 동조 제3항 (개정 1988.12.26) (개정 1990.12.31) (개정 1993.12.31) |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 통관절차 위반 등에 관한 죄 | 제186조의 4 | |
| - 보세운반업자 등의 등록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처벌 | - 동조 제3항 (전문개정 1990.12.31) (개정 1993.12.31) |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허위보고죄 | 제186조의 6 | |
| - 수출입신고수리 물품의 보세구역 재반입 명령위반죄 | - 동조 제1호 (전문개정 1993.12.31)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 허위보고죄 등 | - 동조 제2호 (전문개정 1993.12.31)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허위신고죄 등 | 제188조 | |
| - 허위신고죄 | - 동조 제1항 (전문개정 1990.12.31) (개정 1993.12.31) |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 관세사 명의의 무단사용행위에 대한 처벌 | - 동조 제2항 (전문개정 1990.12.31) |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 운수기관에 대한 벌칙 | 제189조 (개정 1981.12.31) (개정 1990.12.31) (개정 1993.12.31) |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 금지위반에 대한 벌칙 | 제190조 (개정 1993.12.31) |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또한 關稅犯에 따라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에 상당하는 벌과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의 벌과금으로써 關稅徵收를 확보하고 通關秩序의 확립을 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서 볼 때 의문이 많다.

① 50만원 以下の 罰金 또는 過怠料

| 관 세 법 | 내 용 |
|-----------------------------|--|
| 제192조 (개정 1990.12.31) | 보고불이행죄에 대한 벌칙 |
| 제192조의 2 (개정 1993.12.31) | 수출입 및 반송신고시 세관장의 장부 기타 관계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요청에 불응한 자 등 |

② 100만원 以下の 罰金 또는 過怠料

| 관 세 법 | 내 용 |
|---|---|
| 제191조 (개정 1981.12.31) (개정 1990.12.31) | -명령위반에 대한 벌칙 |
| 제192조의 2 (개정 1993.12.31) | - 지정장치장에 장치한 내국물품을 장치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자 등 |

③ 200만원 以下の 罰金

| 관 세 법 | 내 용 |
|---|---|
| 제186조의 2 제2항 (개정 1988.12.26) (개정 1990.12.31) (개정 1993.12.31) | -동일 용도 사용자에게 무단 양도한 행위처벌 -분할납부승인 물품의 무단 용도변경 및 무단양도행위에 대한 처벌 |
| 제186조의 3 제2항 (개정 1983.12.29) | -보세건설장 물품의 신고수리 전 사용 행위에 대한 처벌 |
| 제188조 제2항 (전문개정 1990.12.31) | -관세사 명의의 무단사용 행위에 대한 처벌 -항공기 제조용 원료품 감면세 물품 등의 채권 담보 제공 사실에 대한 무신고 행위 처벌 |
| 제189조 (개정 1981.12.31) (개정 1990.12.31) (개정 1993.12.31) | -운수기관에 대한 처벌 |
| 제190조 (개정 1993.12.31) | -금지위반에 대한 벌칙 |

④ 300만원 以下の罰金(또는 1年 以下の懲役)

| 관 세 법 | 내 용 |
|-------------------------------|--------------|
| 제186조의 5 (신설 1983.12.29) | - 관세사의 비밀누설죄 |
| 제186조의 6 (전문개정 1993.12.31) | - 허위보고죄 |

⑤ 500만원 以下の罰金

| 관 세 법 | 내 용 |
|-----------------------------------|---|
| 제186조의 4 제2항 (전문개정 1990.12.31) | - 관세사 명의 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86조의 4 제3항 (전문개정 1990.12.31) | - 보세우반업자 등의 등록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처벌 |
| (개정 1993.12.31) | |
| 제188조 제1항 (전문개정 1990.12.31) | - 허위보고죄 등 |
| (개정 1993.12.31) | |

⑥ 700만원 以下の罰金(또는 3年 以下の懲役)

| 관 세 법 | 내 용 |
|-----------------------------------|------------|
| 제186조의 4 제1항 (전문개정 1990.12.31) | - 통관절차 위반죄 |

2) 改善方向

1995年 이후 WTO 체제의 출범으로 無限競爭 自由貿易時代가 시작되면서 關稅行政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세측면에서의 물류비용을 최소화하고자 輸出入貨物 EDI 通關體制 構築 등 신속 通關制度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이며, 이러한 通關節次의 간소화를 악용한 각종 密輸出入과 國民福祉를 沮害하는 不法 輸出入行爲를 방지하기 위

하여서는 關稅行政罰은 보다 강화되는 방향으로 改正되어야 한다고 본다. 모든 수출입절차는 간소화·자유화해 나가되 關稅法 관련 규정들을 어기는 경우에는 一罰百戒로 다루어야 신속 通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關稅法 제179조부터 제192조까지의 모든 關稅行政罰 관련 법조문별 罰金刑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改善方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 褒賞制度關聯

1) 問題點

關稅法 제240조에 의하면 關稅廳長은 제179조 내지 제181조, 제181조의 2, 제182조 내지 제18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關稅犯을 稅關이나 기타 搜查機關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者 또는 그 犯罪物品을 押收한 者로서 공로가 있는 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關稅褒賞審査委員會의 결정을 거쳐 褒賞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同 規定에 따라 關稅犯 또는 麻藥類事犯 검거유공자에 대한 褒賞金은 당해 사건 검거 금액에 따라 “事件金額에 따른 褒賞基準”에 의거 지급하고, 외화밀반출 적발유공자에 대한 褒賞金은 당해 사건 적발금액에 따라 “外貨密搬出 적발금액에 따른 褒賞基準”에 의거 지급하고 있으며 銃砲類 검거에 따른 褒賞金도 별도 褒賞基準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 褒賞基準에 의하면 公務員의 경우에는 사건당 1인 30만원, 민간인의 경우 사건당 600만원이 원칙이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사건당 실제 국고 수입금에 따라 “國庫 輸入金에 따른 褒賞基準”에 의거 지급하고 있으나 최근 關稅犯이 날이 갈수록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어 신고 없이는 密輸犯을 검거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볼 때 同 褒賞金 수준으로 密輸犯 신고를 촉진해 내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① 事件金額에 따른褒賞基準

(單位:천원)

| 사 건 | 금 액 | 포 상 금 | |
|-------------------|-------------------|-------|-------|
| | | 공무원 | 민간인 |
| 관 세 사 범 | 마 약 류 사 범 | | |
| 10억원 이상 | 좌 동 | 1,500 | 6,000 |
|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 좌 동 | 1,500 | 5,000 |
|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좌 동 | 1,500 | 4,000 |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1,300 | 3,000 |
|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 1,100 | 2,000 |
|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 800 | 1,500 |
| 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 500 | 1,000 |
|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 100만원 미만 | 300 | 500 |
|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 100 | 300 |
|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 | 50 | 100 |
|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 | 30 | 70 |
|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 | 20 | 50 |
| 3만원 이상~10만원 미만 | | 10 | 30 |

註:公務員인 경우 1인당 30萬원 以上 支給할 수 없음.

② 國庫收入金에 따른褒賞基準

(單位:만원)

| 사 건 금 액 | 포 상 금 | |
|-------------|-------------|--------------|
| | 공 무 원 | 민 간 인 |
| 포 상 금 지 급 률 | 실제국고수입금의 5% | 실제국고수입금의 10% |
| 최 고 지 급 한 도 | 200 | 1,000 |

③ 外貨密搬出 摘發金額에 따른褒賞基準

(單位:만원)

| 적발금액(원화환산액) | 포 상 금 | |
|-----------------|-------|-------|
| | 공 무 원 | 민 간 인 |
| 1백만원 이상 | 150 | 800 |
| 1백만원 미만~50만원 이상 | 150 | 500 |
| 50만원 미만~10만원 이상 | 150 | 400 |
| 10만원 미만~5만원 이상 | 130 | 300 |
| 5만원 미만~3만원 이상 | 110 | 200 |
| 3만원 미만~1만원 이상 | 80 | 150 |
| 1만원 미만~5천원 이상 | 50 | 100 |

註:公務員인 경우 1인당 30萬원 以上 支給할 수 없음.

④ 銃砲類 檢舉에 따른 褒賞金

(單位: 만원)

| 검 거 품 목 | 포 상 금 | |
|-----------------|-------|--|
| | 민 간 인 | 공 무 원 |
| 총포류 20점 이상 | 1,000 | * 5점 이상은 포상금 상향 조정이 곤란하여 특진 등 별도 상훈. |
| ~ 19점 이하~16점 이상 | 800 | |
| ~ 15점 이하~10점 이상 | 800 | |
| ~ 9점 이하~5점 이상 | 300 | |
| ~ 4점 이하 | 100 | 30 |

2) 改善方向

종래 賞與金制度에서 褒賞金制度로 전환됨에 따라 關稅犯 申告人에게 주어지던 賞與金이 매우 감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犯罪申告가 현저히 감소되는 추세에 있고, 특히 대형 밀수에 대한 신고도 극히 드문 형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密輸犯이 경제사범으로서 간접사범이므로 같은 密輸犯들간에 경쟁적으로 신고가 되도록 유도하여야 하는데, 제보자가 밀수조직을 등쳐야 하는 위험부담과 褒賞金 수준의 균형이 맞아야 밀수신고가 촉발될 터인데 現行 褒賞金 수준은 그 균형수준(균형수준을 계량화하기는 어렵겠지만)에 극히 미달되므로 현재의 褒賞金 수준을 대폭 올리든지 아니면 賞與金制度 부활을 재검토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이다.

바. 沒收 및 追徵關聯

1) 問題點

禁止品 輸出入罪(關稅法 제179조) 해당 물품은 범인이 소유·점유하던 제3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던 반드시 沒收하여 關稅連脫罪(제180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한함), 無申告 輸出入罪(제181조), 不正輸出入罪(제181조의 2), 密輸出의 取得罪 등(제186조) 해당 물품을 沒收하게 되어 있다. 이들 규정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국내외 農產物 價格差를 노린 農產物密輸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沒收對象이 다량 거대하여 保管하는 데 있어 稅關保管倉庫의 狹小, 管理·處分에 따르는 經費가 많이 드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 改善方向

關稅法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2 및 제186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沒收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沒收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犯人으로부터 追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同 規定 中 “沒收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沒收할 수 없는 때에는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犯人으로부터 追徵한다”는 내용에 있어서 “沒收할 수 없는 때”를 보다 넓게 규정하여 沒收로 인한 稅關 保管場所의 狹小, 管理 등에 많은 인력 및 경비 등이 소요되므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沒收를 하지 않고 追徵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保管管理 및 減却時 등에 따른 제반 관련 비용이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예산을 뒷받침해주든지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關稅政策一般

姜萬洙, 『WTO體制下에서의 새로운 關稅行政方向』, 關稅廳, 1996.

姜玎鎬, 『關稅政策課題의 理解』, 韓國關稅研究所, 1994.

國際經濟研究院, 『戰後 國際經濟 30年史』, 國際經濟研究院, 1977.

郭 俊, 「輸入自由化에 따르는 關稅政策方向에 관한 研究」, 成均館大學
校 貿易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87.

朴相泰, 『關稅論』, 우아당, 1991.

申鉉種, 『韓國貿易論』, 박영사, 1995.

申鉉種·金鎮三, 「韓國의 關稅制度에 관한 小考」, 嶺南大學校, 『社會科
學研究』, 1993.

李春三, 『貿易關係法』, 법문사, 1994.

林弘默, 「우리나라 關稅行政의 變化와 發展政策에 대한 研究」, 延世大學
校 行政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0.

張炳徹, 『關稅法』, 貿易經營社, 1987.

———, 「우리나라 關稅政策의 變遷과 政策方向에 관한 研究」, 大邱大學
校 碩士學位論文, 1987.

崔日煥, 『關稅政策』, 韓國關稅協會, 1975.

韓國關稅研究所, 『關稅法沿革』, 韓國關稅研究所, 1994.

———, 『2000年代 對內外 環境變化와 關稅行政 發展方向』, 1990.

2. 輸出入通關制度

關稅廳 評價協力局, 『輸入物品 即時 搬出制度에 관한 研究』, 1987.

朴光洙, 「韓國의 關稅政策上 通關制度 運用의 改善方向에 관한 研究」, 延世大學校 經營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2.

李秀雄, 「通關管理行政方向」, 『關稅』, 1996.

全國經濟人聯合會, 『競爭力強化를 위한 輸出入通關制度 先進化 課題』, 1995.

3. 基本關稅率制度

金珍洙·安鍾錫, 『經濟與件의 變化와 關稅率構造의 改編方向』, 韓國租稅研究院, 1994.

권성우, 「韓國의 關稅率構造分析」, 계명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4.

朴相泰, 「開放經濟時代의 產業構造調整과 適正關稅率 構造 研究」, 『關稅』, 1990.

신영섭·하병기, 『產業支援強化를 위한 關稅率構造改編』, 產業研究院, 1981.

申鉉種·金鎮三, 「韓國關稅率推移에 관한 소고」, 嶺南大學校產經研究, 1993.

최낙균·신현수, 『UR以後 低關稅率體系下에서의 關稅政策方向』, 產業研究院, 1992.

韓國產業銀行, 『國內產業의 國際競爭力分析』, 韓國產業銀行, 1992.

4. 彈力關稅制度

김철수, 「彈力關稅制度改善」, 『關稅』, 1994.

朴相泰, 「彈力關稅制度의 運營實際 및 改善方向」, 『關稅』, 1990, 1991.

방준석, 「農産物의 輸入自由化에 따른 效果와 關稅政策」, 韓國外國語大學校 貿易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2.

서정협, 「彈力關稅制度의 運營實態와 改善方向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1.

이종진, 「우리나라 彈力關稅制度和 運營에 관한 研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9.

유하상, 「彈力關稅制度의 效率의 運用에 관한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8.

韓國稅制研究會, 「開放化時代의 덤핑防止關稅制度」, 『經營과 稅務』, 1992.

5. 國際關稅協力制度

關稅廳, 「亞太經濟協力體 APEC 會員國의 關稅制度」, 『關稅』, 1994.

金基榮, 「UR協商 妥結에 따른 關稅行政上 對應方案」, 『關稅』, 1994.

金仁哲, 「UR以後 世界關稅率 改編展望과 韓國의 輸出效果分析」, 財務部關稅局, 1992.

金鍾秀, 「WTO 體制下에서의 貿易紛爭과 解決方案」, 『關稅』, 1994.

金鍾煥, 「國際化·開放化時代의 關稅行政 2000年代를 향한 關稅行政의 座標」, 『關稅』, 1994.

金昊植, 「WTO時代의 對外經濟政策」, 『關稅』, 1994.

盧莊愚, 「WTO 出帆以後의 새로운 通商議題 論議動向」, 『關稅』, 1994.

對外經濟政策研究院, 「WTO出帆과 新交易秩序」,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4.

朴載豪, 「GSP의 主要內容과 供與問題 檢討」, 『關稅』, 1990.

卞鍾立, 「最近의 COCOM 動向과 戰略物資輸入 및 通關證明書 發給制度」, 『關稅』, 1990.

徐漢昌, 「방콕協定 擴大協商」, 『關稅』, 1990.

——, 「ESCAP 域내 體制下의 開途國間 貿易 및 投資擴大」, 『關稅』, 1993.

愼鏞大, 「EU에 대한 GSP 供與中斷 論議와 우리의 對應」, 『關稅』, 1994.

申鉉濬, 「APEC의 現況과 向後展望」, 『關稅』, 1993.

- 柳莊熙, 「國際經濟環境의 最近變化와 우리의 자세」, 現代經濟社會研究院 企業經濟, 1995.
- 李康演, 「第3次 한·러 稅關協力會議」, 『關稅』, 1994.
- , 「第4次 한대평양지역 關稅廳長會議 및 第5次 한·캐 稅關協力會議」, 『關稅』, 1994.
- 李龍雨, 「對外通商協商的 問題點과 課題」, 現代經濟社會研究院 企業經濟, 1995.
- 財務部, 『우루과이라운드(UR)協商과 우리의 對應』, 財務部, 1992.
- 財政經濟院 對外經濟局, 「APEC 主要文書」, 1995.
- 車辰錫, 「GSTP의 現況과 向後展望」, 『關稅』, 1991.
- 崔國珍, 「國際關稅協約의 現況과 向後計劃」, 『關稅』, 1994.
- 崔弘健, 「UR協商 妥結이 우리 貿易에 미치는 影響 및 向後 對應方向」, 『關稅』, 1994.

6. 關稅評價制度

- 권영석, 「韓國의 關稅評價制度에 관한 考察」, 啓明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1.
- 金基仁, 『關稅評價正解』, 關稅資料研究院, 1996.
- 金洪晤, 「關稅評價業務의 先進化 方向」, 『關稅』, 1991.
- 朴貴薰, 「GATT 關稅評價協約에 관한 研究」, 『關稅』, 1992.
- 李大熙, 「關稅評價制度에 관한 考察」,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5.
- 李秀雄, 「關稅評價制度와 그 運營實態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5.
- 李壽鎬, 「GATT의 MTN과 新評價制度에 관한 研究」, 仁荷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5.
- 韓仁培, 「關稅評價制度의 活性化 方案」, 成均館大學校 行政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3.

7. 關稅減免制度

姜錫寅, 『外資導入과 韓國의 經濟發展』, 장원출판사, 1994.

姜玪鎬, 「關稅減免制度的 運用方向」, 『關稅』, 1994.

李永雨, 「企業의 競爭力 提高를 위한 關稅減免支援制度」, 『關稅』, 1991.

財務部 經濟協力局, 『韓國經濟와 外資導入』, 1991.

趙容滿, 「關稅納付 減免 評價制度改善」, 『關稅』, 1994.

8. 關稅還給制度

姜玪鎬, 「中小企業輸出支援을 위한 關稅還給制度」, 『關稅』, 1994.

金敬浩, 「韓國의 關稅還給制度에 관한 研究」, 建國大學校 行政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7.

김범식, 「우리나라 關稅還給制度의 現況과 改善方向에 관한 研究」, 成均館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0.

김학근, 「우리나라 關稅還給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 韓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2.

柳時律, 「關稅還給 所要量 管理制度의 改善方案」, 『關稅』, 1990.

李榮鎮, 「韓國의 關稅還給制度 運營實態와 改善方案」, 釜山大學校 經營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4.

조용희, 「關稅還給制度 運營實態와 改善方案」, 延世大學校 經營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1.

姜玪鎬, 「中小企業輸出支援을 위한 關稅還給制度」, 『關稅』, 1994.

9. 保稅制度

김남진, 「保稅區域設營特許의 法的 性質」, 『관례월보』, 1989.

朴貴薰, 『保稅工場制度의 運營에 관한 考察』, 國立稅務大學 租稅研究論文集, 1994.

박준화, 「保稅運送業界의 現實과 課題」, 『海洋韓國』, 1992.

서상훈, 「우리나라 保稅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韓國外國語大學校 貿易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2.

梁柱伯, 「輸出入通關 및 保稅貨物管理制度改善」, 『關稅』, 1994.

尹成均, 「指導行政方向」, 『關稅』, 1996.

李喆鍾, 「國際航空 通關貨物管理의 先進化 方案」, 『關稅』, 1994.

崔奎範, 「關稅指導行政의 發展方向」, 『關稅』, 1994.

許龍錫, 「稅關監視制度改善」, 『關稅』, 1994.

洪貞植, 「保稅建設場運營에 관한 改善方案」, 『關稅』, 1991.

10. 產業被害救濟制度

金明南, 「우리나라 產業被害救濟制度 및 運用에 관한 研究」, 圓光大學校 產業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4.

金完淳, 「UR以後 世界貿易環境과 產業被害救濟制度」, 『關稅』, 1991.

朴相泰, 「產業被害救濟制度」, 『關稅』, 1991.

신광식, 「우리나라 產業被害 救濟制度의 改善方向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1.

申有均, 「產業被害救濟制度의 發展의 展開方向」, 『關稅』, 1994.

신 한, 「韓國產業被害救濟制度에 관한 研究」, 延世大學校 經營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2.

商工資源部 貿易委員會, 『貿易委員會 關聯 規定 및 調查實務要領』, 1994.

李康鎬, 「產業被害救濟制度의 發展方向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1.

張鉉德, 『產業被害救濟制度의 問題點 및 改善方向』, 國立稅務大學研究論文集, 1993.

通商產業部 貿易委員會, 「우리나라의 產業被害救濟制度」, 1995,

——, 「우리나라의 產業被害判定事例」, 1995.

11. 關稅審判制度

- 金相南, 「關稅審判制度的問題點과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 경희大學校 經營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5.
- 金香氣, 「行政審判制度研究-전심절차로서의 行政審判에 관한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3.
- 朴鍾龍, 「國稅賦課處分の 權利救濟에 관한 研究」, 東國大學校 經營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9.
- 法務部, 『各國의 租稅審判制度』, 1993.
- 尹昇榮, 「國際爭訟制度研究-違法한 國稅行政處분에 대한 權利救濟制度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3.
- 李炯浩, 『國稅滯納處분에 의한 押留財產換價代金の 配分順位』, 國立稅務大學研究論文集, 1996.
- 韓慶東, 「違法한 國稅賦課에 대한 權利救濟制度的 改善方案」, 慶北大學校 經營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3.

12. 關稅士制度

- 鄭在完, 「財政關稅士法解說」, 『關稅』, 1995, 1996.
- 財政經濟院, 『1995改正 關稅法 및 制定關稅士法 解說』, 1996.
- 韓國關稅士會, 『關稅士 補修教育教材』, 1995.

13. 關稅刑罰制度

- 關稅廳, 『最近密輸動向』, 關稅廳, 1995.
- 金 進, 「關稅犯에 관한 研究」, 釜山大學校 行政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9.
- 朴貴薰, 『關稅犯處罰에 있어서의 過怠料制度에 관한 研究』, 國立稅務大學研究論文集, 1996.
- 서울地方檢察廳, 『關稅刑罰法』, 1994.